

일시

2019

12.27^{FRI}
13:00~18:00

장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2019년 한국이민학회 후기 학술대회

초국가적 이민 II

Transnational Migration II

주최 한국이민학회

주관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연세대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회적 연대와 공존 사업단

후원 한국이민재단 / 한국연구재단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일시

장소

2019

12.27^{FRI}
13:00~18:0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2019년 한국이민학회 후기 학술대회

초국가적 이민 II

Transnational Migration II

주최 한국이민학회

주관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연세대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회적 연대와 공존 사업단

후원 한국이민재단 / 한국연구재단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일시 | 2019. 12. 27. Fri. 13:00~18:00

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12:30 - 12:50	학술대회 등록	
12:50 - 13:00	개회식	장소 M308
13:00 - 14:30	세션1 이민과 재이민	장소 M308 / 사회 이병하 (서울시립대)
	대림동 에스노그래피: 재생산된 (이주)노동의 도시 발표 박 우 (한성대)	
	탈북의 여성화 발표 김은주 (고려대)	
	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인식 발표 윤인진, 손지혜, 이종원 (고려대)	
	토론 김수경 (통일연구원), 최희정 (전북대)	
	세션2 가족과 이민	장소 M305 / 사회 김현미 (연세대)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들의 다층적 맥락과 성격 발표 정지원 (동국대)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유형과 적대적 매체지각: 소속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송영호 (이민정책연구원),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와 요인: 이주 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발표 이종원 (고려대), 최우익 (한국외국어대)	
	토론 신지원 (전남대), 한건수 (강원대)	
	세션3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노동 경험	장소 M307 / 사회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학생이주자의 노동경험과 일의 가치: 한국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학생을 중심으로 발표 김도혜 (대구대)	
	난민/이주민 구별짓기의 정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노동시장 경험 연구 발표 서선영 (연세대)	
	동티모르(티모르레스테) 출신 어업이주노동자의 노동경험 발표 김철호 (전북대), 김민정 (이주여성인권포럼)	
	토론 문경희 (창원대), 손인서 (고려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14:30 - 14:50	휴식	장소 M302
14:50 - 15:50	플래너리 세션	장소 M308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A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발표 김재은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15:50 - 16:00	휴식	장소 M302

16:00 – 17:50	세션4 세계의 다양한 이민	장소 M308 / 사회 한건수 (강원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 GCM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이병하 (서울시립대)		
다문화 사회와 반이민 테러 대응: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기난사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사회 연결망의 변화: 캐러밴 이주를 중심으로 발표 손지혜 (고려대)		
Studying Law Abroad, Practicing Law Home: The Spatial Mobility of Korean Lawyers in Early 1920s Japanese Empire as Structural Sequences and Historical Contingency 발표 박천웅, 최희정 (전북대)		
토론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송영호 (이민정책연구원)		
	세션5 협력 구슬생애사를 통해서 본 초국가적 한인의 경계 넘기	장소 M305 / 사회 정병호 (한양대)
실천연구로서의 협력구슬생애사: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표 정병호 (한양대)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구슬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과 민족경계의 연행에 대한 분석 발표 조일동 (신한대)		
고려인 이주청소년의 초국가적 삶과 국가정체성 재구성 발표 김기영 (한양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를 통한 이해와 연대 발표 최은영 (한양대)		
토론 김현미 (연세대), 이희영 (대구대)		
	세션6 사회적 연대와 공존	장소 M307 / 사회 이철우 (연세대)
'새로운' 한국인들의 등장: 몽골 출신 귀화자들의 귀화 이유와 개명 방법 고찰 발표 윤승주 (연세대)		
난민 없는 난민 제도: 한국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제도의 작동방식 발표 김가영 (연세대)		
베일논쟁의 정치화와 이슬람여성의 탈정치화 발표 준불 베틀 (연세대)		
Who am I?: An Analysis of the Joseonjok People's Sense of Identity who Live in South Korea 발표 순 지아웨이 (서강대)		
토론 이충훈 (전북대), 김철호 (전북대)		
	세션7 다문화사회 진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 김정석 (동국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둘러싼 미디어 코퍼스 분석: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담화분석을 위한 제언 발표 이태현, 김정석 (동국대)		
중고령층의 지역사회참여 잠재프로파일 분석: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참여 분석으로의 응용성 발표 문경주 (한국해양대), 장수지 (경성대), 신유리 (동국대)		
지역사회 건강리터러시(Health literacy) 개발과 다문화가정 적용가능성 탐구 발표 천희란 (중원대)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 지역사회의 빈곤성 효과 발표 기 명 (고려대)		
토론 문경주 (한국해양대), 천희란 (중원대), 홍승이 (동국대), 김일호 (동국대)		
17:50 – 18:00	총회 및 폐회	장소 M308

I 차례 I

세션1 | 이민과 재이민

대림동 에스노그래피: 재생산된 (이주)노동의 도시	3
박우 (한성대)	
탈북의 여성화	5
김은주 (고려대)	
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인식	7
윤인진, 손지혜, 이종원 (고려대)	

세션2 | 가족과 이민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들의 다층적 맥락과 성격	43
정지원 (동국대)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유형과 적대적 매체지각: 소속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55
송영호 (이민정책연구원),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와 요인: 이주 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57
이종원 (고려대), 최우익 (한국외국어대)	

세션3 |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노동 경험

학생이주자의 노동경험과 일의 가치:	
한국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학생을 중심으로	79
김도혜 (대구대)	
난민/이주민 구별짓기의 정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노동시장 경험 연구	89
서선영 (연세대)	
동티모르(티모르레스테) 출신 어업이주노동자의 노동경험	91
김철호 (전북대), 김민정 (이주여성인권포럼)	

플래너리 세션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A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99
김재은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세션4 | 세계의 다양한 이민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 GCM 사례를 중심으로	129
이병하 (서울시립대)	
다문화 사회와 반이민 테러 대응: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기난사 사건을 중심으로	147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사회 연결망의 변화: 캐러밴 이주를 중심으로	153
손지혜 (고려대)	
Studying Law Abroad, Practicing Law Home: The Spatial Mobility of Korean Lawyers in Early 1920s Japanese Empire as Structural Sequences and Historical Contingency	171
박천웅, 최희정 (전북대)	

세션5 | 협력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본 초국가적 한인의 경계 넘기

실천연구로서의 협력구술생애사: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81
정병호 (한양대)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구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과 민족경계의 연행에 대한 분석	187
조일동 (신한대)	
고려인 이주청소년의 초국가적 삶과 국가정체성 재구성	195
김기영 (한양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를 통한 이해와 연대	215
최은영 (한양대)	

세션6 | 사회적 연대와 공존

'새로운' 한국인들의 등장: 몽골 출신 귀화자들의 귀화 이유와 개명 방법 고찰	227
윤승주 (연세대)	
난민 없는 난민 제도: 한국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제도의 작동방식	249
김가영 (연세대)	
베일논쟁의 정치화와 이슬람여성의 탈정치화	251
준불 베틀 (연세대)	
Who am I?: An Analysis of the Joseonjok People's Sense of Identity who Live in South Korea	265
순 지아웨이 (서강대)	



세션7 | 다문화사회 진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둘러싼 미디어 코퍼스 분석: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담화분석을 위한 제언	287
이태헌, 김정석 (동국대)	
중고령층의 지역사회참여 잠재프로파일 분석: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참여 분석으로의 응용성	289
문경주 (한국해양대), 장수지 (경성대), 신유리 (동국대)	
지역사회 건강리터러시(Health literacy) 개발과 다문화가정 적용가능성 탐구	291
천희란 (중원대)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 지역사회의 빈곤성 효과	293
기명 (고려대)	

세션1 | 이민과 재이민

사회 / 이병하 | 서울시립대



**발표
01** 대림동 에스노그래피: 재생산된 (이주)노동의 도시
박우 | 한성대

**발표
02** 탈북의 여성화
김은주 | 고려대

**발표
03** 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인식
윤인진, 손지혜, 이종원 | 고려대

토론 김수경 | 통일연구원, 최희정 | 전북대

세션 1-01

대림동 에스노그래피: 재생산된 (이주) 노동의 도시

박우 | 한성대학교

1960년대 중반의 구로공단 건설은 남서부 서울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대량의 이촌향도 노동력이 대림동-구로동 지역에 짐을 풀었고 이 지역을 서울에서의 삶의 터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발전 속에서 비록 그 역할은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구로공단은 여전히 한국의 수출 및 내수산업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대림동 인근은 노동자의 거주지가 되었고 이 거주지에는 자연스럽게 도심형 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서비스업이 출현하였다. 1990년대 이 지역은 공단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지역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정부는 구로공단을 국가디지털산업단지로 역할을 변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산업화시대에 보조를 맞추고자 했다.

2010년 이후 대림동은 다시한번 관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1990년대 유출된 인구의 빈자리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민족, 이념, 국가 등의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보다 민족적으로는 일치성을 주장하고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섞여 있으며 또한 중국 생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채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림동의 중국동포들은 한국사회의 저변에 놓인 사양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중국동포가 내면화한 역사문화적 경험과 이들이 위치한 사회-계급적 위계, 그리고 이 위계에서 파생하는 문화는 한국사회의 이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017년 여름, 대림동에서 예년 같지 않은 움직임이 일었다. 그해 봄에 상영한 영화와 가을에 상영을 예정한 영화 때문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영화가 이 지역을 “범죄의 소굴”로 묘사하였고, 이 지역의 중국동포 전체를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분개했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대림동 지역에서 이와 같이 거센 항의가 나온 것은 2000년대 초반 구로동에서 있었던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와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는 지역 주민이 항의의 중심에 섰다는 것, 그리고 이 항의는 지역에서 40여 년 거주한 토박이 한국인 주민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대림동=중국동포로 착각하고 과도하게 스토리를 각색한 영화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영화는 대림동 지역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화합과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대림동에는 마냥 화합만을 가능케 하는 지역정체성만 구성되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정체성은 다른 식으로 변용되기도 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갑자기 서울 서남권 3구에서 중국어교육을 “의무”화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공시하였다. 이 결정이 나오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격양되었다.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요청이 쇄도하였고, 일부 학부모는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림동은(또는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 특구가 아니었다. 다른 한편 그럼 공교육에서의 중국어 의무화를 중국동포들이 요구하였는가? 아직 누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본 연구자도 이 정책이 너무 무맥락적인 속행정치의 산물이라고 본다).

본 연구자는 대림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맞지만 대림동을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 노력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대림동 지역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에스노그래피)을 기술하는 것을 통해 이 지역 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이 지역 폼회에 대해 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 연대하는 “지역정체성”을 보였다면, 이 지역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해 선주민이 격앙하는 “지역정체성”을 보였다. 필자는 대림동이 국내 이주노동자의 도시로 출현하여 초국적 이주노동자의 도시로 재생산 되면서 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는 묘한, 정체성의 공유와 긴장이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

세션 1-02

탈북의 여성화

김은주¹⁾ | 고려대학교

탈북의 여성화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4. 탈북의 여성화
5. 이주의 여성화와 탈북의 여성화 비교
6. 결론 및 논의
7. 참고문헌

1)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

1. 서론

1) 문제제기

- 인류 이주 역사에 새로운 흐름으로써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등장
주체성과 이중 억압의 양면성을 가짐.
- 탈북민 또한 72% 여성으로 여성화 정도 매우 높으며 위임난민이라는 특성이 있음.
이주의 여성화 관점에서 탈북민의 여성화 현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 부재.
-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이중 억압이 탈북민 여성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것은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성공적 정착 및
지원에 유의.
- 탈북민의 여성화와 이주의 여성화 비교를 통해 이주의 여성화 개념 확장 시도

1. 서론

2) 연구 목적

- 경제적(결혼/노동)이주 여성 ≠ 탈북민 여성(한민족/동등한 국민의 권리 행사/난민)
탈북민의 여성화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탈북의 여성화' 개념 도입.
- 탈북의 여성화 발달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을 밀어 내는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우위에 있는 중국 및 한국의 흡인 요인을 분석하여 탈북의 여성화
메커니즘을 밝힌다.
- 이주의 여성화와 탈북의 여성화 비교를 통해 이주의 여성화 논의 및 개념을 확장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이주의 여성화 정의

논 의 : 60년대 국제이주에서 여성이 중요해 지고 70~80년대 젠더에 대한 고려가 시작 되어 90년대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 전개 됨.

양적 측면 : 이주 여성의 비율 증가 또는 전체 이주자 중 여성이 50% 이상.

질적 측면 : 남편 동반 이주가 아닌 여성이 이주의 주체이자 가족 이주 주도.

범 위 : 노동이주여성으로 표현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결혼 이주 여성 포함.
이주의 여성화에서의 난민 여성 연구 거의 없음.

* 노동이주여성과 결혼이주 여성 대부분이 모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로 이동(James· Khoo · Peter, 2018)하므로 노동이주여성보다 '**경제적 이주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논의

거시 및 미시 구조에 입각한 이론들

신고전 경제학 :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으로써 이주가 결정되고 행해 짐.

- 배출-흡인 요인에 입각한 이론으로 이주 여성의 임파워먼트 설명.

네트워크론 : 본국과 수용국에서 가족, 친족의 초국적 네트워크로 이주 비용 및 위험 절감.

- 가족 이주, 연쇄 이주 설명.

신경제학 : 가족 및 집단의 결정에 의해 이주 결정되고 행해 짐.

- 이주 여성이 억압과 착취에 놓이는 상태 설명.

세계체제론 : 세계화의 불균등한 발전 속에서 국가-노동시장 간의 관계로 이주 여성 발생

- 서비스업의 확대로 내국인 여성들이 기피하는 저임금·저기술 일자리에 이주여성 유입.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3) 이주의 여성화 선행 연구

- 여성화(수적), 직업의 여성화(여성 수요 노동 증가), 빈곤의 여성화(저임금)에 '힘의 여성화' 추가 제안. 주체적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Women's Empowerment' (Roberto, 2007).
- 여성의 이주가 여성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보다 가족과 같은 집단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집단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Massey-Edward, 2004).
- 이주여성들은 국가 차원에서는 '부분적 시민권', 노동시장에서는 '모순된 계급이동', 가족측면에서는 '초국가적 가족', 유입 국 내 이주민 공동체에서는 '무소속감' 경험(Parrenas, 2001).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 탈북 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

- 1990년 대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라 사회정착이 주 연구 주제였으며, 2010년 대 일반 국민의 수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통합을 연구(윤인진, 2019)
- 이주 관점의 탈북민 연구들은 탈북민 또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이진석, 2014; 송영훈, 2015; 심양섭, 2017; 윤인진, 2019).
- 반대로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 난민 등의 탈북민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연구자들은 탈북민을 이주자로 볼 경우 이들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신효숙, 2016).
- 탈북 여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 주제로는 경제활동, 결혼생활 및 가족, 트라우마 및 심리, 재증 탈북 여성 등이 있으며 1987년도에서 시작되어 이 후 꾸준히 증가(이영선·구혜완·한인영, 2011).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3) 탈북민 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

- 진미정·김상하(2018) : 탈북민의 이주가 지속시간, 주제(자발성), 권리보호, 계획 등에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으로 이주의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 탈북민의 이주는 기혼 여성을 필두로 하는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한 가족이주(단계이민)의 속성을 가진다.
- 손명아·김성호(2017) :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사회 적응의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다. 탈북 발생부터 제3국 체류와 남은 정착 단계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 필요. 거시구조로서 북한의 가부장적 제도가 탈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여성의 가족과의 감정적 유대로 인한 기혼여성 중심의 연쇄 이주를 미시 구조로 본다. 정착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불안이 높다.

* 진미경 외(2018)와 손명아 외(2017)은 탈북민이 가지는 여타 이주자와 다른 특성들 때문에 신고전 경제학 이론이나 신경제이론 어느 하나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짐으로 네트워크 이론을 채택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이주 관점에서 여성 이주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 탈북민 연구에서 여성화 현상에 대한 언급들이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탈북의 여성화 현상을 개념화 하여 구체화한 연구 부재.
- '탈북의 여성화'의 발달 및 현황과 구체적 속성을 밝힘으로써 '탈북의 여성화'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탈북의 여성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개념화를 토대로 이주의 여성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이주의 여성화 개념 확장 가능.

3. 연구 방법

문헌 자료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

- 탈북의 여성화 현상의 발달 및 현황을 양적 측면에서 이해 하기 위해 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를 통해 연도별 대한민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 성비, 연령, 직업 등을 분석 한다.
- 탈북의 여성화 질적 측면의 이해를 위해 북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자유 및 권리 침해 등 북한의 배출요인과 경제적 우위 및 자유, 권리 보장이라는 한국의 유입 요인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분석하고 탈북의 여성화 메커니즘을 밝힌다.
- 기존의 이주의 여성화 논의에서 탈북의 여성화를 추가하여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이주의 여성화에서 논의되는 경제적 이주 여성의 일반적 속성과 탈북민 여성들의 일반적 속성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4. 탈북의 여성화

1) 양적 측면

성별	~89	90	91	92	93	94	합계
남	563	9	9	6	8	48	643
여	44	0	0	2	0	4	50
합계	607	9	9	8	8	52	693
여성(%)	7.2%	0%	0%	25%	0%	7.7%	7.2%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부(이금순, 2006)

- 1994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693명이며 이중 여성 비율은 7.2% 불과.
- 가족 탈북은 90~93년까지 한 건도 없으며, 94년 입국자 수 증가세와 함께 19.2% 보임.
- 초기 가족 단위 탈북에서 여성들은 탈북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없이 시댁이나 남편을 따라온 경우가 대부분(이금순, 2006).
- 여성 주도형 탈북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

4. 탈북의 여성화

1) 양적 측면

성별	~98	~2001	2002	2009	2018	~2019/09
남	831	565	510	662	168	9,297
여	116	478	623	2,252	969	23,950
합계	947	1,043	1,142	2,914	1,137	33,247
여성비율	12%	46%	55%	77%	85%	72%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표 중 일부(2019년 10월 기준)

- 90년대 중반(고난의 행군 전 후) 수적 증가와 함께 성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임.
- 탈북의 여성화 현상은 90년대 대기근으로 탈북자의 증가와 함께 시작되어, 2002년 여성이 남성을 초과해 현재 전체의 72%에 달하는 등 여성화 수준 매우 높음.

4. 탈북의 여성화

1) 양적 측면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남	646	1,662	2,556	2,119	1,356	548	334	7,196
여	636	2,065	6,845	7,403	4,467	1,384	980	23,780
합계	1,282	3,727	9,411	9,522	5,823	1,932	1,314	33,011
여성비율	50%	55%	73%	78%	77%	72%	75%	72%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유형표 2019. 09 기준(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 제외)

- 19세 미만의 남녀 성비가 유사한 것은 미성년의 많은 경우 부모와 동반 또는 연쇄 탈북에서 자녀 우선 결과로 보임.
- 20대부터 여성 비율이 높아 지는 원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 및 가족의 생계 부담 증가에 기인.
- 북한 여성의 결혼 적령이 20대 중반으로 한국 입국 여성 60% 이상이 이미 북한이나 중국 혹은 두 곳 모두에 가족을 둔 초국가적 가족 형성 시사.

4. 탈북의 여성화

1) 양적 측면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계
남	408	690	4,054	3,193	85	81	215	8,726
여	138	143	8,926	11,872	1,380	213	506	23,178
합계	546	833	12,980	15,065	1,465	294	721	31,904
여성비율	25%	17%	69%	79%	94%	72%	70%	73%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별 유형표 2019. 09 기준(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 및 아동 제외)

- 가정주부, 봉사분야(인민반장으로 추정)의 여성 비율이 전체 여성 비율 보다 높은 것은 조직에 매여 있지 않은 여성의 탈북이 더 용이함을 의미.
- 전체 탈북민 중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관리직 여성 비율이 25%에 그치는 현상은 북한에서 여성이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낮거나, 관리직 여성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에서 보다 자유로워 탈북으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

4. 탈북의 여성화

탈북의 여성화 출현: 90년대 이전 체제 불만 등에 따른 남성 위주 탈북과 대조적으로 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탈북 증가 및 여성 비율 증가로 탈북의 여성화 현상 나타남

탈북의 여성화 현황: 탈북 여성의 비율이 90년대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2%로 국제이주여성 전반 보다 높은 여성화 수준 보임.

연령별 여성화:

-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반 탈북/가족연쇄 탈북으로 성비의 큰 차이가 없음.
- 부모로부터 독립, 결혼 및 가족의 생계 분담 가능한 성인 즉, 20대부터 여성 탈북 비율 증가
- 3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아 탈북 여성 대부분이 북한, 중국에 가족이 있는 초국가적 가족 형성.

재북 직업별 여성화: 조직에 매여 있지 않은 가정주부 및 봉사분야 여성들 탈북률이 가장 높으며, 관리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관리직 여성 비율과 관리직 여성의 탈북률 모두 낮은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미지수.

4. 탈북의 여성화

2) 질적 측면

탈북 동기:

- 90년대 중반 이전 남성 위주의 탈북은 정치적·사상적 동기가 주였음(이유정 외, 2016).
- 90년 중반 이후의 탈북은 선택지가 없는 극한 상황과 체제의 폭력성과 불안정성으로 부터의 탈출, 자유에 대한 갈망, 신분 제도에 따른 차별 등 거시 구조적인 측면과 보다 향상된 삶, 가족 재결합, 외부 정보를 통한 북한 사회 현실 직시 등 미시 구조적 측면으로 나뉜다(손명아 외, 2017).

북한의 배출요인	중국의 유입 요인	한국의 유입 요인
공식조직에서의 상대적 자유로움	높은 여성 수요(비공식 결혼)	신분의 안전 보장
가정의 생계 부담 여성에게 전가	남성보다 직업 구하기 용이	경제적 우위
자녀 및 가족 진로에 덜 위협적	남성보다 피신 용이	미래 계획 가능

5. 탈북의 여성화와 이주의 여성화 비교

		탈북 여성	경제적 이주 여성
공통점	여성화 수준	여성 비율 72%(2019년 기준)	여성 비율 46%. 증가 추세(2016년 기준)
	역량 강화	경제활동의 주체, 북한/중국 가족에 송금하는 주체.	자기 결정에 따른 이주 및 송금주체
	이중억압/착취	저임금의 돌봄 및 서비스업 종사.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여성
	초국가적가족	북한, 중국, 한국에 각각 가족을 형성.	모국의 가족과 한국의 돌봄 가정
차이점	권리 실현	남겨두고 온 가족 부양 부담으로 개인 권리 실현 어려움	모국의 가족 지원을 위해 권리 포기
	국제적 정의	위임난민	이주자
	이주 목적	강제 복송 종식 및 신분 보장 중요. 결혼이주 없음.	노동이주, 결혼이주 등 경제적 이유
	이주 형태	정주형. 불법체류자 없음.	정주형/잠정적 체류(불법/합법)
	법적 신분	대한민국 국민 자격 부여 및 동등한 국민의 권리 행사	조건부 국민 자격 부여. 외국인 신분
	제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체류 형태에 따른 차등지원 or 지원 부재.

6. 결론 및 논의

탈북의 여성화 정의

논 의 : 북한의 대기근을 계기로 탈북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탈북민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양적 측면 : 2019년 현재 전체의 72% 가 여성으로 세계적 이주의 여성화 수준 보다 높다.

질적 측면 : 신경제 이론의 가족 결정에 따른 이주 성격을 가지지만 여성이 경제활동과 송금의 주체이며 가족 탈북을 주도한다.

범 위 : 대한민국에 입국한 모든 탈북 여성.

특 징 :

- 유엔 국제난민기구에 따른 위임난민으로, 한국 이주 주요 목적 또한 신분 보장, 안전 및 자유 획득이다.
- 이주의 여성화에서 결혼이주는 중요한 범주이지만 탈북 여성의 경우 합법적 결혼에 의한 이주 없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 지원으로 여타의 이주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 탈북민 전체가 정주형 이주의 성격을 가지며 불법체류자 또한 없다.

6. 결론 및 논의

- 북한이탈주민의 여성화 현상을 '탈북의 여성화'로 개념화 하고 전세계적 이주의 여성화와 비교함으로써 '탈북의 여성화'가 갖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또한 탈북의 여성화가 이주의 여성화처럼 여성이 이주의 주체, 경제활동의 주체, 송금의 주체가 되는 역량강화 측면도 있지만, 가족 부양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출생지가 북한이어서 조선족보다 못한 취급을 받거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등 억압과 착취에서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탈북민 여성의 성공적 사회통합 및 발전을 위해 이주의 여성화 관점과 탈북의 여성화 특성을 고려한 정책 구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7. 참고문헌

- 김경숙, 2017. “탈북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윤미, 2017.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자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활용의 측면에서”.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석사 학위 논문.
- 문숙재·김지희·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 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137-152
- 박신순, 2014. “탈북여성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중국-한국에서의 가족생활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 논문.
- 박현선, 2003. 『현대 북한 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손명아·김석호, 2017.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40(1), 57-81
- 송형주, 2014. “세계화 시대 이주여성고 이민정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논문
- 스티븐 카슬. 2013. 『이주의 시대』 역 한국이민학회. 일조각

7. 참고 문헌

- 윤인진, 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61-92
- 윤인진·박영희·윤여상·장혜경·임인숙, 2007. “북한이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2호. 89-108.
- 이금순, 2006. “여성 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45(1), 191-234
- 이유정·Cesar Echevarria·황태희, 2016.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 내 계층 인식과 남한 사회 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방법논총 2016년 가을호 제1권 제2호. 1
- 이해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조성희·성정현·신은주, 2019. “북한 이탈 여성의 가정폭력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방사와 지방 문화, 22(1), 251-278
- 조영아·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509-527.

7. 참고문헌

- 진미정·김상하, 2018.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이주 특성과 유형” ISSN 2288-355X
- 최빛내·김희경, 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95-212
- 채명자·임준희, 2019.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결혼생화 변화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권 4호. 65-87.
- 한인영·구혜완, 2014.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성인식 관련 기초조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66집. 집문당.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 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1-37
- Agrawal, Anuja. 2006. *Introduction: Women, Work and Migration in Asia*. Migrant Women and Work, 21-45. New Delhi: Sage Publication.
- James T. Fawcett, Siew-Wan Khoo, Peter C. Smith. 2018. *Women in the City of Asia; Migration and Urban Adaptation*.

7. 참고문헌

- James T. Fawcett, Siew-Wan Khoo, Peter C. Smith. 2018. *Women in the City of Asia; Migration and Urban Adaptation*.
- Marinucci, Roberto. 2007. *Feminization of Migration?* REMHU-Revista Interdisciplinar da Mobilidade Humana, vol. 15, núm. 29, 2007, pp. 5-22. 재인용
- Massey, Douglas S., and J. Edward Taylor, 2004. *International Migration: Prospects and Policies in a Global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 Thebe, P., Maviza, G. 2019. *The Effects Of Feminization Of Migration On Family Functions In Tsholotsho District, Zimbabwe*. Advances in Social Sciences Research Journal, 6(5)73-82.

세션 1-03

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지원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인식

윤인진, 손지혜, 이종원 | 고려대학교

I | 서론

오랫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한민족’, ‘독립운동의 후손’ 등 한 편으로는 정서적 차원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배려해야 하는 동포로서, 또 다른 편으로는 공리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하는 해외인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인의 이주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밖으로 나가는 유출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으로 바뀌면서 재외동포와 한국인간의 관계와 상호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재외동포는 더 이상 해외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연관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양상으로 한국인들과 더욱 긴밀하게 접촉하고 교류하고 있다. 이들과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동포애에 기반을 둔 우호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가 범죄율을 높인다는가 지역사회를 더럽힌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하다. 더욱이 저성장 시대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일반인들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로 혐오차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층의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귀환 재외동포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이 수용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국내에서 재외동포의 존재는 한 편으로는 동포이며 민족 자산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기회주의자,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이라는 양가감정의 대상이다. 특히 복수국적, 병역과 관련해서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이로울 때는 한국인,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 과거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사는 동포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재미동포를 ‘미국 거지’라고도 부르며 폄하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보다 개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동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시하고 천대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병역과 교육은 한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뜨거운 이슈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높은 교육열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한국인을 순식간에 공분하게 만든다. 특히 특권층의 자녀교육 특혜는 많은 한국인을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한다.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인데 이 제도가 명문대학으로 입학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는 한국의 이주에 있어서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1991년에 구소련과, 1992년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구소련(현재 독립국가연합)과 중국에 있던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발달한 모국으로의 방문과 취업을 위한 귀환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1960년대 초 북미와 남미로 이민 갔던 이민 1세대들이 고령이 되자 모국으로 귀국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귀환 재외동포는 연령대에 따라 한국사회에 서로 다른 양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지지만 노인층은 사회복지비용을 증가한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노인층의 귀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65세가 되어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되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제고한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국민은 많지 않은데 만일 더욱 많은 국민이 알게 된다면 역풍이 불수도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활동과 정책 지원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부여, 기초연금 수급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재외국민 특별전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병역 기피자 국내 입국 허용 연령 등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재외동포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II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1990년대 이후 국내로 귀환하여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내국인의 접촉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된 재외동포들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 인식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갈등,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더 복잡하고 양가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반국민의 수용, 배제, 편용, 편견 등 복잡한 양상들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을 다루는 선행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론과 대중 매체에 표상된 재외동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다. 권혁태(2007)는 '재일 조선인'의 표상을 신문·만화·영화 등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양은경(2010)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조선족에 대한 기획 시리즈물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족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았다. 유종열(2016)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외 동포에 대한 인식에 미디어(방송)가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신예원·마동훈(2017)은 1993년 이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실린 중국동포 주제의 사실과 칼럼을 활용하여 한국 언론에 나타난 중국동포에 대한 민족 담론의 의미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송원찬(2017)은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을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박혜영 외(2018)는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KBS, YTN의 3년간(2012~2015년) 재외동포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주제, 재외동포 관련 주요 쟁점, 기사 비중, 정보원, 재외동포 이미지, 직업 등을 분석하였다. 김지혜(2018)는 미디어에서 중국동포를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언론에 나타난 중국동포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한희정·신정아(2018)는 서사 분석을 통해 영화 <미씽 : 사라진 여자>에서 조선족 여성 및 모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정아(2019)는 조선족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젠더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족 여성 재현의 문제점을 '돌봄'과 '환대'의 차원에서 점검하였다. 한희정·신정아(2019)는 한국 드라마에서의 조선족 재현을 문제제기하고자 각 인물의 역할과 캐릭터를 분석하였다.

둘째, 재외동포와 일반국민 간의 상호인식과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이다. 권숙인(2008)은 한국으로 '귀환'한 재일한인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인식을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정은(2012)은 재

한 조선족 사회의 '지위 분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정경(2014)은 귀환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와 조우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진아(2014)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및 사할린 한인과 내국인의 문화갈등 양상을 고찰하고, 문화공존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다. 조일동(2015)은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 이후 사할린 귀환 동포들이 겪는 문제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애사를 실존적, 현실적, 전략적으로 재조망하였다. 양한순(2015)은 2010~2015년 서울 대림동 일대 현지조사, 중국동포 및 한국인 원주민들에 대한 면접, 관계자 면접 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 중국동포 이주자들과 한국인들의 상호관계를 문화적 시민권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정은(2017)은 다양한 조사 결과와 더불어 중국동포 심층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거주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의 실상과 조선족 동포들의 연합체를 통한 인정 투쟁을 살펴보았다. 홍숙영(2017)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그들의 귀환, 이주, 정주에 관한 서사를 분석하였다. 김나경·선봉규(2018)는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 기관 관계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한국 거주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언어생활 등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박신규(2019)는 재정착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인과 중남미 한인의 생애사를 통해 귀환 이주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셋째, 설문 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및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백지원(2011)은 학생들의 인구사회적 요인, 재외 동포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 경험 등을 다양화하여 표본 추출한 서울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법으로 조사하고, 재중, 재미, 재일, 재러 동포에 대한 인식 차이에 영향을 준 요소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국적에 따라 인지도, 호감도, 친밀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재외동포 중 재미동포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고, 재중동포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의 태도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재러동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 인지도가 낮았다.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 관련 문화 수준이나 정의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재외동포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인터넷이나 TV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정보를 접했을 때 재외동포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 태도를 보였다.

윤인진(2011)은 2005년과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감정을 민족, 국민, 출신국이라는 조합의 틀로 분석하고, 그 틀을 토대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이 되는 조건으로 민족, 국민, 출신국이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도 밝혀냈다. 분석 결과, 국민정체성의 경우 한국인은 한국인의 요건으로 종족적 요건과 시민적 요건을 동시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2005년 88.2%, 2010년 89.4%),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87%, 87.8%),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81.9%, 87.7%),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77.5%, 87.3%),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82.1%, 85.9%),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80.9%, 84.1%),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64.6%, 78.2%)의 순이었다. 민족정체성의 경우 한국인은 한 개인이 한민족인지를 판별하는 데 국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특히 북한동포에 대한 친밀감이 2005년 73.5%에서 2010년 55.2%로 급작스럽게 변했는데, 이는 동포 거주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로 전이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국내 거주 다문화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친밀감에 있어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조선족, 외국 국적 외국 거주 재외동포, 외국 국적 국내 거주 재외동포, 복수 국적자, 이주 노동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해 더 친밀함을 느끼고, 비국민인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갖는 것이다. 즉 한국인이 친밀감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국민, 민족, 출신국의 순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국민이 민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은 2005년과 2010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는데, 2010년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황혜경(2014)은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재일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서울 및 충남 지역 대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가치관, 민족의식, 재일동포에 관한 인식을 묻고, 그것을 성별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응답자의 45%는 재일동포를 한국인, 30% 정도는 일본인, 10%는 일반 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는 재일, 재미, 재중 동포보다는 귀화 한국인, 혼혈 한국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재일동포에 대한 친근감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과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재일동포 문제는 우리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종열(2014)은 한국 고등학생의 재외동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대전,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 수용성은 재외동포와의 만남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단일민족 정체성은 재외동포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문화민족 정체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인진 외(2014)는 전국에서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 국내에 사는 조선족 동포,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 국내에 사는 조선족 동포, 외국인 노동자의 순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고, 비국민인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갖는 것은 윤인진(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윤인진 외(2015)는 재외동포재단이 2009년, 2011년, 2013년에 실시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2013년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민족 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대해 친밀감을 갖는 비율은 2007년 66.3%에서 2013년 54.7%로 감소하였다. 재외동포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한민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모두 2/3 정도였다.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에서 혈통뿐만 아니라 국적 유지,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사는 재외동포들에 더욱 호감을 갖고 있었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1년 54.9%, 2013년 67%가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011년 37.9%, 2013년 26.4%가 '국가마다 다르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2011년과 2013년 모두 6.6%).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민족 의식이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재외동포와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재외동포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민족 의식의 효과가 다문화 수용성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활 세계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인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및 정착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효과가 한민족 의식의 효과보다 더 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재외동포와 한국인 간의 통합을 위해 다문화 민족주의를 대안적 원리로서 제안하였다.

윤인진(2016)은 '다문화 열풍'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문화 피로감' 또는 '다문화 혐오증'에 부딪친 점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그리고 한국인이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선주민-이주민 관계를 어떻게 맺고자 하는지를 국내외 사회 조사 자료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2005년, 2010년, 2015년에 걸쳐서 실시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결과와 윤인진 외(2014)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차별 실태 조사 설문 자료가 사용되었고, 국외 자료로는 2003년과 2013년에 실행된 국제 사회 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결과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의 제5차 조사(2005~2009년) 및 제6차 조사(2010~2014년) 결과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초의 온정주의는 2010년대에 들어서 냉담주의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더욱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확대되었다.

III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의 현황과 귀환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가능한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준 비례할당추출방식으로 표집된 19세 이상의 성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2019년 10월 4일 ~ 10일 기간에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대학교의 학부생 중에서 2019년 1학기에 사회학 전공과목들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225명의 학부생 응답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외국인,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4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일반국민 응답자

일반국민 응답자 1,0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응답자 표본은 일반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기준 비례할당추출방식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국민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49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1%, 여자가 509명으로 50.9%였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가 16.4%, 30-39세가 17.1%, 40-49세가 20.3%, 50-59세가 20.2%, 60세 이상이 26%를 차지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이 19.5%, 인천/경기가 30.3%, 대전/세종/충청이 10.6%, 광주/전라가 9.8%, 대구/경북이 9.9%, 부산/울산/경남이 15.7%, 강원/제주가 4.2%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0%, 대학교 재학 이상이 50%를 구성했다.

응답자의 직업은 농/임/어업이 1%, 자영업이 8.8%, 판매/영업/서비스직이 7%, 생산/기능/노무직이 8.2%, 사무/관리/전문직이 34.9%, 주부가 19.7%, 학생이 6.2%, 무직/퇴직/기타가 14.2%를 차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3%가 상류층, 36.2%가 중류층, 60.5%가 하류층이라고 응답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4.8%, 200-300만원이 17.5%, 300-400만원이 18.5%, 400-500만원이 15.6%, 500-600만원이 12.2%, 600-700만원이 6.3%, 700만 원 이상이 15.1%이었다.

가구원 구성은 1인 가구가 10.8%, 2인 가구가 20.8%, 3인 가구가 25.5%, 4인 가구 이상이 42.9%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관련해서 응답자 중 32.9%는 자신을 진보 성향으로, 40.5%는 중도 성향으로, 26.6%는 보수 성향으로 보고해서 중도 성향이 가장 많지만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 일반국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남자	(491)	49.1	상	(33)	3.3
여자	(509)	50.9	중	(362)	36.2
			하	(605)	60.5
연령			가구원구성		
19-29세	(164)	16.4	1인가구	(108)	10.8
30-39세	(171)	17.1	2인가구	(208)	20.8
40-49세	(203)	20.3	3인가구	(255)	25.5
50-59세	(202)	20.2	4인가구이상	(429)	42.9
60세이상	(260)	26.0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서울	(195)	19.5	200만원미만	(148)	14.8
인천/경기	(303)	30.3	200-300만원	(175)	17.5
대전/세종/충청	(106)	10.6	300-400만원	(185)	18.5
광주/전라	(98)	9.8	400-500만원	(156)	15.6
대구/경북	(99)	9.9	500-600만원	(122)	12.2
부산/울산/경남	(157)	15.7	600-700만원	(63)	6.3
강원/제주	(42)	4.2	700만원이상	(151)	15.1
학력			이념성향(11점)		
고졸이하	(500)	50.0	진보(0-4)	(329)	32.9
대재이상	(500)	50.0	중도(5)	(405)	40.5
			보수(6-10)	(266)	26.6
직업					
농/임/어업	(10)	1.0			
자영업	(88)	8.8			
판매/영업/서비스	(70)	7.0			
생산/기능/노무	(82)	8.2			
사무/관리/전문	(349)	34.9			
주부	(197)	19.7			
학생	(62)	6.2			
무직/퇴직/기타	(142)	14.2			

2) 대학생 응답자

대학생 응답자 22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들은 연령대, 거주 지역, 학력, 직업이 동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문항들은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8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5%, 여자가 138명으로 61.1%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0.4%가 상류층, 56.6%가 중류층, 22.1%가 하류층이라고 응답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4%, 200-300만원이 6.2%, 300-400만원이 15%, 400-500만원이 11.5%, 500-600만원이 16.4%, 600-700만원이 9.3%, 700만 원 이상이 31.4%이었다. 월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31.4%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생활수준과 월평균 가구

소득 모두 일반국민 조사 결과에 비해 더 높았다.

가구원 구성은 1인 가구가 1.8%, 2인 가구가 3.1%, 3인 가구가 21.2%, 4인 가구 이상이 73.9%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관련해서 응답자 중 59.3%는 자신을 진보 성향으로, 21.2%는 중도 성향으로, 19%는 보수 성향으로 보고해서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더 진보적이었다.

[표 2] 대학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남자	(87)	38.5	상	(46)	20.4
여자	(138)	61.1	중	(128)	56.6
			하	(50)	22.1
이념성향(11점)			가구원구성		
진보(0-4)	(134)	59.3	1인가구	(4)	1.8
중도(5)	(48)	21.2	2인가구	(7)	3.1
보수(6-10)	(43)	19.0	3인가구	(48)	21.2
			4인가구이상	(167)	73.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0)	4.4
			200~300만원	(14)	6.2
			300~400만원	(34)	15.0
			400~500만원	(26)	11.5
			500~600만원	(37)	16.4
			600~700만원	(21)	9.3
			700만원이상	(71)	31.4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응답자 48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들은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 공무원, 교원 등 재외동포, 외국인 혹은 다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로 남자는 18명(37.5%), 여자는 30명(62.5%)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대 4.2%, 30대 43.8%, 40대 33.3%, 50대 16.7%, 60대 이상 2%로 주로 30-40대가 응답자의 약 77%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81.3%, 인천·경기 18.7%였다. 학력은 97.9%가 대졸이상이었으며, 생활수준은 중산층 70.8%으로 가장 높았고, 하류층 22.9%, 상류층 6.3%였다. 일반국민의 중산층 응답비율인 36.2%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았고, 상류층으로 응답한 비율도 일반 국민의 3.3%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 가구원 구성은 1인가구 10.4%, 2인가구 14.6%, 3인가구 16.7%, 4인가구 이상이 58.3%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미만이 2.1%, 200만원대가 14.7%, 300·400만원대가 8.3%, 500만원대가 22.9%, 600만원대가 10.4%, 700만원 이상이 33.3%였다. 이념성향은 중도가 41.7%로 가장 높았고, 진보 33.3%, 보수 25%순이었다. 이념성향은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3] 전문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남자	(18)	37.5	상	(3)	6.3
여자	(30)	62.5	중	(34)	70.8
			하	(11)	22.9

구분	N	%	구분	N	%
연령			가구원구성		
19-29세	(2)	4.2	1인가구	(5)	10.4
30-39세	(21)	43.8	2인가구	(7)	14.6
40-49세	(16)	33.3	3인가구	(8)	16.7
50-59세	(8)	16.7	4인가구이상	(28)	58.3
60세이상	(1)	2.0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서울	(39)	81.3	200만원미만	(1)	2.1
인천/경기	(9)	18.7	200-300만원	(7)	14.7
대전/세종/충청	(0)		300-400만원	(4)	8.3
광주/전라	(0)		400-500만원	(4)	8.3
대구/경북	(0)		500-600만원	(11)	22.9
부산/울산/경남	(0)		600-700만원	(5)	10.4
강원/제주	(0)		700만원이상	(16)	33.3
학력			이념성향(11점)		
고졸이하	(1)	2.1	진보(0-4)	(16)	33.3
대재이상	(47)	97.9	중도(5)	(20)	41.7
			보수(6-10)	(12)	25.0
직업					
사무/관리/전문	(48)	100.0			

2.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1)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1) 일반국민 응답자

일반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친밀감을 조사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질문한 결과, 외국인이라고 느끼거나 외국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42.1%,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거나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57.9%로, 대체로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다 친밀한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들이 대재 이상 학력 소지자들

[표 4] 일반국민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①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전체	6.3	35.8	42.1	40.3	17.6	57.9	15.8
성별							
남자	5.7	36.3	42.0	38.7	19.3	58.0	16
여자	6.9	35.4	42.2	41.8	15.9	57.8	15.6
연령							
19-29세	11.6	48.2	59.8	32.3	7.9	40.2	-19.6
30-39세	9.9	39.8	49.7	38.6	11.7	50.3	0.6
40-49세	3.0	36.5	39.4	42.9	17.7	60.6	21.2

	①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 이라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50-59세	5.4	34.2	39.6	41.1	19.3	60.4	20.8
60세이상	3.8	26.2	30.0	43.8	26.2	70.0	40
거주지역							
서울	7.7	36.4	44.1	36.4	19.5	55.9	11.8
인천/경기	5.6	37.6	43.2	41.3	15.5	56.8	13.6
대전/세종/충청	4.7	36.8	41.5	38.7	19.8	58.5	17
광주/전라	5.1	32.7	37.8	43.9	18.4	62.2	24.4
대구/경북	8.1	34.3	42.4	37.4	20.2	57.6	15.2
부산/울산/경남	7.0	34.4	41.4	40.8	17.8	58.6	17.2
강원/제주	4.8	33.3	38.1	52.4	9.5	61.9	23.8
학력							
고졸이하	7.0	32.0	39.0	42.4	18.6	61.0	22
대재이상	5.6	39.6	45.2	38.2	16.6	54.8	9.6
직업							
농/임/어업	0.0	10.0	10.0	60.0	30.0	90.0	80
자영업	3.4	35.2	38.6	35.2	26.1	61.4	22.8
판매/영업/서비스	2.9	32.9	35.7	38.6	25.7	64.3	28.6
생산/기능/노무	8.5	41.5	50.0	34.1	15.9	50.0	0
사무/관리/전문	8.3	35.0	43.3	41.5	15.2	56.7	13.4
주부	6.1	37.1	43.1	41.6	15.2	56.9	13.8
학생	6.5	53.2	59.7	30.6	9.7	40.3	-19.4
무직/퇴직/기타	4.2	28.9	33.1	45.8	21.1	66.9	33.8
주관적 생활수준							
상	0.0	48.5	48.5	48.5	3.0	51.5	3
중	5.5	34.3	39.8	44.2	16.0	60.2	20.4
하	7.1	36.0	43.1	37.5	19.3	56.9	13.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7.4	27.0	34.5	43.9	21.6	65.5	31
200-300만원	6.9	37.1	44.0	37.1	18.9	56.0	12
300-400만원	5.9	36.2	42.2	40.5	17.3	57.8	15.6
400-500만원	4.5	44.2	48.7	35.3	16.0	51.3	2.6
500-600만원	7.4	33.6	41.0	45.9	13.1	59.0	18
600-700만원	11.1	31.7	42.9	39.7	17.5	57.1	14.2
700만원이상	4.0	37.1	41.1	41.1	17.9	58.9	17.8
가구원구성							
1인가구	9.3	31.5	40.7	40.7	18.5	59.3	18.6
2인가구	4.3	30.3	34.6	41.8	23.6	65.4	30.8
3인가구	7.1	39.2	46.3	39.2	14.5	53.7	7.4
4인가구이상	6.1	37.5	43.6	40.1	16.3	56.4	12.8
이념성향(11점)							
진보(0-4)	5.8	38.3	44.1	37.7	18.2	55.9	11.8
중도(5)	6.7	35.1	41.7	41.2	17.0	58.3	16.6
보수(6-10)	6.4	33.8	40.2	42.1	17.7	59.8	19.6

보다 재외동포에 대해 보다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호적이었고 학생들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중류층이 가장 우호적이었고 상류층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월평균 가족 소득에 따른 차이는 200만 원 이하에서 가장 우호적이었고 400~500만원 구간에서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차이는 2인 가구가 가장 우호적이었고 3인 가구가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진보 성향보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더욱 우호적이었다.

(2) 대학생 응답자

대학생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친밀감을 조사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질문한 결과, 외국인이라고 느끼거나 외국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37.6%,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거나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62.4%로, 대체로 대학생은 재외동포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자가 보다 친밀한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상류층이 가장 우호적이었고 중류층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월평균 가족 소득에 따른 차이는 500~600만원 구간에서 가장 우호적이었고 300~400만원 구간에서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차이는 1인 가구가 가장 우호적이었고 2인 가구가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우호적이었으며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비우호적이었다.

[표 5] 대학생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①외국인이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전체	3.5	34.1	37.6	45.6	16.8	62.4	24.8
성별							
남자	4.6	36.8	41.4	33.3	25.3	58.6	17.2
여자	2.9	31.9	34.8	53.6	11.6	65.2	30.4
주관적 생활수준							
상	6.5	19.6	26.1	41.3	32.6	73.9	47.8
중	3.1	40.6	43.7	44.5	11.7	56.2	12.5
하	2.0	32.0	34.0	52.0	14.0	66.0	32.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0.0	40.0	50.0	50.0	0.0	50.0	0.0
200~300만원	0.0	35.7	35.7	42.9	21.4	64.3	28.6
300~400만원	8.8	47.1	55.9	41.2	2.9	44.1	-11.8
400~500만원	3.8	34.6	38.4	46.2	15.4	61.6	23.2
500~600만원	0.0	32.4	32.4	35.1	32.4	67.5	35.1
600~700만원	14.3	19.0	33.3	47.6	19.0	66.6	33.3
700만원이상	0.0	35.2	35.2	46.5	18.3	64.8	29.6
가구원 구성							
1인가구	0.0	0.0	0.0	50.0	50.0	100.0	100.0
2인가구	0.0	42.9	42.9	42.9	14.3	57.2	14.3
3인가구	2.1	31.3	33.4	43.8	22.9	66.7	33.3
4인가구이상	4.2	35.3	39.5	46.1	14.4	60.5	21.0

	①외국인이 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 고 느껴진다	③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이념성향(11점)							
진보(0-4)	3.7	35.1	38.8	47.0	14.2	61.2	22.4
중도(5)	4.2	27.1	31.3	52.1	16.7	68.8	37.5
보수(6-10)	2.3	39.5	41.8	34.9	23.3	58.2	16.4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집단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친밀감을 조사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가 52.1%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가 25%였으며,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가 18.8%였으며, 외국인으로 느껴진다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9.3%가 외국인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외국인으로 느껴진다는 응답자의 전체를 차지하며, 이들 집단의 9.3%가 한국 국민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40대는 같은 응답에서 31.3%로 응답하였다. 50대의 87.5%는 한국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의 43.8%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중산층으로 응답한 조사자의 절반이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하류층 응답자 전원 역시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500만원대의 가계소득집단의 81.8%가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응답하였으며, 300만원대의 25%가 외국인이라고 느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700만원대의 6.3%가 같은 응답을 하였다. 또한 31.3%가 외국인에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소득이 높을수록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도 성향 중 10%는 외국인으로 인식하였고, 50%가 외국인과 가깝다고 인식하였다. 진보성향의 37.5%가 한국 국민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하였고, 50%가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인식하였다.

[표 6] 전문가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느낌(%)

	①외국인이 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 고 느껴진다	③한국국민 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전체	4.2	25.0	29.2	52.1	18.8	70.8	41.7
성별							
남자	5.6	22.2	27.8	55.6	16.7	72.2	44.4
여자	3.3	26.7	30.0	50.0	20.0	70.0	40.0
연령							
19-29세	0.0	50.0	50.0	50.0	0.0	50.0	0.0
30-39세	9.5	33.3	42.9	47.6	9.5	57.1	14.3
40-49세	0.0	25.0	25.0	43.8	31.3	75.0	50.0
50-59세	0.0	0.0	0.0	87.5	12.5	100.0	100.0
60세이상	0.0	0.0	0.0	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서울	5.1	23.1	28.2	51.3	20.5	71.8	43.6
인천/경기	0.0	33.3	33.3	55.6	11.1	66.7	33.3
학력							
고졸이하	0.0	100.0	100.0	0.0	0.0	0.0	-100.0
대재이상	4.3	23.4	27.7	53.2	19.2	72.3	44.7
직업							
사무/관리/전문	4.2	25.0	29.2	52.1	18.8	70.8	41.7

	①외국인이 라고 느껴진다	②외국인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①+② 외국인이라 고 느껴진다	③한국국민 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④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③+④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우호적 - 비우호적 감정 차이
주관적 생활수준							
상	0.0	33.3	33.3	66.7	0.0	66.7	33.3
중	4.6	25.0	29.6	50.0	20.5	70.5	40.9
하	0.0	0.0	0.0	100.0	0.0	10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0.0	100.0	100.0	0.0	0.0	0.0	-100.0
200-300만원	0.0	28.6	28.6	42.9	28.6	71.4	42.9
300-400만원	25.0	25.0	50.0	50.0	0.0	50.0	0.0
400-500만원	0.0	50.0	50.0	50.0	0.0	50.0	0.0
500-600만원	0.0	9.1	9.1	81.8	9.1	90.9	81.8
600-700만원	0.0	0.0	0.0	60.0	40.0	100.0	100.0
700만원이상	6.3	31.3	37.5	37.5	25.0	62.5	25.0
가구원구성							
1인가구	0.0	40.0	40.0	60.0	0.0	60.0	20.0
2인가구	0.0	57.1	57.1	42.9	0.0	42.9	-14.2
3인가구	0.0	25.0	25.0	62.5	12.5	75.0	50.0
4인가구이상	7.1	14.3	21.4	50.0	28.6	78.6	57.1
이념성향(11점)							
진보(0-4)	0.0	12.5	12.5	50.0	37.5	87.5	75.0
중도(5)	10.0	20.0	30.0	60.0	10.0	70.0	40.0
보수(6-10)	0.0	50.0	50.0	41.7	8.3	50.0	0.0

2) 재외동포에 대한 평가

(1) 일반국민 응답자

일반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0.1%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5.4%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대한민국의 국제 외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3.6%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0.1%보다 무려 5배가량 높았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한다는 비율은 54.9%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0.7%보다 5배가량 높았다.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9.7%보다 6배가량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는 자기에겐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4%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5.2%보다 거의 3배 높았다. 이와 같은 양가감정으로 인해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2%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24.7%보다 조금 높았다. 전체적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서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2) 대학생 응답자

대학생 응답자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내리는 평가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5.7%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3.3%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대한민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4%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8.8%보다 무려 6배

가량 높았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한다는 비율은 53.1%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2.4%보다 4배가량 높았다.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8%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18.1%보다 2.5배가량 높았다.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7.4%,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6.7%였는데, 전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일반국민 인식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3%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34.5%보다 조금 낮았다. 특히 '매우 찬성'은 1.8%에 그친 데 반해 '매우 반대'는 11.5%에 달하였다. 전체적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강하지 않지만,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응답자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세 집단 중 가장 긍정적이다. 전문가 응답자의 60.4%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경제발전 기여와 국제외교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외동포가 K-pop과 같은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는 29.2%가 매우 찬성하였으며, 54.1%가 대체로 찬성하였다. 문화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포행세를 하고 불리할 때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14.6%는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 또한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 8.3%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재외동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48%가 찬성하고 20.7%가 반대하여 세 집단(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 중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 응답자의 재외동포에 대한 평가(%)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모르겠음	찬성-반대 차이
1.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일반국민	1.9	28.2	46.7	11.6	3.8	7.8	14.7
	대학생	3.1	22.6	52.7	11.5	1.8	8.0	12.4
	전문가	12.5	47.9	35.4	2.1	2.1	0.0	56.2
2. 대한민국의 국제외교에 기여한다	일반국민	3.6	50.0	31.5	7.2	2.9	4.8	43.5
	대학생	8.4	45.6	32.3	8.8	0.0	4.4	45.2
	전문가	12.5	47.9	35.4	2.1	2.1	0.0	56.2
3.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한다	일반국민	5.7	49.2	29.7	7.8	2.9	4.7	44.2
	대학생	10.2	42.9	27.0	12.4	0.0	7.5	40.7
	전문가	16.7	47.8	27.1	4.2	2.1	2.1	58.2
4.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다	일반국민	11.7	49.4	25.8	7.2	2.5	3.4	51.4
	대학생	11.5	36.3	25.7	18.1	0.0	7.5	29.7
	전문가	29.2	54.1	10.4	4.2	0.0	2.1	79.1
5.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	일반국민	11.9	32.1	35.8	11.2	4.0	5.0	28.8
	대학생	3.1	24.3	27.9	27.4	9.3	7.5	-9.3
	전문가	14.6	25.0	35.4	14.6	8.3	2.1	16.7
6.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한다	일반국민	3.7	31.5	36.5	16.5	8.2	3.6	10.5
	대학생	1.8	30.5	28.8	23.0	11.5	4.0	-2.2
	전문가	6.3	41.7	29.2	14.5	6.2	2.1	27.3

3) 귀환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1) 일반국민 응답자

2011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국민 응답자 비율은 30.8%, 모르고 있는 비율은 69.2%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다수가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 2.3%, ‘대체로 찬성’ 20.8%, ‘찬성도 반대도 아님’ 33%, ‘대체로 반대’ 31.3%, ‘매우 반대’ 12.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반대의 비율(43.9%)이 찬성의 비율(23.1%)의 2배 정도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거주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직업별로는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700만원 구간에서 찬성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귀환하는 것에 일반국민의 인식은 우호적이기 어렵다. 실제로 조사 결과,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17.1%는 찬성하였고, 37.1%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45.8%는 반대하여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의 3배에 달했다.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가 국내로 취업하러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40.8%가 찬성했고, 35.8%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3.4%가 반대했다. 65세 이상 노인층과 대비되게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를 하는 자는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 중 이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응답자의 12.4%만이 알고 있고, 87.6%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이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8.5%만이 찬성했고, 18.1%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73.4%는 반대했다. 반대 비율은 찬성 비율의 8.6배에 달해서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6%,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65.4%로 모르고 있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일반국민의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²⁾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적용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2.2%는 찬성했고, 23.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53.9%는 반대했다. 물론 찬성 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이 반대의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보다 낮았지만 앞서 소개한 기초연금 수급과 비교해서 반대하는 정도가 낮았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로 민간 보험 가입,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수술 또는 입원 치료의 제한, 본인 전액 부담 등에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험 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본인 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실손 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5%가 찬성했고, 28.6%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30.6%는 반대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30%가 찬성했고, 32.2%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34.2%는 반대했다. 경미한 질병 치료는 허용하되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43.9%는 찬성했고, 2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4.9%는 반대했다.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8.4%가 찬성했고, 28.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1.1%는 반대했다.

2) 2017년 국민의 4대 보험료(국민 건강 보험 포함) 부담이 큰 폭으로 증대 하였고, 정부에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30.6조 원 늘려 소요 재정을 충당’ 계획이 발표 되었고, 건강보험료는 평균 3.2%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 응답자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도입된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학생 응답자 비율은 27.4%, 모르고 있는 비율은 72.1%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다수가 65세 이상의 귀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 6.6%, ‘대체로 찬성’ 44.7%, ‘찬성도 반대도 아님’ 25.2%, ‘대체로 반대’ 19.5%, ‘매우 반대’ 3.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찬성의 비율(51.3%)이 반대의 비율(23%)의 2배를 넘어 일반국민의 재외동포 인식에 비해 훨씬 더 온정적이었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7%는 찬성하였고, 54.9%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17.7%는 반대하여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더 높았다. 이 문제에 대해 반대 비율이 더 높은 일반국민 인식과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가 국내로 취업하러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찬성했고, 39.4%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10.6%가 반대했다. 65세 이상 노인층보다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의 귀환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복수 국적자의 기초 연금 수급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만이 알고 있고, 95.1%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런 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위의 다른 문항들과 달리 부정적이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기초 연금을 수급 받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19.9%만이 찬성했고, 29.2%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50.5%는 반대했다. 여전히 일반국민 인식에 비해서는 반대 비율이 더 낮은 것이기는 하지만,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추상적 질문(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을 암시하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재외동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16.4%,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83.6%로 모르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적용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6%는 찬성했고, 28.3%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5.2%는 반대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인식과 달리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과 비교해서도 반대하는 정도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실손 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7%가 찬성했고, 27%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1.6%는 반대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1.3%가 찬성했고, 43.8%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24.3%는 반대했다. 경미한 질병 치료는 허용하되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의로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5.2%는 찬성했고, 25.2%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45.1%는 반대했다. 그리고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12%만이 찬성했고, 19.5%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63.7%는 반대했다.

(3) 전문가 응답자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도입된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가 응답자 비율은 41.7%, 모르고 있는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대학생에 비해 이 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복수국적의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2.1%가 매우 찬성하였고, 25%가 대체로 찬성하였고 33.3%는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고 31.3%는 대체로 반대하였으며, 8.3%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응답자의 약 1/4정도였으며, 반대의 비율은 39.6%로 찬성보다 약 15%정도 높았다. 65세 이상 복수 국적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 2.1%만이 매우 찬성하였고, 18.8%는 대체로 찬성하였고, 39.6%는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고 29.2%는 대체로 반대하였으며, 10.4%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비율이 찬성의 비율 보다 2배나 높았다. 이는 사회에 기여하

기보다는 사회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연령층의 재외동포가 국내로 취업하러 귀환하는 것에 대해 10.4%는 매우 찬성하였고 54.2%는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2%는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고, 4.2%는 대체로 반대하였고, 2.1%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노동이 가능한 젊은층의 유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의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22.9%는 알고 있었으며, 77.9%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인식하는 비율보다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 응답자의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모르 겠음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야 함	일반국민	37.5	30.6	28.6	3.3
	대학생	40.7	21.6	27.0	10.6
	전문가	50	27.1	20.8	2.1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에게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야 함	일반국민	29.9	34.2	32.2	3.7
	대학생	21.3	24.3	43.8	10.6
	전문가	33.3	27.1	35.4	4.2
경미한 질병 치료 허용, 수술이나 입원 치료 반대	일반국민	43.9	24.9	29	2.2
	대학생	25.2	45.1	25.2	4.4
	전문가	37.5	25	35.4	2.1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	일반국민	48.4	21.1	28.6	1.9
	대학생	12.0	63.7	19.5	4.9
	전문가	37.5	35.4	25	2.1

4)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인식

(1) 일반국민 응답자

일정 기간(고교 1년 포함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자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특별전형’³⁾을 통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만의 경쟁 과정을 거쳐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 충족 요건은 해외에서 만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부모 중 한명과 1년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재외국민, 주재원 자녀 등이다.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8%였고,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58.2%였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에 관한 다른 제도들보다는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국내에서 공부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해서 특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12.1%가 찬성했고, 28.1%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60%가 반대했다. 반대자가 찬성자의 5배에 달할 만큼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들로서 정원 축소,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 도입, 특별전형 지원 자격요건 강화, 현행 제도 폐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했다. 결과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73.6%)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73.6%)이 특별히 높았다. 현행 특별전형제도를

3)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의 지원자격은 1) 고등학교 과정을 최소한 1년 이상 포함할 것, 2) 거주 및 수학 기간이 최소한 만3년 이상을 것, 3)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고교 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한 총 1년 6개월 이상을 함께 체류 하는 것이다.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47.4%)이 반대(15%), 찬성도 반대도 아님(34.7%) 비율보다 높았지만 다른 방안들과 비교해서 지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2) 대학생 응답자

대입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학생 응답자의 비율은 81.4%였고, 모르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18.1%였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에 관한 다른 제도들보다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일반국민 중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한 대학생 당사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었으나, 일반국민보다는 그 정도가 덜했다. 응답자의 24.3%가 찬성했고, 33.6%는 찬성도 반대도 안했고, 41.6%가 반대했다.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중에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 제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69.5%)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55.3%)이 과반이었다. 현행 특별전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찬성하는 비율(21.2%)이 반대(42.5%)보다 낮았다.

(3) 전문가 응답자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에 대해 전문가 응답자의 75%는 알고 있고, 25%는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정원축소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의 비율은 두 집단들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20.8%로 나타났다. 보다 엄격한 선발 제도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은 일반국민보다 0.7%포인트 낮은 72.9%로 나타났다. 특별전형 지원 자격요건 강화도 일반국민과 비교해서 낮은 70.8%로 나타났다. 현행제도 폐지에 대해서 일반국민보다 낮은 비율인 31.3%가 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대체적으로 일반인보다 이 제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9]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모르겠음
재외국민 특별전형 정원 축소	일반국민	61.7	9.0	26.5	2.8
	대학생	46.9	16.4	31.9	4.9
	전문가	64.6	14.6	20.8	0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 개발	일반국민	73.6	6.0	18.5	1.9
	대학생	69.5	10.6	16.8	3.1
	전문가	72.9	12.5	12.5	2.1
특별전형 지원 자격요건 강화	일반국민	74.6	5.3	18.6	1.5
	대학생	55.3	16.9	23.5	4.0
	전문가	70.8	10.4	18.8	0
현행 제도 폐지	일반국민	47.4	15.0	34.7	2.9
	대학생	21.2	42.5	28.8	7.1
	전문가	31.3	39.6	25	4.1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

(1) 일반국민 응답자

한국은 국적에 있어서 혈통주의(속인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에 도달하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국적법 제12조). 한국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해당 요건들을 갖추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⁴⁾

한국의 남성들은 누구나 청춘을 군복무에 바쳐야하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나 그들의 자녀의 병역 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문제이다. 2002년 가수 '유승준'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논란이 되었다. 유승준은 1999년 7월 언론을 통해 '제1 연평해전에서 느낀 점이 많아 해병대에 자원입대 할 것' 이라고 인터뷰 하였고, 2002년 1월 군복무를 앞두고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LA로 인사차 방문하였다. 같은 달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서 같은 해 2월 대한민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입국을 거절당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방문을 시도하였고, 2015년 5월 온라인 방송인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과거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정서를 돌이킬 수 없었다. 같은 해 8월 재외동포 자격의 F-4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였고, 10월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 1심 원고 패소하였고, 2017년 2월 2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유승준의 입국 여부와 활동 여부에 대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응답자들이 유승준의 국내 입국과 활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 41.1%는 '국내 입국은 허가하되 국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 47.1%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 4.6%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는 유승준의 국내 입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특히 국내 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불허하여 국내 입국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⁵⁾

응답자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4.7%는 알고 있고, 55.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재외동포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40세까지 해외에서 거주한 후 국내로 입국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37.1%는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22.5%는 50세로 연장, 7.2%는 4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대로 40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19.4%, 35세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2) 대학생 응답자

4)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1) 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인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7년 9월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개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외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 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자 헌법적 요청인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응답자들이 유승준의 국내 입국과 활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3%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을 모두 허가해야 한다’, 44.7%는 ‘국내 입국은 허가하되 국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 19%는 ‘국내 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 19%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유승준의 국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국내 입국 및 활동 모두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더 낮았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불허하여 국내 입국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30.5%는 알고 있고, 69.5%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재외동포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40세까지 해외에서 거주한 후 국내로 입국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비율은 9.7%로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더 낮았고, 13.3%는 50세로 연장, 4.9%는 4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대로 40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23.5%, 35세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10.6%로, 일반국민보다는 조금 더 높았다. 한편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8.1%에 달해 일반국민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뚜렷하지 않았다.

(3) 전문가 응답자

전문가 응답자 중 29.2%는 유승준의 입국과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9.6%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입국과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9.2%로 나타났으며, 2.2%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약 70%의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대학생에 비해 수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불허하여 국내 입국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47.9%는 이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국민과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은 14.6%로 두 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낮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은 두 집단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군 복무 의무와 관련해서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10] 일반국민·대학생·전문가 응답자의 병역기피자 국내입국 허용 연령 변경에 대한 의견

		N	%
현행대로 40세로 해야 한다	일반국민	194	19.4
	대학생	53	23.5
	전문가	17	35.4
35세로 축소해야 한다	일반국민	61	6.1
	대학생	24	10.6
	전문가	5	10.5
45세로 연장해야 한다	일반국민	72	7.2
	대학생	11	4.9
	전문가	4	8.3
50세로 연장해야 한다	일반국민	225	22.5
	대학생	30	13.3
	전문가	10	20.8

		N	%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	일반국민	371	37.1
	대학생	22	9.7
	전문가	7	14.6
모르겠다	일반국민	77	7.7
	대학생	86	38.1
	전문가	5	10.4

V 요약 및 결론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를 외국인과 가깝거나 외국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42.1%, 한국국민에 가깝거나 한국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57.9%로 보다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

일반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인식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외교에 기여한다거나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한다거나 K-pop과 같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과 이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부여받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해야 하거나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들과 비교해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이 제도가 편법적인 대학 입학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수학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다.

병역을 기피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장기 거주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활동하려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입국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 또는 5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일반국민은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기보다 편승하여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우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과 같은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포애보다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점을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보다 더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느끼거나 외국인에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은 37.6%,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거나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는 비율은 62.4%이

었다. 또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재외동포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처럼 부정적인 태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특히 ‘매우 찬성’은 1.8%에 그친 데 반해 ‘매우 반대’는 11.5%에 달하였다.

귀환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하지만 일반국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온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추상적 질문(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일반국민의 세금 부담을 암시하는 구체적 질문(65세 이상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생 응답자의 대다수가 알고 있었고,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는 보다 엄격한 선발 제도 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유승준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었지만, 국내 입국과 활동을 모두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낮았다. 병역 기피자 국내 입국 허용 연령 변경과 관련해서도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일반국민과 달리 의견이 뚜렷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70.8%는 한국인으로 느끼거나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반국민과 대학생들 비교해서 가장 관용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외동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 6.3%만이 매우 찬성하였고, 6.2%는 매우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외교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50%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국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81.3%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에 대해 41.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37.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 79.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조건이 한국의 제도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93.8%는 정신적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결국 혈통보다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에게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경미한 질병치료만 허용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미온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35%이상이었으며, 경미한 질병치료만 허용에 대해 37.5%만이 찬성하였다. 이는 결국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되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술이나 입원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응답한 25%보다 약 1.5배 이상 높은 비율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사회에 기여보다 혜택에 기대려는 것에 일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3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1%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찬성보다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재외국민 대입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축소, 엄격한 선발제도 개발, 지원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응답을 한 비율이 반대보다 높거나 같았다. 현행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25%만이 찬성도 반대도 아님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입제도에 대해 타 두 집단에 비해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반국민, 대학생,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기보다 편승하여 재정 부담이 되거나 편법을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우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배분의 문제, 병역과 같은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포애보다 사회 기여도와 개인 간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점을 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내국민과 재외동포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귀환 재외동포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한 이후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부여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귀환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이들이 한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귀환 재외동포 대상 지원 정책을 현재 여건들을 고려해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귀화할 때 자립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처럼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경제적 자립 능력을 동일하게 중요한 요건으로 삼아야 하고, 이후 기초연금 수급과 같은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국내 거주 연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복수국적을 신청했을 때 심사를 거쳐 곧바로 국적을 부여하기보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생활한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적 취득과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엄밀한 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할 수 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귀환 재외동포의 의료서비스 혜택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보다 엄밀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수혜자가 보험에 기여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상당한 기간(예를 들어, 5년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가 실제의 생활 기반이 해외여서 상당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한 후 의료서비스를 받고 출국하는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배제하는 처벌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의 재외동포가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지만 젊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젊은 재외동포의 국내 입국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고학력, 전문기술직,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재외동포는 국내 입국과 사회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민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재외동포의 이주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

다섯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논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한국사회에서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가 사회 기득권층에 의해 편법적인 대학 입학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대학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런 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과 같은 지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일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숙인.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7(4): 33-60.

권혁태. 2007.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 - 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비평』 78: 234-267.

김나경·선봉규. 2018. “한국 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13: 23-65.

김용찬. 2018. “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민족연구』 72: 4-28.

- 김지혜. 2018. “한국언론의 중국동포(조선족) 담론 분석: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2): 37-73.
- 박신규. 2019. “두 재외한인의 삶을 통해 본 귀환이주의 특징분석: 사할린 한인 S와 중남미 한인 P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14: 151-173.
- 박혜영·신호창·허종욱·서수연. 2018. “한국의 주요 언론의 보도 및 트위터 메시지에 나타난 재외동포 이미지 및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광고PR실학연구』 11(1): 98-130.
- 백지원. 2011. “국적별 재외동포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3(2): 25-44.
- 서정경. 2014. “중국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 『디아스포라연구』 8(1): 71-94.
- 송원찬. 2017.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18(3): 447-468.
- 신예원·마동훈. 2017. “한국 현대사 속의 중국동포: 1993년 이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칼럼에 나타난 ‘민족 담론’ 변화.” 『한국언론학보』 61(6): 37-86.
- 신정아. 2019. “조선족 여성 재현과 돌봄의 윤리.” 『통일인문학』 77: 73-103.
- 양은경. 2010.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4(5): 194-237.
- 양한순. 2015. “다문화주의 시대 귀환 중국동포의 문화적 시민권: 대림동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45: 231-254.
- 유종열. 2014. “한국 고등학생의 재외동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1(4): 127-144.
- 유종열. 2016. “미디어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8(1): 3-23.
- 윤인진. 2011. “민족에서 국민으로: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강원택·이내영 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동아시아연구원. pp.167-189.
-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 윤인진·권일남·김태균·배진숙·송영호. 20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27(1): 31-68.
- 윤인진·김춘석·김석향·김선화·김화순·윤여상·이원웅·임순희. 20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윤인진·김희상. 2016. “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한국민족문화』 60: 37-81.
- 이매주. 2011. “여성 재외동포의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0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은. 2012.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사회』 96: 402-429.
- 이정은. 2017. “귀환 조선족동포의 인정투쟁과 한국사회 차별의 구조.”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pp.165-180.
- 이진영·곽재석. 2017. “귀환이주와 인간안보.” 『아태연구』 24(1): 39-71.
- 정진아. 2014. “국내 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갈등.” 『통일인문학』 58: 35-65.
- 조일동. 2015. “영구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경기도 안산시 고항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7: 31-59.
- 한희정·신정아. 2018. “서발턴으로서 조선족 여성의 재현: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Missing, 2016).” 『한국소통학보』 17(1): 169-202.
- 한희정·신정아. 2019.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 『CONTENTS PLUS』 17(2): 43-61.
- 홍숙영. 2017. “고려인의 귀환과 이주의 내러티브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10(2): 119-143.
- 홍인화. 2016. “이스라엘과 독일의 귀환동포정책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황혜경. 2014. “한국 대학생의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60: 411-429.
- Ishikawa, Yoshitaka. 2015. International Migrants in Japan Contribution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Trans Pacific Press & Kyoto University Press.
- Skrentny, John, Stephanie Chan, Jon Fox, and Denis Kim. 2007. “Defining Nations in Asia and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of Ethnic Return 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4): 793-825.
- Kingston, Jeff. 2012. Contemporary Japan: History, Politics, and Social Change since the 1980s. John Wiley & Sons.

세션2 | 가족과 이민

사회 / 김현미 | 연세대



발표
01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들의 다층적 맥락과 성격
정지원 | 동국대

발표
02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유형과 적대적 매체지각:
소속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영호 | 이민정책연구원, 최영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발표
03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와 요인:
이주 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종원 | 고려대, 최우익 | 한국외국어대

토론

신지원 | 전남대, 한건수 | 강원대

세션 2-01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들의 다층적 맥락과 성격

정지원¹⁾ | 동국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초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사진신부들의 경험을 통해 사진신부의 다면적인 삶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비가시화된 사진신부의 구체적인 경험 세계를 드러내면서 그들의 능동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고록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석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담론에서 사진신부들은 기획된 결혼의 피해자, 착취의 대상, 부차적인 이주민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의견과는 달리 사진신부들은 그 자체로 능동성을 담보한 존재였다. 이들은 삶의 연속성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세계로 나아간 능동적인 이주자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유를 찾아 간 근대적 존재였다. 또한 여성 연대를 통해 독립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행보를 보이며 사회적 주체로 거듭났다. 물론 억압과 배제를 수반하는 구조 하에 위치한 다면적 약자였지만, 행위적 주체로서 시대적 억압에 맞선 것이다. 한편, 사진신부를 향한 당대의 양가적인 해석과 담론은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빈 공간을 창출한다. 여성의 경험과 사회적 담론이 묘사하는 여성성 간에 큰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은 단편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 여성을 새로이 해석할 단초를 마련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진신부의 탈구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그 주체성을 복원할 수 있다. 이렇듯 당대 여성의 삶을 구체성의 세계에서 다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페미니즘적 역사쓰기를 수반한다. 여성의 삶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동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신부에 대한 분석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I 들어가며

20세기 초 국가 간 이동을 감행한 여성들이 있었다. 바로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들이다. 이들은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국경을 넘는 결혼을 행하였고(강진구, 2011), 감정적 교감 없이 사진만을 매개로 결혼을 진행했다는 특수성을 보인다. 사진이라는 근대적 산물, 그리고 초국가적 이동을 감행한 결혼이라는 지점에서 사진신부의 이야기는 일견 맥락이 탈각된 채 이미지로 한정되어 소비된다. 예를 들어, 하와이 이민사에서 사진신부가 다루어지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사기결혼의 피해자 혹은 민족의 기틀을 잇는 가정적인 존재로 제한되어 이해될 뿐이다. 그렇다면 두툼한 두께를 가지는 이민사 책 속 두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실제로도 그렇게 단편적이었을까? 본 연구는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신부들의 삶은 개인의 구체성의 세계에서 복원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결혼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 혹은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의

1)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전공 석사과정.

결과로 여겨지는 전반적인 인식과 달리 제도적인 산물이자 여러 주체의 동기가 작용하는 정치적 영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사진신부의 결혼이주 이면에는 여러 주체의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의 주도 아래 민족의 멸종을 막는 역할을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 아내와 어머니로 호명되면서 노동 이민자와 미주 사회, 혹은 일본 식민 정부 간의 갈등과 불화를 막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배타적인 인종주의 정책과 일제의 식민 통치라는 복잡한 시대적 상황이 함께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는 사진신부에 대한 해석을 착취의 대상, 권력의 피해자, 부차적인 이주민에 한정시키면서 격하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진신부가 경험한 다층적인 삶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다면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능동적 주체인 사진신부를 새로이 들춰내고자 한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을 검토한다. 특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나타난 행위 주체의 구체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회고록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문헌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경험의 세계와 객관성의 세계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진신부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본다. 사진신부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따라서 한인의 하와이 이민사를 천천히 훑어보면서 사진신부의 개념과 발생 배경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정제를 행한다. 제4장에서는 계보학적인 개괄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담론을 살펴본 뒤, 사진신부의 세밀한 경험 세계를 드러내어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진신부의 탈구위치를 파악하고, 그 주체성을 복원할 수 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논의의 종합과 함께 역설적 주체로서의 사진신부에 주목하면서, 사진신부가 시간적 경계를 넘어 현대의 여성의 이주에 시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II | 연구방법

1. 경험과 객관성

도로시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학자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경험한 사건이나 행위보다는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진 실체와 개념들에 천착한다(Smith, 1979). 다시 말해 개념적 제국주의 안에 갇혀 사고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이 아닌 학문 분야에서 주어진 이론과 개념들에 한정하여 주제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탐구의 폭을 좁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과 개념들에 얽매어 주제를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경험의 세계를 탐구한다. 당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인 하와이 사진신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검토하고, 능동성의 측면에서 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는 하딩의 언술을 빌려 여성 개인의 경험에 주목한다. 하딩은 덜 편파적이고 덜 왜곡된 생각은 그 생각이 귀족, 노예소유자, 사장들과 감독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농민, 노예들,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이중의 책임을 부여받는 여성의 삶에서 시작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Harding, 2009). 이에 따르면 객관성은 주류의 담론에 포섭된다기보다는 지배적인 담론의 바깥에 있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배담론이 배제하는 구체적인 경험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러한 탈각의 구조에서 여성은 어떠한 실천전략을 보이는지에 집중하면서 경험의 세계와 객관성의 세계 간 결합을 시도한다.

2. 연구자료

이를 위하여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해석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텍스트는 크게 회고록과 신문 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자전적 기록은 개인의 내밀한 사고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까지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개인의 삶의 궤적을 따라 일상의 흔적을 쫓으면서 동시에 외부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보조자료로서 당시의 신문 기사를 활용한다. 신문기사는 대상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포함한다. 따라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사진신부를 둘러싼 담론과 의제 설정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하와이 발행 신문기사의 경우 하와이 지역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제한적으로 소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하와이 이민사 관련 서적이나 논문에서 활용한 신문기사 자료를 2차적으로 활용하였다.

텍스트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방법론은 인간 체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이희영, 2009)는 언술처럼 해당 연구 역시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의 세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와 신성려의 ‘하와이 사탕 밭에 세월을 묻고’를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전자는 사진신부 천연희가 13년 동안 직접 작성한 자전적 기록으로, 총 7권 분량의 노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천연희 자신의 집안 배경을 비롯하여 사진혼인을 결심한 계기, 사진혼인 과정, 하와이에서의 삶의 과정 등이 총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쓰여진 글인 만큼 그 내용과 양이 방대하고 자세하여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후자는 1979년 신성려가 진행한 사진신부들에 대한 구술사 연구자료이다. 전자와는 달리 여러 사진신부들의 사진혼인 결정 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단편적인 정보가 주어지지만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회고록과 구술자료는 사회적 담론이 담지하지 못한 개인의 이야기를 포괄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고 비가시화되었던 기록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는 또한 개인의 구체성과 사회적 조건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에 집중한다. 개인이 파악하는 세계의 경험담에서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맥락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자료로서 신문 기사를 활용한다.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사진신부를 둘러싼 당시의 담론은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의제가 설정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신문기사는 공간적 배경을 한 축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조선과 하와이라는 이중의 공간을 경유하는 사진신부의 위치성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발행된 신문인가 하는 지점은 해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따라서 사진신부가 떠나 온 조국에서의 담론과, 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하와이에서의 담론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당대의 여성상을 재현하고, 구체적 실재와의 괴리를 살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석방법은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로서 사진신부를 파악하는 방법이자, 역설적으로 그들의 능동성과 역동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III 태평양을 건너 간 사진신부

1. 하와이 이민의 역사

한인의 미주 이민은 1902년 12월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된 까닭은 설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하와이의 노동력 부족에 기인한다(강진구, 2011). 1850년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업이 본격화되면서 농장주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노동 이민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을 필두로 하여 노동자들의 하와이 이주가 잇따랐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의 황인종 배척 흐름과 맞물려 1882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되고 중국인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지면서, 농장주들은 새로운 이민 공급처를 모색한다. 그 결과 중국인의 빈자리를 일본인이 대체하게 되었고, 이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00년 하와이 인구의 4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일본인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노임분쟁, 동맹파업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농장주들은 일본인들의 파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순근면한 한국인 노동자들 희망하였다(오인철 1998; Patterson, 2003; 강진구, 2011). 이에 1902년 8월 조선에 수민원이 설립되었고,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6조2)에 따라 하와이로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120명 가량의 조선인 노동자를 실은 배는 1902년 12월 22일

에 제물포항을 떠나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후 1905년까지 약 7천여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하와이로 이주했다. 하지만 1905년 11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값싼 조선인 노동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하여 이민금지령을 내리면서 미주 이민은 사실상 중단된다(김원용, 2004).

이들 노동 이민자의 대다수는 고국에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인 단신 남성들이었다. 한편, 당시 미주에서는 동양인 남성과 유로-아메리칸들과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런 연유로 한인 남성들은 본국에서 신부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에 놓여있었다(오윤호, 2011). 뿐만 아니라 결혼을 못한 많은 독신 노동자들이 음주나 도박을 일삼으며 미국 사회의 문젯거리로 대두되었고,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자 농장의 생산물은 점차 떨어져만 갔다(강준만, 2008; 정미옥, 2018).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하와이 정부는 사진신부를 받아들이기 에 이른다.

1908년 1월 일본의 타카히라 대사는 미국 정부와 교섭을 개시하여 신사협정을 맺는다. 신사협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일본인과 한인 노동자의 여권 발급을 중단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인도적인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협정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세 특정 집단을 가정했는데 첫번째는 이전에 미국에 거주했던 자이고, 두번째는 미국의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이며, 마지막으로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자의 부모, 아내, 또는 자녀로 규정되었다(State board of Control, 1922). 이에 따라 1910년 11월 28일 최사라와 리내수의 사진결혼을 시작으로 1924년 10월까지 총 951명의 사진신부가 하와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김원용, 2004).³⁾

2. 사진신부의 결혼이주과정

대다수의 사진신부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행을 선택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부장제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민지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사진결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들의 부푼 기대가 무색하게 사진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와이의 척박한 노동환경과 사진과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나이 든 남편의 모습이었다. 사진결혼은 말 그대로 남편 될 사람과 부인 될 사람의 만남 없이 서로의 사진 교환을 통해 결혼을 결정한다. 따라서 매개체로서의 사진이 결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판국이였다. 이에 남자들은 최대한 멋있게 연출하여 사진을 찍거나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고향에 보냈다. 따라서 사진신부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판판인 경우가 허다했다. 사진신부와 신랑은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보였는데, 천연희의 경우에는 39세로 알고 신랑과 결혼했으나 그는 기실 49세여서 27살의 나이 차이가 났다. 박순하의 경우도 신랑의 나이를 40세로 알고 왔으나 항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74세의 노인이였다. 그러나 부인의 자격으로 입국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혼인을 파기한다는 것은 곧 추방을 의미했다. 따라서 사진신부들은 사진과는 다른 신랑의 모습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

여러 구술 자료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서도 많은 문제와 불화가 나타났다.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은 노예 노동과 다름없었고, 사진신부들은 농사일 이외에도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떠맡아야만 했다. 그들의 꿈이었던 학업의 지속은커녕 당장 앞날이 막막한 경우가 허다했다. 게다가 감정교류 없이 이루어진 혼인이었기 때문에 가정 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국 내 한인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등 아내와 어머니를 넘어 능동적인 여성 주체로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진신부의 이주로 말미암아 미주 한인사회는 가족 중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국이라는 낯선 땅을 동경하여 아버지의 집을 나섰던 사진신부들은 근

2) 조선 백성이 미국 어느 곳이나 왕래하고 거류하며 토지와 가옥을 매매하고 건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정당한 영업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3) 951명의 사진신부가 처음 하와이로 입국한 것은 맞지만, 이들 중 800여명은 하와이에 정착했고 나머지 150여명은 하와이를 경유하여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대성의 중심에서 복합적인 시공간을 몸으로 살아냈고, 그 결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능동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다(정미옥, 2018).

IV 사진신부의 다층적 맥락과 성격

1. 남성 의존적인 이주?

여성의 이주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먼저 간 남성의 뒤를 쫓는 식으로 이해된다 (Donato, 1992; Parrenas, 2009 재인용, Piper and Roces, 2003). 물론 형식상에서는 사진신부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노동 이주를 행한 한인 남성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 관계로 남의 나라 백성을 이민해 오는 데는 이민국이 있어 이 모든 법률의 복잡한 사건을 이민국에서 다 처리하도록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처녀들은 이민 온 남자의 이름으로 다시 이민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 될 사람이 와서 데려갈 동안 이민국에 갇혀야 되었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85쪽)

그래서 선창에 내리니 이민국으로 영솔하고 이민국은 옛날 집인데 그 안에는 넓고 넓은 방에 두 층으로 쇠로 만든 들것 침창을 이층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여자들을 인도하여 한 칸씩 주고 있게 하였다. 대우하기를 정역 사는 사람같이 대우하고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진혼인한 남자가 와서 문답하고 그 여자를 데려 내간다.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하기를, 오호라 세상이여, 이래도 저래도 자유가 없으니 한심한 세상이라 생각하고 밤에 생각하기를 길찬록 씨가 어떠한 남자인가를 생각하고 옛새 밤 동안 번민하고 생각하고 나이 많은 늙은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때 참 고통스러웠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343쪽)

천연희는 이를 “이민 온 남자의 이름으로 다시 이민 온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자신의 이주가 남성 의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주의 방식과 이주의 원인은 분리되어야 한다. 사진신부의 이주가 남성 의존적인 방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제도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성이 선택한 타개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간 남성을 따라 이주했다는 식의 이해는 편협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주의 형식보다 각 개인이 이주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성려가 1979년 진행한 사진신부들에 대한 구술사 연구를 살펴보면 사진신부가 도미를 결심한 계기를 확인할 수 있다(신성려, 1979). 옥자(이하 모두 가명)는 어렸을 때부터 봉건적인 조선을 떠나 먼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소망이었다. 아버지는 “네가 집에서 한번 떠나면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옥자에게는 넓은 땅에서의 공부라는 더 큰 꿈이 있었다. 이에 1919년 집을 떠나 사진결혼을 하기에 이른다. 명순은 17세에 사진신부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그녀는 집안에서의 불안과 불화로 말미암아 사진결혼을 결심한다. 순희는 1916년에 도미하였고 결정적인 이유는 ‘황금의 나라’라는 미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꿨기 때문이다. 봉임은 옥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유학을 소망하면서 이민을 결심했다. 나아가 천연희의 회고록을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천연희는 “그때는 외국 갈 희망에 사랑이고 무엇이고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자유의 나라에 갈 생각밖에 없었다. 시집을 가서 남편과 사랑하고 살겠다는 마음은 둘째요, 외국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 갈팡질팡 없이 (서둘러) 주선하였다”, “나라를 잃고 망국지인으로 자유를 잃고 자유를 찾아 하와이로 사진혼인(하여) 들어왔다”고 하면서 사진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진신부들의 이주에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자유에의 갈망이라는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라는 것은 한편 억압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따라서 사진신부의 이주는 식민지 조선과 봉건적 가부장제라는 핏박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의 능동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때 사진혼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 흥미로운 점은 흔히들 이주의 원인이라 지목하는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이는 파레나스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이주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Parrenas, 2009). 파레나스는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이주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분적임을 밝히고, 오히려 가정 내 여성에게 부과되는 젠더 총화된 압력이 여성 이주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 사진신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옥자와 명순의 구술로 말미암아 사진신부의 이주 역시 젠더 제약으로부터의 탈출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열망한 천연희의 사례 역시 식민지 조선,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이중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한 여성의 사례로 독해 가능하다. 따라서 사진신부의 이주는 남성 의존적인 수단의 도움을 빌렸을 뿐, 이미 그 자체로 능동적인 이주라 평가할 수 있다. 부차적인 존재로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여성 그 자체로서 이주를 행한 것이다.

2. 해석의 이중성

그러나 사진신부의 자발적인 이주와 무관하게 당시 이들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 정치적 주체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진신부의 이주를 해석하는 양상은 양가적으로 나타났다.

사진결혼은 단지 미국에 간다는 호기심만을 위해서 결혼이 무엇인가, 남편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왔다는 것이다. 본국에서 중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모교의 주임 교사까지 되고 있었다. 결혼이라도 해 도미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되어 버렸다.⁴⁾

서울에서 발행된 북미 조선 학생 총회의 기관지 『우라끼』는 사진신부의 도미 이유를 호기심에 한정한다. 남편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여성들이 오로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 하나만을 가지고 사진혼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라는 공간적 특징에서 비롯된 사고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여성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사진신부는 무지하게도 호기심 하나만을 가지고 미국행을 결심한 어리석은 존재로 치환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진신부는 아버지의 나라, 즉 조국이라는 '집'을 떠난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저버린, 가정에 무지한 존재로 표상되었다.

하지만 『우라끼』와 달리 호노롤루에서 발행된 『국민보』의 기사는 사진신부의 혼인 원인에서 가정적인 요소를 부각한다. '사진혼인 문제에 대하여 한번 다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용만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여자들이 본국을 떠난 본의는 외국 유람한 애국지사 남편을 얻어 그의 힘을 의뢰하여 공부도 더 하고 사업도 경영하며 다른날 대조선 독립에 성공한 부부가 되기를 희망하오니, 그들의 희망을 가히 짐작하자.⁵⁾

그에 따르면, 사진신부는 사진혼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좋은 남편을 얻고, 그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이주를 선택한다. 나아가 대조선 독립에 성공한 '부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등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이주를 결심한다. 조선에서의 논의와 달리 하와이의 담론은 남편과 부부라는 가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두 기사의 논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와이에서는 왜 사진신부의 이주에 가정이라는 맥락이 덧붙여졌을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생물학적인 인종을 기반으로 한 위계화가 횡행하였다. 백인종의 특성은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와 반대로 황인종의 특질은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여기저기서 동양인 배척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열등한 피가 민족에 섞여 들어가지 않게 미국정부는 유로-아메리칸과 동양인의

4) 날짜 미상, 『우라끼』, 강건영, 2017 재인용

5) 날짜 미상, 『국민보』, '사진혼인 문제에 대하여 한번 다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결혼을 못한 많은 한인 독신 노동자들의 폭력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걸핏하면 잔치에 참석하여 술을 먹고 싸움을 했고, 심지어는 노름과 아편에 빠지는 등 방탕한 짓을 하기도 했다(강진구, 2011). 농장의 생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 농장주들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을 하락을 막기 위하여 독신 노동자들과 하와이 원주민과의 결혼을 장려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시아인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인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단일혈통, 단일민족주의라는 당대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으나 하와이에 거주하던 민족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컸다. 이승만을 필두로 하는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동적결혼을 유독 강조하면서 혈통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는데(김새무엘, 1979; 강진구, 2011 재인용), 이와 관련한 논의는 1915년 『신한민보』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신한민보』 사진결혼의 이해

인명상으로 개인의 사정도 가련하거나 사리상으로 겨류민족은 장차 멸종함에 날을지니 이는 금일 우리 겨류동포 크게 주의할바보다 만일 사진혼인을 불가타하여 실치아니하고보면 해외민족을 멸절하여 장차 직접혼인이니 간접혼인이니 자유독립이니 하는 잃나사가 다 바람잡이에 돌아갈지라도 그런즉 오늘날 우리민족이 해외에 잇서 끈어지지 아니하고 번식하기를 요구하는 때에 직접혼인이 불능하거나 간접의 우간접이라도 할 수 있난다까지 혼인을 일이움이 가하거늘 지약 사진혼인하야는 피차에 친이 얼굴은 보지못하나 사진으로라도 그형상의 엇더한 거슬 가히 알겠고 마조 안자서 담화는 못하나 서신상으로 피차 의사와 정의를 소통하며 해외에 겨류하는 우리 동포에게 과연 적당한 일이니 일언이 폐지하고 나의 단언하는바는 사진혼인이 직접혼인보다 가되나 혼인못하야 멸종하는것보다 크게 리하다 하노라.⁶⁾

『신한민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혼인은 간접혼인으로서 직접혼인보다는 못한 것이지만, 민족의 멸절 앞에서는 간접혼인이니 직접혼인이니 하는 것은 전부 필요없는 수사일 뿐이다. 오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해외에서 민족의 대가 끊기지 아니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진혼인으로 대표되는 동족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즉, 시공간적인 민족 개념의 연장을 위하여 여성을 출산 기제로 동원하고자 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와이 사진신부는 가정의 영역에 한정되어 해석된다. ‘시집’이 아닌 ‘이주’를 택한 여성들이었지만 어느새 사진신부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정체성 역시 그 안에 유폐된 것이다.

3. ‘집’에서의 삶과 여성 연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균일하게 정비된 시간과 공간의 틀을 깨고 이질적인 세상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공간이 압축됨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사진신부는 그 자체로 경계를 초월하는 이동성을 보인 근대적 존재였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여 아버지의 조국을 떠난 사진신부들은 그 기대가 무색하게 다시금 남편의 가정에 매몰된다. 아버지의 손을 떠난 신부가 신랑에게 넘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왔지만 다시금 ‘집’에 종속되는 이중 주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청춘시대 소녀들이 하와이가 금전세계라 하니 들어와서 고생을 했지만 한 가지는 참말로 좋은 곳이다. 민주주의 자유국이요, 일기가 일 년 열두 달 온후하니 별유천치비인간이다. 그 점은 듣던 바와 같다. 자유국 백성이다.

6) 1915.03.25. 『신한민보』, ‘사진결혼의 이해’.

(중략) 길찬록 씨는 아침 새벽이면 일을 나가고 나는 새벽밥을 해서 밥통에 넣어 주고 일을 나가는 것을 보고 나면 침상에 누워 울었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95쪽)

천연희는 기대와는 다른 실상에 한 동안 적응하지 못했다. 하와이에 가 있는 남성이 배우지 못한 농민 혹은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조선의 선생님들이 천연희를 두고 “네가 왜 하와이로 가느냐. 남편 될 사람도 보지 않고. 그곳에 간 사람들은 다 무식꾼 농민이다”라고 하며 결혼을 말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녀의 생각보다 더 녹록치 않았다. 사진신부는 사적 영역에 포섭되어 재생산노동을 진행할 것을 강요받았다. 사탕수수 밭에 나가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등 가정의 일을 도맡아했다. 그들은 노동 주체가 아니라 남성 신체에 복속된 타자로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집에 유폐된 전근대적 존재로 회귀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감에는 결혼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들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향 결혼하는 형식을 보이고, 여성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향 결혼의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사진신부의 경우 누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평가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국경을 넘은 여성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결혼에서의 기대역할 간 괴리가 컸을 것이다(Thai, 2002).

그러나 이들을 착취의 피해자, 가부장적 권력의 희생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억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진신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들은 제국이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시스템, 그리고 민족주의 담론을 전유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하였다(오윤호, 2011). 그 결과 불성실한 남편 대신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부양자, 자유를 갈망하는 근대 시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진신부를 도와주는 여성 연대의 핵심 주체라는 다각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단단한 여성 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결혼이주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에 연유하여 이주 후에도 본국의 가족과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사진신부가 살았던 시대에는 연락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는 곧 본국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하와이 사회로 하여금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가능케 했다. 여성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등장한 것이다. 실제 천연희의 사례를 살펴보면, 천연희는 가정에서의 불화와 삶의 고민으로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다. 그런 그녀를 집 밖으로 꺼내어 보살펴 준 것은 주변의 여성, 즉 다른 사진신부와 이주여성이었다.

하루는 빨래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중략) 그때 민사라 씨가 오셨다. 서울 부인이다. 서울 말씨로 “무엇 하세요?”하고 묻는다. 빨래하는 모양을 보고 기가 차는지 “아이고머니, 그래 가지고 빨래가 빨리나?”하며 술을 들고 바지를 문지르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95쪽)

키카니아로 오니 이관실 씨라 하는 부인이 아이들이 많고 형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조카들도 많았는데 (중략) 내가 처녀로 생소한 데 와서 슬퍼한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보내어 (나를) 키카니아에서 플레후로 데려갔다. 걸어갈 때 철로 다리를 건너 아침 9시면 매일 걸어서 그 집에 가면 아주머니, 할머니가 나를 참 사랑하고 고맙게 친부모같이 사랑해 주었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197쪽)

이들은 실의에 빠진 천연희를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방을 내어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제공했다. 천연희 역시 이들을 가족처럼 믿고 따랐다. 헛헛한 타향살이에 여성 간 연대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는 천연희의 기록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는데, 주변 여성들을 어머니 같은 존재, 가족 등으로 묘사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했다.

7) 1914년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들어옴. 민의경 씨가 남편.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참 사랑했다. 우리도 아주머니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에게서 음식 하는 것도 많이 배웠다. 함경도 아주머니도 있고, 평안도, 서울 아주머니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와이 와서 그 아주머니들에게서 모든 것을 많이 배웠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281쪽)

나아가 여성 간 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를 뛰어 넘어 확장되었다. ‘우리’라는 언술을 통해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연대의 일반성을 살필 수 있다. 하와이에는 사진신부의 이주 이전인 1910년에 이미 신명부인회, 부인 교육회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는 기독교 전도와 독립 운동, 부인 교육 등에서 활약했다. 1913년에는 대한부인회라는 이름으로 여성 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후 대한부인구제회⁸⁾와 대한부인국민회⁹⁾로 나누어져 활동을 지속하였다(이덕희, 2003).

이름을 대한부인구제회¹⁰⁾라고 명칭하고 (중략) 이 여자들이 3.1운동에 많이 힘썼고, 금전과 물건을 힘써 거두어서 미국 적십자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보냈다. 한국 3.1운동에 포와 영지 한국부인구제회에서 한국의 죽은 용사들을 많이 후원하였다. (중략)

우리는 정부가 없다. 돈이 없어 (외)교비 할 돈이 없다. 그러므로 동지들이 그 경비를 부담하므로, 경비를 내야 되므로, 그 뜻은 동지회 회원이 죽을 먹어도 그 돈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돈 내기 싫은 사람들은 반대한다. 이것이 동지회다.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739쪽)

대한부인구제회는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 정부가 없어 외교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통하게 여기어 외교 경비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여성 회원들은 태극 자수를 놓아 팔거나 떡 장사, 밥 장사 등을 하며 기금 마련에 힘썼다. 이주 초기 ‘집’의 공간에 유폐되어 재생산노동만을 수행하던 여성들이었지만, 어느 새 ‘집’ 바깥에서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또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본질적 의미가 변화했음을 암시한다. 밥 짓기, 바느질하기는 남성을 보조하는 재생산노동으로 평가절하 되었지만, 독립운동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성을 경유하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4.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

이처럼 사진신부는 다면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재했다. 여러 정치적 주체의 기획 안에서 핍박받기도 했지만, 경계를 횡단하며 탈구적 위치를 점했다. 그들은 자발적 이주를 통해 가부장적인 구조에 맞서 자신의 삶을 재편했다. 사진신부를 둘러싼 담론은 그들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며 전통적인 여성성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적 구조에 매입되지 않고 삶의 전략을 구성해나갔다. 비록 자신의 삶을 진술하는 언어를 갖지는 못했지만, 구조와 맞닿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행위적 주체로 등장했다.

종합하자면, 사진신부는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Outsiders within)이다. 내부에 있는 외부인들로서 사진신부는 미주 땅에 자리잡은 한인 이방인이자,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이주자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사적 영역에 위치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분리되었다(Pateman, 1988). 이에 따라 중심과 주변의 시각을 모두 포괄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내포했다(Harding, 2009). 따라서 사진신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독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이것은 상식과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남성 중심적인 담론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성의 세계에서 재현하는 것은 필연성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자, 잊혀지고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존재를 복원시키는

8) 동지회파 대한부인구제회

9) 국민회파 대한부인구제회

10) 국민회파 대한부인구제회로 이후 대한부인국민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작업이다.

사진신부는 또한 모험가다. 짐멜은 가장 일반적인 모험의 형태를 삶의 연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immel, 1971). 필연적이고 균일하게 구성된 삶의 연속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핏 삶에서 분리되어 고립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모험을 꿈에 비유하는데, 꿈은 인생의 유의미한 맥락 밖에 고립되어 섬처럼 위치한다는 점에서 모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험과 꿈은 우리 존재의 일부로서 우리 삶의 중심적인 부분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지점에서 사진신부는 모험가다. 그들은 이주를 통해 필연의 세상이 아닌 우연의 세상으로 진입했고, 사적 영역에 고립되어 시민사회에서 분리된 듯 보였으나 여전히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존재했고, 기존의 전통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유를 촉발시켰다. 이처럼 우연적이고 이질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접골(conjunction)은 기존의 동일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유를 촉발시키고, 이는 내부의 경계를 규정하는 외부로 자리 매김함과 동시에 내부에 변화를 담지하는 빈 공간을 만들어낸다. 즉, 외부는 공식적으로 내면의 한 측면으로서 자리하고(Simmel, 1971), 이와 같은 텅 빈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포착한다.

V | 마치며

본 연구는 비가시화된 사진신부의 구체적인 경험의 세계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능동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여성 개인의 구체적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채굴하는 과정은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마련하고 확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배 경험에 반하는 경험은 사회적 통념과 편견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하며 평가절하되었던 주체의 능동성을 복원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여성의 삶을 연구하는데 있어 역설이라는 개념에 대한 성찰은 필수적이다. 올랭프 드 구즈는 여성을 ‘오직 역설만을 던지는’ 존재로 평가했고, 조앤 스콧은 역설을 페미니즘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파악하면서 여성 연구에 있어 역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진신부의 역설을 포착하는 것은 당대 여성의 삶을 다층적으로 들여다보는 페미니즘적 역사쓰기라 할 수 있다(Scott, 2017).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역설은 논리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역설은 아니다. 스콧은 통상적 용법에서의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통에 반기를 든 의견, 지배적인 것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지배적인 것과 불화하는 위치를 뜻한다(Scott, 2017). 모호성, 불일치, 부조화의 연속을 역설이라 칭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진신부는 시대의 모순을 체화한 역설적 존재였다. 이들은 양극단을 포괄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되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근대적인 주체였으나 다시금 남편의 집에 포섭된 전근대적인 주체였고, 가정 존속의 역할을 부여받은 가정에 무지한 가정적인 여성으로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 종속되어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다시 말해 사진신부는 남성중심적인 구조에 의해 제한받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행위자로서의 주체, 사적영역에 유폐되어 있고 비가시화 되었지만 여전히 적극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 총체적인 개념으로 평가받지만 일반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갈기갈기 찢긴 몸을 가진 존재(Haraway, 2002)였다. 이러한 역설의 연속은 사진신부를 다면적 약자이면서 능동적인 주체로 독해하는 것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편 위와 같은 페미니즘적 역사쓰기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여성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신문, 정부보고서, 미국 정부 간행물

『우라끼』

『국민보』

『우라끼』

『조미수호통상조약』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13

2차 자료: 논문, 단행본

강준만. 2008. 『한국 근대사 산책 6 - 사진신부에서 민족개조론까지』. 인물과사상사.

강진구. 2011. “국제결혼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사진결혼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211-236.

김원용. 2004. 『재미한인 50년사』. 해안.

문옥표·이덕희·함한희·김점숙·김순주. 2017.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신성려. 1979. “하와이 사탕밭에 세월을 묻고”. 『창작과 비평』, 14(1): 269-297.

오윤호. 2017. “제국의 경계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위치 - 하와이 사진신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8: 131-162.

오인철. 1998. “하와이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연구”. 『비평문학』, 12: 341-376.

이덕희. 2003.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 M&B.

이희영. 2011. “텍스트의 '세계' 해석과 비판사회과학적 함의: 구술자료의 채록에서 텍스트의 해석으로”. 『경제와 사회』, 103-142.

정미옥. 2018. “여성의 이주와 (탈)근대성: 사진신부”. 『문화와융합』, 40(3): 297-338.

스콧, 조앤 윌라치. 2017[1996].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옮김. 엘피.

파레나스, 라셀 살라자르. 2009.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역. 여이연.

패터슨, 웨인. 2003.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 1903-1973』. 정대화 역. 들녘.

페이트먼, 캐롤. 2018[1989]. 『여자들의 무질서』. 이평화·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하딩, 샌드라. 2009[1991].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 옮김. 나남.

해러웨이, 다나 J. 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옮김. 동문선.

Piper, Nicola & Roces, Mina. 2003. “Women’s Entry into Labor Force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Wife of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Smith, Dorothy E. 1974. “Women’s Perspective as a Radical Critique of Sociology”. *Sociological Inquiry*.

Simmel, Georg. 1971. “The Adventure,”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Selected Writings*.

Thai, Hung Cam. 2002. “Clashing Dreams: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Global Woman*. Metropolitan Books.

세션 2-02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유형과 적대적 매체지각: 소속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영호 | 이민정책연구원, 최영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18년 다문화가족미디어이용실태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이용이 적대적 매체 지각(미디어 재현방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사회 소속감이 조절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미디어를 한국의 주류미디어(TV, 라디오, 잡지 등), 이주민 미디어(국내 이주민 방송, 신문, 잡지), 모국 미디어(출신국 미디어 이용)를 구분하였다. 한국 사회 소속감과 거주기간에 따른 조절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이후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세션 2-03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와 요인: 이주 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¹⁾

이종원²⁾ | 고려대학교, 최우익³⁾ |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2013년 시행된,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러시아 국내외에서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 아동의 국제 입양 문제가 개인, 가정,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및 국제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점에 주목하고, 현대 러시아 사회를 해석하는 키워드이자 주요 이슈로서의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을 통해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의 요인을 전 지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규모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에 급증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감소하였다.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1990년대 초), 증가(1990년대~2004년), 감소(2005년~현재)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흐름의 형성에는 국가 간 연결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흐름의 증가에는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감소에는 정책적 요인이 특징적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국제 입양, 국제 이주, 이주 체계 접근법, 디마 야코블레프 법, 러시아 사회,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1 서론

2012년 12월 러시아에서 ‘디마 야코블레프 법(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⁴⁾이 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이 법은 러시아 국내외에서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사회적 이슈인 국제 입양이 러시아 국내 정치 및 국제 정치와도 얽히고설키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디마 야코블레프 법 이슈는 특히 대내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대외적으로는 미-러 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보여 주었다.

2018년 3월 18일 실시된 러시아 대선에서 약 76.7%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0년 이후 60% 이상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약 4년 동안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다만 2018년에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러시아 정부의 연금 개혁

1) 이 논문은 『러시아연구』 29권 2호에 게재 예정임을 밝힙니다.

2)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재학 중.

3)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4) 공식 명칭은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 훼손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이다.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고, 러시아 내 보유 자산을 동결한다. 또한 미국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의 러시아 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한다.

추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국정 수행 지지율이 70% 아래로 하락하였다.

2012년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 속에서 집권 3기를 시작해야 했던 푸틴의 지지율이 2014년 초에 폭등한 배경에는 2014년 2월 소치 동계 올림픽 개최와 3월 크림 반도 병합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보 결집 효과와 러시아 주류 언론의 프레임링 전략에 힘입어 오히려 고공 행진을 지속하였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를 두고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은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 초, 푸틴 집권 초창기인 2000년대 초, 미-러 관계의 ‘리셋(재설정)’ 시도가 시작된 2009년의 상황과는 판이한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 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미-러 관계 ‘리셋’ 기초하에서 미국은 인권·민주주의 이슈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비판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2012년 말 인권 이슈 논쟁이 미-러 관계의 ‘작은 위기(a mini-crisis)’를 촉발하였다.⁵⁾ 인권 문제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상호 제재(미국의 ‘마그니츠키 법’과 러시아의 ‘디마 야코블레프 법’)가 실시된 것이다. 2012년 12월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인권 탄압 관련자를 제재하기 위해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달, 러시아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을 제정하여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⁶⁾

미-러 관계의 전환점을 상징한 인권 논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국제 입양 이슈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다. 2016년 6월 트럼프 타워 회동 논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변호사와 입양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주장하였고, 2017년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공개 회담에 대해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주제가 입양이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입양 이슈를 내세우는 양국 정치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러시아 고아의 운명보다는 양국 간 제재 전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⁷⁾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이 이처럼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1990년대 초 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그 규모가 급증하여 러시아는 세계의 주요 국제 입양 송출국이 되었다. 둘째,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러시아 내에 분노 여론이 조성됨으로써 국제 입양이 러시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셋째, 푸틴 3기 정부는 2011~2012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극복하고 권위와 정당성을 되찾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전통적 가치와 도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도덕 정치’를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 인권 레토릭을 동원하였다.⁸⁾

본 연구는 현대 러시아 사회를 해석하는 키워드이자 주요 이슈로서의 국제 입양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현상을 객관적·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91년 소련 해체 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 및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문, 영문, 노문의 도서, 논문, 보고서, 언론 보도 자료, 통계 자료, 여론 조사 결과 자료, 웹사이트 등 다양한 문헌 자료를 활용한다.

5) Dmitry Suslov(2013) “The US-Russia Relations after the ‘Reset’: Pragmatism or a New Confrontation?,” *Higher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Paper*, No. WP BRP 04/IR/2013, pp. 6-9.

6) Anna Jane High(2014) “Pondering the politiciz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Russia’s ban on American ‘forever familie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 22, No. 3, pp. 543-544.

7) Kathryn Joyce(2017) “Why adoption plays such a big, contentious role in US-Russia relations,” *Vox*, 2017.07.22, <https://www.vox.com/the-big-idea/2017/7/21/16005500/adoption-russia-us-orphans-abuse-trump>(검색일: 2018.11.27).

8) Gulnaz Sharafutdinova(2014) “The Pussy Riot affair and Putin’s démarche from sovereign democracy to sovereign morality,” *Nationalities Papers*, Vol. 42, No. 4, pp. 615-616.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주 체계 접근법에 기반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4장에서는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을 통해 그 요인을 분석하며,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의를 정리한다.

2 |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선행 연구 검토

1990년대 러시아가 세계의 주요 국제 입양 송출국으로 부상하며 국제 입양의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국제 입양 문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연구는 러시아 아동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장 많이 입양된 미국과 본국인 러시아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의 분야는 크게 법학, 의학·심리학, 러시아와 특정 수용국 간 국제 입양 이슈, 국제 입양을 둘러싼 러시아 국내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국제 입양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체계와 절차가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허점과 불법적·부패적 요소의 개입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국제 입양의 불법적·부패적 요소는 전 지구적으로 추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에 있어서도 뇌물, 권한 남용, 문서 위조 등의 수단이 동원되는 현상이 폭로되고 비판되어 왔다. 2011년 미-러 입양 협정과 2012년 디마 야코블레프 법도 주된 법학적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⁹⁾

의학·심리학 분야의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 연구는 외국(주로 미국) 가정에 입양된 러시아 아동의 적응 및 행동 장애 문제를 다룬다.¹⁰⁾

러시아와 특정 수용국 간 국제 입양 이슈 연구는 대부분 러시아와 최대 수용국인 미국 간 이슈를 다룬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 간 국제 입양 이슈 연구는 러시아 입양아의 적응 문제나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¹¹⁾

국제 입양을 둘러싼 러시아 국내 이슈 연구에서는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부정적 여론, 국내 입양 활성화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 등이 다루어졌다.¹²⁾

이와 같이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가 점점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9) A. B. Семенов(2007) “Пробл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сынов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енинградский юридический журнал*, No. 2, C. 104-122; Cheryl L. Allen(2012) “The US-Russian Child Adoption Agreement: An End to Failed Adoption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5, No. 6, pp. 1690-1742; Bethanie Barnes(2013) “A Critique of the U.S.-Russian Adoption Process and Three Recommendations for the U.S.-Russian Bilateral Adoption Agreement,”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1, pp. 397-446; High(2014), pp. 497-560; Cynthia Hawkins DeBose and Ekaterina DeAngelo(2015) “The New Cold War: Russia’s Ban on Adoptions by U.S. Citize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Vol. 28, pp. 51-77.

10) Brandi N. Hawk and Robert B. McCall(2011) “Specific Extreme Behaviors of Postinstitutionalized Russian Adopte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7, No. 3, pp. 732-738.

11) Rachael Stryker(2000) “Ethnographic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Russian Adoptees,” *Anthropology of East Europe Review*, Vol. 18, No. 2, pp. 79-84; Rebecca L. Hegar, Olga Verbovaya, and Larry D. Watson(2015) “Child fatality in Intercountry adoption: What media reports suggest about deaths of Russian children in the U.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55, pp. 182-192; 박정준(2016) 「러시아·미국 국외입양 논전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111-140쪽.

12) Lilia Khabibullina(2009) “International Adoption in Russia: “Market,” “Children for Organs,” and “Precious” or “Bad” Genes,”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ies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Eds. Diana Marre and Laura Brigg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74-189.

가지로 국제 입양에 관한 연구 역시 송출국보다는 수용국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에 관한 해외 선행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법적·제도적 측면이나 의학적·심리학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 많다. 한국의 경우, 국제 입양 관련 선행 연구의 주제는 한국의 국제 입양 송출이나 국제 입양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 국제 입양 문제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는 국제 입양을 둘러싼 미-러 논전을 다룬 박정준(2016)이 유일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수용국이 아닌 송출국의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며, 국제 이주 이론을 동원하여 현상을 포괄적·통합적으로 분석한 데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2.2. 분석틀: 이주 체계 접근법

이주는 인류사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가속화된 전 지구적 이주는 급변하는 국가 간 정치·경제·문화적 연결 관계의 한 부분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3.4%인 약 2억 5800만 명이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제 이주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화되어 왔다. 20세기 중반에 본격화되어 규모가 커진 국제 입양 역시 대부분의 경우 비자발적 국제 이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복지사, 변호사,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인류학자, 인구학자들도 국제 입양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국제 이주 과정으로서의 국제 입양을 설명·분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웨일(Weil, 1984)은 당대 대부분의 국제 이주 연구가 성인의 이주 현상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조용한 이주’라고 묘사한 국제 입양 문제를 분석하였다.¹³⁾ 케인(Kane, 1993)은 14개 국제 입양 수용국의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역학 조사의 주요 요소(시간, 장소, 사람)를 국제 입양 현상 분석에 적용하였다.¹⁴⁾ 러브락(Lovelock, 2000)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민과 국제 입양의 양상·정책에 있어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 이주 현상으로서의 국제 입양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¹⁵⁾ 셀먼(Selman, 2002; 2009a; 2009b; 2012a)은 국제 이주 과정으로서의 국제 입양을 꾸준히 추적하여 정리·분석하여 왔다.¹⁶⁾

국제 이주의 형성과 전개를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은 크게 경제학적 이론과 역사구조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학적 이론에는 신고전학과 이론, 이중 노동 시장 이론(노동 시장 분절 이론), 노동 이주에 대한 신경경제학파의 접근 등이 있다. 역사구조적 접근은 경제학적 이론의 비역사성과 추상성을 비판하며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강조하는데, 그 지적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종속 이론, 세계 체계 이론 등에 있다.¹⁷⁾

본 연구는 국제 이주 과정으로서의 러시아 아동 국제 입양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주 체계 접근법에 기반한 분석틀(〈그림 1〉)을 채택하였다. 이주 체계 접근법은 국제 이주의 형성과 전개를 설명해 온 다양한 국제 이주 이론

13) Richard H. Weil(1984) “International Adoptions: The Quiet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8, No. 2, pp. 276-293.

14) Saralee Kane(1993) “The movement of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30, No. 4, pp. 323-339.

15) Kirsten Lovelock(2000) “Intercountry Adoption as a Migratory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m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the Post W.W. II Perio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4, No. 3, pp. 907-949.

16) Peter Selman(2002)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new millennium; the “quiet migration” revisited,”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21, No. 3, pp. 205-225; Peter Selman(2009a) “The Movement of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Developments and Trends in Receiving States and States of Origin, 1998 - 2004,”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ies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Eds. Diana Marre and Laura Brigg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51; Peter Selman(2009b) “The rise and fall of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52, No. 5, pp. 575-594; Peter Selman(2012a) “The Global Decline of Intercountry Adoption: What Lies Ahead?,” *Social Policy and Society*, Vol. 11, No. 3, pp. 381-397.

17)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54-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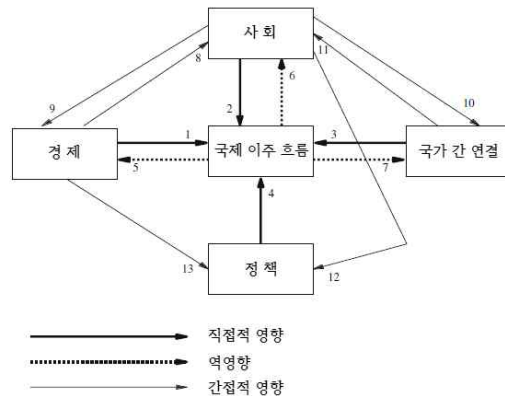
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기존 이론들을 통합하여 국제 이주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대두되어 발전하였다.¹⁸⁾

특히 이주 체계 접근법은 지역 또는 국가 사이의 다양한 연결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정치·경제·사회·인구 차원의 국내 상황과 역사적·문화적·식민지적·기술적 연결에 의해 발생하는 이주 흐름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이주 체계 접근법은 국제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¹⁹⁾

예니션(Jennissen, 2007)은 이주 체계 접근법의 관점에서 국제 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연쇄적 인과 관계 모형(〈그림 1〉)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에서는 경제(소득, 고용, 인적 자본), 사회(문화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 정책(정치적 상황, 이주 정책), 국가 간 연결(문화적, 물리적 연결)이 국제 이주 흐름의 주요 변수로서 서로 다양한 관계(직접적 영향, 역영향, 간접적 영향)로 얽혀 있다. 이러한 인과 관계 모형은 이주 체계 접근법의 장점(국제 이주의 순환적 체계를 고려한다는 점, 다양한 유형의 국제 이주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살리면서도 한계(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를 극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 그리고 그 요인을 탐구하고자 하므로, 이주 체계 접근법의 시간적 차원과 인과 관계를 강조하는 예니션(Jennissen, 2007)의 분석틀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제 입양 송출국인 러시아의 국내 상황을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는 경제, 사회, 정책, 국가 간 연결로, 종속 변수는 국제 이주(입양 송출) 흐름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각 독립 변수가 국제 입양 송출 흐름 또는 다른 변수에 대해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국제 입양 송출 흐름 형성기, 증가기, 감소기) 유의미한 요인만을 나타내도록 수정된 모형이 제시될 것이다.

〈그림 1〉 예니션(Jennissen, 2007)의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²⁰⁾



3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추이

역사적으로 국제 입양의 논리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냉전, 세계화 등 20세기 국제 질서 변동의 유산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 입양이 오늘날 익숙한 것처럼 자유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가족 및 친족 형성 방식으로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세기 초중반의 국제 입양은 주로 전쟁과 관련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입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수많은 고아, 미아, 기아를 발생시킨 1950~1953년 한국 전쟁 이후이다. 한국 전쟁 직후의 개별적이고 임시적인 국제 입양은 국가와 입양 기관 간의 적극적 협력, 국제 입양 수요의 증가, 입양 수용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점차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²¹⁾ 이에 대해 러브락(Lovelock, 2000)은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제 입양의 양상이 ‘아동에게 가족을 찾아 주는 것’으로부터 ‘가족에게 아동을 찾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였다.²²⁾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국제 입양 수용이 증가하였고, 아시아와 중

18) 김용찬(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90-94쪽.

19) 김용찬(2006), 90-94.

20) Roel Jennissen(2007) "Causality Chains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26, No. 4, p. 416.

21) 김재민(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70-71쪽.

22) Lovelock(2000), 908.

남미는 주요 송출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비서구(남반구) 국가 아동이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북반구) 국가로 입양 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²³⁾

냉전 시기에 국제 입양은 특히 미국의 냉전 정치 및 해외 군사 주둔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다. 쿠바 혁명 직후 1960~1962년 어린이 약 1만 4천 명을 미국으로 데려온 미국 중앙정보국의 피터 팬 작전(Operation Peter Pan), 베트남 전쟁 말기인 1975년 미국이 남베트남의 고아들을 국외로 피난·입양시킨 베이비리프트 작전(Operation Babylift)은 국제 입양이 미국의 냉전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기초한 국제 입양 시장화가 국제 입양 규모와 성격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20세기 후반 수십 년에 걸쳐 국제 입양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입양 희망 부모뿐만 아니라 수용국 및 송출국 정부, 민간 입양 전문 업체, 개인 브로커, 의사, 변호사 등이 시장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활약하게 되었다.²⁴⁾ 게다가 탈냉전 시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동구권 국가들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 및 국제 입양 시장에 편입되면서 국제 입양 송출국이 다양화 되고 송출 규모도 급성장하였다.²⁵⁾

〈표 1〉 1980~2010년 시기별 주요 국제 입양 송출국²⁶⁾

순위	1980~1989년	1995년	1998년	2004년	2010년
1	한국	중국	러시아	중국	중국
2	인도	한국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3	콜롬비아	러시아	베트남	과테말라	러시아
4	브라질	베트남	한국	한국	아이티
5	스리랑카	콜롬비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6	칠레	인도	과테말라	콜롬비아	베트남
7	필리핀	브라질	인도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표 1〉이 보여 주듯이 러시아는 1990년대에 국제 입양 시장의 소위 ‘신흥 송출국’으로 부상하였다.²⁷⁾ 국제 입양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 세계 체제 내 (반)주변부화에 따른 사회 변동을 반영하는 국제 이주 현상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과 그 방향은 전 지구적 재생산 노동 분업에 기초한 입양 시장으로의 러시아의 편입과 러시아의 (반)주변부적 성격을 드러낸다.²⁸⁾

1990년대 초 국경이 개방되고 서구의 입양 기관들이 러시아에 진출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국제 입양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국제 입양에 대한 법적 토대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1990년 말 미국과 스웨덴의 국제 입양 기관들이 처음 러시아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들을 뒤따라 개인 브로커들과 입양 희망 부모들이 러시아에 밀려들었다. 심지어 러시아 전국 곳곳에 국제 입양 센터들이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이렇게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서 국제 입양이 확산되며 법적 혼란이 발생하자 법 정비도 이루어지기 시작해 1995년 제정된 가족법, 2002년 제정된 민사소송법, 기타 일련의 연방법이 러시아에서 국제 입양을 규정하게 되었다.²⁹⁾

23) Kerry O'Halloran(2009) *The Politics of Adop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aw, Policy & Practice*, 2nd ed., Dordrecht: Springer, p. 136. 한편 셀먼(Selman)은 송출국의 인구학적 위기가 수용국의 인구학적 추세(낙태 증가, 국제 입양 수요 증가 등)와 상응하여 국제 입양 송출 흐름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 인구학적 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이미 고착된 입양 송출 흐름은 중단시키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elman(2002),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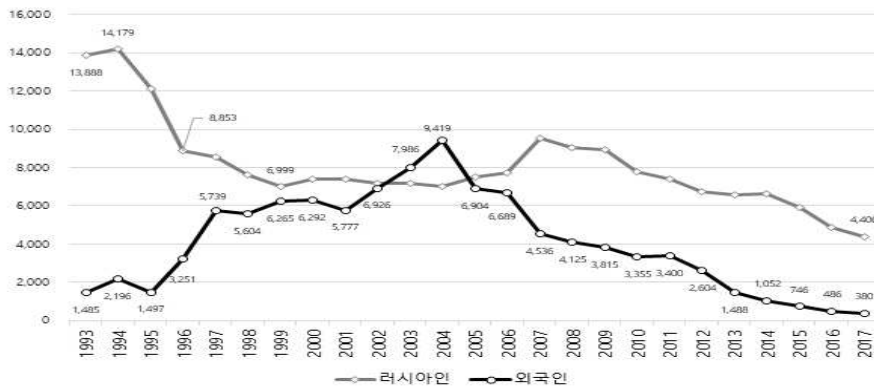
24) 문경희(2015) 「여성과 아동, 국가 간 입양의 정치경제」, 『페미니즘 연구』, 제15권 1호, 22쪽.

25) 국제 입양 체제의 송출국 집단은 다변화되었으나, 수용국 집단의 구성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만하다.

26) Peter Selman(2012b) "Global Trends in Intercountry Adoption: 2001-2010," *Adoption Advocate*, No. 44, p. 5; Selman(2009a), 36.

27) 문경희(2015), 20.

28) 문경희(2015), 6.

〈그림 2〉 1993~2017년 러시아인·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추이(단위: 명)³⁰⁾

〈그림 2〉는 1990년대에 국외로 입양되는 러시아 아동의 수가 급증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93년 1,485명 수준이던 연간 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 수가 1995년 이후에 급증해 1996년 3,251명을 기록했고 1997년에는 5,739명에 달하였다. 그 수는 2000년대 초에 또 다시 급증해 2003년 7,986명, 2004년 9,419명으로 자국민의 러시아 아동 입양 수(2003년 7,188명, 2004년 7,013명)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2004년에 정점을 찍은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규모는 이듬해부터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해 2013년에는 20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에도 국제 입양 감소 추세는 지속되어 2017년에는 연간 380명만이 국제 입양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를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 형성기, 1990년대 초부터 2004년까지를 증가기, 2005년부터 현재 까지를 감소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러시아 입양아의 이주 방향은 전반적인 국제 입양 흐름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서구 국가로 향하는 것이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아동은 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나머지 아동의 목적지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서유럽 선진국에 한정되었다. 다만 최대 수용국이었던 미국이 최근에는 주요 수용국 목록에서 탈락하였다. 그 원인, 즉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한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

〈표 2〉 2003년, 2008년, 2011년, 2017년 러시아 출신 입양아 수용국 순위³¹⁾

순위	2003년	%	2008년	명	2011년	명	2017년	명
1	미국	71.7	미국	1,773	미국	956	이탈리아	213
2	스페인	11.7	스페인	904	이탈리아	798	스페인	55
3	프랑스	4.6	이탈리아	496	스페인	685	아르헨티나	27
4	캐나다	2.1	프랑스	325	프랑스	283	독일	24
5	이탈리아	2.0	독일	188	독일	215	프랑스	22

29) Семенов(2007), 110-111.

30) “Усы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ами”,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3/4/> (검색일: 2018.10.07);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минобрнауки.рф/министерство/статистика> (검색일: 2018.11.02).

31) “Дети на экспорт”, *Коммерсантъ Власть*, 2004.06.14, <https://www.kommersant.ru/doc/482644> (검색일: 2019.04.18); “Статистика усыновлений и отказов от детей в России и мире. Справка”, РИА Новости, 2010.04.29, <https://ria.ru/20100429/227818989.html> (검색일: 2019.04.18); “Распределение усыновлений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по странам”,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1/7/> (검색일: 2019.04.18);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минобрнауки.рф/министерство/статистика> (검색일: 2018.11.02).

4 |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요인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은 형성기(1990년대 초), 증가기(1990년대 초~2004년), 감소기(2005년~현재)를 거쳐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틀의 독립 변수인 경제, 사회, 정책, 국가 간 연결을 하위 요인별로 검토하고, 해당 변수 및 하위 요인이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 증가, 감소, 그리고 다른 변수에 대해 각각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5장 결론에서 시기별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4.1. 경제적 요인

본 연구가 차용한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경제’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소득, 고용, 인적 자본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소득, 고용, 인적 자본을 나타내는 지표(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 실업률, 인간 개발 지수)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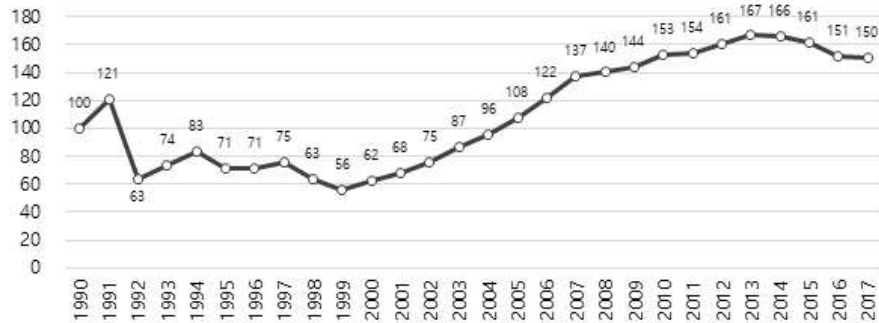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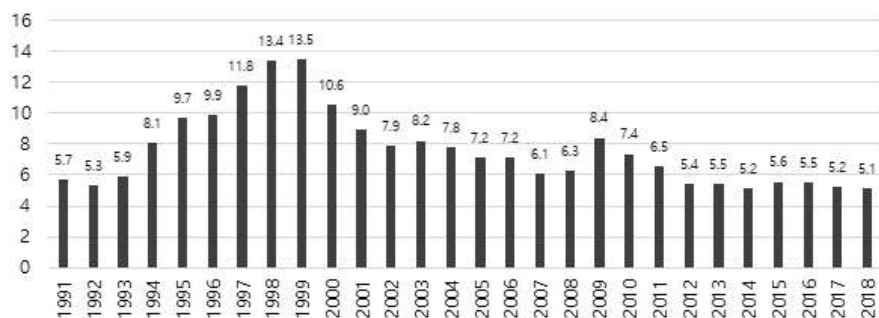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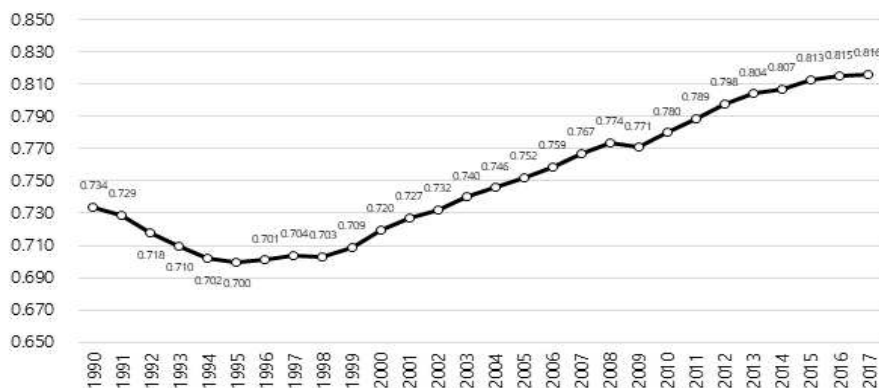
먼저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그림 3〉)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러시아 경제 상황의 대비를 뚜렷이 보여 준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에 1990년 대비 63%로 폭락한 소득 수준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1999년에는 1990년 대비 56%에 그쳤는데, 이 시기에 러시아가 국제 입양 시장에서 주요 송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에 1990년 수준을, 2006년에 1991년 수준을 추월하였다. 국제 입양 송출 급증 현상이 반전되어 그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들어와서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이 국제 입양 송출 흐름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러시아의 실업률(〈그림 4〉)은 1992년(5.3%) 이후 꾸준히 상승해 러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 13.4%, 1999년에 13.5%를 기록하였다. 그 후 2000년대에 실업률이 차츰 하락하였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0년대에는 5%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³²⁾

러시아의 인적 자본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유엔 개발 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HDI)를 채택하였는데, 그 추이는 〈그림 5〉와 같다. 1990년 1점 만점에 0.734점이었던 러시아의 HDI는 1990년대 전반에 매년 하락하여 1995년 0.700점에 그쳤다. 1990년대 후반 정체기를 거쳐 2000년대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3년(0.740점)에 1990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3년(0.804점)에는 ‘매우 높음(very high)’의 기준인 0.800점을 넘어섰다.

위의 경제 지표들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 상황이 1990년대에 크게 악화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어 왔음을 공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국제 이주 송출국의 국내 경제 상황을 국제 이주의 배출 요인으로 본다면, 러시아의 국내 경제 상황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을 잘 설명해 준다.

32) 사실 1990년대 러시아의 실업률 상승 폭은 다른 경제 지표(GDP, 인플레이션, 빈곤율 등) 악화 정도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현상은 만성적 임금 체불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는 연금, 실업 수당, 아동 수당의 체불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특히 위태롭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지출 대비 사회 보장 수당의 비율 자체도 1996년 6.52%에서 1999년 4.37%, 2000년 3.96%, 2004년 3.02%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8.75%에 달하였다.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91 - 2017 гг.”,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70707126016 (검색일: 2019.04.18).

〈그림 3〉 1991~2017년 러시아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지수(단위: 1990년 대비 %)³³⁾〈그림 4〉 1991~2018년 러시아 실업률(단위: %)³⁴⁾〈그림 5〉 1990~2017년 러시아 인간 개발 지수(HDI)³⁵⁾

4.2. 사회적 요인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사회’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문화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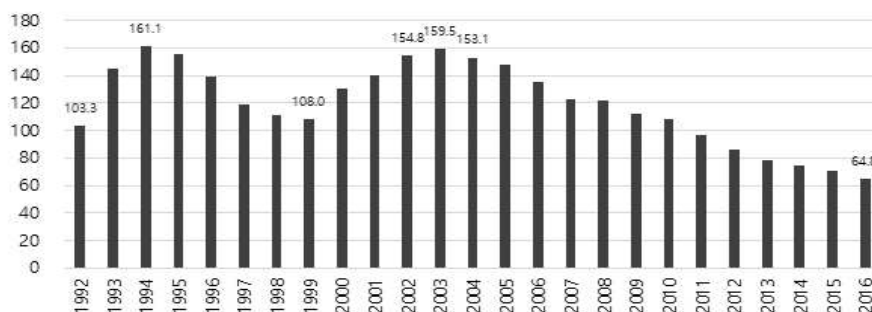
33)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91 - 2017 гг.”,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70707126016 (검색일: 2019.04.18).

34)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TOTL.ZS?locations=RU> (검색일: 2019.04.19).

35) “Human Development Data (1990-2017),” Human Development Report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ttp://hdr.undp.org/en/data> (검색일: 2019.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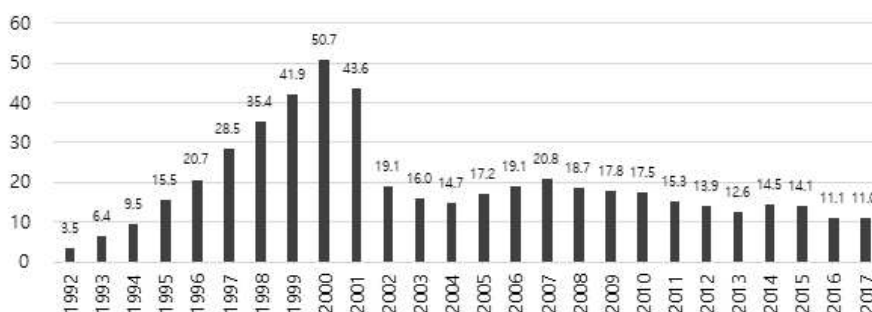
있다. 그중 사회적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아동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인구학적 요인에 있어서는 고아의 수를 살펴볼 것이다. 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을 분석할 것이다.

〈그림 6〉 1992~2016년 러시아 내 알코올 정신병 및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추이 (단위: 10만 명당 명)³⁶⁾



알코올 중독 문제는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림 6〉은 1990년대 초와 1990년대 말에 알코올 정신병 및 알코올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수가 급증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1992년 10만 명당 103.3명에서 1994년 161.1명으로, 1999년 108명에서 2003년 159.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가정 해체를 확산시켰다. 아동이 가출하거나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³⁷⁾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알코올 정신병 및 알코올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러시아 정부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7〉 1992~2017년 러시아 내 마약 중독 신규 환자 발생 추이(단위: 10만 명당 명)³⁸⁾



마약 중독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마약 중독 환자 수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련 해체 후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약 중독 신규 환자가 1992년 10만 명당 3.5명에서 1998년 35.4명, 1999년 41.9명, 2000년 50.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36)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17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www.rosminzdrav.ru/ministry/61/22/stranitsa-979/statistichesk-ye-i-informatsionnye-materialy/statistichesk-iy-sbornik-2017-god> (검색일: 2018.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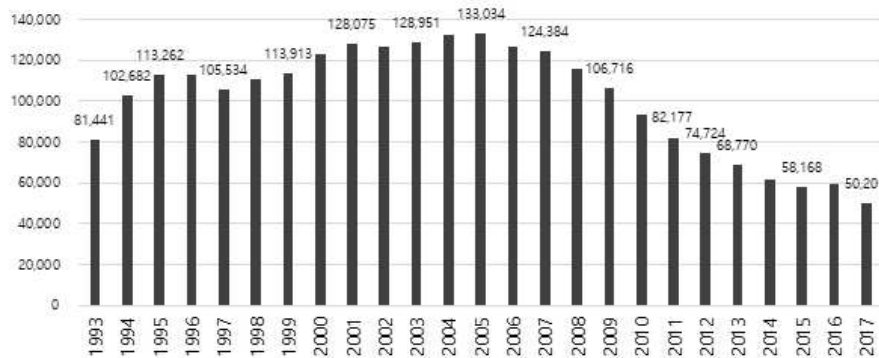
37) Всемирный банк(2003) *Положение дете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1990-х годов и перспективы*,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есь Мир», С. 77.

38)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17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www.rosminzdrav.ru/ministry/61/22/stranitsa-979/statistichesk-ye-i-informatsionnye-materialy/statistichesk-iy-sbornik-2017-god> (검색일: 2018.10.15).

연간 마약 중독 신규 환자의 수가 10만 명당 10~2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1990년대 러시아의 국내 경제 상황 악화, 사회 문제 심각화, 인구학적 위기(출생률 감소, 사망률 증가, 자살률 증가, 평균 수명 감소, 가정 해체 증가, 혼외 출산 증가, 한부모 가정 증가)는 고아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림 8>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련 해체 후 신규 등록 고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에 81,441명, 1994년에 102,682명, 1995년에 113,262명, 2000년에 123,204명, 2005년에 133,034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8,168명, 2017년에는 50,201명에 그쳤다.

<그림 8> 1993~2017년 러시아에서 연간 등록된 고아의 수(단위: 명)³⁹⁾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은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러시아 여론 조사 기관 폼(ФО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 5월에는 국제 입양 송출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23%)거나 금지해야 한다(14%)는 의견보다 훨씬 우세하였지만, 2012년 12월에는 강화(53%)나 금지(22%) 의견 비율이 높고 완화(11%) 의견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다.⁴⁰⁾ 2005~2013년 러시아 여론 조사 센터 프치옴(ВЦИОМ)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질문을 국제 입양 송출 금지 찬반 여부로 한정하였는데, 국제 입양 송출 금지 찬성은 2005년 6월 32%, 2010년 5월 38%, 2013년 1월 53%, 2013년 3월 64%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반대는 각각 61%, 48%, 35%,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⁴¹⁾ 미국에서 러시아 출신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디마 야코블레프 법이 제정된 2012년 12월 이후 프치옴이 디마 야코블레프 법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기적으로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 여론은 2013년 54%, 2014년 64%, 2015년 1월 70%, 2015년 10월 76%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7년 71%로 소폭 하락하였고, 반대 여론은 2013년 21%, 2014년 20%, 2015년 1월 14%로 하락하다가 반등하여 2015년 10월 19%, 2017년 25%를 기록하였다. ‘잘 모르겠음’ 응답 비율은 2013년 25%, 2014년 16%, 2015년 1월 16%, 2015년 10월 5%, 2017년 4%로 하락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입장

39) “Численность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ыявленных в течение отчетного года”,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5/1/> (검색일: 2018.10.16);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ыявленных в 2009 году”,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09/1/> (검색일: 2018.10.16); “2016”,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6/> (검색일: 2019.04.24); “2017”,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7/> (검색일: 2019.04.24).

40) “Усыно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детей иностранцами”,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2012.12.25, <https://fom.ru/Bezopasnost-i-pravo/10749> (검색일: 2019.04.25).

41) “Гибель Максима Кузьмина и проблема иностранного усынов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3.03.11, <https://wciom.ru/index.php?id=236&uid=1139> (검색일: 2019.04.25).

이 명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7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반대 여론(21%에서 25%로 소폭 상승)은 큰 변화가 없고, 부동층(25%에서 4%로 대폭 하락)은 대부분 찬성 여론(54%에서 71%로 상승)에 흡수되었다.⁴²⁾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악화와 2000년대 이후 개선 및 안정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을 설명해 준다. 또 그 배경이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라는 점은 분석틀의 8번 화살표(‘경제’ 변수의 ‘사회’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를 설명해 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전반에는 국제 입양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여론이 그 후 급격히 악화된 현상은 국제 입양 송출의 증가와 감소를 설명해 준다.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이 이러한 여론 악화의 배경이라는 점은 분석틀의 6번 화살표(국제 이주 흐름의 ‘사회’ 변수에 대한 역영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3. 정책적 요인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정책’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정치적 상황과 이주 정책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러시아의 국내 고아 정책과 국제 입양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러시아에서 고아는 크게 생물학적 고아와 사회적 고아로 분류할 수 있다. 생물학적 고아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고아가 된 경우이고, 사회적 고아는 부모의 장기 부재(장기 입원, 수감, 행방불명 등)나 친권 박탈(가정 폭력, 아동 학대, 부양 의무 미이행 등)로 인해 고아가 된 경우이다.⁴³⁾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요보호 아동을 돌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내 입양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요보호 아동의 보호·양육 방식 중 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전체 요보호 아동 중에서 입양되어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1990년 약 30%에서 2000년 23%로 감소하였고, 연간 등록된 고아 중 입양된 비율은 2000년 11.1%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약 46%는 외국인에 의한 국제 입양이었다. 입양되거나 위탁되지 못하고 아동 양육 시설로 보내지는 고아의 비율은 1990년 22.5%에서 2000년 29.4%로 증가하였다.⁴⁴⁾

소련 해체 직후, 수용하는 고아의 수는 증가하는데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보육원에서 영양 섭취 부족, 신체적·정서적 보살핌 부족, 아동 학대, 직무 유기, 잔혹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⁴⁵⁾ 이러한 실태는 언론인과 자원 봉사자들의 러시아 보육원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국내외에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가 뒤따랐으나, 입양·위탁·후견을 장려하는 전략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 시설에 배치되는 고아의 수가 늘어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지적된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아를 입양·위탁·후견하고자 하는 가정의 수가 감소하였다. 둘째, 권력층 일부가 아동 양육 시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셋째, 고아를 적시에 다른 가정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행정적 자원이 부족하였다. 넷째, 책임 및 감독 체계가 부재하였다.⁴⁶⁾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규 등록 고아가 감소하고 국내 입양·위탁·후견이 증가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42) “«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 три года спуст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5.12.07, <https://wciom.ru/index.php?id=236&uid=196> (검색일: 2018.11.02); “«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 не пора ли его отмени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7.02.06, <https://wciom.ru/index.php?id=236&uid=524> (검색일: 2018.11.02).

43) 오늘날 러시아 보육원에 거주하는 고아의 약 2/3가 사회적 고아에 해당한다.

44) *Всемирный банк*(2003), 74, 89.

45) Kathleen Hunt(1998) *Abandoned to the State: Cruelty and Neglect in Russian Orphanages*, Human Rights Watch, p. 110.

46) *Всемирный банк*(2003), 115.

고아의 탈시설을 위해 국내 입양·위탁·후견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 체계의 탈시설화를 실현해 왔고,⁴⁷⁾ 2010년대에 들어서는 보육원 시스템 개혁에 착수하여 보육원을 고아의 입양·위탁·후견 배치 전 임시 거주지로서 기능하게 하였다.⁴⁸⁾ 또 푸틴 대통령은 디마 야코블레프 법 서명 시 고아, 장애아,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도 함께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2000년 180,295명, 2005년 177,116명, 2010년 119,860명, 2015년 58,918명으로 감소한 반면, 입양·위탁·후견과 같은 방법으로 가정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2000년 487,312명, 2005년 549,542명, 2010년 640,644명, 2015년 702,813명으로 증가하였다.⁴⁹⁾

한편 국제 입양 정책이 변화하게 된 주요 동인은 미국에서 반복된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이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일부 양부모들이 미국 사법 체계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을 받게 된 것은 러시아에서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⁵⁰⁾ 미국에서 러시아 입양아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소위 ‘애착 치료(attachment therapy)’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러시아 언론 보도들도 미국 국제 입양 담론이 내세우는 구원 서사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미국의 인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20년 동안 최소 60명의 아이들이 비과학적 애착 치료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20명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입양아들이었고, 그중 6명은 끝내 숨을 거두었다.⁵¹⁾

2008년 7월 8일 체이스 해리슨(Chase Harrison)⁵²⁾이 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동년 12월 17일 미국인 양부 마일스 해리슨(Miles Harrison)에 대한 무죄 선고에 러시아 정부·미디어가 크게 반발하고 러시아 국민의 분노 여론이 확산되었다. 자국 출생 입양아의 학대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분노는 2010년 4월에 발생한 이른바 ‘아르툼 사벨리예프(Артём Савельев)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인 양모 토리 한센(Torry Hansen)이 7세의 러시아 입양아 저스틴 한센(Justin Hansen, 러시아명 아르툼 사벨리예프)을 러시아행 비행기에 홀로 태워 보내 국제적 분노를 야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아르툼 사벨리예프 사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인에 의한 러시아 아동 입양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와 미국 양국 간 입양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만 러시아 아동 입양이 다시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러시아 및 미국 당국이 러시아 입양아의 생활 환경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입양 협정의 체결만이 비극적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⁵³⁾

미-러 입양 협정은 1년 3개월 간의 협상 끝에 2011년 7월에 체결되었다. 이로써 2010년 4월부터 지속된 대미(對美) 입양 중단 조치는 해제되었다. 미-러 입양 협정은 2012년 1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47) Svetlana Biryukova and Oxana Sinyavskaya(2017) “Children out of parental care in Russia: what we can learn from the statistics,” *The Journal of Social Policy Studies*, Vol. 15, No. 3, pp. 373-374.

48) Наталья Савицкая(2015) “Детские дома ликвидируются”,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15.09.29, http://www.ng.ru/education/2015-09-29/10_detdoma.html (검색일: 2018.11.26).

49) “Устройство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free_doc/new_site/population/obraz/i-obr2.doc (검색일: 2018.11.26). 다만 <그림 2>에서 보았듯이 국내 입양은 2000년대 중·후반에 증가하였다가 2010년대에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입양보다는 경제적 지원(수당, 거주지, 대학 입학 시 혜택 등)이 더 많이 보장되는 위탁의 방식이 더 선호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0) Barnes(2013), 415.

51) “В США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ьше сторонников «Терап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ивязанности»”, *Первый канал*, 2013.03.03, https://www.1tv.ru/news/2013-03-03/69991-v_ssha_stanovitsya_vsygo_bolshe_storonnikov_terapii_vosstanovleniya_privyazannosti (검색일: 2018.10.26). 애착 치료 또는 다른 이유로 미국에서 사망한 러시아 출신 입양아 19명의 목록은 다음을 참조. Hegar, Verbovaya, and Watson(2015), 186.

52) 러시아 이름 드미트리 야코블레프(Дмитрий Яковлев). 2012년 12월 제정된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된 것이다. 디마(Дима)는 드미트리의 애칭이다.

53) 러시아는 주요 입양 수용국 중 이탈리아와 처음으로 2008년에 양자 간 입양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기초하면서도 이 협약들보다 더 폭넓은 규제 조항들을 담았다. Allen(2012), 1731-1736.

말 러시아는 디마 야코블레프 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전격 금지하였다. 1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법은 2012년 말 미-러 인권 논쟁 속에서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었다.

정책적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고아 정책의 경우, 1990년대에는 입양·위탁·후견을 장려하는 전략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 시설에 배치되는 고아의 수가 증가하고 국제 입양 송출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육 체계의 탈시설화와 보육원 시스템 개혁이 실현되면서 국내 입양·위탁·후견이 증가하고 국제 입양 송출은 급감하였다. 따라서 국내 고아 정책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감소를 설명해 준다. 국내 고아 정책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더 성공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적 경제 성장이 있었다. 이는 분석틀의 13번 화살표(‘경제’ 변수의 ‘정책’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에 해당한다. 또 신규 등록 고아의 수가 감소하였던 점도 원활한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분석틀의 12번 화살표(‘사회’ 변수의 ‘정책’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에 해당한다. 국제 입양 정책의 경우, 2008년 디마 야코블레프 사건과 2010년 아르툠 사벨리에프 사건으로 말미암은 2010년 대미 입양 일시 중단과 2012년 대미 입양 금지 조치와 같은 국제 입양 송출 규제 강화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감소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배경에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여론 악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석틀의 12번 화살표에 적용될 수 있다.

4.4. 국가 간 연결 요인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론적 틀에서 ‘국가 간 연결’ 독립 변수의 하위 요인에는 문화적 연결과 물리적 연결이 있다.

이주 체계 접근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식민주의 유산에 따른 문화적 연결이 러시아와 서구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서구로의 이주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네 차례의 대규모 이주 흐름(1917년 혁명으로 인한 이주의 제1물결, 제2차 세계 대전 때의 제2물결, 냉전 시기 반체제 인사들과 소수 민족의 이주가 주를 이룬 제3물결, 소련 해체 후 소득이나 삶의 질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제4물결)이 형성되었다.⁵⁴⁾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서구로의 이주가 한편으로는 배신 행위로 낙인찍혀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가 피난처나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러시아인 다섯 명 중 한 명(2013년 22%, 2016년 19%, 2018년 17%)이 해외 이민을 희망하는데,⁵⁵⁾ 주된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42%), 국내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41%), 자녀에게 안정적 미래 보장(28%)이며,⁵⁶⁾ 이민을 가장 희망하는 나라는 독일(13%), 미국(10%), 호주(7%), 이탈리아(5%), 스페인(3%)이다.⁵⁷⁾ 이 나라들은 주요 국제 입양 수용국이기도 하다. 이 국가들이 러시아 아동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인식은, 서구의 국제 입양 중개 업체들이 러시아에 처음 진출할 당시 러시아 관료들과 보육원 관계자들의 국제 입양 송출 허가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이주사의 맥락에서 축적된 문화적 연결은 러시아 국제 아동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을 설명해 준다.

위에서 언급된 러시아의 이주의 제4물결은 물리적 연결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소비에트 시기에 국가의 이

54) A. C. Ахизер(1999) “Эмиграция как индикатор состоя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ир России*, № 4, С. 163-174.

55) “Эмиграцио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Левада-Центр*, 2019.02.04, <https://www.levada.ru/2019/02/04/emigratsionnye-nastroeniya-3/> (검색일: 2019.04.29).

56) “Эмиграция”, *Левада-Центр*, 2016.07.19, <https://www.levada.ru/2016/07/19/emigratsiya/> (검색일: 2019.04.29).

57) “Эмиграцио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россиян-2018”,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8.07.02, <https://wciom.ru/index.php?id=236&uid=9187> (검색일: 2019.04.29).

주 통제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으로만 실현되어 온 개인의 이주의 자유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법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이주의 제4물결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0년 유출 인구는 1986년 유출 인구의 약 36배에 이르게 되었으며, 1990년대 초 러시아에서 원외 국가(구 소련 영토 바깥의 국가)로의 유출 인구와 그 역의 유입 인구가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해 각각 연간 15만 명을 넘었다. 1990년대 초 해외 여행도 본격화되어 해외 여행을 위한 출국 및 입국 진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⁵⁸⁾ 이는 소련 해체 당시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 이동과 이주가 자유화되면서 국제 입양 송출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을 설명해 준다.⁵⁹⁾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 연결은 국제 입양 증개 업체들의 러시아 진출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국경은 개방되었으나 국제 입양 관련 규제가 미비한 러시아가 국제 입양 기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이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에 미친 영향도 유의미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언론인의 러시아 보육원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러시아 보육원의 열악한 실태가 국내외 미디어에 보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언론 보도는 외국인 입양 희망 부모들의 러시아 아동 입양을 부추겼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미국 내 러시아 출신 입양아 파양·학대·사망 스캔들에 관한 러시아 언론 보도는 국제 입양에 대한 러시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렇듯 언론 보도를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분석틀의 11번 화살표(‘국가 간 연결’ 변수의 ‘사회’ 변수에 대한 간접적 영향)에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국가 간 연결 요인은 전반적으로 러시아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만을 설명해 준다. 언론 보도를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여론에 영향을 끼치면서 국제 입양 송출 흐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 결론

전 지구적 맥락에서 국제 입양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냉전, 세계화 등 20세기 국제 질서 변동의 유산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국제 입양은 제2차 세계 대전 및 한국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냉전 시기 미국 내 정치적·종교적 이해관계, 서구 선진국 내 사회 변화와 맞물려 국제 입양이 점차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서, 비서구(남반구) 국가 아동이 서구(북반구) 국가로 입양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이 본격화된 것은 국제 입양이 시장화된 탈냉전 시기로,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 세계 체계 내 (반)주변부화와 맞물린다. 러시아 아동은 주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으로 입양되었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과 그 방향은 전 지구적 재생산 노동 분업에 기초한 입양 시장으로의 러시아의 편입을 의미하였다.

국외로 입양되는 러시아 아동의 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에 급증하였다. 1990년대 초 약 1천 5백 명 수준이던 연간 국제 입양 송출 아동 수가 1996년 3천 명을 넘어섰고, 1997년부터는 약 6천 명에 달하였으며, 2004년 약 9천 5백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20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연간 380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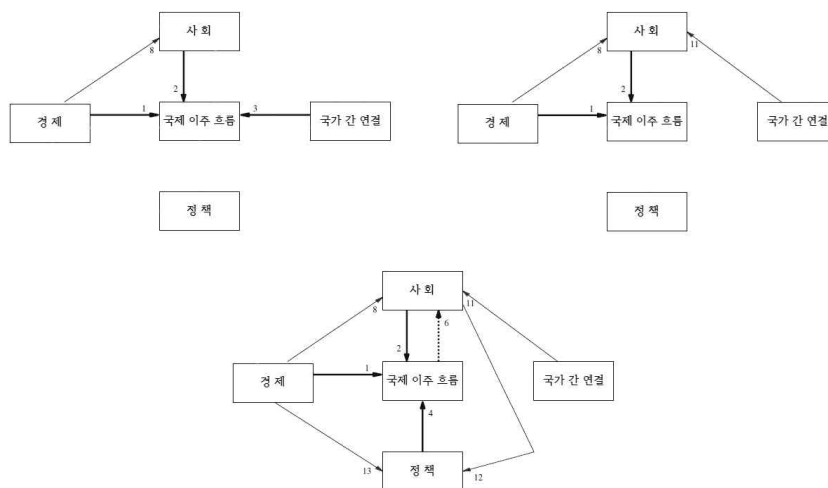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규모 변동의 요인을 예니선(Jennissen, 2007)의 이주 체계 접근법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기별 유의미한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흐름 형성기(1990년대 초), 증가기(1990년대 초~2004년), 감소기(2005년~현재)에 각각 유의미하게 작

58)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91 - 2017 гг.”,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70707126016 (검색일: 2019.04.18).

59) 다만 원외 국가 이주 및 여행 추이는 국제 입양 송출의 변동(증가 및 감소)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용한 요인을 추려 내어 나타낸 모형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러시아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左上)·증가(右上)·감소(下) 요인 모형



즉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제 입양 송출 흐름의 형성과 변동(증가 및 감소)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흐름의 형성에는 국가 간 연결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흐름의 증가에는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감소에는 정책적 요인이 특징적으로 작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은 현대 러시아 사회를 경제, 국내 정치, 국제 정치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러시아의 국제 입양 송출 현상을 송출국의 관점에서 포괄적·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 함의를 밝힌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세계 최대의 국제 입양 송출국으로서 같은 이슈를 공유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제 입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인 당사자들의 삶과 활동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아직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인들의 커뮤니티, 영화, 저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귀환 해외 입양인의 사례도 대중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다. 1990년대에 국제 입양된 러시아 출신 입양인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및 뿌리 찾기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아동의 국제 입양이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전반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미래에 러시아 출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더 많이 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당사자의 삶과 경험을 반영하는 문화·예술 활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찬(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81-107쪽.
- 김재민(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 문경희(2015). 「여성과 아동, 국가 간 입양의 정치경제」, 『페미니즘 연구』, 제15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3-50쪽.

- 박정준(2016). 「러시아·미국 국외입양 논전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11-140쪽.
- 카슬, 스티븐·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 Ахиезер, А. С. (1999). “Эмиграция как индикатор состоя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ир России*, № 4, С. 163-174.
- Всемирный банк(2003) *Положение дете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1990-х годов и перспективы*,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есь Мир».
- Семенов, А. В.(2007) “Пробле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сыновле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енинградский юридический журнал*, № 2, С. 104-122.
- Allen, Cheryl L.(2012). “The US-Russian Child Adoption Agreement: An End to Failed Adoption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5, No. 6, pp. 1690-1742.
- Barnes, Bethanie(2013). “A Critique of the U.S.-Russian Adoption Process and Three Recommendations for the U.S.-Russian Bilateral Adoption Agreement,”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7, No. 1, pp. 397-446.
- Biryukova, Svetlana and Oxana Sinyavskaya(2017). “Children out of parental care in Russia: what we can learn from the statistics,” *The Journal of Social Policy Studies*, Vol. 15, No. 3, pp. 367-382.
- DeBose, Cynthia Hawkins and Ekaterina DeAngelo(2015). “The New Cold War: Russia’s Ban on Adoptions by U.S. Citize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Vol. 28, pp. 51-77.
- Hawk, Brandi N. and Robert B. McCall(2011). “Specific Extreme Behaviors of Postinstitutionalized Russian Adopte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7, No. 3, pp. 732-738.
- Hegar, Rebecca L., Olga Verbovaya, and Larry D. Watson(2015). “Child fatality in Intercountry adoption: What media reports suggest about deaths of Russian children in the U.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55, pp. 182-192.
- High, Anna Jane(2014). “Pondering the politiciz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Russia’s ban on American ‘forever familie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 22, No. 3, pp. 497-560.
- Hunt, Kathleen(1998). *Abandoned to the State: Cruelty and Neglect in Russian Orphanages*, Human Rights Watch.
- Jennissen, Roel(2007). “Causality Chains i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26, No. 4, pp. 411-436.
- Kane, Saralee(1993). “The movement of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30, No. 4, pp. 323-339.
- Khabibullina, Lilia(2009). “International Adoption in Russia: “Market,” “Children for Organs,” and “Precious” or “Bad” Genes,”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ies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Eds. Diana Marre and Laura Brigg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74-189.
- Lovelock, Kirsten(2000). “Intercountry Adoption as a Migratory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m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the Post W.W. II Perio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4, No. 3, pp. 907-949.
- O’Halloran, Kerry(2009). *The Politics of Adop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aw, Policy & Practice*, 2nd ed., Dordrecht: Springer.
- Selman, Peter(2002).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new millennium; the “quiet migration” revisited,”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21, No. 3, pp. 205-225.
- _____(2009a) “The Movement of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Developments and Trends in Receiving States and States of Origin, 1998 - 2004,” *International Adoption: Global Inequalities and the Circulation of Children*, Eds. Diana Marre and Laura Brigg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51.
- _____(2009b) “The rise and fall of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52, No. 5, pp. 575-594.
- _____(2012a) “The Global Decline of Intercountry Adoption: What Lies Ahead?,” *Social Policy and Society*, Vol. 11, No. 3, pp. 381-397.

- _____ (2012b) "Global Trends in Intercountry Adoption: 2001–2010," *Adoption Advocate*, No. 44, pp. 1–17.
- Sharafutdinova, Gulnaz (2014) "The Pussy Riot affair and Putin's démarche from sovereign democracy to sovereign morality," *Nationalities Papers*, Vol. 42, No. 4, pp. 615–621.
- Stryker, Rachael (2000) "Ethnographic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Russian Adoptees," *Anthropology of East Europe Review*, Vol. 18, No. 2, pp. 79–84.
- Suslov, Dmitry (2013) "The US–Russia Relations after the 'Reset': Pragmatism or a New Confrontation?," *Higher School of Economics Research Paper*, No. WP BRP 04/IR/2013.
- Weil, Richard H. (1984) "International Adoptions: The Quiet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8, No. 2, pp. 276–293.
- "В США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ьше сторонников «Терап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ивязанности»", *Первый канал*, 2013.03.03, https://www.1tv.ru/news/2013-03-03/69991-v_ssha_stanovitsya_vsygo_bolshe_storonnikov_terapii_vosstanovleniya_privyazannosti (검색일: 2018.10.26).
- "Гибель Максима Кузьмина и проблема иностранного усынов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3.03.11, <https://wciom.ru/index.php?id=236&uid=1139> (검색일: 2019.04.25).
- "Дети на экспорт", *Коммерсантъ Власть*, 2004.06.14., <https://www.kommersant.ru/doc/482644> (검색일: 2019.04.18).
- "«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 не пора ли его отмени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7.02.06., <https://wciom.ru/index.php?id=236&uid=524> (검색일: 2018.11.02).
- "«Закон Димы Яковлева»: три года спуст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5.12.07., <https://wciom.ru/index.php?id=236&uid=196> (검색일: 2018.11.02).
-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ыявленных в 2009 году",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09/1/> (검색일: 2018.10.16).
- "Распределение усыновлений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по странам",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1/7/> (검색일: 2019.04.18).
- Савицкая, Наталья (2015) "Детские дома ликвидируются",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15.09.29, http://www.ng.ru/education/2015-09-29/10_detdoma.html (검색일: 2018.11.26).
-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1991 – 2017 гг.",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ublications/catalog/doc_1270707126016 (검색일: 2019.04.18).
- "Статистика усыновлений и отказов от детей в России и мире. Справка", *РИА Новости*, 2010.04.29, <https://ria.ru/20100429/227818989.html> (검색일: 2019.04.18).
-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минобрнауки.рф/министерство/статистика> (검색일: 2018.11.02).
-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17 г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www.rosminzdrav.ru/ministry/61/22/stranitsa-979/statisticheskie-i-informatsionnye-materialy/statisticheskiy-sbornik-2017-god> (검색일: 2018.10.15).

- “Устройство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fr ee _doc/new_site/population/obraz/i-obr2.doc (검색일: 2018.11.26).
- “Усы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ами”,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 statistics/2013/4/> (검색일: 2018.10.07).
- “Усыно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детей иностранцами”,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2012.12.25., <https://fom.ru/Bezopasnost-i-pravo/10749> (검색일: 2019.04.25).
- “Численность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ыявленных в течение отчетного года”,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 statistics/2015/1/> (검색일: 2018.10.16).
- “Эмиграцио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Левада-Центр*, 2019.02.04, <https://www.levada .ru/2019/02/04 /emigratsionnye-nastroeniya-3/> (검색일: 2019.04.29).
- “Эмиграцио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россиян-2018”, *Все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изу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2018.07.02., <https://wciom.ru/index.php?id=236&uid =9187> (검색일: 2019.04.29).
- “Эмиграция”, *Левада-Центр*, 2016.07.19, <https://www.levada.ru/2016/07/19/emigratsiya/> (검색일: 2019.04.29).
- “2016”,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6/> (검색일: 2019.04.24).
- “2017”, *Усыновление в России*, <http://www.usynovite.ru/statistics/2017/> (검색일: 2019.04.24).
- “Human Development Data (1990–2017),” *Human Development Report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ttp://hdr.undp.org/en/data> (검색일: 2019.04.19).
- Joyce, Kathryn(2017) “Why adoption plays such a big, contentious role in US–Russia relations,” *Vox*, 2017.07.22, <https://www.vox.com/the-big-idea/2017/7/21/16005500/adoption-russia-us-orphans-abuse-trump> (검색일: 2018.11.27).
-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SL.UEM.TOTL.ZS?locations =RU> (검색일: 2019.04.19.).

세션3 |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노동 경험

사회 / 유길상 | 한국기술교육대



발표 01 학생이주자의 노동경험과 일의 가치:
한국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학생을 중심으로
김도혜 | 대구대

발표 02 난민/이주민 구별짓기의 정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노동시장 경험 연구
서선영 | 연세대

발표 03 동티모르 출신 어업이주노동자의 노동경험
김철효 | 전북대, 김민정 | 이주여성인권포럼

토론 문경희 | 창원대, 손인서 | 고려대, 정신영 | 공익법센터 어필

세션 3-01

학생이주자의 노동 경험과 일의 가치: 한국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학생을 중심으로¹⁾²⁾

김도혜 | 대구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한국 지방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몽골과 베트남 학생의 시간제 취업 경험을 분석하여 학생 이주자가 한국의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경로를 밝히고 노동 경험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살펴 이들이 행하는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과거 유학을 ‘보내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던 한국은 2004년 스터디 코리아 정책 도입 이후 ‘받아들이는 유학’ 목적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유학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16,832명에서 2019년 160,165명으로 열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저소득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많은 경우 학비와 생활비 보조를 위해 학업 중 노동을 하고 있다.

보통 청년 세대 노동은 사회 생활에 대한 사전 경험 창구로 권장되어 왔고 학생 이주자의 노동 역시 대개 유학 목적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향후 진입할 직업 세계를 미리 체험해 보는 기회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 학생 이주자의 노동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시간제 취업 정책을 통해 학업 중 취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위 “음성적 취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 “불법”으로 진입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불법체류를 통해 사회질서에 교란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이 맞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취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안에는 두 가지 기본 전제가 깔려있다. 첫째, 유학생 중 일부는 한국 노동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가기 위해 상대적으로 받기 용이한 학생비자를 받는다. 둘째, 유학생의 노동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생들 각자의 경제적 이득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의심은 주로 비이공계 출신 자비 유학생, 그 가운데서도 불법체류율이 높은 저소득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잠재적 불법체류·불법취업 유학생으로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의 노동 경험을 연구하여 이들이 실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지 살핀다. 특히 이들이 가진 노동 경험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밝혀 한국 정부가 학생 이주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580).

2) 이 글은 현재 수정 중에 있는 원고이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II | 학생이주자의 노동, 어떻게 볼 것인가

유학생과 학생 이동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영어권의 고소득 국가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학업 중 노동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로 졸업 이후 취업 현장에서의 노동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Bordoloi 2014; Crossman and Clarke 2010; Singaravelu et al. 2005). 또한 영어권 고소득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마치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국가에 오래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두뇌 유출’의 틀로 유학생 취업과 노동 경험이 분석되어 왔다(Zweig 2006; Rizvi 2005). 다시 말해 유학생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노동력, 즉 ‘두뇌’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학생 이주의 방향이 다변화되면서 유학생의 노동 및 취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변화되고 있다.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노동 경험을 분석한 Liu-Farrer(2011)는 “교육으로 중개된 노동 이주”(educationally channelled labor migr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학생의 출신국과 목적국에 따라서 유학생의 노동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관점은 유학생을 미래의 고숙련 노동자, 즉 ‘두뇌’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다. 195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주창된 관점이지만 최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가 유학생을 미래의 고급 노동력으로 적극 받아들이면서 유학생들이 대량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유학생 노동을 분석하는 데도 주로 이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을 위시한 소위 ‘신흥’ 유학 목적국으로 유입된 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 노동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저숙련,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Liu-Farrer(2011)는 일본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의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인 정책으로 들어온 학생 중 일부가 학업을 포기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유학이 곧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비공식 창구’(side door for cheap labor)라는 우려가 일본 사회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학업을 마쳐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일본에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유학비자를 통해 일본에 입국한 뒤 학업보다는 노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유학생에 대한 이해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한국 정부는 유학생이 학업에서 중도탈락하는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전제 하에 각 대학 유학생의 중도탈락율과 불법체류율을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다.³⁾ 이뿐 아니라 2011년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계기로 중도탈락율과 불법체류율의 규모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과 제재를 가하면서 유학생의 중도탈락,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유학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두뇌’로 인식될 만한 이공계 열이나 정부초청 혹은 대학초청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취업 정책을 쓰는 등 차등 대우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언론은 주로 소위 ‘사라지는’ 유학생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하면서 어학연수나 유학이 불법 취업의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연수생 1900명 중 164명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학이 “불법체류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 노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다.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에 관해 살펴면서 주로 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들은 꾸준히 있지만(하정희 2008; 김선아 2010),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어떤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Cha와 Chang(2009)의 연구와 조은희·유기웅(2017)의 연구,

3) 2018년 현재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14%를 기록하였다.

4) “인천대 베트남 유학생 에이전트 밀착의혹...경찰내사 착수.” 『인천투데이』 2019.07.08.

그리고 임석준(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⁵⁾ Cha와 Chang(2009)의 연구와 조은희·유기웅(2017)의 연구는 교육학적 시각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학업 중 노동 경험을 통해 얻어가고 있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반해 임석준(2010)의 연구는 실제 유학생이 처해있는 노동 환경에 집중한다. 부산지역 중국 유학생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 유학생이 학생 이주자인 동시에 노동자의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노동자로 정당한 위치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학생 이주자가 학생이자 노동자로 이중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임석준(2010)의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밀한 접근을 통해 유학생의 노동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몽골, 베트남과 같이 비영어권 중저소득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노동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어떤 학문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유학생이든 간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든 간에 흡사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동시에 이들 스스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두뇌’로 인식될만한 유학생이든, 잠재적 불법체류 노동자로 인식될만한 유학생이든 간에 이들이 행하는 노동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동시에 노동 경험을 통해 이들 모두가 저임금 노동자로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A와 B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 16명(몽골 8명, 베트남 8명)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몽골과 베트남 출신을 선택한 것은 이 두 국가 출신 유학생이 2019년 현재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⁶⁾ 한국 언론을 통해 노동 시장에 불법으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유학생들로 자주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2019년 현재 불법체류 유학생 가운데 최대 비중인 66%(9,213명)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 한국 언론에 거론되곤 한다.⁷⁾ 또한 지방대학 유학생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 유학생 연구가 밝혔듯이 이들이 경제적 제약으로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 대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박소진 2013; 이민경 2012), 이 때문에 시간제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어학당 이후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도혜·최희정 2019), 지방대학에 재학한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과 노동경험을 면밀히 살피는 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입국시기가 상이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성별, 국적별 뿐 아니라 교육과정별, 입국시기별, 한국어 능력별로 유학생이 경험하는 시간제 취업 경험의 차이와 변화를 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를 분류하자면, 성별로는 여성이 9명, 남성 7명이고, 입국시기는 2010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교육과정별로는 어학당 재학 4명, 학부 과정 5명, 대학원 석사 과정 4명, 박사과정 1명, 졸업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16명 가운데 3명은 자비가 아닌 본국 학교 장학금으로 한국에 들어와 공부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섭외는 한국에 입국한 지 10년 이상 된 몽골, 베트남 유학생 2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한 대학에 재직하면서 이 2명의 유학생을 알게 되었으며 1년 가까이 친분을 유지하며 지역 내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생활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자 섭외는 이 2명의 주요 정보제공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 인터뷰 진행 시 통역을 맡겨 유학생이 한국어로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내밀한 언어를 말할 수 있게 하였다.

5) 이 외에도 석사논문으로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에 대한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모두 유학생 당사자들이 연구한 것으로 장한정(2013), 리창(2019), 레비(2019)의 학위 논문이 대표적이다.

6) 2019년 현재,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44.3%(71,067명), 베트남 23.3%(37,426명), 우즈베키스탄 4.6%(7,492명), 그리고 몽골 4.6%(7,381명)를 차지하고 있다.

7) 불법체류 유학생의 국적별 규모는 2019년 현재 베트남 66%(9213명), 중국 13.8%(1930명), 몽골 7.6%(1066명) 순이다.

III 한국의 유학생 학업 중 노동 정책: 시간제 취업 제도의 변화

한국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간제 취업 허용을 도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유학생의 출신 국가, 전공, 장학금 수여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을 한국 정부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살펴보겠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과 관련된 규정은 2001년 처음 마련되었다. 이전까지는 주로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유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학교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리라는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2001년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을 유학을 보내는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공표하면서(배소현·김희수 2014) 자비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각종 조치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주 10시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주 20시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전공과 밀접한 직종에서 일한다는 조건 하에서 취업 가능 업종과 근무지 숫자도 확대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 취업허가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친한 정서 확산, 우수학생 유치, 유학생의 음성적 취업활동 차단”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⁸⁾ 다시 말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유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돌아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시행 이래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중도탈락·불법체류 유학생의 수가 함께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시간제 취업 허용을 “단기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취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⁹⁾ 방안으로 보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세세히 규정해나가기 시작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학생의 출신 국가, 전공, 장학금 수여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이상 인문계 유학생의 취업은 2007년 이후에야 가능해졌고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 장학생이거나 총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일학습연계유학비자(D-2-7)를 발급받아 한국 장기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¹⁰⁾ 또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 유학생의 경우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더라도 영어강사, 영어캠프 아르바이트 등 영어와 관련된 직종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간제 취업과 관련한 차별대우는 인증대학을 다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루어진다.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도입된 ‘인증제도’에 따라 불법체류율이 10%를 넘는 대학은 인증대학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주 20시간 노동 조건에 주말과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이 노동이 허가되는 반면에, 인증대학에 다니는 경우 2015년부터 주 25시간으로 확대되어 어떤 대학을 다니느냐에 따라 시간제 취업에 대한 차등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모두 시간제 취업을 ‘허가’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들이다. 현재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 해 취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터를 옮길 때 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학연수생의 경우 6개월 동안 1곳에서만 일해야 하며 제조업 분야 취업은 제한되어 있는 등 제약이 있어 많은 경우 허가 없이 노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16명 가운데서도 사전허가를 받고 노동을 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이 1명 역시 학교 소속 기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전 허가를 신청한 경우였다.¹¹⁾

8) 학생비자 외국인도 학원 강의, 『매일경제』, 2002.11.28.

9) 외국인 유학생, 공휴일 알바 시간 제한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2007.10.28.

10) 일학습연계유학비자(D-2-7) 소지자는 국내 대학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1회에 3년씩 비자가 연장된다. 거주비자로 변경할 때 가점 10점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면 가점 20점을 받는다. 일반 유학생은 연간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 조건도 면제받는다.

11)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노동하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 정도를 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V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경로

1. 범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선행연구들이 강조한 바대로 유학생의 대다수가 저소득 아시아 국가 출신자들이기 때문에 자국보다 훨씬 물가가 비싼 한국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자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두 국가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17년 기준 미화 11,170 달러(몽골), 6,450 달러(베트남)인 것을 감안하면 어학당 1학기 등록금이 250만원(약 2,100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등록금과 학비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연구에 참여한 16명 모두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등록한 어학당 첫 학기 등록금을 부모나 형제의 돈, 혹은 본인이 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해결하였다. 경제적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참가자들의 경우 2학기나 3학기 등록금까지 가족들의 도움으로 지급하였지만 이후의 학비와 생활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장학금과 본인의 노동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테지만 물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동기만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연구 참여자 모두는 한국 대학 입학과 동시에(어학 코스가든 정규 교육과정이든)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를 시도한다. 교육과정 등록 이후 6개월 안에 노동을 하다가 적발될 시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봐 두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¹²⁾ 임석준(2010)의 연구가 밝혔듯이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는 주변의 같은 국가 출신 친구들을 통해 수집된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같은 국가 출신 ‘친구들’은 또래 유학생에 제한되지 않고 미리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 등 ‘범 에스닉 커뮤니티’(larger ethnic community)로 확장된다. 이는 학생들 대다수가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본국 친구들은 같은 어학연수생으로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정보가 많은 장기 거주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래 대학생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고 심지어 대학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선택 가능한 거의 유일한 옵션이라 할 수 있다.

범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것은 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만드는 동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8년 입국하여 한국의 높은 물가에 가지고 온 용돈을 어학당 입학 후 석 달 만에 다 써버린 바타르(몽골, 남, 20세)는 매번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미안해 어학당 방학을 틈타 “일주일 정도 일을 해서 룸메이트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대학의 유학생 규모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100% 이상 증가하면서 대학 근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기에 바타르는 울산에 있다는 먼 친척 아저씨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해 울산으로 내려갔다. 이 먼 친척은 인력 사무소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으로 바타르는 프레스기를 쓰는 공장에 배치 받아 일당 85,000원에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했다. 기존 한국의 몽골, 베트남 이주민 커뮤니티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이 소위 ‘3D’ 노동 현장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이주자들도 기존 이주민 커뮤니티에 의존하게 되면서 저임금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 이주자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모두 이주 노동자와 흡사한 노동 시장에 진입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스케줄이나 방학 스케줄에 따라¹³⁾ 유동적으로 노동

12) 물론 모두가 6개월 노동금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16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3) 대개 일반연수비자(D-4)를 발급받아 대학 어학당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한국어를 익힌 뒤 유학비자인 D-2로 전환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어학당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규 어학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어학당 재학 시 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평일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공장 노동과 같이 보통 평일 낮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을 하기 중에 선택할 수 없다. 대신 ‘일’이 있을 때만 노동할 수 있는 이삿짐 나르기 업무나 농사일,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편의점 업무나 모텔 청소, 식당 서빙이나 설거지, 일할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퀵 배달 등의 일을 주로 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학생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보다 훨씬 더 유연한 스케줄로 일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저임금의 농업 및 서비스업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도 물론 기존 이주민 커뮤니티가 영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토야(몽골, 남, 31세)와 보르흐(몽골, 남, 31세)는 B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인근 대구시 공단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통해 ‘밭일’을 소개받아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밭일’은 대개 8~9명이 한 조가 되어 인근 농촌 지역에서 채소를 심거나 수확하는 등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움직이면서 일하는 형태인데¹⁴⁾ 함께 일하는 조원들은 유학생,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몽골 출신의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체류자격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학교 밖에서 형성된 에스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지지체계를 마련하게 되고 이를 통해 노동 시장으로도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 에스닉 커뮤니티의 성격과 지역사회 주요 산업 구조에 따라 학생 이주자들이 진출하게 되는 노동시장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세분화

학생 이주자가 진입하는 노동 시장은 학교 일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성별, 국적별, 한국어 수준별, 입국 시기별로도 세분화되어 있다. 남녀 모두 밭일이나 공장노동을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모텔 청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배달 아르바이트와 이삿짐 나르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적별로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이 따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이삿짐 나르기 업무는 몽골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이다. 통역을 맡은 10년 차 유학생의 말에 따르면 “사장들이 말 안하면 외국인인지 모르는 몽골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밭일 틈틈이 이삿짐 나르는 일도 했던 보르흐는 외국인인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이삿짐을 나르는 중간에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인으로 ‘오인 가능한’ 몽골 출신자만이 한국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이삿짐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인종적 편견과 인종주의가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특정한 노동 시장을 열어주거나 닫고 있는 셈이다.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구직 방식과 직종에도 변화가 생긴다. 입국 초기 전적으로 같은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구직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벼룩시장’을 보거나 ‘알바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직접 일자리를 구하거나 ‘알바몬’과 같은 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입국 시기별로도 노동 시장에 유입되는 과정과 경로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학생이주자를 둘러싼 대학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생기는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 해당 대학이 위치할 경우 유학생 수의 급증으로 지역 사회 내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타 지역의 에스닉 커뮤니티로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타르(몽골, 남, 20세)가 울산 지역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8~2019년에 입학한 학생 이주자들은 한결같이 경산지역 대학에 유학생 수가 급증해 일자리가 없음을 토로하였다. 경산시는 인구 23만 명의 도시인데 관내에 10개의 2년제 이상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대학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흥미로운 현상은 지역 인근 대학에 유학생 수가 급증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잉여 노동력이 된 유학생 다수와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한국인 업주를 단체로 연결시켜주는 조직적인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에 A대학 어학당에 입학한 두영(베트남, 남, 26세)과 탄명(베트남, 남, 26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경산, 대구뿐 아니라 인근의 구미, 영천 지역까지 알아봤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결국은 충북에 있는 베트남 친구

가능하다. D-2로 전환된 뒤에는 각자의 학교 수업 스케줄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간표를 작성하게 된다.

14) ‘밭일’은 일한 만큼 한 조가 돈을 받아서 조원들끼리 일당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략 하루 9시간가량 일할 경우 15만 원 정도 번다고 한다.

를 통해 충북 소재 C군의 식당 다수와 A대학 유학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알게 된 경우이다. 어학연수생인 관계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듣고 금요일 오후에 단체로 충북으로 이동, 일요일까지 C군 소재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산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단체 원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최근 1~2년 사이에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구직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3. 노동 시장 이동 경로

정리하자면 성별, 국적별, 입국시기별로 진입하는 노동시장과 진입과정이 차별화되는 동시에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교육과정별로 여러 노동 시장을 경험하고 있다. 자브(몽골, 여, 30세)의 시간제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 교육과정별로 어떻게 일터를 바꾸며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14년 일하던 직장에서 장학금을 받아 A대학 어학당에 등록한 자브는 평일 어학당 수업일정이 빽빽한 관계로 몽골 친구 소개로 근처 공단에서 일당 14만 원 정도 받으며 주말 종일 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후 한국어가 조금 능숙해지면서 스스로 인근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구해 시급 4,800원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다가 대학원 진학 이후에는 수업이 없는 날마다 시급 7,000원 정도로 오후부터 새벽까지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이 늘어나면서 시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일터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교육과정이 올라감에 따라 수업 시수가 줄어들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하는 것이다.

V | 노동경험의 보편성과 다양성

1. 노동경험의 보편성

이 절에서는 학생 이주자의 노동경험에서 보이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흔히 ‘두뇌’로 인식되는 유학생 노동과 잠재적 불법체류 노동자로 인식되는 유학생 노동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먼저 유학생 노동 경험의 보편성은 일을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연구에 참가한 유학생들이 거의 모두 흡사한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발견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두뇌’로 인식하는 정부 초청 혹은 대학 초청으로 들어오는 장학생의 경우, 경제적 절실함이 자비 유학생만큼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회적 욕구 때문에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고 다른 자비 유학생들이 그러하듯 에스닉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구직 앱을 이용해 흡사한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베트남 대학 장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리반투(베트남, 남, 27세)가 그런 예이다. 집안 사정도 상대적으로 넉넉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었지만 같은 기숙사를 쓰던 몽골, 베트남 유학생 친구들과 “돈 벌어서 방학 때 여행가자”는 계획을 세우고 편의점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석 달간 일한 경험이 있다. 이는 리반투에게 한정되는 경험이 아니다. 학교 장학금으로 들어온 다른 두 명의 학생도 한국어와 한국 사회를 배우기 위해 집 근처 서점에서 오래 일한 경험과 고기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 세대의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일 경험을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독립심과 자기결정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츰 성장해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세대 학생 이주자의 노동은 언어 향상과 유학 목적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며 낯선 땅에서의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향후 유학 목적국에서 일할 시를 대비하여 일을 습득하는 수단으로도 이해된다(Su 2018).

본 연구 참여자들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일 경험을 통해 독립심을 기르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나아가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술하였다. 충북의 C군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탄딩(베트남, 남, 26세)은 일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모든 것을 다 혼자하다 보니까 독립심, 자신감 이런 거 얻었어요. 또 인내심도 얻었고요, 인터뷰하는 경험도 얻었어요. 나중에 한국회사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서 하는 일이든 간에 한국에서의 노동을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로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리반투(베트남, 남, 27세)의 대답은 이를 뒷받침한다.

학교 다니면서는 한국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일하면서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한국어도 늘어서 좋았어요.

한국 사람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한국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대학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히 학교 밖 에스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학교 밖 한국 사회가 이들이 경험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회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어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한국 사장을 만나느냐가 이들의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

한편 노동경험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들 학생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국에서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저임금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경험하는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몽골에서 학교 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다가 A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한 코코(몽골, 여, 45세)는 어학당 재학 시절 방학을 맞아 몽골 이주 노동자 친구의 소개로 타 지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추행을 경험했다.

40대 후반, 50대 후반 이런 남자들이 예쁘다라던가 시간 있냐, 저기 가자, 오늘 내가 술은 다 살게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바다 놀러가자 이렇게. 사장도 그러고 손님도 별 다를 바 없었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교사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더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그냥 육체노동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 같고. 내가 외국 여자라서 그런 거 같고.

물론 이주자가 국경을 넘으면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는 것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주하는 이주민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Gans 2009). 다만 코코와 같은 학생 이주자의 경우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 어서 한국어를 배워 이 육체노동의 사회를 벗어나야겠다는 결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몽골이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엘리트 지식인의 위상이 전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를 교육받은 학자 집안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코코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대학 사회와 식당에서 만난 한국 사회를 비교해 보았다고 한다. 그를 통해 이제 “내가 이런 사회로 떨어졌구나”라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그나마 이성이 남아 있는 대학 사회에 어떻게든 머물기 위해서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이 노동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코코의 경우는 운 좋게 가족 동반비자가 금방 나와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성추행을 경험해 노동 시장을 벗어나고 싶더라도 결심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노동경험의 다양성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이 쌓이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기존의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동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기도 한다. 바트칸(몽골, 남, 32세)이 그 중 한 명이다. 2017년 입국한 바트칸은 여느 몽골 학생들처럼 발일도 하고 이삿짐도 나르는 일을 틈틈이 하다가 학교 근처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식당의 한국인 주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후 장사 부진으로 식당이 폐업하면서 비어버린 식당 자리에 몽골 식당을 차리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식당 주인이 수용하면서 바트칸은 몽골 식당 운영자로 거듭난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이 몽골 식당은 물론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근처에 거주하는 몽골 학생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다른 외국인 집단과도 접촉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었다. 아직 수익이 충분히 나지는 않기에 틈틈이 켜 배달 아르바이트도 겸하고 있지만 바트칸은 식당 운영 경험이 학위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마을 중심의 공동체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조그마한 동네에서라도 내 손으로 변화를 이뤄내고 싶어요. 몽골은 가난한데 비정부기구, 이런 거 동네에서 작게 만들어서 작은 변화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여기(식당) 있으면서 사람들이 출산을 하거나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식당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커뮤니티가 몽골 집단을 벗어나 근처의 다른 이주민 집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바트칸은 자신의 식당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이었다.

리반투(베트남, 남, 27세)의 사례도 흥미롭다. 돈 벌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중고 건설 중장비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개인 사업체를 만들었다. 베트남에서 건설업을 하는 삼촌의 조언을 받아 시작한 이 사업은 리반투의 영어, 한국어 실력과 한국에서 일하며 갖고 닦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 지금은 베트남 여직원까지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리반투는 한국의 대학과 학생이 ‘경영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 생각에는 대학에 창업 관련해서 그룹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경영학관데도 우리와 한국 학생들은 그냥 직원을 하려고 하지 (저처럼) 사장을 할 생각을 안해요. 저는 앞으로 사장되면 어떻게 일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똑같은 정보를 얻어도 앞으로 직원이 되면 어떻게 일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함께 인터뷰에 응했던 두영(베트남, 남, 26세) 역시 한국 입국 전 베트남에서 의료기계 회사에 다녔던 자신의 노하우를 살려 의료기계를 수출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 아르바이트 말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가능하면 의료기계 관련한 회사에 들어가서 전공과 관련된 것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회사 같은데서 인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일(설거지, 서빙)은 업무가 너무 달라서.

그러면서 두영은 “대학이 안전한 일자리, 관심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리반투처럼 사회경제적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손쉽게 ‘창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이 없는 단순 저임금 노동 시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며 새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망을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 대학이나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이상 이들은 계속해서 저임금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VI | 나가는 말

한국 정부는 친한 인재 양성과 음성적 취업 활동 근절을 위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학생의 출신국가, 전공, 장학금 수혜여부 등의 기준으로 이들의 취업 활동을 장려하거나 혹은 장려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 경험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학생 노동에 대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학생 신분을 이용하는 유학생을 걸러내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실상 학생 이주자들의 학업 중 노동의 이유, 노동 경험, 나아가 이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유학 중 노동을 규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재 한국으로 유입되는 학생 이주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할 때 이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혜·최희정. 2019. 한국 유학 선택과정과 초국적 연결망: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생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2, 3: 127~164.
- 김선아.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7집, 57-68.
- 박소진. 2013. “한국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한국문화인류학』 46, 1:191-234.
- 배소현·김희수. 2014.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변화와 개선. 『교육연구』 37: 67-89.
- 이민경. 2012. “지방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 들의 한국 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 연구』 18, 2: 177-201.
- 임석준. 2010. 외국인 노동자인가 유학생인가?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책임. 『21세기정치학회보』 20, 3: 55-77.
- 조은하·유기웅. 2017. 아시아 유학생의 진로선택 및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학연구』 23, 2: 77-111.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20, 2: 473-496.
- Bordoloi, S. D. 2014. “‘I am standing still’: The impact of immigration regulations on the career aspirations of wiv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SA.”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6(3): 607-624.
- Cha, Minyoung and Wonsup Chang. 2009. “Learning through working: a case study of Chinese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29 (3), 311 - 320.
- Crossman, J. E. & Clarke, M. 2010.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graduate employability: Stakeholder perceptions on the connection.” *Higher Education* 59(5): 599-613.
- Gans, H. 2009. First generation decline: downward mobility among refugees and immigrants. *Ethnic and Racial Studies* 32: 1658-1670.
- Liu-Farrer, G. 2011. *Labour Migration from China to Japan: International Students, Transnational Migrants*. London: Routledge
- Rizvi, F. 2005. “Rethinking “brain drain” in the era of globalis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25(2): 175-192.
- Singaravelu, H., White, L., & Bringaze, T. 2005.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students’ career choice.”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2(1): 46-59.
- Su, M. 2018. Work a Way Out: Breaking Monoethnic Isolation through On-Campus Employ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8, 3: 1363-1385.
- Zweig, D. 2006. “Competing for talent: China’s strategies to reverse the brain drain.” *International Labor Review* 145: 65-90.

세션 3-02

난민/이주민 구별짓기의 정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시장 경험

서선영 | 연세대학교

초록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4만2천여명이 난민신청자 중 2만 6천여명이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받았고,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964명이다.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대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이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 중 2,145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임시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자신의 생존과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난민에 대한 연구가 제도적 측면에서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분석, 난민 인권 및 생활실태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G-1 비자를 갖은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에 제주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인도적체류자 혹은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위치에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과정과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민속지 연구-mobile ethnography (Sheller and Urry 2006)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한다. 특히 난민심사 결정 이후 제주도 바깥으로의 출도제한이 해제된 시점 이후의 심층인터뷰 내용과 필드노트에서 추출된 자료에 기반하여, 이주민/난민의 인위적인 분리 속에서 강제되는 난민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체류의 임시성이 부여하는 경계적 합법성-liminal illegality이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션 3-03

동티모르(티모르레스테)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의 노동경험¹⁾

김철호 | 전북대학교, 김민정 | 이주여성인권 포럼

1 김과 전복,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관한 통계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림어업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가인구’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2009년에 비해 36.7% 감소하였다. 또 어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09년 24.8%에서 2018년에는 36.3%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표1)

이에 반해 국내 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분야의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2018년에는 28.3% 증가하였고, 생산금액 역시 29.8% 증가하였다. (표2) 이 가운데 한국인들이 집에서 또는 식당에서 즐겨 먹는 김과 전복의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2018년 각각 2.7배와 3.2배 증가하였다. (표3)

한편 해양수산부가 2017년 실시한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수산물 생산을 위해 고용한 인원’ 가운데 16.8%는 외국인이라고 조사되었으며, 특히 ‘어로어업’의 경우 25.5%, ‘양식어업’의 경우 24.3%에 해당하는 숫자가 외국인 피고용인인 것으로 나타났다.²⁾ 또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도입을 허용하는 이주노동자 숫자인 ‘도입쿼터’에 따르면 어업 분야의 경우 2006년 4,3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어업 이주노동자 도입 꾸준히 허용해 왔다. 2016년 이후에는 2500명 이상이 매년 도입되도록 하였다.³⁾

이 논문은 김과 전복 같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구는 감소하고 노령화하고 있는 반면에 그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그 가운데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동티모르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의 노동 경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표1) 어가인구, 2009-2018 (단위: 천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어가 인구	184.7	171.2	159.3	153.1	147.3	141.3	128.4	125.7	121.7	116.9
65세 이상 비중	24.8	23.1	25.4	27.8	29.9	32.2	30.5	32.5	35.2	36.3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조사」.⁴⁾

1)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8년(하반기)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 단체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본 논문의 저자와 함께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권소연, 이현우 변호사, 아울리아 야티 유니 선생님이 참여하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 국가통계포털 (2019) ‘어업인 - 수산물 생산을 위해 고용한 인원: 국적별, 성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6&tblId=DT_MLTM_5002879&conn_path=I2, 2019. 12. 20.)

3)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허가제 연도별도입쿼터안내’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2>, 2019. 12. 20.)

(표2) 국내 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2009-2018

(단위: 천톤,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	2,570	2,519	2,745	2,608	2,585	2,635	2,759	2,815	3,279	3,298
생산금액	5,760	6,061	6,606	6,034	5,819	6,077	6,234	6,399	7,433	7,478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⁵⁾

(표3) 국내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김, 전복), 2009-2018 (단위: 천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김	211	236	316	350	406	398	387	409	524	568
전복	6.2	6.2	6.8	6.6	7.5	9.0	10.0	12.3	16.0	20.0

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⁶⁾

2 | 연근해, 양식장, 염전에서 일하는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어업 이주노동자를 2개의 체류자격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연근해어업에서 일하며 「선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어선원'의 경우 '선원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E-10-2)을 부여한다. 2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한 연근해어업, 양식업, 염전 소금채취업, 수산물물의 운반, 가공 등의 어업분야에서 일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국하여 취업하는 어업노동자에게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E-9-4)을 부여한다. 전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단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의 문제가 보고된 바가 있으나,⁷⁾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비전문취업' 어업 이주노동자(E-9-4)의 노동경험에 주목한다.

'비전문취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정부의 근로감독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에 의한 노동권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연구진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어업(E-9-4) 외국인노동자의 국적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어업 이주노동자는 총 7,432명이며, 출신국 별로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순으로 많았다 (표4). 국내에 체류 중인 있는 어업이주노동자의 숫자를 각 출신국의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총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티모르의 경우 전체 인구의 0.55%가 국내 어업 이주노동자로 나타났다 (표5). 동티모르의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어업 이주노동자의 수가 4번째로 많지만, 출신국의 총 인구수와 비교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동티모르의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어업 이주노동자가 출신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e-나라지표 (2019) '어가 및 어가인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8, 2019. 12. 20.)

5) 국가통계포털 (2019) '어업생산동향총괄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1&conn_path=I2, 2019. 12. 10.)

6) 국가통계포털 (2019) 위의 자료.

7) 오경석 외 (2012)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16) 『바다에 붙잡히다-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표4) 출신국 별 총인구 대비 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의 비율
(어업 이주노동자 수 2018년 기준, 총 인구 2015년 기준)

(단위: 천명, %)

출신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어업 이주노동자 수 (총 7,432, 기타 120 포함)	2,643	2,204	1,806	659
총 인구	20,908	258,383	92,677	1,196
총인구 대비 국내 어업이주노동자 수의 비율	0.126%	0.0085%	0.019%	0.55%

출처: 고용노동부, UN Population (2019)⁸⁾.

3 노동권, 생활여건 실태 조사의 배경과 방법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는 어선원(E-10-2) 체류자격으로 취업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노동자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참여자 80% 이상이 '근무시간과 휴일 및 휴식시간'을 모르거나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고 대답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13.9시간에 달했으며, 36.1%가 산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선원 이주노동자 95%가 욕설, 폭언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 26.6%가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⁹⁾

2017년 해양수산부가 의뢰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수협중앙회의 외국인 어선원 교육을 이수한 사용자 3,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12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관련 업체 대표, 수협 조합장, 고용주 등과 7차례의 면담 및 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로 고용주들의 불만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당시 계약한 사업장을 이탈하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들은 사업장 이탈의 발생 원인으로 애초에 '입국 당시부터 수산업에 종사할 의향이 없었거나'(69.3%), '불법브로커의 성행'(22.8%)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받는 어업 이주노동자를 「선원법」에 통합시켜 어선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¹⁰⁾ 그러나 2016년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는 어선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국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었다.¹¹⁾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논문의 분석에 이용된 2019년 조사보고서¹²⁾는 동티모르 출신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가운데 1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노동 및 생활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명을 면접조사 하였으며, SNS 상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조사는 2019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조사방법 상 상대적으로 유효성이 높은 자료가 확보된 동티모르 출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특히 노동이주의 입국 전 과정이 상세히 조사되었는데, 이 내용은 추후 다른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custom data acquired via website.

9) 오경석 외 (2012)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0) 한국수산업어촌연구원 (2017)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해양수산부.

11)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16) 『바다에 붙잡히다-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12) 김민정 외 (2019)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E-9-4) 노동 환경 및 인권상황 실태 기초조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4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조사에 참여한 어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71.8%가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이었고, 월 1회 이상 휴일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3%에 지나지 않았다. 어업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휴일이 없이 일하고 있으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76.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다수가 별도의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날씨가 좋지 않아 조업을 할 수 없는 날이 유일한 휴일이 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육지 창고에서 간단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 다수의 노동자들은 근무 중에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항상 피로하고 수면이 부족하다고 증언하였다.

인천지역에서 일하는 한 동티모르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하는 곳으로 들어 간다. 5시에 가리비 일을 하러 가는데, 가리비를 수확하여 깨끗하게 씻은 후 자루에 담는다. 이 일이 끝나면 곧바로 굴 일을 하러 간다. 나는 굴 줄을 끌어서 기계에 가져오는데, 그러면 보스는 굴을 공장으로 옮기고 아줌마들이 나머지 일을 한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나야 하지만, 어떤 때는 굴 공장에서 아줌마들의 일을 도와야 해서 오후 7시까지 일이 계속되기도 한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616,393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조사참여자 34% 정도가 어획량 또는 수확량이 좋을 때 1회성 보너스(인센티브)를 받은 경험 있다고 답했으며 그 금액은 대략 80만원 정도였다. 임금체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조사참여자 34%가 현재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며 다수가 2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조사참여자 5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고용주가 가입을 거부해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7월부터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 직장 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이 조사는 그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은 작업이 워낙 힘들고 거칠다 보니 넘어지고 다치고 바다에 빠지는 일은 흔히 일어나며, 그물을 끌어올리다 팔이나 다리가 끼이거나 딸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조사참여자들이 무엇보다 힘들게 여기는 것은 작업장에서의 언어폭력, 폭행, 비인간적 처우였다. 노동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되지만 고용주, 선주나 한국인 동료가 일상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회복하기 힘든 심리적 외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나 공식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발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긴다'라고 대답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신고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사업장이동'을 신청한다. 이때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일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이 택하는 가장 마지막 방법은 더 나은 노동환경을 구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무단이탈'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마치 섬 주민 전체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상황이 되어 있어서, 섬을 벗어나기 위한 배를 타는 것조차 불가능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5 | 압축적인 착취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일이 너무 힘들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젊었을 때 짧은 시간 고생해서 나중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을 떠나면 다시는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티모르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자기개발이 마냥 희망적이지 만도 않다. 한국의 밥 상에 올라 오는 김과 전복, 새우 등 수산물의 상당수는 결국 이러한 젊은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을 볼모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래너리 세션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A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김재은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Original Articl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A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Sociological Theory
2018, Vol. 36(3) 262–288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8
DOI: 10.1177/0735275118794982
st.sagepub.com
 SAGE

Jaeun Kim¹

Abstract

Despite the centrality of the notion of “capital,” scholarship on international migration has yet to fully explore the generative potential of Bourdieu’s theory. This article “thinks with” Bourdieu to theorize how states, aspiring migrants, and migration brokers interact over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various types of capital for migration purposes. Drawing on Bourdieu’s theorization on the state, I identify the variegated ways in which state policies and their enactment by frontline gatekeepers constitut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 show how migration brokers help migrants acquire adequate capital—or the semblance of possession of such capital—to contest the state’s monopolistic claim over the governance of identity, qualification, and mobility. Drawing on Bourdieu’s conceptualization of field, *habitus*, *illusio*, and symbolic violence, I analyze how migrants partake in “organized striving” for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the uneven distribution of which produces material and symbolic stratification.

Keywords

Pierre Bourdieu, capital, migration control, migration brokerage, positional struggle

The notion of “capital” is no stranger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differential endowment of *human capital* and it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have long been central to the economic approach to international migration, explaining migration decision making, social mobility, and migration’s macroeconomic impact on immigration and emigration countries (Borjas 1989; Chiswick 2007; Todaro 1969). Migrants’ *social capital* has likewise played a foundational role in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ies of migrant networks, ethnic enclaves, and ethnic economy examine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helping migrants achieve cross-border and social mobility, their lack of other resources notwithstanding (Massey et al. 1987; Waldinger 1993; Wilson and Portes 1980). More

¹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USA

Corresponding Author:

Jaeun Kim,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LSA Building Room 4226, 500 S. State Street, Ann Arbor, MI 48109, USA.
Email: jaeunk@umich.edu

recently, the concept of *cultural capital* has opened a valuable approach to analyzing the global field of higher education, the global circulation of high-skilled workers, and the ways these new cosmopolitan cultural capital accumulation strategies change migration patterns, family lives, and social stratification across the world (Brown 2000; Igarashi and Saito 2014; Marginson 2008; Waters 2005).

Despite the centrality of the notion of capital to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ttempts to deploy Bourdieusian sociology—a key source of the broader conceptualization of “capital”—have been relatively limited in this field.¹ Bourdieu is duly credited as the originator of the social capital concept, yet the concept tends to be carved out of his broader theoretical edifice and subsumed under discussion of migrant networks and ethnic enclaves.² The impact of Sayad’s (one of Bourdieu’s closest colleagues) posthumously published monograph on Algerian immigration to France (2004) has been fairly marginal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³ Van Hear (2014) and Paul (2015) draw more explicitly on Bourdieu’s capital concept, beyond the notion of cultural capital: they demonstrate how differing and shifting volumes and forms of capital shape refugee and labor migration trajectories over the long run. The crucial role the state plays in capital valu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processes, however, is largely missing, and notions of symbolic capital and symbolic violence remain largely unutilized, in both accounts. These lacunae persist in studies that adroitly deploy other concepts of Bourdieu’s practice theory, especially the notion of *habitus*, for analysis of migrant decision making and status competition (Kelly and Lusi 2006; O’Reilly 2012).

I argue that migration scholarship can benefit from a deeper and more sustained engagement with Bourdieu’s theory. I draw on Bourdieu to analyze how states, aspiring migrants, and migration brokers dynamically interact over the contested production,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what I call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This is a variety of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other resources that enable migrants to access multiple forms of authorized and unauthorized passages into their desired destinations. Other scholars have evoked similar terms to capture an analogous process.⁴ However, these existing conceptualizations leave little room for theorizing the fundamentally *relational*, *political*, and *cultural* processes through which various resources are turned into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of differing values, (re)producing inequality in cross-border mobility and in the distribution of related material and symbolic goods.

I argue that a Bourdieusian approach offers a promising alternative in three respects. First, unlike other capital-centered approaches that often treat states merely as external constraints or cost factors, Bourdieu’s theory highlights how states are centrally and intricately involved in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different types of capital for migration purposes. I focus on Bourdieu’s insights into the state’s power of nomination,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which I apply to contemporary passport and visa systems. Second, Bourdieu’s conceptualizations of “convertibility” between different types of capital and the “delegation” of states’ symbolic power offer useful tools to capture how migration brokers engage in the governance of identity, qualification, and mobility. Instead of pitting “the mobility money can buy” against state sovereignty (Koslowski 2000), Bourdieu’s theory illuminates how the state *produces* the (il)legality and (il)legitimacy of a certain form of migration brokerage. Third, Bourdieu’s conceptualization of field, *habitus*, *illusio*, and symbolic violence helps us analyze how (aspiring) migrants partake in “organized striving” (Martin 2003) for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The uneven distribu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produces material and symbolic stratification in multilayered social fields, generating positional struggles among migrants and nonmigrants to reproduce or transform the existing structure of domination.

The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proposed in this article can reorient the sociology of migration in several ways. The emerging scholarship on “legal violence” (Menjívar and Abrego 2012)—partly inspired by Bourdieu’s conceptualization of “symbolic violence”—highlights the key role the state plays in producing “illegal” migrants, thwarting their incorporation, and legitimizing their symbolic denigration. Although a welcome development, this scholarship is limited by its exclusive focus on the receiving context,⁵ its generally draconian portrayal of state power, and its undeveloped theorization of the meso-level structure that mediates the encounter between state and migrants. These limitations reflect the fact that the notion of “legal violence” has been conceived mainly through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Central Amer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yet their mode of entry, leverage vis-à-vis migration brokers, and reception in the host society mark only one coordinate, however important and influential, along possible axes of variations. As Finotelli and Sciortino (2013:82) astutely point out in a different context, the iconic image of Fortress Europe, paired with widely circulated images of migrant suffering in the Mediterranean, may channel our attention to “the Fortress’ walls and moats” and away from “its bridges and gates.” By centering visa practices as a neglected yet important locus of migration governance, my approach brings into sharp relief *how* access to these “bridges and gates” is negotiated through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the states involved, migration brokers, and aspiring migrants. It also demonstrates how this negotiation is profoundly shaped by, and reshapes, material and symbolic inequality on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affecting the sending society along with the receiving one.

The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offers analytic tools sensitive to comparative variations and relational dynamics, as well as hierarchies among migrants. This approach, for example, encourages us to attend to how competitive struggles among holders of different kinds of capital shape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t also pushes us to move beyond the individualistic human-capital-centered approach and examine how the symbolic power of the migrant-*sending* state can determine the collective “creditability” of its citizens, and how individuals lacking such collective credit are forced to resort to various kinds of *private* credit. This approach helps us theorize the protean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migration brokers. Instead of describing the state-broker relationship simply as one of antagonistic symbiosis, my approach illuminates how states and migration brokers co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of cross-border mobility, and how the boundary between them is continually made, unmade, and remade in practice, with far-reaching consequences.

Furthermore, the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cautions us against portraying migrants—especially those whose cross-border mobility elicits suspicion and criminalization—simply as passive victims of organized crime cartels or as the benefactors and beneficiaries of mutual aid and communities of solidarity. In conceiving of migrants as strategic actors, the Bourdieusian approach I propose here avoids the economic and rationalistic bias prevalent in the microeconomic study of migration decision making. Yet this approach does not fall back on the problematic model of culture that too often informs interpretations of “irrational” migrant aspiration. By positing preference, aspiration, and ends as emergent properties of *illusio*, conditioned by one’s position in a social field, Bourdieu’s field-theoretical approach helps explain why migrant aspiration remains ever historically formed, unevenly distributed, culturally constructed, and morally contested. As a consequence, this analytic shift provides a richer and more dynamic conception of migrant illegality than is often construed in scholarship on legal violence. Beyond identifying state actions as a major source of migrant illegality and accompanying symbolic violence, we

must also pay attention to how migrants' positional struggles in national and transnational social fields can (re)produce and challenge the hegemonic rule regulating boundarie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nd between the deserving and the underserving.

I begin by summarily presenting Bourdieusian conceptual apparatuses relevant to the subject at hand. The three main sections of the article that follow elaborate in depth on the three strengths of the Bourdieusian approach sketched above. I draw not only on my own empirical work but also on a wide variety of examples from the existing scholarship—studies that mostly do not adopt the Bourdieusian framework unless indicated otherwise—to demonstrate the explanatory scope and strengths of my approach. I conclude by considering alternative approaches to, and potential critiques of,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focusing on its compar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nalyzing migration brokerage and migrant aspirations.

BOURDIEUSIAN CONCEPTUAL APPARATUSES

For Bourdieu, capital is not simply a resource but power: the values of different species of capital, the conversion rates between them, and the extent to which each species is deemed a legitimate source of domination emerge from competitive struggles among the holders of varying volumes and compositions of capital. The Bourdieusian approach thus urges u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largely positivistic view of capital in migration scholarship. For example, instead of treating educational credentials as self-evident indicia of the possession of valuable “human capital,” we are encouraged to examine how *claims* to technical competence and its inherent value, the collective (mis)recognition of which is systematically produced by educational credentials, serve as a strategic resource for domination (Bourdieu 1996). Instead of presuming the existence of groups to which social capital accrues, we are also encouraged to examine how various strategies to produce, valorize, and monopolize social capital *create* groups, transforming statistical classes into juridical ones (Wacquant 2013).

Bourdieu's (2000:185) conceptualization of symbolic capital highlights that the struggle for domination always entails “a (practical and theoretical) cognitive struggle for the power to impose the legitimate vision of the social world.” Symbolic capital is not a separate species of capital, but what every kind of capital becomes when it is perceived through a particular *habitus*—cognitive, affective, and embodied dispositions produced by prolonged exposure to forces in the field. *Habitus* enables individuals to give value to the capital at stake, (mis)recognize it as a legitimate source of domination, and make cathectic investment (*illusio*) in its pursuit. *Habitus* is thus the key to understanding how the dominated become complicit in their own domination by symbolic means: “habitus is the *vis insita*, the potential energy, the dormant force, from which symbolic violence . . . derives its mysterious efficacy” (Bourdieu 2000:169).

The concept of *illusio*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Bourdieu's opposition to two dominant, and mutually antagonistic, theories of social action. On the one hand, he impassionedly argues against demarcating social fields into ones in which instrumental reasoning prevails and others in which disinterested social agents are guided by norms and cultural values. However, he also criticizes utilitarian reductionism, that is, explaining all social actions as driven by actors' conscious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Instead, Bourdieu (1998:78) proposes the concept of *illusio*, the state of being preoccupied with and invested in (“in the double sense of psychoanalysis and of the economy”) the stakes of a *particular* social game. Only those who possess the disposition to recognize the stakes as worthy and worthwhile, who have “the enchanted relation” (p. 77) to that particular game, make

“(visceral, corporeal) commitment” (2000:153) to the game and compete for what is at stake. Actors’ positions in the field, determined by the volumes and compositions of capital they hold, prompt them to pursue, if more prereflexively than deliberately, different strategies in this competition: strategies to *conserve* or *subvert* the hegemonic rules of the game, and to preserve or transform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dominant in that field.

The state as a meta-field plays a cardinal role in shaping these various social games by exercising power over the valorization of different types of capital, the rates of conversion between them, and “the production and canonization of social classification” (2014:9). The modern bureaucratic state is “the site par excellence of the concentration and exercise of symbolic power” (1999:63); it has the power to impose practical categories of perception, appreciation, and action, and thereby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doxa*, “a set of fundamental beliefs which does not even need to be asserted in the form of an explicit, self-conscious dogma” (2000:15). What Bourdieu (p. 245) dubbed “rites of institution” are pivotal to the exercise of this symbolic power: “from the most trivial acts of bureaucracy, like the issuing of an identity card . . . to the most solemn, which consecrate nobilities,” rites of institution produce and naturalize lasting distinctions, in identity and competence, between those who have undergone the rites and those who have not yet done so. Such rites consecrate the former as a group deserving to be universally (mis)recognized as “legitimate impost[ors]” (p. 242).

To be sure, agents not directly mandated by the state perform numerous acts of nomination,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Examples include issuance of academic, professional, or medical certificates (p. 187) or real estate agents’ determination of customers’ credit scores (2005:151). The validity and efficacy of the “ontological promotion” (1996:376) fulfilled by these “delegates,” however, rests with the state, which functions as the “central bank of symbolic credit” (1999:56–57), based on its “monopoly over the legitimate use of . . . symbolic violence over a definite territory and over the totality of the corresponding population.” For Bourdieu, the state is at once everywhere and nowhere. It is omnipresent in the form of “the *nomos*, the official and effective principle of construction of the world” (2000:186), which contributes to logical conformity (in the Durkheimian sense) and “an immediate orchestration of habitus” (p. 175) among social agents. But at the same time—or precisely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the state is “well-founded illusion . . . a theological entity . . . that exists by way of belief” (2014:10): the state cannot exist so long as the mental schemas it creates are not used by actors to construct the world and performatively actualize these “symbolic divisions by inscribing them into materiality” (Wacquant 2013:281).

These insights have spawned an important body of scholarship on official categorization and accreditation practices and their group-making and world-making power (Barron et al. 2016; Brubaker 2002; Loveman 2005; Wimmer 2008). But these studies tend to limit their analytic scope to the territorial ambit of the state. Bourdieusian field theory has proved useful for exploring transnational and global processes surpassing the geographic scale of the nation-state (Buchholz 2016; Dezalay and Garth 1996; Fourcade 2006; Steinmetz 2008). But his theory of the state, compiled in the recently published lectures from 1990 to 1991 (Bourdieu 2014), does not address how the state’s symbolic power operates, or fails to operate, through its complex relations with *non*citizens, other states, or supranational bodies. Furthermore, despite Bourdieu’s enduring interest in the reproduction, legitim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structure of inequality, he is curiously silent on the fact that citizenship-based social closure, which entails exclusion from the territory and membership of affluent liberal democracies, remains the most powerful mechanism through which durable inequality is reproduced (Faist 2016; Korzeniewicz and Morgan 2012). If the question of

upward mobility is chronically conflated with that of cross-border mobility for those born with an unfortunate ticket in the “birthright lottery” (Shachar 2009), it seems urgent to examine how well Bourdieu’s theoretical edifice fares in accounting for the competitive pursuit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the uneven distribution of which produces material and symbolic stratification on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I now turn to the three strengths of a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BRINGING THE STATE BACK IN” REDUX

Nearly four decades have passed since Zolberg (1981) advocated for centering the state in the theor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Ou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s of immigration policy making in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ies—conceived as a product of complex interactions of cultural ideas of nationhood, electoral politics, interest-group dynamics, and judicial processes—has since significantly improved (Brubaker 1992; Freeman 1995; Joppke 1998; Zolberg 1999). The *bureaucratic* infrastructure of migration control, however, especially the working of the contemporary passport and visa systems, remains undertheorized.⁶ I find Bourdieu’s insights into the state’s power of nomination,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fruitful in this regard. Visa policies and their enactment by frontline gatekeepers function as powerful “rites of institution” consecrating those (allegedly) equipped with a certain profile of capital as deserving authorized passage. Using investment visas, skilled migration, family migration, and visa-waiver agreements as examples, this 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te—embedded in the interstate system—is *constitutive*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as it influences “what social properties constitute capital and the relative value of the different species in circulation” (Wacquant 2013:276).

Visa Practices as Rites of Institution

Various types of visas constitute the categorical grid through which the state perceives noncitizens, grants them different type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identities, and distributes to them differing degrees of access to its territory, labor market, and citizenship. The categorical schema organizing various visa statuse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desirable goods based on that distinction, and the conversion of capitals entailed by specific visa policies are legitimized and naturalized by the state’s symbolic power. For example,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immediately offer immigration visas, or even citizenship, to individuals who have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government-run projects or private business ventures (Shachar and Bauböck 2014), ratifying the nearly unmediated conversion of economic capital into desirable legal status.⁷ An assortment of “skilled” migration policies shape the value and convertibility of different types of cultural capital (e.g., degrees in health care, information technology, or other service- or knowledge-based sectors) as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producing ripple effects in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schools in both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Neilson 2009; Robertson and Crimson 2014; Xiang 2007).

Before racial selection in immigration policies became illegitimate, “whiteness” functioned as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n the Americas, Australasia, and other settler colonies in Africa (FitzGerald and Cook-Martín 2014; McKeown 2008)—or, to borrow Emirbayer and Desmond’s (2015) terminology, “racial capital” was converted readily to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State policies also determine which social ties can be immediately converted to migration-facilitating social capital (e.g., a heterosexual marriage to a citizen), while leaving the capitalization of other social ties latent and uncertain (e.g., a migrant

friend who may or may not introduce an aspiring migrant to a potential employer, or a same-sex union, depending on policies of the origin and destination states).

Street-level bureaucrats' discretionary decision making (Lipsky 1980) also shapes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capital for migration purposes. When applying for visas, aspiring migrants present evidence of economic (e.g., salary slips, bank accounts, title deeds, tax statements), cultural (e.g., language test scores, evidence of school matriculation, degree certificates), and social (e.g., documentary evidence of spousal relations with citizens, affidavits of potential employer-sponsors) capital they claim to possess. The foot soldiers of the gatekeeping state assess the validity of the presented evidence and convert, or decline to convert, these different types of capital to varying visa statuses. For example, immigration visas for family reunification often involve assessment of an array of evidence—birth and marriage certificates, DNA test results, wedding and honeymoon photos, phone records, face-to-face interviews with consular officials, and so on—by bureaucrats seeking to establish the authenticity of the alleged kinship or marriage ties (Alpes and Spire 2014; Kim 2011; Piot 2010; Satzewich 2015).

These seemingly mundane, reiterative bureaucratic transactions between migrants and state agents serve as “rites of institution”: they naturalize the symbolic power of the state to certify individuals' identities and qualities and produce authoritative distinctions based on this act of certification and consecration. The record of unsuccessful visa application—that is, the failure to get properly certified by the state—becomes part of the “memory of the state” (Matsuda 1996), negatively affecting whether another frontline gatekeeper sees the applicant as *credible* in the next round of encounters.

This credibility assessment, however, is not simply an assessment of individual merits. The symbolic power of the *migrant-sending state*, manifest in the credibility of its official documents, affects the convertibility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apital to which these official documents presumably attest. For example, kinship and marriage relations documented in the Cameroonian civil status registries are unlikely to immediately produce desirable visa statuses, because French consular agents “consider the Cameroonian State Registry to have little reliability” (Alpes and Spire 2014:269) and are likely to request a pile of additional supplementary evidence. As this example suggests, states vary in their capacity to function as “the central bank of symbolic credit,” that is, their capacity to cause “a de facto situation . . . [to] undergo a genuine ontological promotion” (Bourdieu 1996:376) by mere acts of official recording. The Cameroonian state is like a bank that has been declared insolvent: its low “credit rating” (cf. Fourcade 2017) affects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held by its citizens.

Visa-Free Mobility and Citizenship as Social Capital

States' varying ability to function as the central bank of symbolic credit illuminates why, in contemporary global mobility regimes, citizenship is as important as, if not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human capital for determining who gets in, on what terms, and at what costs. For example, every U.K. citizen, as a beneficiary of extensive visa-waiver agreements signed by their government, can enter the United States simply with a passport and legally stay in the country for up to 90 days. By contrast, a Pakistani graduate student may be denied a short-term visitation visa needed to attend an academic conference, even after going through the costly and onerous screening process at the U.S. consulate in Karachi.⁸ Some states even require different levels of financial liquidity from student visa applicants, depending on their citizenship. In Australia, for example, student visa applicants from countries classified as Level 4 (e.g., Indian citizens) “must prove possession of . . . [three] years of

living expenses in Australia (at AUD 12,000 per year),” whereas only one year of proof is sufficient for applicants from Level 2 countries like Israel and Indonesia (Neilson 2009:433). Bourdieu’s theory offers a coherent theoretical account of these phenomena, seemingly anomalous from the dominant human capital approach. I argue that visa policies in general, and the visa-waiver agreement in particular, turn citizenship in select states into migration-facilitating social capital.

Migration scholarship rarely considers citizenship as social capital,⁹ so it is worth returning to Bourdieu’s (1986:248–49, italics added) characteristically lengthy definition of the concept: “the aggregate of the actual or potential resources which are linked to possession of a durable network of *more or less institutionalized relationships of mutual acquaintance and recognition*—or in other words, to *membership in a group*—which provides each of its members with the backing of the collectivity-owned capital, a ‘*credential*’ which entitles them to credit, in the various senses of the word.” As Portes (1998:3–4) points out, Bourdieu’s social capital concept is decomposable into two elements: “first, the social relationship itself that allows individuals to claim access to resources possessed by their associates, and second, the amount and quality of those resources.” It is hard to miss the deep resonance between this two-pronged definition of social capital and Brubaker’s (1992) now classic claim that citizenship is the paradigmatic *object* and *instrument* of social closure: on the one hand, citizenship is “the aggregate of the actual or potential resources which are linked . . . to membership in a group,” so it serves as the *object* of social closure; on the other hand, “membership in a group” of citizenry “provides each of its members with the backing of the collectivity-owned capital”—while denying the same capital to nonmembers—so it serves as the *instrument* of social closure. The *doxic* quality that citizenship-based social closure acquired in the past century further suggests that citizenship, like nobility titles, can be seen as “the form par excellence of the institutionalized social capital” (Bourdieu 1986:251) that functions as symbolic capital.

Visa-waiver agreements show that cross-border mobility—despite having been neglected in the Marshallian formulation of citizenship (Marshall 1950)—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aggregate of the actual or potential resources” that citizenships in different countries entail.¹⁰ Visa-waiver agreements accord individuals recognized as citizens of select states collectivity-owned capital, a “‘credential’ which entitles them to credit,” to quote Bourdieu. That is, membership in a state ranked high in the global visa regime entitles one to generalized trust—the benefit of the doubt, so to speak—from the gatekeeping immigration state, leading to exemption from the state’s “remote control” measures (Zolberg 1999:75). By contrast, individuals holding low-ranked passports are treated as likely candidates for unwanted migration until proven otherwise.

Recall that Bourdieu questions “the ontological status of groups” (Wacquant 2013:281) and instead focuses on the mechanisms and politics of *group-making*. Just as “the representative, the sign, the emblem” make groups, passports, and visas confer “effective social existence” (Bourdieu 1986:252) on the category of citizenry they allegedly represent. They do so, in part, by defining individuals’ place in the horizontally segmented global interstate system and shaping experiences of cross-border mobility accordingly. This point is well illustrated by Harpaz’s (2013:190–92) analysis of how the availability of an EU passport to third-generation Ashkenazi Israelis (who are able to obtain one based on their ancestry) solidifies the group boundary between them and their non-Ashkenazi counterparts.¹¹ Their EU passports, which enable them to bypass the crowded non-EU-nationals queue at the airport, align them, in their eyes, with the “individualistic, liberal, and open-minded” West, in contrast to “non-Ashkenazi and non-secular Israelis” who act like “mindless oriental masses” or “brainwashed nationalists” “barbarically trying to push themselves into the queue where

they do not belong.” Another vivid illustration can be found in Jansen’s (2009) ethnography of the changing experience of cross-border mobility in the Balkans: the “red passport” of the former Yugoslavia used to make extensive visa-free travel across the Cold War geopolitical frontline a quintessential Yugoslavian experience; and then, the long queues outside EU member states’ embassies became a site where citizens of newly created Bosnia-Herzegovina and Serbia experienced “togetherness through humiliation” (p. 818). In these queues and at border inspections, bureaucratic categories become part of personhood and “the geopolitical becomes personal” (p. 821).

The passport of an unrecognized state has even lower value than a passport from the lowest-ranked recognized state, and this may contribute to *group-unmaking*. Navaro-Yashin’s (2007) analysis of the Turkish Republic of Northern Cyprus (TRNC), whose passport can be used only for a trip to Turkey (the only state that recognizes the TRNC), provides a good example. Despite an official ban by the TRNC government, many Turkish-Cypriots have applied for passports from the Republic of Cyprus (the state from which the TRNC separated in 1974) for international travel and migration. This defection *on paper* has accelerated since the EU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Cyprus in 2004 and the accompanying increase in the value of its citizenship as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Navaro-Yashin relies on actor-network theory to analyze the complex effect of what she calls the “make-believe” passport of the unrecognized TRNC state. But just as illuminating is Bourdieu’s (2014:10; italics added) claim that “the state is a theological entity . . . that exists essentially because *people believe* that it exists.” Missing in Bourdieu’s formulation, however, is that it is not just peoples’ belief (like TRNC citizens) but also *belief on the part of other states* that enables the state to function as the “central bank of symbolic credit” and confer “effective social existence” on its citizenry. As McKeown (2008:1) succinctly summarizes, “The efficacy of the document depends on recognition of the issuing entity as part of an interlocked order of nation states.”

In summary, a Bourdieusian reconceptualiza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f adequately buttressed by a transnational perspective, enables us to theorize how migrant-receiving and sending states *constitut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However, the state’s monopoly over the legitimate use of symbolic violence, as well as the legitimate means of movement (Torpey 2000), does not go uncontested. I now turn to how various migration brokers partake in the governance of identity, qualification, and mobility by forming variegated relationships with aspiring migrants and the states involved.

BROKERING MIGRATION IN “THE AGE OF INVOLUNTARY IMMOBILITY”

Immigration states’ entry control, which has turned “the age of migration” (Castles and Miller 2003) into “the age of involuntary immobility” (Carling 2002) for the majority of the world’s population, produces a structural demand for brokerage (Faist 2014). Mediating between the gatekeeping state and aspiring migrants, migration brokers (broadly conceived) help migrants acquire adequat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or the semblance of possession of such capital—that can facilitate their entry into desired destinations. Instead of relying on familiar antinomies in social science, such as profit versus solidarity/altruism or market versus state, I focus here on the fuzzy interface between regulatory state authorities and private migration brokers by mobilizing Bourdieusian notions of capital, credential, symbolic power, and classification struggles. The analysis of various forms of legal and illegal migration schemes—covering investment citizenship, labor/marriage/educational migration, visa overstays, and human smuggling—demonstrates how migration brokers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of cross-border mobility and how the state actively produces the (il)legality and (il)legitimacy of certain forms of migration brokerage.

Beyond Profit versus Solidarity and Market versus State Binaries

Research on the meso-level structure that mediates the gatekeeping state and aspiring migrants has focused on how various intermediaries help migrants overcome state-enforced immobility by providing logistical, financial, informational, and social assistance that would be otherwise unavailable. On the one hand, migrant network theory focuses on the norm of mutual aid, solidarity, trust, and accountability among network members to explain what motivates the provision of such services (Gurak and Caces 1992;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The literature on the migra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highlights the centrality of financial rewards that drive the proliferation of entrepreneurs seeking to profit from the market for cross-border mobility (Hernández-León 2008).

Demarcating the migration industry as a distinct analytic category relies on some familiar antinomies in social science: profit versus solidarity/altruism and market versus state. On the one hand, the shift of scholarly attention from “altruistic” social networks to “profit-oriented” brokers is partly a response to migrant network theory, which tends to emphasize symmetrical exchanges and community solidarity, while rendering invisible power asymmetry, exploitation, and exclusion (Krissman 2005). On the other hand, migration brokers are often compared to “wild weeds cropping up constantly,” despite a state’s efforts to wipe them out (Xiang 2012:67). However, taking these commonsensical antinomies as self-evident analytic categories can be problematic.

First, these categories do not neatly map onto the complex assemblage of actors that characterizes migration brokerage. In some cases, in-group membership “offers the chance to commodify solidarity,” that is, to use one’s position in a kinship, village, or coethnic network—and the trust that comes with it—for personal monetary gain (Hernández-León 2013:29; also see Spaan 1994). Conversely, some migration brokers register their businesses as nonprofits, highlight their commitment to community and national development (e.g., through overseas employment), or act like government agencies (Alpes 2013a; Guevarra 2010). State actors in migrants’ origin countries, driven as much by financial reward from the labor export trade as by the desire to regulate it, may also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complex agent chain (Rodriguez 2010; Xiang 2012).

Furthermore, how to categorize a certain organization involved in migration brokerage—as nonprofit or for-profit,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can entail a classification struggle, not only by analysts but also by actors themselves. The world of NGOs may be shaped by the logic of the market, but activists involved in the “rescue industry” (Agustín 2008) have a vested interest in highlighting their *categorical difference* from commercialized migration brokerage, or, to borrow from Bourdieu (1998), in demonstrating their “disinterestedness.” In a similar vein, a state that provides its passport in exchange for a large investment sum takes pains to stress the development-producing and civic-life-enhancing effect of investment, in the face of accusations that the policy renders citizenship merely a high-price commodity, and the state a migration broker that sells it (Shachar and Bauböck 2014). Aspiring migrants, however, may dismiss the state’s claim to “disinterestedness” by equating expensive visa fees with brokerage fees, and “public” consular officials with “private” migration brokers (Alpes 2013b). A Guatemalan migrant interviewed by Hagan (1994:105), for example, memorably called U.S. immigration authorities “the biggest coyote around.” These examples reveal the problem of taking the categories of practice deployed by differently positioned social agents, especially the

“categories of thought produced and guaranteed by the state” (Bourdieu 1999:53), directly as the categories of analysis.

I thus analyze migration brokerage without pitting a priori profit orientation against altruistic motives or market/private actors against state/public actors.¹² I define migration brokers as an ensemble of actors who help aspiring migrants acquire, *in a relatively expedient manner*, the adequate profile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or the semblance of possession of such capital—to secure authorized or unauthorized passage into their desired destinations. The formation and growth of brokerage networks are driven largely, if not exclusively, by financial rewards. Yet brokerage networks may also include state actors and organizations conventionally classified as “nonprofits” (e.g., community organizations, advocacy groups, and faith-based organizations). These groups become the constituent nodes of brokerage networks through, among other ways, rent-seeking, remittance-driven developmental strategies, regulatory needs, delegation by labor-importing states, and advocacy for (a particular group of) aspiring migrants. According to this broad definition, migration brokers would include a Bulgarian church in Moldova issuing certificates of membership to Moldovan citizens who want to acquire evidence of their Bulgarian ethnicity—that is, evidence of their possession of “ethnic capital”—to secure Bulgarian, and by extension, EU citizenship (Dumbrava 2018).¹³ Migration brokers would also include numerous state agencies in the Philippines—for example, the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the International Labor Affairs Service (ILSA), and the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that monitor trends in global labor demand, offer its citizens extensive opportunities in skill training (from computer programming and seafaring to nursing, housekeeping, and “entertainment”), and aggressively market the superiority of Filipino migrant workers to overseas clients (Rodriguez 2010).¹⁴ For brokers like a Bulgarian church or relevant state agencies in the Philippines, financial gain (in the form of donations, fees, and revenues) may be a secondary, although not entirely absent, concern.

The convers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capital is essential for the work of migration brokerage. Consider, for example, how commercial agencies brokering overseas employment, study abroad, or international marriage operate. The services these agencies provide include skill training (e.g., job training, tutoring for language tests, coaching for interviews), matchmaking with potential visa sponsors (e.g., overseas employers, universities, citizen spouses), and assisting in the acquisition of required official documents (e.g., identification documents, financial statements, and medical, degree, or marriage certificates). In exchange for a fee, these agencies transfer to migrants relevant capital—and the documentary evidence certifying the possession of such capital—to produce desired visa statuses. In other words, these brokers facilitate the accumula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by helping aspiring migrants convert their economic capital (the compensation they offer brokers) expediently into evidence of economic, cultural, or social capital that can facilitate their entry into desired destinations.

Migration brokers do not simply engage in capital *conversion* to meet the criteria set by the gatekeeping state in advance; in some contexts, they proactively partake in the *valorization* of certain resources and properties for migration purposes. The highly institutionalized recruitment and predeparture training of live-in care workers in Southeast Asia provide ample examples (Liang 2011; Rudnyckyj 2004). Considering (perceived) employer preferences and relevant state regulations, migration brokers (including state actors on the sending side) assign values to different skin tones, ethnoreligious backgrounds, educational levels, and marital/pregnancy statuses of potential migrants. They select recruits on these criteria, design predeparture training programs to nurture various “desirable” characteristics, and

certify and market the “quality” of migrants they supply. Migration bureaucracies in the Philippines, for example, have mobilized the racialized and gendered stereotype caricaturing Filipinas as inherently caring and nurturing so successfully that “being Filipina” itself has become potent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leading to coveted overseas jobs as health care, childcare, and elder-care providers (Kelly and Lusia 2006:843; see also Rodriguez 2010 for the government-run Super Maid program). In these cases, migration brokers act like “delegates,” performing acts of nomination,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for potential employers or labor-importing states.

The conversion and valuation work migration brokers engage in often enables aspiring migrants to take a shortcut—some legal, some not—in their capital accumulation. Instead of investing considerable resources and time in earning relevant credentials, some prospective migrants may turn to migration brokers who can create, in a much shorter time span, the *semblance* of these credentials. The international education industry, for example, is chronically haunted by the specter of “visa mills” that allegedly convert tuition fees into coveted student visas without actual skill transfer. “Marriages of convenience” provide another example: contracting paper marriage through commercial marriage brokers and securing immigration sponsorship with no (emotional) strings attached can be an easier, faster, and indeed more convenient way of acquiring this potent social capital. Agencies brokering such marriages may coach the couple to create an assortment of evidence of courtship and marriage (i.e., the semblance of the possession of relevant social capital) to pass the screening at the consular office.

The State and the Production of (Il)legal Migration Brokerage

The previous paragraph depicts the state as being constantly threatened by deceptive migration brokers. Recall, however, that Bourdieu problematizes the facile assumption of a clear distinction between genuine and fake credentials, between substance and semblance, between truth and fraud. He instead examines how various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practices *produce* what he felicitously calls “legitimate imposture” (Bourdieu 2000:242). For Bourdieu, it is the state’s symbolic power that renders certain impostures legitimate, yet not others. This insight helps us develop a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variegated ways the state relates to migration brokers, or to put it differently, the ways the state *produces* the (il)legality and (il)legitimacy of any given form of migration brokerage.

Despite the widespread metaphor of the state–broker interaction as a perennial, antagonistic cat-and-mouse game, *consecration* by the state is central to the capital valuation and conversion work that migration brokers perform. An increasing number of labor-importing states require employers to delegate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ers to designated agencies, giving an *ex ante* authorization to the work these agencies perform (Surak 2017; Xiang 2012). In a similar vein, the Australian government authorizes the conversion work (i.e., economic to cultural capital) carried out by “PR (permanent resident) factories,” that is, colleges that provide degrees in fields that result in PR status for fee-paying foreign students (Neilson 2009). The success of a Swiss wealth management company, Henley & Partners, provides a clear example of the state legitimizing, rather than criminalizing, the commodification of mobility by migration brokers. The company serves as an intermediary between “internationally mobile entrepreneurs and investors”¹⁵ from the Global South seeking greater freedom to travel and governments willing to offer residency or citizenship/passports in exchange for a significant investment (Clenfield 2015).

The state's involvement in the legitimization of what are often pejoratively called "pay-to-stay" (or "pay-to-be-mobile") schemes, however, may result in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legitimate) regulatory state authorities and (illegitimate) private agencies, undermining the state's symbolic power predicated on doxic (mis)recognition of such boundaries.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U.S. government's sting operation to crack down on student visa fraud provides an interesting example (Robbins 2016).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t up a fake university, called the University of Northern New Jersey (UNNJ), to lure brokers who recruited foreign students trying to maintain their student visas without actually attending classes. Some of the 1,076 students facing deportation for their involvement argued that they were duped not only by the brokers but also by the government, whose active deception included listing the UNNJ as a state-certified school on various government websites. From these students' perspective, the U.S. government was an integral part of this illegal scheme. To apply Bourdieusian terms, the government's involvement in *consecration* of the UNNJ made these students *(mis)recognize* the conversion of their economic capital (i.e., brokerage fees ranging from \$3,000 to \$12,000) into the semblance of cultural capital—and a desirable visa status—by this university as "legitimate imposture." Given many Western universities' considerable financial reliance on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broad availability of investment visa/citizenship schemes, the boundary between licit and illicit "pay-to-stay" (or "pay-to-be-mobile") schemes may not be so clear-cut. After all, "immigration fraud" is an outcome of complex struggles of differently positioned actors, including, most importantly, the modern bureaucratic state that holds a monopolistic claim over the "truth" of individuals' identities and qualifications, as well as over the legality of the capital conversion work in question.

The state does not simply respond—supportively, ambivalently, or punitively—to the work of migration brokers. By determining the "credit-worthiness" of the people under examination, the state delimits and constitutes the kinds of services, legal or illegal, that migration brokers can offer in a particular sending community. In his analysis of human smuggling into Germany, for example, Neske (2006) reports that obtaining visas by artifice was not a broadly used migration scheme in many African countries, because Germany's highly restrictive visa policies made the issuance of tourist visas an extremely rare event in these blacklisted countries. Most citizens of these states could not afford the prohibitively high brokerage fee to make up for their deficit in "collectivity-owned capital" (Bourdieu 1986:249).

My ethnographic research in a migrant-sending community in northeast China (Kim 2018a) also shows that preorganized stage-to-stage smuggling schemes (Neske 2006) can prosper only in certain types of migrant-sending communities. In this scheme, migrants conduct the entire journey, involving complicated logistics and multiple border crossings, almost completely accompanied by brokers who constitute a loosely connected transnational human smuggling network. This preorganized migration scheme is more efficient, yet much more costly, than other more spontaneous forms of unauthorized migration (e.g., self-organized "working for passage" or "pay as you go" scheme [Zhang 2008:70]). For this costly scheme to prosper, a community must reach a threshold level of wealth at which its residents can afford the fees (if on loan), yet are not wealthy enough to make popular destination countries loosen their visa restrictions (which would make "obtaining visas by artifice" available as a less costly, more effective, and safer option). To put it differently, the level of collective capital accumulated in this mature sending community (via savings from previous migration ventures or remittances from abroad) makes its residents *creditworthy* from the perspective of migration brokers (in particular, moneylenders), yet not from the perspective

of gatekeeping immigration states. Their collective deficit in *state-accorded credit* makes it difficult for residents in these communities to convert their capital into desirable visa categories. This forces them to resort to expensive preorganized stage-to-stage migration schemes based on *private credit*. To paraphrase James Baldwin, it can be extremely expensive to be capital-poor—and credit-poor—in contemporary global mobility regimes.¹⁶

State policies also largely determine the commodity values of different passports. Visa-waiver agreements can turn counterfeit passports of desired states into high-demand commodities. The pursuit of a more desirable passport, however, is not necessarily an underground activity in this age of increasing tolerance toward dual/multiple and investment citizenship. With the proliferation of investment citizenship, not only can commercialized middleman like Hanley & Partners profit, but so can states themselves, by selling these high-demand passports. Not all multiple passport holders, however, are wealthy transnational elites, the symbol of hypermobility and flexible national identification (Ong 1999). As Gaibazzi's (2014:44) poignant ethnography notes, the multiple low-ranked passports (from Ivory Coast, Mali, Ghana, and Gambia) that his informant had accumulated over the years are "visible traces of [his] failed attempts to find loopholes in the global visa regime," the certification of his "legally-induced immobility." Interestingly, the asylum policies of affluent immigration states may reverse the normal ranking of passports, and hence their value as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Koser (2008:7), for instance, reports that "since the fall of the Taliban and the commencement of the 'war on terror,'" human smugglers have provided Afghan passports for Pakistanis for fees, "anticipating sympathy towards Afghan refugees in the West."

ORGANIZED STRIVING FOR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 now turn to Bourdieu's conceptualization of field, habitus, *illusio*, and positional struggle to analyze how migrants actively and variedly partake in "organized striving" (Martin 2003:20) for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ndividuals' profiles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shape the investments they make and the strategies they pursue. In portraying migrants as strategic actors, the Bourdieusian approach is not constrained by the economic and rationalistic theory of social action. This approach instead emphasizes the critical role that the inculcation of particular categories of perception and appreciation plays in the formation of migrant aspiration. The uneven distribu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produces material and symbolic stratification and generates distinctively transnational positional struggles, which intersect in revealing ways with the field of nationally oriented positional struggles. The section further illuminates the status implication that various legal and illegal migration schemes have for those who harness these schemes by analyzing how (aspiring) migrants reproduce or challenge symbolic violence they are subjected to.

Migrant Aspiration: Field, Habitus, and Illusio

Migrants are strategic actors who competitively accumulate and mobiliz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over the course of their migration careers. The volume and composition of capital they possess shapes the investments they make and the strategies they adopt in pursuit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Paul 2011, 2015; van Hear 2014). For example, male college students in Hyderabad, India, increasingly choose to major in electrical engineering or computer science rather than medicine, because the visa policies of several immigration states turn IT-related degrees readily into migration-facilitating cultural capital. Parents with daughters of marriageable age, seeking to convert their own economic

capital into migration-facilitating social capital, offer larger dowries to “IT people” (in the local parlance) than to future physicians (Xiang 2007).

The pursuit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s not entirely a product of rational calculation, however. The inculcation of particular categories of perception and appreciation (*habitus*) is essential for individuals to recognize, give value to, and make cathectic investment (*illusio*) in the pursuit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Alpes’s (2012) ethnography of pervasive aspiration for “bushfalling” (an emic term denoting frequently unauthorized migration adventures to the West) in Anglophone Cameroon, for example, shows that a person with no education who “goes to bush” tends to garner more respect than informants such as Pamela who has a local law degree. Pamela’s parents’ decision to invest their entire pension scheme in her bushfalling project was informed not simply by the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but by the “symbolic system of socially inscribed moralities” (Alpes 2012:93) that shapes the local appreciation of bushfalling as an admirable “life-making” project (Carling 2002).

That migration is a culturally constructed project laden with moral meanings and status implications is hardly news, as the popularity of the concept of “culture of migration” (Kandel and Massey 2002) attests. However, the theory of culture and action underlying this concept—invoking a somewhat diffusely shared system of collective beliefs to explain seemingly noninstrumental or irrational actions—has come under intense scrutiny in the past two to three decades (Strand and Lizardo 2015).

Bourdieu’s theory offers a promising alternative approach by encouraging us to examine how *historically formed* and *unevenly distributed* dispositions enable some, yet not others, to recognize and become invested in their stake in the accumula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Bourdieu can also help us identify “the emergence and elaboration of a new form and metric of valuation” (Gorski 2013:344) guiding positional struggles in the transnational social field,¹⁷ which intersect with nationally oriented positional struggles in a variety of ways. Analysis of these multilayered competitions helps us understand the varying orientations (at times antagonistic positions) that (aspiring) migrants and nonmigrants take toward the hegemonic rules regulating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capital. The symbolic struggle between peasants and urban elites in southern China over the meaning of overseas migration, the popularity of U.S. birth tourism among upper-middle-class Turkish citizens, and the diver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for immigration purposes in various sending communities offer cogent examples to flesh out these points.

A zeal for out-migration in postsocialist China, especially among peasants, cannot be explained without considering the socialist *hukou*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hich historically constrained peasants’ geographic and social mobility and relegated them to the bottom of the sociospatial-symbolic hierarchy. Against this background, Chu (2010) describes a telling example of how the remittance-driven wealth of peasants-turned-migrants becomes a source of symbolic struggle between peasant migrants and urban elites in Fujian, southern China. Chu notes that Fujianese migrants of peasant origin prefer (fake) U.S. dollar bills to (fake) Chinese RMB bills for ritual offerings to ancestors. By choosing USD over RMB for the currency used for spiritual purposes, peasant migrants present their newfound wealth, originating from their (frequently) unauthorized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s respectable, or even morally superior to the RMB wealth of nonpeasant elites, which they claim originated in “embezzlement, bribery, favoritism, and other corrupt practices” (Chu 2010:202). Elites, in response, openly despise the unauthorized migration and religious practices of these peasants, ascribing both to their continued “backwardness.” In so doing, elites try to prevent the peasants’ increased economic capital from turning into symbolic capital that might challenge the status hierarchy.

The national and transnational fields of positional struggles intersect differently in the case of upper-middle-class Turkish citizens' birth tourism.¹⁸ Frequently traveling to North America and Europe and seeing themselves as global citizens, upper-middle-class Turkish citizens resent the visa policies that lump them in with their fellow countrymen, despite the differential capital endowments that separate them (Balta and Altan-Olcay 2016:952). This sentiment is informed by the historically constituted binaries—the West versus the East, progressive secularism versus backward Islamism—that shape their self-understanding, aspirations, and anxiety (Altan-Olcay and Balta 2015). Some Turkish citizens, seeking a better passport that fits their standing, mobilize their capital to engage in birth tourism to the United States. Birth tourism therefore functions simultaneously as a *subversion* strategy on the global level and as a *conservation* strategy on the national level—a response of Western-oriented elites to the rising hegemony of Islamism at home that poses a threat to their dominant position in the national field of class struggle.

The divergent perceptions of “marriages of convenience” offer another rich example of how (aspiring) migrants and nonmigrants come to take antagonistic positions toward the hegemonic rules regulating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various types of capital for migration purposes. In most migrant-receiving societies, a “marriage of convenience” is considered legally suspect and morally reprehensible. In some sending societies like Anglophone Cameroon, however, getting involved in courtship, sexual commerce, and marriage for migration purposes—that is, converting “erotic capital” (Hakim 2010) or “sexual capital” (Martin and George 2006) into migration-facilitating social capital—is broadly seen as a socially permissible practice, as immigration papers replace the traditional bride wealth that most local men can no longer provide (Alpes 2012). Migrants, however, are not homogeneous in their attitude toward marriage for migration purposes as their positions in national and transnational social fields vary. Some Brazilian marriage migrants to Norway who are highly educated and hold high-income jobs, for example, take pains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their compatriots who allegedly pursue marriage with Norwegians as an instrument of migration. Unlike the latter, they argue, their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credentials (i.e., their rich cultural capital) could have brought them to Norway anyway, and their marriages are products of love, not instrumental pursuits (Horst, Pereira, and Sheringham 2015). To add another twist, some migrant spouses may find it imperative to stress the purely “instrumental” and “fake” characteristic of their marriages for migration purposes, so as to protect their reputation in the transnational social field. Providing only economic capital, and not erotic or sexual capital, in exchange for immigration sponsorship can appear as an expression of female virtue rather than vice, signifying the migrant spouse's persistent devotion to her family left in the sending community, including her “real” romantic partner or “real” husband (Kim 2011:778–79).

Symbolic Violence and the Struggle for Moral Worth

Migrants' positioning is never static. Their profiles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change over time, as do their commitment to different migration projects, leverage vis-à-vis gate-keeping states and migration brokers, and orientation toward the hegemonic rules of capital conversion for migration purposes. These changes are driven not only by individual migrants' capital accumulation processes, but also by cumulative changes in the broader field, shaped largely by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states and migration brokers. The proliferation of migration brokerage, for example, may expedite the accumula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n a given sending community by making a vast range of migration schemes available to a greater number of people. Or, the loosening of visa regulations may make

obtaining tourist or student visas easier (and thus easier to overstay) and render more costly alternatives (like preorganized stage-to-stage smuggling) less popular. These field-level changes may stigmatize certain unauthorized passages that were previously widely utilized. In many sending communities in the Global South, for example, clandestine border crossing is often accepted as an illegal yet licit practice. In fact, the capacity to borrow money to embark upon an expensive *unauthorized* migration venture is often “touted as confirmation of others’ respect and confidence in their credit-ability” (Chu 2010:169). But as more dignified entries become broadly available through the loosening of visa policies, clandestine border crossings may become associated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its stigma.

The status implication that various legal and illegal migration schemes have for those who harness them needs to be discussed more fully. Visa status, backed by the state’s symbolic power, is sometimes assumed to reflect a person’s innate competence and virtue, instead of being seen as a thin bureaucratic category assigned contingently and arbitrarily (recall the pride of Ashkenazi Israelis holding EU passports [Harpaz 2013]). More generally, the level of control migrants can exercise over their migration trajectory—the destination, itinerary, timing, length, pace, and modality of travel—lies at the heart of the embodied experience of cross-border mobility and its status implication.

Migrants who are frequently lumped together as homogenous “illegals” in fact experience vastly different levels of control over their migration trajectories. Compare a Ghanaian migrant traveling via a commercial flight to Amsterdam to enter into a paper marriage with a Dutch citizen versus his compatriot stranded in Niger and Libya for years, working for passage until he is finally smuggled to Spain on a dangerous trip across the Mediterranean, despite his original plan to join his family members in Italy (Lucht 2013). Chu’s (2010:108, 115) ethnography further illustrates how different methods of departure, and the different levels of control over one’s embodied mobility that these methods entail, “stratify [Fujian] villagers as differentially mobile subjects along a hierarchy of travel”: migration schemes that enable travel by air, with its superior directionality, speed, comfort, and predictability, almost “[elevate] passengers literally and figuratively” over and above those who have no alternative other than being smuggled by sea, crossing land borders clandestinely, or even getting stranded en route indefinitely. As Bourdieu (2000:225, 228) succinctly states, “Capital in its various forms is a set of pre-emptive rights over the future. . . . [M]aking people wait . . . delaying without destroying hope” plays an integral role in the working of domination.

These examples reveal that becoming “illegal” simply by overstaying one’s original terms of authorized entry can represent a tremendous achievement for low-capital migrants. Obtaining a visa by artifice presupposes the visa holder’s success in signaling harmlessness, credibility, and deservingness to the foot soldiers of global mobility regimes. Applicants’ success, however, may be produced largely by factors beyond their control. Along with citizenship-based visa-waiver agreements, statistical profiling and categorical thinking are prevalent in the everyday discretionary decision making of frontline immigration bureaucrats (Gilboy 1991). For instance, many Fujianese migrants try to acquire counterfeit non-Fujianese identification cards, because U.S. consular officials are less likely to issue legitimate entry visas to Fujianese applicants (who they deem more likely to be “illegal” migrants) than to Chinese citizens from other regions (Zhang 2008:60). Becoming “illegal” by overstaying the original terms of authorized entry is therefore as much a *collective privilege* as an *individual achievement*. Nevertheless, individuals who are able to take a less stigmatized path to “become illegal” often present this outcome as a reflection of their intrinsic virtue. And those who can afford only less dignified modalities of travel suffer from the stigmatizing insinuation (or outright accusation) of their innate criminality. This type of

discourse constitutes an important dimension of symbolic violence to which the disadvantaged in global mobility regimes are routinely subjected.

Symbolic violence, however, is never complete. Some low-capital migrants may challenge the basic premise of global mobility regimes, namely, that the state holds a monopoly over the legitimate means of movement. Unauthorized Mexican migrants may see the brokerage fee as evidence of their victimization, not so much by an exploitative human smuggler, as by the gatekeeping U.S. state. Ultimately, it is the state that sets the conversion rate between different types of capital and determines which conversion is legitimate. In doing so, the state makes it impossible for certain migrants to obtain a desirable bureaucratic persona without incurring an enormous additional cost. To call U.S. immigration authorities “the biggest coyote around” is to assimilate the state into illegal migration brokers and redirect the charge of criminality back at the state. This statement is a refusal to (mis)recognize state bureaucracy and its classificatory and regulatory actions as “disinterested.” Rather, it lays bare the state’s vested *interest* in monopolizing the right to *sell* cross-border mobility, causing the dispossession or disaccumulation of capital (Bourdieu 2014:98; see also Emirbayer and Desmond 2015:88) among aspiring migrants in the Global South. In the moral economy of migrant-sending communities, refraining from mobilizing illegal means and being resigned to “involuntary immobility” (Carling 2002) may thus be taken as a shameful sign of “*amor fati*” (Bourdieu 1996:45), a regrettable lack of the “capacity to aspire” (Appadurai 2004).

CONCLUSIONS

Reviewing Bourdieu’s profound influence over the past three and half decades, Lamont (2012) concludes that Bourdieu has been “good to think with” in U.S. sociology. This article started from the premise that the field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s yet to fully explore the generative potential of Bourdieu’s theory. I attempted to *think with* Bourdieu to examine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states, aspiring migrants, and migration brokers over the valorization, conversion, and legitimization of various types of capital for migration purposes. I identified various ways in which state policies—embedded in the interstate system—and their everyday enactment by frontline gatekeepers constitut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I showed how migration brokers help migrants acquire adequat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or its semblance—partaking in the governance of identity, qualification, and mobility, with or without state authorization. And I demonstrated how the uneven distribution of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shapes positional struggles among (aspiring) migrants and nonmigrants in multilayered social fields, seeking to reproduce or transform the structure of domination. In comparison with non-Bourdieuian or partially Bourdieuian approaches to capit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my approach better captures the *relational*, *political*, and *cultural* processes through which various resources are constituted and reconstituted as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at different stages of migration.

To conclude, I consider a few alternative approaches to, and potential critiques of, Bourdieu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focusing on its compar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nalyzing migration brokerage and migrant aspirations. Informed by Bourdieu’s reflexive sociology that questions the uncritical import of state-imposed categories into scientific analyses, this article problematized the prevalent tendency to posit “the mobility money can buy” (Koslowski 2000) as an antithesis of state sovereignty. Presuming the existence of a clear boundary between private migration brokers and regulatory state authorities flattens out the complex assemblage of actors, including state actors, that characterizes migration brokerage. Such a presumption also obscures how the state actively

produces the illegality of certain migration schemes, as well as the key regulatory function fulfilled by migration brokers. Scholars who share this concern have turned to Foucault's work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biopolitics rather than to Bourdieu (Alpes 2013a; Andersson 2014; Lindquist, Xiang, and Yeoh 2012; Rodriguez and Schwenken 2013; Rudnyckyj 2004). Foucault's trenchant critique of the fetish of the sovereign state, his critical analysis of the "state-market-civil society" triad, and his enduring interest in the power/knowledge complex and subjectivization have provided theoretical inspiration for examining how regulatory, commercial, and humanitarian actors *coproduce* migration/migrants as a new object of rationalized governance in the current phase of globalization.

While sympathetic to the Foucauldian approach, I argue that an equally compelling set of theoretical tools offered by Bourdieu deserves equal attention. A key strength of the Foucauldian perspective for this topic consists in keeping "statecraft" as the analytic center of attention, yet without reifying *the* state, and identifying various configuration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governance of cross-border mobility. Nonetheless, Bourdieu's (2000:187) claim that the state is a "theological entity" that exists by way of belief, his analysis of "rites of institution" that make this theological entity all too sociologically real and consequential, and his conceptualization of the "delegation" of the state's power of "legitimat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dentities" can be harnessed to achieve the same goals.

Moreover, if we are interested in the shapes, stakes, and consequences of boundary-making (not just boundary-blurring) between various state and nonstate intermediaries, Foucault is less helpful than Bourdieu. The governmentality approach tends to endorse collapsing commercial migration brokers into regulatory *authorities* (Alpes 2013a, 2013b), or conversely, collapsing state agencies into the migration *industry* (Andersson 2014). My analysis, however, suggests that the state's involvement in the *consecration* of certain forms of migration brokerage can provoke an attempt to reinstate the boundary that allegedly separates disinterested state authorities from profit-seeking private agencies. That is, migrants, their advocates, or supranational bodies may problematize boundary-blurring and demand that the state act like a "state" rather than like a "broker." This was the case when Malta's investment citizenship scheme was sanctioned by the European Union (Shachar and Bauböck 2014), and when the Philippine state was accused of abandoning its citizens abroad whom it was busy brokering away (Rodriguez 2010). After all, the state is not simply "the foremost classifying body," but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categories" (Maryl and Quinn 2016:17) produced by the classification and legitimization struggle involving multiple social agents, including policy makers themselves. Unlike its Foucauldian counterpart, the Bourdieusian approach opens a theoretical space for examining where the boundary between public authorities and private agencies lies, the manner in which it is marked and enacted, how rigid or permeable, how salient or inconspicuous the boundary becomes, and whether and how the very distinction it reflects matters in different contexts.

Finally, let me turn to the subject of migrant aspiration. I have shown that Bourdieusian concepts like field, habitus, *illusio*, and symbolic violence add analytic specificity to the broadly shared recognition that migrant aspiration is historically formed, unevenly distributed, culturally constructed, and morally contested. I again find this Bourdieusian approach more attractive than its Foucauldian counterpart. Scholars who adopt the Foucauldian perspective tend to explain migrant aspiration as an effect of political technologies (dubbed "technologies of servitude" by Rudnyckyj 2004) that "'solicit' and enjoin migrants to take on particular kinds of idealized subject positions" (Rodriguez and Schwenken 2013:379). Yet this work has trouble explaining why some people respond to this "solicitation of the self" (Kiersey 2009:377), while others remain indifferent to, or actively position themselves

against, “the commodification and marketing of [migration] dreams” (Guevarra 2010). Bourdieu’s field-theoretical approach that posits preference, aspiration, and ends as emergent properties of *illusio*, strongly conditioned by one’s position in a social field, does a better job explaining this variation, as well as why migrant aspiration can be intensely moralized, sometimes in diametrically opposed ways, within a single sending community.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Bourdieu needs no buttressing. As numerous commentators have noted, Bourdieu’s theory of social action is more effective at capturing the “iterational” rather than the “projective” dimension of agency, that is, agency whose primary orientation is toward “an alternately envisioned future rather than toward patterns inherited from the past” (Emirbayer and Desmond 2015:134; see also Emirbayer and Mische 1998; Mische 2009). This bias likely leads to an overly pessimistic view of migrant aspiration and its role in reproducing, rather than reformulating, the extant structure of domination (see also O’Reilly 2012:20). It is not coincidental that Sayad (2004:26), in his Bourdieusian analysis of Algerian migration to France, depicts migrant aspiration as sustained by “the collective misrecognition of the objective truth of emigration.” In a similar vein, Sayad analyzes migrants’ transnational lives as generating “hysteresis” (chronic lag and misfiring of preformed dispositions and habits, maladjusted to changed objective conditions [Bourdieu 1990:62]) rather than increasing the “stock of material from which [migrants] can craft the scripts of possible worlds and imagined selves” (Appadurai 2003:19). If one crucial way domination works is by encouraging the dominated to learn “the limits of [their] legitimate aspirations” (Bourdieu 2005:173), then interweaving aspiration too tightly with the past and with current structures, thereby failing to capture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migrant aspiration, seems like a significant deficit in a Bourdieusian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Recent theorizing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that redefines aspiration as an assertion of identity (Frye 2012) or as a “navigational capacity” (Appadurai 2004:66) provides a complementary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ese works, often influenced by a pragmatist theory of action, emphasize collective cultural schemas and shared standards of morality that can expand “a horizon of credible hopes” (Appadurai 2004:81–82) for the dominated and nurture their capacity for creative action. These scholars focus on the dynamic future-making potential of aspiration that “thrives and survives on practice, repetition, exploration, conjecture, and refutation” (Appadurai 2003:19). They do so without assuming that the social project (including the migration project) stemming from this aspiration will always be “liberating” or “transformative.” Today, the politics of immigration deterrence often relies on stigmatizing migrant aspiration as irrational and dangerous and inducing voluntary disinvestment from this mystifying dream (Andersson 2014; Bernstein 2010). In such a political climate, bringing Bourdieu into productive conversation with alternative approaches to aspiration would constitute a newly relevant contribution to critical sociology, as well as the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ACKNOWLEDGMENTS

I would like to thank Apostolos Andrikopoulos, Fadi Bardawil, Rogers Brubaker, Sébastien Chauvin, Didier Fassin, Yossi Harpaz, Robert Jansen, Sunmin Kim, Greta Krippner, Seungsook Moon, Sarah Quinn, Peter Redfield, George Steinmetz, and three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sharp critiques and useful suggestions on the earlier version of the article.

FUNDING

My own ethnographic research used in this article was funded b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and the Wenner-Gren Foundation. The writing of this article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2017S1A6A3A01079727).

NOTES

1. For example, Sallaz and Zavisca's (2007) review article does not include a single work on international migration—except Lamont's (2000) comparative study of the French and U.S. working class, which analyzes nativity as an important boundary mechanism in France. Lamont's (2012:229) own review recognizes Bourdieu's influence on the "cultural turn" in immigration studies, by which she means work on symbolic boundary-making and racial/ethnic identity formation in migrant-receiving societies.
2. A few scholars have criticized how the social capital concept formulated by Robert Putnam or James Coleman neglects "gendered and classed power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 and uses of [migrant] networks" (Erel 2010:646; see also Anthias 2007). These critics tend to suggest that Bourdieu offers a better alternative given his emphasis on competition and inequality, and his constructivist approach to group formation.
3. The few reviews of Sayad's monograph published in English tend to focus on the book's ethnographic details of migrants' embodied experience of alienation, rather than engaging substantively with Sayad's application of Bourdieu's theory.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politics of emigration and diasporas, scholars have found Sayad's (2004:1) call for an integrative approach to emigration/immigration as "indissociable aspects of a single reality" useful. The citation in these works, however, is limited to acknowledging this "early" promoter of the transnational approach.
4. For the most recent and systematic take on this concept, see Paul's (2011, 2015) definition of "migration capital" (Paul's 2011 piece includes no reference to Bourdieu; the 2015 piece signals its theoretical debt, albeit within a limited framework). I use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rather than "migration capital"; the latter can be misleadingly identified with the resources/power *derived from* migration rather than those that can be *put to use for* migration. Some scholars use "migration capital" precisely that way, that is, to refer to the resources derived from individuals' or their family members' prior history of migration (Taylor 1987). I thank Sébastien Chauvin for bringing up this point.
5. Menjivar and Abrego (2012) do examine the impact of legal violence on immigrants' families left in Central America. However, the sending community is considered largely as a passive recipient of the spillover effect of legal violence inflicted by the U.S. government.
6.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passport and visa systems tends to turn to Foucault rather than Bourdieu. I discuss the compar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approaches in the conclusion.
7. Visa fees are a more mundane way in which economic capital becomes directly relevant to one's capacity to secure authorized entry. French consular offices in Tunisia and Cameroon, for example, use visa fees that amount to a month's or two months' wages to preemptively exclude the poor from the application pool (Alpes and Spire 2014).
8. As of July 2017, a U.K. passport allows visa-free access to 156 countries; a Pakistani passport allows access to only 25 countries (<http://www.passportindex.org/byRank.php>).
9. See Balta and Altan-Olcay (2016) for an exception.
10. Mau (2010) proposes a similar argument, but building on Urry's (2000) concept of "mobility citizenship," not on Bourdieu.
11. This is one of two empirical works cited in this article that take Bourdieu's theory as a major explanatory framework, if not exactly in the same way as presented here. Harpaz is more interested in theorizing the EU passport as inheritable cultural capital—an analysis not incompatible with my own.
12. Several scholars recently propos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migration industry be expanded for similar reasons (see, for example, Hernández-León 2013). It seems less sensible to me, however, to maintain the term "industry" while decentering profit motivation.
13. For discussion of granting preferential treatment in immigration and citizenship to the descendants of emigrants or ethnonational "kin," see Harpaz (2015). I discuss elsewhere (Kim 2018b) how these top-down policies shape the bottom-up strategies of aspiring migrants, and I propose to reconstruct the notion of "ethnic capital" based on these findings.
14. This does not mean the migrant-sending state *in its entirety* can be classified as a migration broker. In line with the burgeoning scholarship that effectively questions the neo-Weberian assumption of the coherence and autonomy of the state, I "[disaggregate] the state into its many functions, organizations, and purposes, while complicating the initially sharp boundaries draw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tate and society" (Morgan and Orloff 2017:7)

15. See <https://www.henleyglobal.com>.
16. The original line from Baldwin ([1961] 1993) goes as follows: “Anyone who has ever struggled with poverty knows how extremely expensive it is to be poor.”
17. In migration research, the most cited concept of “transnational social field” is from Levitt and Glick Schiller (2004), but their conceptualization is barely Bourdieusian, despite their claim. A more thoroughly Bourdieusian approach to the concept can be found in Kelly and Lusia (2006:837), although the “transnational social field” is not so much analyzed as implied—and mentioned only once—to suggest that the transnational habitus remains important in the valuation and exchange of capital even after settlement has occurred.
18. This is another empirical work that takes Bourdieu’s theory as a major explanatory framework (see note 11). However, it is my own interpretation to theorize birth tourism as both a subversion and a conservation strategy.

REFERENCES

- Agustín, Laura M. 2008. *Sex at the Margins: Migration, Labour, and the Rescue Industry*. New York: Zed Books.
- Alpes, Maybritt Jill. 2012. “Bushfalling at All Cost: The Economy of Migratory Knowledge in Anglophone Cameroon.” *African Diaspora* 5(1):90–115.
- Alpes, Maybritt Jill. 2013a. “Migration Brokerage, Illegality, and the State in Anglophone Cameroon.” DIIS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Working Paper 2013:07.
- Alpes, Maybritt Jill. 2013b. “‘Why Do They Take the Money and Not Give Visas?’ The Governmentality of Consulate Offices in Cameroon.” Pp. 145–61 in *Disciplining the Transnational Movement of People*, edited by M. Geiger and A. Péco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Alpes, Maybritt Jill, and Alexis Spire. 2014. “Dealing with Law in Migration Control: The Power of Street-Level Bureaucrats at French Consulates.” *Social & Legal Studies* 23(2):261–74.
- Altan-Olcay, Özlem, and Evren Balta. 2015. “Class and Passports: Transnational Strategies of Distinction in Turkey.” *Sociology* 50(6):1106–22.
- Andersson, Ruben. 2014. *Illegality, Inc.: Clandestine Migration and the Business of Bordering Europ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nthias, Floya. 2007. “Ethnic Ties: Social Capital and the Question of Mobilisability.” *Sociological Review* 55(4):788–805.
- Appadurai, Arjun. 2003. “Archive and Aspiration.” Pp. 14–25 in *Information Is Alive*, edited by J. Brouwer and A. Mulder. Rotterdam, Netherlands: V2/NAI.
- Appadurai, Arjun. 2004. “The Capacity to Aspire: Culture and the Terms of Recognition.” Pp. 59–84 in *Culture and Public Action*, edited by V. Rao and M. Walt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ldwin, James. [1961] 1993. “Fifth Avenue, Uptown: A Letter from Harlem.” Pp. 56–71 in *Nobody Knows My Name: More Notes of a Native Son*. New York: Vintage.
- Balta, Evren, and Özlem Altan-Olcay. 2016. “Strategic Citizens of America: Transnational Inequalities and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Ethnic and Racial Studies* 39(6):939–57.
- Barron, Pierre, Anne Bory, Sébastien Chauvin, Nicolas Jounin, and Lucie Tourette. 2016. “State Categories and Labor Protest: Migrant Workers and the Fight for Legal Status in Franc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0(4):631–48.
- Bernstein, Elizabeth. 2010. “Militarized Humanitarianism Meets Carceral Feminism: The Politics of Sex, Rights, and Freedom in Contemporary Antitrafficking Campaigns.” *Signs* 36(1):45–71.
- Borjas, George J. 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457–85.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G.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 Bourdieu, Pierre. 1987. “The Force of Law: Toward a Sociology of the Juridical Field.” *Hastings Law Journal* 38:805–53.
- Bourdieu, Pierre.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Edited by J. B. Thompson. Translated by G. Raymond and M. Adams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96. *The State Nobility: Elite Schools in the Field of Power*. With the Collaboration of Monique de Saint Martin. Translated by L. C. Clough. Malden, MA: Polity.
- Bourdieu, Pierre. 1998. "Is a Disinterested Act Possible?" Pp. 75–91 in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Translated by R. N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99. "Rethinking the State: Genesis and Structure of the Bureaucratic Field." Translated by L. Wacquant and S. Farage. Pp. 53–75 in *State/Culture: State 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edited by G. Steinmetz.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2000. *Pascalian Meditation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2005. *The Social Structures of the Economy*. Translated by C. Turner. Malden, MA: Polity.
- Bourdieu, Pierre. 2014. *On the State: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89–1992*. Edited by P. Champagne, R. Lenoir, F. Poupeau, and M. Rivière. Translated by D. Fernbach. Malden, MA: Polity.
- Brown, Phillip. 2000. "The Globalisation of Positional Competition?" *Sociology* 34(4):633–53.
- Brubaker, Rogers.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baker, Rogers. 2002. "Ethnicity without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43(2):163–89.
- Buchholz, Larissa. 2016. "What Is a Global Field? Theorizing Fields Beyond the Nation-Stat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s* 64(2):31–60.
- Carling, Jørgen. 2002. "Migration in the Age of Involuntary Immobility: Theoretical Reflections and Cape Verdean Experienc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8(1):5–42.
- Castles, Stephen, and Mark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International World*. 3rd ed. London: Macmillan.
- Chiswick, Barry R. 2007. "Are Immigrants Favorably Self-Selected? An Economic Analysis." Pp. 63–82 in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2nd ed., edited by C. Brettell and J. Hollifield. New York: Routledge.
- Chu, Julie Y. 2010. *Cosmologies of Credit: Transnational Mobility and the Politics of Destination in Chin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lenfield, Jason. 2015. "This Swiss Lawyer Is Helping Governments Get Rich Off Selling Passports." *Bloomberg Markets*, March 11.
- Dezalay, Yves, and Bryant G. Garth. 1996. *Dealing in Virtu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mbrava, Costica. 2018. "The Ethno-Demographic Impact of Co-ethnic Citizenship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doi:10.1080/1369183X.2018.1440490.
- Emirbayer, Mustafa, and Matthew Desmond. 2015. *The Racial Or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mirbayer, Mustafa, and Ann Mische. 1998. "What Is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4):962–1023.
- Erel, Umut. 2010. "Migrating Cultural Capital: Bourdieu in Migration Studies." *Sociology* 44(4):642–60.
- Faist, Thomas. 2014. "Brokerage in Cross-Border Mobility: Social Mechanisms and the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ies." *Social Inclusion* 2(4):38–52.
- Faist, Thomas. 2016. "Cross-Border Migration and Social Inequali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323–46.
- Finotelli, Claudia, and Giuseppe Sciortino. 2013. "Through the Gates of the Fortress: European Visa Policies and the Limits of Immigration Control."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14(1):80–101.
- FitzGerald, David S., and David Cook-Martin. 2014. *Culling the Masses: The Democratic Origins of Racist Immigration Policy in the America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ourcade, Marion. 2006.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Profession: The Transnationalization of Economic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1):145–94.
- Fourcade, Marion. 2017. "State Metrology." Pp. 103–28 in *The Many Hands of the State: Theorizing Political Authority and Social Control*, edited by K. J. Morgan and A. S. Orloff.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man, Gary.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cies in Liberal Democratic Socie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4):881–902.
- Frye, Margaret. 2012. "Bright Futures in Malawi's New Dawn: Educational Aspirations as Assertions of Ident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6):1565–624.

- Gaibazzi, Paolo. 2014. "Visa Problem: Certification, Kinship, and the Production of 'Ineligibility' in the Gambia."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N.S.)* 20(1):38–55.
- Gilboy, Janet A. 1991. "Deciding Who Gets In: Decision-Making by Immigration Inspectors." *Law & Society Review* 25(3):571–600.
- Gorski, Philip S. 2013. "Bourdieuian Theory and Historical Analysis: Maps, Mechanisms, and Methods." Pp. 327–66 in *Bourdieu and Historical Analysis*, edited by P. S. Gorski.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Guevarra, Anna Romina. 2010. *Marketing Dreams, Manufacturing Heroes: The Transnational Labor Brokering of Filipino Worker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Gurak, Douglas, and Fee Caces. 1992. "Migration Networks and the Shaping of Migration Systems." Pp. 150–76 in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edited by M. M. Kritz, L. L. Lim, and H. Zlotnik. Oxford, UK: Clarendon.
- Hagan, Jacqueline M. 1994. *Deciding to Be Legal: A Maya Community in Houst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Hakim, Catherine. 2010. "Erotic Capital."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5):499–518.
- Harpaz, Yossi. 2013. "Rooted Cosmopolitans: Israelis with a European Passport—History, Property, Ident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7(1):166–206.
- Harpaz, Yossi. 2015. "Ancestry into Opportunity: How Global Inequality Drives Demand for Long-Distance European Union Citizenship."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1(13):2081–104.
- Hernández-León, Rubén. 2008. *Metropolitan Migrants: The Migration of Urban Mexicans to the United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rnández-León, Rubén. 2013. "Conceptualizing the Migration Industry." Pp. 24–44 in *The Migration Industry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edited by T. Gammeltoft-Hanson and N. N. Sørensen. New York: Routledge.
- Horst, Cindy, Sonia Pereira, and Olivia Sheringham. 2015. "The Impact of Class on Feedback Mechanisms: Brazilian Migration to Norway, Portugal and the United Kingdom." Pp. 90–112 in *Beyond Networks: Feedback in International Migration*, edited by O. Bakewell, G. Engbersen, M. L. Fonseca, and C. Horst.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 Igarashi, Hiroki, and Hiro Saito. 2014. "Cosmopolitanism as Cultural Capita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Globalization,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Cultural Sociology* 8(3):222–39.
- Jansen, Stef. 2009. "After the Red Passport: Towards an Anthropology of the Everyday Geopolitics of Entrapment in the EU's 'Immediate Outside.'" *Journal of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N.S.)* 15(4):815–32.
- Joppke, Christian, ed. 1998. *Challenge to the Nation-State: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ndel, William, and Douglas S. Massey. 2002. "The Culture of Mexican Migrati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Social Forces* 80(3):981–1004.
- Kelly, Phillip, and Tom Lusi. 2006. "Migration and the Transnational Habitus: Evidence from Canada and the Philippin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5):831–47.
- Kiersey, Nicholas J. 2009.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ubjectivity of Crisis: Why Governmentality Is Not Hollow." *Global Society* 23(4):363–86.
- Kim, Jaeun. 2011. "Establishing Identity: Documents, Performance, and Biometric Information in Immigration Proceedings." *Law & Social Inquiry* 36(3):760–86.
- Kim, Jaeun. 2018a. "'Ethnic Capital' and 'Flexible Citizenship' in Unfavorable Legal Contexts: Stepwise Migration of the Korean Chinese Within and Beyond Northeast Asi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doi: 10.1080/1369183X.2018.1440489
- Kim, Jaeun. 2018b. "How To Turn Ethnicity into Migration-Facilitating Capital: Bourdieu, 'Ethnic Capital,' and Cross-Border Mobility."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Korzeniewicz, Robert P., and Timothy P. Morgan. 2012. *Unveiling Inequality: A World-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oser, Khalid. 2008. "Why Migrant Smuggling Pays." *International Migration* 46(2):3–26.
- Koslowski, Rey. 2000. "The Mobility Money Can Buy: Human Smuggling and Border Control in the European Union." Pp. 203–18 in *The Wall Around the West: State Borders and Immigration Control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edited by P. Andreas and T. Snyde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Krissman, Fred. 2005. "Sin Coyote Ni Patrón: Why the 'Migrant Network' Fails to Explain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9(1):4–44.
- Lamont, Michèle. 2000. *The Dignity of Working Men: Morality and the Boundaries of Race, Class, and Immigr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mont, Michèle. 2012. "How Has Bourdieu Been Good to Think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Sociological Forum* 27(1):228–37.
-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1002–39.
- Liang, Li-Fang. 2011. "The Making of an 'Ideal' Live-In Migrant Care Worker: Recruiting, Training, Matching and Disciplining." *Ethnic and Racial Studies* 34(11):1815–34.
- Lindquist, Johan, Biao Xiang, and Brenda S. A. Yeoh. 2012. "Opening the Black Box of Migration: Brokers, the Organization of Transnational Mobility and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in Asia." *Pacific Affairs* 85(1):7–19.
- Lipsky, Michael.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Loveman, Mara. 2005. "The Modern State and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Symbolic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6):1651–83.
- Lucht, Hans. 2013. "Pusher Stories: Ghanaian Connection Men and the Expansion of the EU's Border Regimes into Africa." Pp. 173–89 in *The Migration Industry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edited by T. Gammeltoft-Hanson and N. N. Sørensen. New York: Routledge.
- Marginson, Simon. 2008. "Global Field and Global Imagining: Bourdieu and Worldwide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9(3):303–15.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John Levi. 2003. "What Is Field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1–49.
- Martin, John Levi, and Matt George. 2006. "Theories of Sexual Stratification: Toward an Analytics of the Sexual Field and a Theory of Sexual Capital." *Sociological Theory* 24(2):107–32.
- Maryl, Damon, and Sarah Quinn. 2016. "Defining the State from Within: Boundaries, Schemas, and Associational Policy Making." *Sociological Theory* 34(1):1–26.
- Massey, Douglas, Rafael Alarcón, Jorge Durand, and Humberto Gonzáles. 1987. *Return to Aztlan: The Soc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Western Mexi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tsuda, Matt K. 1996. *The Memory of the Moder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u, Steffen. 2010. "Mobility Citizenship, Inequality, and the Liberal State: The Case of Visa Policies."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4(4):339–61.
- McKeown, Adam M. 2008. *Melancholy Order: Asian Migration and the Globalization of Bord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enjívar, Cecilia, and Leisy J. Abrego. 2012. "Legal Violence: Immigration Law and the Lives of Central American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5):1380–421.
- Mische, Ann. 2009. "Projects and Possibilities: Researching Future in Action." *Sociological Forum* 24(3):694–704.
- Morgan, Kimberly J., and Ann Shola Orloff. 2017. *The Many Hands of the State: Theorizing Political Authority and Social Contro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varo-Yashin, Yael. 2007. "Make-Believe Papers, Legal Forms and the Counterfeit: Affective Interactions between Documents and People in Britain and Cyprus." *Anthropological Theory* 7(1):79–98.
- Neilson, Brett. 2009. "The World Seen from a Taxi: Students-Migrants-Workers in the Global Multiplication of Labour." *Subjectivity* 29:425–44.
- Neske, Matthias. 2006. "Human Smuggling to and through Germany." *International Migration* 44(4):121–63.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O'Reilly, Karen.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The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aul, Anju Mary. 2011. "Stepwise International Migration: A Multistage Migration Pattern for the Aspiring Migra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6(6):1842–86.

- Paul, Anju Mary. 2015. "Capital and Mobility in the Stepwise International Migrations of Filipino Migrant Domestic Workers." *Migration Studies* 3(3):438–59.
- Piot, Charles. 2010. *Nostalgia for the Future: West Africa after the Col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24.
- Portes, Alejandro, and Julia Sen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1320–50.
- Robbins, Liz. 2016. "Students at Fake University Say They Were Collateral Damage in Sting Operation." *New York Times*, May 5.
- Robertson, Shanthi, and Anjena Runganaikaloo Crimson. 2014. "Lives in Limbo: Migration Experiences in Australia's Education-Migration Nexus." *Ethnicities* 14(2):208–26.
- Rodriguez, Robyn Magalit. 2010. *Migrants for Export: How the Philippine State Brokers Labor to the Worl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odriguez, Robyn Magalit, and Helen Schwenken. 2013. "Becoming a Migrant at Home: Subjectivation Processes in Migrant-Sending Countries Prior to Departure."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4):375–88.
- Rudnyckij, Daromir. 2004. "Technologies of Servitude: Governmentality and Indonesian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77(3):407–34.
- Sallaz, Jeffrey J., and Jane Zavisca. 2007. "Pierre Bourdieu in American Sociology, 1980–2005."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21–41.
- Satzewich, Vic. 2015. *Points of Entry: How Canada's Immigration Officers Decide Who Gets I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Sayad, Abdelmalek. 2004. *The Suffering of the Immigrant*. Translated by D. Macey. Malden, MA: Polity.
- Shachar, Ayelet. 2009. *The Birthright Lottery: Citizenship and Global Ineq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char, Ayalet, and Rainer Bauböck, eds. 2014. "Should Citizenship Be for Sale?" EUI Working Paper, RSCAS 2014/01. EUDO Citizenship Observatory,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 Florenc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Spain, Ernst. 1994. "Taikongs and Calos: The Role of Middlemen and Brokers in Javanese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1):93–113.
- Steinmetz, George. 2008. "The Colonial State as a Social Field: Ethnographic Capital and Native Policy in the German Overseas Empire before 191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4):589–612.
- Strand, Michael, and Omar Lizardo. 2015. "Beyond World Images: Belief as Embodied Action in the World." *Sociological Theory* 33(1):44–70.
- Surak, Kristin. 2017. "Migration Industries and the State: Guestwork Programs in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doi:10.1111/imre.12308.
- Taylor, J. Edward. 1987. "Undocumented Mexico-United States Migration and the Returns to Households in Rural Mexico."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9(3):626–38.
- Todaro, Michael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138–48.
- Torpey, John. 2000. *The Invention of the Passport: Surveillance, Citizenship, and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rry, John. 2000.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outledge.
- van Hear, Nicholas. 2014. "Reconsidering Migration and Cla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1):100–121.
- Wacquant, Loïc. 2013. "Symbolic Power and Group-Making: On Pierre Bourdieu's Reframing of Class." *Journal of Classic Sociology* 13(2):274–91.
- Waldinger, Roger. 1993. "The Ethnic Enclave Debate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7(3):428–36.
- Waters, Johanna L. 2005. "Transnational Family Strategies and 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Chinese Diaspora." *Global Networks* 5(4):359–77.

- Wilson, Kenneth L., and Alejandro Portes. 1980. "Immigrant Enclaves: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of Cubans in Miam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2):295–319.
- Wimmer, Andreas. 2008. "The Making and Unmaking of Ethnic Boundaries: A Multilevel Process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3(4):970–1022.
- Xiang, Biao. 2007. *Global "Body Shopping": An Indian Labor System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Xiang, Biao. 2012. "Predatory Princes and Princely Peddlers: The State and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Intermediaries in China." *Pacific Affairs* 85(1):47–68.
- Zhang, Sheldon X. 2008. *Chinese Human Smuggling Organizations: Families, Social Networks, and Cultural Imperativ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Zolberg, Aristide R. 1981. "International Migrations in Political Perspective." Pp. 3–27 in *Global Trends in Migration: Theory and Research 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edited by M. M. Kritz, C. B. Keely, and S. M. Tomasi. Staten Island,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Zolberg, Aristide R. 1999. "Matters of State: Theorizing Immigration Policy." Pp. 71–93 in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edited by C. Hirschman, P. Kasinitz, and J. DeWind.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AUTHOR BIOGRAPHY

Jaeeun Kim is Assistant Professor of Sociology and the Korea Foundation Assistant Professor of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She is a political sociologist and law and society scholar interested in questions of human mobility, inequality, power and agency. She studies race/ethnicity/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itizenship from a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 Kim is the author of multiple articles and an award-winning book *Contested Embrace: Transborder Membership Politics in Twentieth-Century Kore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6). She is currently working on her second project about the asylum-seeking of undocumented migrants on religious grounds, based on her ongoing multisited ethnographic fieldwork. Kim was a member of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during 2016–2017.

세션4 | 세계의 다양한 이민

사회 / 한건수 | 강원대



발표
01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
 GCM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하 | 서울시립대

발표
02 다문화 사회와 반이민 테러 대응: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기난사 사건을 중심으로
 허준영 | 한국행정연구원

발표
03 중앙아메리카인들의 이주 사회 연결망의 변화:
 캐러벤 이주를 중심으로
 손지혜, | 고려대

발표
03 Studying Law Abroad, Practicing Law Home:
 The Spatial Mobility of Korean Lawyers in Early 1920s
 Japanese Empire as Structural Sequences and Historical
 Contingency
 박천웅, 최희정 | 전북대

토론 최서리 | 이민정책연구원, 송영호 | 이민정책연구원

세션 4-01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 GCM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하 | 서울시립대학교

I | 서론

본 연구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와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과 같은 여타 다른 국제관계적 영역과 달리, 국제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은 저발전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가 채택되면서 전기를 맞고 있다. 국제협력이 잘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점진적인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이주의 국제적인 측면은 물론 국제협력을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상품,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은 세계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과 자본의 흐름이 글로벌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간주되어 온 반면, 이에 비해 사람의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이주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의하면 전 세계 이주민의 수는 약 2억 4,400만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약 3.3%를 차지한다(IOM, 2017: 2). 이러한 이주민의 수는 기존의 추계를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과거 북미, 오세아니아, 서유럽 지역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주권국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가들 물론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문제 해결 방식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화의 중요한 요소인 국제이주가 다른 국제적인 이슈들과 결합되면서 복잡한 문제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왔다.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발적 이주민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으로 인해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로부터 후퇴하거나(신지원 2015), 국제이주와 테러리즘이 결합되면서 이민정책이 안보화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송영훈 2014), 이주와 개발 문제가 연계되면서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등(조영희 2018) 국제이주의 복잡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이주가 복잡해질수록 국가들 간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었고,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형태의 제도들이 공존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GCIM),’ ‘이주와 발전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과 같이 ‘이주와 발전

(migration and development)'분야에서 글로벌한 수준의 대화체들이 생겨났다. 또한 2016년 유엔 전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난민과 이주인에 관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였다.¹⁾ 이어서 유엔은 2018년 7월 13일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이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이를 채택하였다.²⁾ 미국 등 몇몇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CM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Guild 2018; Newland 2019).

그동안 국제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되었고, 파편화되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Aleinikoff 2007; Betts 2010). 하지만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점진적인 발전경로를 통해 서서히 제도적 변화를 추구해왔으며, 2018년 많은 유엔 회원국이 동참한 가운데 GCM이라는 국제이주에 관한 통합적인 규범을 도출해내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Newland 2019),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GCM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요약하고, 법적 성격을 논하고 있으며(Guild and Grant 2017; Guild 2018; Newland 2019; Wouters and Wauters 2019), GCM의 이행에 있어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Micinski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GCM의 등장을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제도적 변화로 이해하고, 제도적 변화의 성격을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새로운 시작인 GCM의 등장을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기존의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유엔 차원의 합의인 GCM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왜 저발전 되었는지 논의해보고,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저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반 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맥락에서 GCM이 등장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GCM의 내용과 이주와 관련된 유엔의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GCM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저발전

국제이주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이주가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 다른 국제관계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제이주에 내재된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이주는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단순한 인구의 이동이 아니라 테러리즘, 밀입국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직적 범죄, 송금의 효과를 위시로 한 개발협력의 문제, 이주와 난민의 연계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국제이주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국민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임에는 이의가 없지만, 국제이주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 인도주의적 원조기관 등 국민국가가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었다(Martin 2015). 즉 국제이주의 복잡성 증대와 이해당사자의 다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 한 글로벌 거버넌스 방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무역과 같은 다른 국제관계 분야와 달리 국제이주 영역에서

1) <http://www.unhcr.org/584689257.pdf>(최종검색일: 2018.12.19.).

2)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3/195(최종검색일: 2019.10.18.).

는 글로벌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저발전되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Newland 2010; Koser 2010). 홀리필드(James Hollifield)는 국제레짐을 다자주의와 제도의 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무역과 금융 분야에 비해, 국제노동이주 분야와 난민 분야를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국제난민레짐은 난민협약과 유엔난민기구(UNHCR)을 위시로 하여 높은 수준의 다자주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제이주레짐은 핵심적인 규범과 행위자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낮은 다자주의 수준과 제도화 수준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Hollifield 2018).

〈그림 1〉 국제레짐의 유형



출처: Hollifield (2018, 150)

다른 선행연구들도 국제이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은 부재하거나 저발전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벅츠(Alexander Betts)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를 “중복, 병렬, 그리고 중첩된 제도들의 직물(a tapestry of overlapping, parallel, and nested institutions)”로 정의하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Betts, 2011b: 2). 알라이니코프(Alexander Aleinikoff)도 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건축이 없는 실체(substance without architecture)”로 정의하면서 관련 규범은 존재하나 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통합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Aleinikoff 2007). 도일(Michael Doyle)과 보르그나스(Emma Borgnä)는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비롯한 국제이주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국제협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Doyle and Borgnä 2018).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이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부재하거나 혹은 저발전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이주 분야 국제 협력의 저발전된 상태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다(Gamlen and Marsh 2011).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왜 이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이 잘 발생하지 않는가를 먼저 논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성격과 정치적 맥락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제이주 분야는 해당 국가가 국제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동기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홀리필드는 이민 정책을 추동하는 네 가지 측면으로 안보, 문화, 경제적 이익, 그리고 권리를

들고 있다(Hollifield 2018). 이 중에서 특히 인구의 출입을 통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과 유인된 이주민을 수용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사회적, 문화적 집단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은 국민국가의 주권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국경관리에 실패하여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하면 선주민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실패한다면, 선주민들 사이에서 ‘누가 우리인가’와 같은 집단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이주는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민감한 이슈이다. 프리만(Gary Freeman)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민정책 동학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이익 정치 이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민의 확대에 의해 파생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

집단, 이민자 집단 등 이익집단들은 정책결정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민자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되는 비용을 우려하여 이민정책의 축소를 주장한다(Freeman 1995). 따라서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치적 심판을 받는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이주는 가급적이면 이슈화하고 싶지 않은 영역으로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Martin 2015).

둘째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이주는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심한 영역이다. 이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촉진되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의 이익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수용국이 힘과 자원의 측면에서 이민 수용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조건 하에서는 국가 간 이익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베츠에 의하면, 국제이주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일종의 ‘설득게임(suasion game)’으로 협력에 참여하는 두 행위자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힘이 약한 행위자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반면, 힘이 강한 행위자는 협력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Betts 2011). 즉, 북반구의 이민 수용국들은 현 상태의 유지를 선호하면서 국제이주의 질서있는 통제를 선호하는 반면, 남반구의 이민 송출국들은 선진국들이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해,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의 확대를 통해 송출국들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길 원한다. 그러나 군사적 힘과 경제적 자원의 차원에서 볼 때,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불균형은 심하고,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견해차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 분야처럼 국가 간 상호호혜성이 발견된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국제이주 분야는 이 점에서 무역 분야와 다르다. 남반구로부터 온 이주 노동자들은 선진국에서 일하면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남반구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넷 모니(Jeannette Money)와 사라 록하트(Sarah P. Lockhart)는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몇 가지 구조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s)에 의해 선진국들이 현상 유지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여 이들의 선호가 변화하는 경우이다. 외생적 충격은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반 이민세력의 정치적 힘이 증가하는 경우 집권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럽 난민 위기처럼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여 이민 수용국들이 협상에 나서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둘째로 저개발 국가인 이민 송출국들이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이민 수용국들을 압박하는 경우이다. 모니와 록하트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예로 들면서, 이민 송출국들이 국제제도 하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범에 합의하고, 협상을 지속시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중 어느 국가도 위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반쪽에 불과한 국제제도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국가 간에 상호적인 이주의 흐름이 발생할 경우이다. 비슷한 경제수준과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면,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모니와 록하트는 오세아니아 지역 간의 협력, 걸프국가들 간의 협력을 그 예로 들고 있다(Money and Lockhart 2017). 그러나 모니와 록하트가 제시하는 이주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구조적 조건은 일반적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우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모니와 록하트는 위와 같은 이론적 틀에서 GCM의 지속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Money and Lockhart 2017).

많은 선행 연구들은 국제이주 분야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글로벌 이주거버넌스의 등장을 기대

함에 있어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가 주권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유리한 국제법과 국제규범 하에서 국제이주의 당사국들이 국가 주권의 논리를 양보하고 협력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국제제도와 국제법 체제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파편화된 체제를 넘어 점진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으며 GCM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새로

운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변화의 맥락적, 제도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를 분석, 평가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학의 하위 분과 중 비교정치와 미국정치 분야에서 주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국제정치 분과에서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Fioretos 2011). 실제로 비제(Marjanneke J. Vijge)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왜 유엔 차원의

독립적인 환경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가를 분석하였으며(Vijge 2013), 한리더(Tine Hanrieder)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방주의적인 제도설계를 경로의존성 개념에 의거, 연구한 바 있다(Hanrieder 2015).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등장, 지속, 변화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Vijge 2013).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는 전통적으로 변화에 비해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경로의존성은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경로의존성은 과거로부터 도출된 제도적 맥락이 행위자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면서 일종의 ‘경로’를 만들고, 제도가 가진 고착(lock-in) 효과와 자기강화(self-reinforcing) 효과로 인해 나중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이종찬 2014). 또한 제도가 가진 제도적 배태성(institutional embeddedness)은 행

위자들로 하여금 기존 제도에 순응할 경우 이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반응(positive feedback)을 이끌어내어 제도의 지속성을 더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 데 비해,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취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후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논의들을 발전시켰다(김윤권 2005; 김태은 2015). 제도변화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급진적이고 단절적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으로 제도가 변화하는 경우이다(이종찬 2014). 특히 후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후자의 경우에 있어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변화를 유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마호니(James Mahoney)와 쉴렌(Katheleen Thelen)이다. 마호니와 쉴렌은 기존의 역사적 제도주의가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비연속적 변화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성격이 제도 내 행위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Mahoney and Thelen 2010).

마호니와 쉴렌은 제도적 변화를 유형화함으로써 제도적 변화의 성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Mahoney and Thelen 2010). 이들은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성격에 따라 제도적 변화를 중첩(layering), 표류(drift),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중첩은 기존 제도의 핵심적 성격은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의 제도에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질 때 나타난다. 중첩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나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부분 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도전자들이 원래의 규칙을 바꿀 능력이 없고, 기존 제도를 수호하려는 행위자들이 수정, 부분개정을 막을 수 없을 때 일어난다. 표류는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외부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강수환, 2010). 즉, 표류는 행위자들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의미한다. 전환은 권력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행위자들이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 채, 기존 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은 행위자들이 기존 제도의 모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의 목표, 기능 등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는 기존의 공식적 제도와 맞지 않는 비공식적 행태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공식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Mahoney and Thelen 2010, 16-18).

〈표 1〉 제도적 변화의 맥락적, 제도적 원인

정치적 맥락		제도적 성격	
		낮은 재량권	높은 재량권
		중첩(layering)	표류(drift)
	강한 거부 가능성		
	약한 거부 가능성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

출처: Mahoney and Thelen (2010, 19)

위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제도적 변화는 변화에 저항하는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성격 즉 제도의 해석·집행에 있어 재량권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정치적 맥락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행위자가 강한 거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약한 거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변화에 대한 저항 수준이 높아 거부의 가능성이 높다면, 중첩이나 표류가 발생할 것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 수준이 낮아 거부의 가능성이 낮다면 대체나 전환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강한 비토 행위자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통해 기존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첩이나 표류가 더 유망한(promising) 전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성격은 제도를 집행하거나 해석하는 재량권의 수준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를 의미한다. 제도를 집행하거나 해석하는 재량권의 수준이 낮다면 중첩과 대체가 발생할 것이고, 재량권의 수준이 높다면 표류나 전환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는 어느 유형에 속할 것인가? 마호니와 쉴렌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중첩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장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비공식성과 비구속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서서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현행 제도 하에서 높은 재량권을 가지기 힘들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의 차원에서 볼 때, 후진국인 이민 송출국들은 이민 수용국들이 보다 많은 이민을 수용하여, 송금과 같은 이민 송출국들

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길 원한다. 이에 대해 이민 수용국들은 이민자 수의 확대는 물론 이민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꺼려하면서 현상유지를 강하게 선호한다. 즉 제도적 변화에 대한 강한 거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가 중첩이라는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이주에 관한 국가 및 관련 행위자들의 대응을 규율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규범과 조직적 구조와 제도들로 정의할 수 있다(Betts 2011).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는 글로벌 차원의 이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체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들은 이주 분야에 한정된 이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합법 이주, 인신매매 등 국제이주의 부정

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이주와 개발 같은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이주민들의 권리 향상에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³⁾ 이러한 노력들은 앞서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CM)’

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을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한다.

1. 난민과 이주 분야로의 이원화된 구조와 불균형 발전(1919-1989)

이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와 시도는 전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위 ‘국제여행레짐’이 1920년대에 구체화되면서 여행 서류와 비자에 관한 협정들이 표준화되기 시작했다(Koslowski 2011).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이래 노동권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시도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후에 유엔에 책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을 위시로 한 강대국들이 이주 문제에 있어 국가 주권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Betts and Kainz 2017).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게 된다. 우선 1950년 유엔의 난민 업무를 관장하는 유엔난민기구가 설립되었고 1951년 난민협약이 발효되었다.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난민레짐은 유엔난민기구와 난민협약을 두 축으로 빠르게 제도화된 반면, 국제이주레짐의 경우 국제이주기구(IOM)의 전신인 ‘유럽으로부터의 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 위원회(The Provisional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Movement of Migrants from Europe: PICMME)’가 설립되었지만, 더디게 발전되었다.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보호를 위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 반면, PICMME는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엔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강제적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이원화된 구조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상이한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 국제난민레짐과 국제이주레짐은 법적 토대, 자금, 참여 행위자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유엔난민기구가 인도주의적인 규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난민보호를 위한 다자주의적 틀을 발전시켜 온 반면, 국제이주레짐은 다자주의적 틀 대신 주로 양자주의적 노력으로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OM)도 규범적 정체성을 결여한 채, 회원국의 이민정책 수립에 기술적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주로 활동하게 된다(Betts and Kainz 2017).

국제이주를 규율하는 규범의 형성과 이주민의 권리 향상은 주로 냉전 시기 체결된 국제인권조약들이 대신 그 역할을 맞게 된다. 국제이주 분야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여행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제레짐이 취약하다. 따라서 국제이주 분야는 이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에 많은 부분 의존해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이주민들에게 보건, 교육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이주민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아동노동,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천명해왔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n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차별 시정에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은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에 관한 초기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을 규율하기 위한 레짐이

3) 이와 관련해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7), pp.137-138 참조.

크게 난민과 이주로 이원화되어 발전되었으며, 제도화와 다자주의 수준에 있어 난민 분야에 비해 이주 분야가 저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현재 이민과 난민의 경로와 흐름이 뒤섞이고 있는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 ‘혼합 이주’를 대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신지원 2015). 또한 국제이주레짐이 저발전된 상황에서 이주민의 권리 향상을 각종 국제인권조약이 대신하다보니 국제이주레짐 자체가 복잡해지고 파편화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2.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간 대립과 다양한 제도의 등장(1994-2006)

냉전 종식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민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것이고, 국제이주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등장,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글로벌이주 거버넌스 발전과정에 있어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선진국과 후진국 등 행위자들의 선호가 형성되고, 선호 간의 대립이 발생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사례에서도 발견되듯이, 이민 송출국들은 새로운 제도 형성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증대시키려고 한 반면, 이민 수용국들은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실행을 저지하였다.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는 이주와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국제회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이후 유엔 회원국들이 국제이주에 관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견해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민 수용국들은 이주 문제를 유엔 내의 의제로 삼는데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이민 송출국들은 인간중심의 개발 논의에 편승하여 국제이주 문제를 다자주의적 틀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Betts and Kainz 2017).

이 시기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과는 1990년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가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 관련된 권리를 규정하고 협약의 적용을 담고 있는 이 협약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 진전에 있어 중요한 성과였으나 여기에도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견해차가 극

명하게 나뉘었다. 많은 수의 이민 송출국들이 유엔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여 2003년 결국 발효되었지만, 주요 이민 수용국들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 형성을 둘러싼 부정적 전망을 낳았다.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는 2003년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CIM)로부터 본격화되었다.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는 국제정치학자인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교수가 국제이주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제시한 ‘글로벌 위원회’의 출범을 당시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이 수용하여 만들어졌다(Betts and Kainz 2017).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GCIM은 2005년 10월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이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 국제이주 현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선 이민정책의 실행을 강조하였다(이진영 2016: 477-478). 소위 ‘도일 보고서’는 노동이주, 순환이주, 교육이주, 송금, 디아스포라 개입, 밀입국 및 인신매매, 이주민의 권리, 국제협력 등 국제이주의 다양한 측면을 다룸으로써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핵심 의제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GCIM의 활동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에 의해 여러 가지 조직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유엔 시스템 내에서 이주와 관련된 기구들 간의 조정 업무를 위한 ‘글로벌 이주 그룹(Global Migration Group: GMG)’이 2006년 설립된 것이다. GCIM이 이주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제안해서 만들어진 GMG는 훗날 이주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편입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GCIM의 활동은 2006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2006): HLD)로 이어졌다. GCIM이 제기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이주와 개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다. HLD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과 그 함의는 물론 이민 송출국의 개발에 있어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이진영 2016: 478).

HLD는 개발에 있어 이주의 영향, 모든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인신매매 근절,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파트너십과 역량 강화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Betts and Kainz 2017: 5).

글로벌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가 더디게 가시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들은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지역 수준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지역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 형태로 대표적인 것이 지역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RCPs)이다.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 분야에서 중요한 다자주의적 협의체로 국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이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협력 기제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는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협의체들이 형성, 활동하기 시작했다(Köler 2011: 67).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역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우선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의 포괄적 이슈보다는 특정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지역협의체는 비공식적 회의로 참가국들이 국익의 증진을 위해 협상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셋째로 지역협의체는 비구속적 회의체로 참가국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의견 교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한다(이진영 2016: 476). 넷째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최되며, ‘지역’의 협의임을 강조한다(IOM 2013).

지역협의체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신뢰에 기반 한 합의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가 저발전된 상황에서 지역협의체는 지역 수준에서라도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국가 간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의미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지역협의체는 일종의 지역적 요새(fortress)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에서는 이주의 자유화를 추구하지만, 지역 외로는 이주의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Köer 2011: 68-69). 또한 다양한 지역협의체의 등장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를 초래하였고,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이 유엔 체제 밖에서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etts and Kainz 2017).

냉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GCIM, GMG, HLD 등 다양한 글로벌 대화체가 형성되었고, 지역 수준에서 지역협의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이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통로가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 간 대립(North-South Divide)으로 치환될 수 있는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제도의 등장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로 이어지게 된다. 즉,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성격은 낮은 수준의 제도적 해석·집행권과, 선진국과 후진국 간, 힘의 불균형과 의견 차이로 인한 선진국의 강한 거부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제도적 변화에 있어 중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 이주와 개발 간 연계의 본격화(2007-2015)

HLD가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이주와 개발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발전해나간다.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우선 이민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던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형성에 기폭제역할을 하게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일종의 공통의 이슈를 제공하면서 다자적 수준에서 신뢰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베츠는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를 일종의 ‘사안 연계(issue-linkage)’로 파악하고 있다(Betts, 2011a).

2006년 HLD에서 이주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주제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개발의 맥락에서는 이주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주와 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주민의 권리와 같은 이슈들이 묻혀 버렸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주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주와 개발 논의는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Newland 2017). 또한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은 국제이주의 논의가 유엔 내에서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이주 문제는 유엔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관 지어 논의되기 시작했고, 후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논의 과정에서 이주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이주와 개발 간의 연계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것 같지만, 사실 1950년대부터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서의 이주가 후진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는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은 국제이주를 일종의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노동력 재배치로 설명하면서, 후진국의 잉여 노동력이 선진국으로 이동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는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이주의 중단, 그리고 종속이론에 의한,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라는 문제제기는 과연 국제이주가 국가 간의 수준 차이를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국제이주에 의한 후진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이 부각되면서 국제이주는 이민송출국의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이주와 개발의 논의는 긍정 혹은 부정이라는 한 방향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최근에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의 발달과 이민자들의 송금(remittance)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힘입어 다시 긍정적인 견해로 선회하고 있다(김영완·이병하, 2013, 182).

HLD가 제기한 이주와 개발 이슈는 ‘이주와 발전에 관한 글로벌 포럼(GFMD)’로 연결된다. HLD를 통해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공개적인 대화체가 필요하며, 비공식적이고 비구속적인 방식의 협의체를 모색한다는 합의가 GFMD로 이어진 것이다(이진영 2016: 479).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 간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가 유엔 시스템 내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서덜랜드(Peter Sutherland) 유엔 사무총장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유엔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이주와 개발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원-원’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은 보다 개선된 이주 관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후진국은 선진국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Betts, 2011a).

〈표 1〉 GFMD 주제(2007-2017)

개최시기/개최도시	주제
2007/브뤼셀	이민정책과 개발정책 간 정책일관성
2008/마닐라	개발을 위한 이주자의 역량강화와 보호
2009/아테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개발전략과 통합적 이민정책
2010/푸에토발라타	이주와 인간개발을 위한 파트너십-공통의 이익과 책임
2011/제네바	이주와 개발의 일관성, 역량과 협력에 대한 실천
2012/모리셔스	이주자의 인간개발 강화와 공동체와 국가의 개발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
2014/스톡홀름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이주의 잠재력을 드러내기
2015/이스탄불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간의 이동
2016/다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주: 변화하는 이주 의제 모색
2017/베를린	이주와 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약의 모색

출처: 조영희(2018)

GFMD는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임을 강조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과물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 GFMD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규범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논의하는 ‘안전한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는 GCIM으로부터 GFMD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비공식적이고 비구속적인 대화체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합의를 한 셈이다.

GFMD는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비정부 기구, 노조, 디아스포라 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또 다른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GFMD와 더불어 이 시기 주목할 만한 조직은 2006년 설치된 GMG이다. GMG는 GCIM의 제안에 따라 유엔 산하 기구 및 이주 관련 국제기구들 18개로 구성되었으며, 이주 관련 유엔 프로그램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GMG의 초기 업무는 정책 형성의 향상을 위한 이주 관련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작업과 연구였으나 점차 GFMD와의 협업을 통해 이주와 개발 문제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기여하였다(Micinski and Weiss 2017).

GMG의 또 다른 기여는 이주 문제를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2000-2015)에는 이주 문제가 빠져있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는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 이주와 관련된 세부 목표들이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8.8은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증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목표 10.7은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민정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 의제가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는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이주민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주와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로 인한 이주와 개발 논의의 진전 외에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의제가 이주민의 인권, 안보 등으로 확대된 것도 이 시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브뤼셀에서 열린 GFMD의 첫 회의 때만 하더라도 참가국들은 이주민 인권에 관한 의제를 기피했었지만, 제 2차 마닐라 회의에서 이주민 인권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제 6차 모리셔스 회의에서는 이주민 보호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정도로 인권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었다. 이러한 의제의 확대는 2013년 ‘제 2차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2013): HLD)에서 본격화되었다. 제 2차 HLD는 여덟 가지 핵심 의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이주민의 인권 보호’였다. 제 2차 HLD 결과 채택된 선언도 역시 인권 존중과 국제 노동 기준 준수를 채택하여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논의에서 인권 의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GFMD와 GMG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SRSG)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성하면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를 주도하게 된다. 유엔 시스템 밖에 있는 GFMD와 유엔 시스템 내에 있는 GMG를 SRSG가 연결하면서 유엔 주도로 글로벌 이주거버넌스를 구성하려던 초기 구상은 예상과는 달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실무 수준에서 GMG 내에 있는 산하 기구들 간 상호작용은 많지 않았으며, GFMD와의 불분명한 관계로 인해 아젠다 설정이 잘 진행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Betts and Kainz 2017). 특히 GFMD를 유엔 시스템 밖에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국가들의 압력이 계속 되었고, 유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인 크레포(Francois Crepeau)가 2013년 보고서에서 GMG와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채, 유엔 시스템 밖의 국가 주도의 비구속적 포럼에 의해 이주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GFMD-GMG-SRSG의 삼각구도는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했다(Betts and Kainz 2017).

2007년 이후 국제사회는 이주와 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를 발전시켜왔다. GFMD는 국제이주 문제에 관한 다자간 협의와 정부간 합의라는 규범을 진전시켜왔으며, GMG는 유엔 산하기구 내 업무 조정과

이주에 관한 유엔 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파편화된 체제에서 점차 체계화된 체제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GFMD-GMG-SRSG의 삼각구도가 잘 운영되지 못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과 조직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이주와 개발이라는 이슈 연계를 통해 국제협력을 발전시켰지만 제도의 운영에 있어 기존의 유엔 밖의 제도에 SRSG가 새롭게 추가되는 선에서 운영되는 등 대체나 전환이 아닌 중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CM)’의 등장(2016-2018)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촉발된 난민의 대규모 이동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들 중 일부가 유럽으로 향하면서 유럽의 이민 수용국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다. 시리아 난민 사태는 대규모 난민들이 유럽 외에서 유럽 내부로 유입된 사례로 위기의 본질이 난민들의 생존에 관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국의 위기로 비화하여 수용국 국내의 논란을 낳은 것은 물론, 난민 수용의 책임 분담을 둘러싸고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갈등을 촉발시켰다.

시리아 난민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external shock)은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던 글로벌 거버넌스의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켰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물론 이민 송출국들이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을 논의하는 유엔 차원의 회의를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9월 19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유엔정상회의(UN Summit on Addressing Large Scale Movements of Refugees and Migrants)’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국제이주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가 정상들 간 회의로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뉴욕 선언은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보장, 모든 난민과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근절 등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난민과 이주민 보호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국제이주의 관리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19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는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이주기구(IOM)에 유엔 관련 기구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이주기구를 유엔 시스템 내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이주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축적해온 국제이주기구를 유엔 주도의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이주기구도 회원국에게 기술적 조언과 데이터를 제공해주던 서비스 제공자라는 애매한 정체성을 넘어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뉴욕 선언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2018년 말까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와 ‘난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2016년 뉴욕 선언 이후, 각국은 2년 동안 주제 컨설팅(2017. 4-11), 각국별 의견 취합(2017.12-2018.1), 정부간 협상(2018.2-7) 등 세 단계를 거쳐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최종안 작성을 진행하였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협상은 정부간 논의 외에도 지역 차원의 협의와 NGO, 디아스포라,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마침내 2018년 12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찬성한 국가는 152개국이고, 미국,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알제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칠레,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위스가 기권하였다.

뉴욕 선언을 통해 데드라인을 설정한 2018년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는 GCIM으로 시작된, 비구속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이주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설동훈·김철호 2018: 32).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는 ‘국제이주의 모든 측면에 관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존의 국제이주에 관련된 국제

인권규범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국가주권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이주 관련 행위자들 간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설동훈·김철효 2018: 33). ‘이주를 위한 글로벌

별 컴팩트’은 비구속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제이주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한 글로벌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의 내용과 유엔의 제도적 변화

앞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발전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은 양자 혹은 지역 간 협의가 중심이었고, 글로벌 수준의 협력은 더디게 진전되어왔다. 그리고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도 중심적인 규범과 기구의 부재 속에 파편화된 ‘건축 없는 실재’로 평가받아왔다. 이 점에서 유엔 전체 회원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합의 도출한 GCM은 파편화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1.0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포괄적인 규범과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GCM이 채택된 이래 많은 국가에서 GCM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들이 있었다. 이민정책에 있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GCM은 전문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협력적 프레임워크(a non-legally binding, cooperative framework)”라고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어떤 국가도 홀로 국제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GCM은 조약이 아니며, 연성법적 협력 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GCM이 후반부에 이행 부분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GCM의 이행 부분은 각국의 역량 구축 메카니즘(capacity-building mechanism)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유엔에 의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GCM은 이행 메카니즘보다 ‘공통의 이해, 공유된 책임, 그리고 목적의 통일’과 같은 비전 제시와 ‘사람 중심, 국제협력, 국가주권,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GCM은 23개 목표와 관련된 1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3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GCM의 23개 목표

목표	개요
목표 01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목표 02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주의 부정적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한다.
목표 0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표 04	모든 이주자가 법적 신분증과 적절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목표 05	정규적 이주로 이르는 경로의 이용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목표 06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호한 근로를 보장하는 여건을 보호한다.
목표 0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을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
목표 08	이주자의 생명을 살리고 실종된 이주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목표 09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
목표 10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휴먼 트래피킹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고, 근절한다.
목표 11	통합적이며 안전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목표 12	스크리닝, 평가 및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주 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상가능성을 강화한다.
목표 13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	개요
목표 14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영사보호,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목표 15	이주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목표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자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한다.
목표 18	직업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기술, 자격, 역량의 상호인정을 촉진한다.
목표 19	이주자와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목표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이주자 해외송금을 촉진하고 이주자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한다.
목표 21	안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목표 22	사회보장자격과 취득한 혜택의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목표 23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뉴랜드(Kathleen Newland)는 23개 목표를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지닌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Newland 2019). 1) 이주자가 출신국을 떠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의 감소와 이주 과정에 있어 이주민의 보호(목표 2, 7, 8, 9, 10, 13, 17), 2) 이주민이 개인, 해당 공동체, 국가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의 증대(목표 5, 6, 15, 16, 18, 19, 20, 22), 3) 이민정책의 질서 및 효율성 강화와 국제협력의 강화(목표 1, 3, 4, 11, 12, 14, 21, 23) 등으로 23개 목표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23개 목표는 국가들 간에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목표들과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목표들로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목표 1, 14, 20 등은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목표로 적절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들의 이행이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목표 5와 15는 한 국가의 이민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회정책을 둘러싼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여지가 있어 쉽게 이행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GCM은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참고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GCM은 후반부에 이행 관련 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GCM은 일관성 있는 유엔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 지역적(regional), 국가적, 국가 하위(local) 수준의 다차원적인 협력을 통한 이행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M은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이며 이행에 있어 국가가 주된 실행 주체임을 강조한다. GCM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역량 구축 메카니즘(capacity-building mechanism)이다. 역량 구축 메카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연결 허브(connection hub)의 구축, 초기 프로젝트를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 소스인 글로벌 지식 플랫폼 구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GCM은 국제이주에 관한 다차원적이고 다자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실증에 기반한 해결책 제시와 의견 교환 그리고 협력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의 등장에 있어 GCM의 채택 외에 주목해야 할 점은 몇 가지 제도적인 변화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국제이주기구(IOM)가 유엔 시스템 내로 편입된 점을 들 수 있다. 국제난민레짐에서 유엔난민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제이주레짐에서는 이와 같은 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제이주기구가 전문성을 축적해 왔지만, 유엔 시스템 밖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난민기구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2016년 국제이주기구가 ‘유엔 관련 기구’로 유엔 시스템 내로 편입되면서 이주 관련 유엔 산하기구들 간의 업무 조정도 보다 책임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로 GMG가 UN Migration Network으로 대체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조정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GMG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앞서 서술했듯이 실질적인 업무 조정에 있어서

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GCM 이행을 위해 새롭게 설치된 UN Migration Network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국제이주기구가 맡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유엔 산하기구 간 업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다. 이로써 유엔 내 이주 시스템은 보다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회원국이 GCM을 이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HLD의 정례화이다. 과거 HLD는 2006년과 2013년에 개최되는 등 부정기적인 회의였다. 하지만 HLD는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GCM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주 관련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Thouez 2019).

V 결론

세계화의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고 그 패턴과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서서히 발전되어 온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1.0 체제는 “중복, 병렬, 그리고 중첩된 제도들의 직물,” “건축이 없는 실체”로 평가받아 왔다(Betts, 2010: 2; Aleinikoff 2007).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이 부재한 채 다양한 형식의 제도들이 난립하였으며, 복잡한 이주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실과 정책 간의 격차는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8년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의 채택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의 시대를 열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 접근법을 통해 파편화된 이주 관련 국제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정부 간 논의 과정을 통해 이주와 개발의 문제는 물론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질서 있는 국경통제 등 국제이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이 도출된 것도 큰 성과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제도적 변화는 마호니와 쉴렌의 유형 중에서 중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의 저발전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국가주권의 중요성과 선진국과 후진국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는 비구속성과 비공식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양대 축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와 개발이라는 일종의 이슈연계를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논의가 진전되었지만, 기존의 제도적 틀과 단절되기 보다는 이주 논의를 유엔 차원으로 흡수하고, 유엔 내의 조직적 변화와 이주 관련 포럼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선에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이 출범하게 되었다.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 체제가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GCM은 이주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제협력에 있어서 국제규범의 역할은 보다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들로 하여금 주권을 일정 부분 양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GCM은 보다 진전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체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도출된 GCM은 이주민 보호 및 질서 있는 국경통제와 관련된 국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행위자들에게 이주와 난민 분야를 규율하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정기화되고 제도화된 이주 관련 국제회의는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가들이 보다 많이 접촉하고 교류함으로써 국가들은 이주와 난민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수 있고,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많아질 수 있다. 이 점에서 GCM은 이주분야의 국제협력을 제도화하고 국가들이 제도화된 협상 과정 속에서 국가의 평판을 고려할 동기가 늘어나게 하여 국제협력의 네트워크에 보다 연관되도록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수환. 2010.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분석: 세계화 속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333-1346.
- 김영완·이병하. 2013. “공적개발원조가 외국인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25(4), 181-208.
- 김윤권. 2005.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13(3), 299-327.
- 김태은. 2015.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비판적 논의.” 『한국행정학보』49(4), 57-96.
- 미우라 히로키. 2011. “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3): 153-185.
- 설동훈·김철호. 2018.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행 전담기관 설립방안』 과천: 법무부.
- 송영훈. 2014.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54(1), 195-230.
- 신지원. 2015.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15(3), 417-457.
- 이병하. 2019.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담론201』 22(1): 7-43.
- 이선미. 2008. “국제이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차원 간 균형의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6(1): 35-76.
- 이종찬. 2014.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기 신제도주의의 쟁점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48(1), 163-184.
- 이진영. 2016. “국제이민협력.” 이해경 외.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 조영희. 2018. 『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해 본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논의를 중심으로』,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영문 자료

- Aleinikoff, A. (2007) International Legal Norms on Migration: Substance without Architecture, in *International Migration Law: Developing Paradigms and Key Challenges*, eds. Ryszard Cholewinski, Richard Perruchoud, and Euan MacDonald. The Hague: TMC Asser Press.
- Betts, Alexander. 2009. *Forced Migration and Global Politics*. Oxford: Wiley-Blackwell.
- Betts, Alexander. 2011a. “Substantive issue-linkage and the politics of migration.” in *Arguing Global Governance: Agency, lifeworld, and shared reasoning*, eds. Cornelius Bjola and Markus Kornprobs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tts, Alexander ed.,. 2011b. *Global Migration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tts, Alexander and Lena Kainz. 2017. “The history of global migration governance.” Working Paper Series No. 122. Oxford: Refugee Studies Centre, Oxford University.
- Doyle, Michael and Emma Borgnäs. 2018. “The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Finding a Path to a Better International Mobility Regime.” *Global Summitry*, 4(1), 18-29.
- Fioretos, Orfeo. 2011.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5(2), 367-399.
- Freeman, Gary P.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4): 881-902.
- Gamlen, Alan and Katharine Marsh eds. 2011.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Global Policy Initiative in Columbia University. 2017.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Guild, Elspeth. 2018. “The Global Compact as a milestone in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Global Social Policy*, 18(3), 325-327.
- Guild, Elspeth, and Stefanie Grant. 2017. “Migration Governance in the UN: What is the Global Compact and What

- does it mea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252,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Hanrieder, Tine. 2015. "The path-dependent desig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ederalism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1(1), 215-239.
- Hollifield, James F. 2018. "The Challenge of Migration Governance." In *Multilateralism in a Changing World Order*, eds. Christian Echle, Patrick Rueppel, Megha Sarmah, and Yeo Lay Hwee. Singapore: Konrad-Adenauer Stiftung.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7.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_____. 2016. *IOM in Asia and the Pacific 2017-2020*. Bangkok: IOM.
- _____. 2013. *Regional Inter-State Consultation Mechanisms on Migration: Approaches, Recent Activities and Impli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_____. 2010. *An Assessment of Principal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on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Koser, Khalid. 2010. "Introduc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16: 301-315.
- Koslowski, Rey. 2011. *Global Mobility Regim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öler, Jobst. 2011. "What government networks do in the field of migration: An analysis of selected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In *Multilayered Migration Governance: The promise of partnership*, eds. Rahel Kunz, Sandra Lavenex and Marion Panizz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ahoney, James and Katheleen Thelen. 2010.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eds. James Mahoney and Katheleen Thel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Sarah F.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Summitry* 1(1), 64-83.
- Micinski, Nicholas R. 2018. *Implementing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The Role of States, UN Agencies, and Civil Society*. Berlin: Friedrich-Ebert Stiftung.
- Micinski, Nicholas R. and Thomas G. Weiss. 2017. "Global Migration Governance: Beyond Coordination and Crises." in *The Global Community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Jurisprudence 2017*, ed. G. Ziccardi Capald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ney, Jeannette, and Sarah P. Lockhart. 2017. "The Paucity of International Protections: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n the Contemporary Era," *Global Summitry* 3(1), 45-67.
- Nita, Sonja. 2013. *Regional Migration Governance: A Comparative View*.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Newland, Katheleen. 2019. "Global Govern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2.0: What Lies Ahead?" Policy Brief,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Newland, Katheleen. 2017.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How Does Development Fit In?" Policy Brief,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Newland, Katheleen. 2010.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Mechanisms, Processes, and Institutions." *Global Governance*, 16: 331-343.
- Thouez, Colleen. 2019. "Strengthening migration governance: the UN as 'wingma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5(8): 1242-1257.
- Wouters, Jan and Evelien Wauters. 2019. "The UN Global I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Some Reflections." Working Paper Series No. 210. Leuven: Leuven Centre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 Vijge, Marjanneke J. 2013. "The promise of new institutionalism: explaining the absence of a World or United Nations Environment Organisa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13, 153-176.

세션 4-02

다문화 사회와 반이민 테러 대응: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기난사 사건을 중심으로

허준영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 ✓ 서론
 - 다문화 사회와 반이민 테러
- ✓ 뉴질랜드 사례 개관
 - 사건 배경, 개요
- ✓ 정부의 대응
 - 사건의 인식, 주체별 대응, 후속 조치
- ✓ 시사점
 - 사회통합 관점

서론: 다문화 사회와 반이민 테러

- 다양한 글로벌 이동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화 심화추세 ex) 개인의 선택, 내전 등
-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한 갈등증가, 특히 심각한 테러 증가(17.11 이집트 모스크 테러, 15.11 파리테러 등), 반이민 이슬람포비아
- 기존의 반이민 테러사건과 뉴질랜드 테러 사건의 차이점
 - 1) 테러의 목표였던 이슬람 인구 미미(1%)
 - 2) 이슬람/IS 테러 등 심각한 반이민 갈등 부재(이슬람 등 이민자 관대 사회)
- 백인우월주의 신봉하는 잠재 테러위협 혐의점이 없었던 외국인(호주출신)의 범죄
- 사건의 시사점은, 외국인 혐오 테러로 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점
- 특히 예멘난민 관련 이슬람포비아가 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테러 가능성은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중요

총기난사 사건 배경

-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미미한 국내외 갈등(conflict) 등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음('18, Global Peace Index 2위/163개국)
- 인구의 25%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다문화 사회임(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2011)
- 이번 테러는 1997년 발생한 Raurimu 대규모 총격(6명 사망) 이후 국내 최초의 총격 사건
-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대규모 총격 사건은 1990년 Aramoana 학살(13명 사망)
- 이슬람교는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1.2 %('18 센서스, 57,276명)에 불과
- 크라이스트 처치와 캔터베리 지역에서 3,000명 이상의 이슬람 거주

총기난사 사건개요

- 2019년 3월 15일 13시 40분경, 뉴질랜드 남섬 캔터베리 지방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
- 알누르 모스크(1:40pm)와 린우드 이슬람 센터(1:55pm) 등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총격
- 호주 출신의 28 세 남성 Brenton Tarrant는 언론보도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자(white supremacist)의 외국인 혐오범죄로 알려짐
- 범행계획 이메일 발송,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live-stream)
- 당시 무슬림 예배를 위한 이슬람교인 수백명이 회합중(Jumu'ah, Friday Prayer)
- 총 51 명 사망, 49 명 부상

정부의 대응: 사건의 인식

- "one of New Zealand's darkest days" (PM)
- 희생자 집중: 테러용의자 성명 언급 거부 등 가해자 의도대로 하지 않겠다고 밝힘
- 직접적 조치: 대량살상 예방을 위한 대응으로 총기규제 필요성 제기
- 유사사건 예방: 소셜미디어를 통한 범행영상 확산 차단을 위한 협조요청(페이스북, 유튜브)
- 심층적 보완 대책마련: 왕립조사위원회 설치, 국가 기관들이 테러 공격으로부터 뉴질랜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사

정부의 대응: 주체별 대응

- 총리(내각): 신속/상세한 정부 조치 및 희생자 대응상황 관련 기자회견, 관공서 및 이슬람 사원 긴급 경계 강화, 이슬람 단체 지도자 회합, 이슬람 예배 참석, 장례식 및 추모제 참석/주관, 소셜 미디어 협조, 총기규제 및 왕립조사위원회 설치 발표
- 경찰: 범행현장 진압, 조치내용 기자회견, 주요 관공서 및 사원 무장경찰 경비 실시(일부 히잡착용), 피해자 신원 확인, 총기규제 관련 입법지원
- 교육부: 각급 학교 지도관리, 학생 힐링 프로그램
- 건강부: 정신건강 관련 조치(국가대응 및 회복계획 마련)
- 산업부: 신규 비자유형 신설(크라이스트처치 희생가족을 위한 비자)
- ACC: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 보상

정부의 대응: 후속조치

- 총기규제 입법 진행
 - 총기 규제 법안 제출(4.1) 및 통과(4.10: 119 vs. 1)
 - 군대식 반자동 소총과 함께 공격용 소총, 대용량 탄창 등 전면 금지
 - 총기반납을 위한 환매(Buy Back) 프로그램 실시(총 2억800만 뉴질랜드 달러)
- 소셜미디어 규제
 - 범죄당시 요청으로 광범위한 삭제 불구, 통제 한계
 - 국제사회의 협조 필요 판단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콜 선언(5.15)
 - 소셜 미디어를 통한 테러리즘 확산 차단을 위해 증오를 퍼뜨리는 콘텐츠 규제 천명

시사점: 사회통합 관점

- (행동) 발언(They're us), 희생자 가족 방문, 희생자 관련 보상 및 비자 배려, 이슬람 커뮤니티 지도자 회합, 장례식 참석, 마오리 전통 추모제 주관 → 전체사회 통합
- (태도) 신속/자세한 상황 전달(press conference), 다양한 전달매체 활용(Twitter, Facebook, website), 표정, 포옹, 히잡 착용 등 → 포용, 공감
- (성과) 유사/모방테러 전무(뉴질랜드 국내), 포용력있는 리더십 평판, 이민신청 증가(신규 유형 신설), 시민들의 자부심(트라우마로 남지 않음), 정부신뢰 수준 유지(사건 전후 설문조사)
- (한계) 피해자 확인 등 행정소요시간 과다, 왕립조사위원회 마감 시간연장, 피해자 가족들의 왕립조사위 조사 관련 불만, 이슬람 커뮤니티 의견의 실제적인 정책반영 정도 확인 애로 → 추가연구 필요

감사합니다!

세션 4-03

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사회 연결망의 변화: 캐러밴 이주를 중심으로

손지혜 | 고려대학교

키워드

이주 사회 연결망(Migration Social network), 캐러밴(Caravan), 북 트라이앵글 (The Northern Triangle), 초국가적 이주 (Transnational immigration), 이주 패턴 변화

I | 서론

2018년 한해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는 대규모 이주자들이 입국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 첫 시도는 3월 25일 약 700여 명의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이주 희망자들이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국경도시인 타파출라(Tapachula)에서 북쪽으로 여정을 이어갔고, 4월 1일 멕시코 남부 와하카(Oaxaca)주의 마티아스 로메로(Matías Romero)에 도착하였을 때 그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El País, 2018). 4월 중순, 500여 명은 미국으로 여정을 이어갔고, 이들 중 약 200여 명의 캐러밴 행렬¹⁾이 미국으로 향했고(The Washinton Post, 2018),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의 길²⁾(Stations of the Cross)’을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The Guardians, 2018). 두 번째 시도는 10월 12일 온두라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산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에서 전직 정치인인 바르톨로 푸엔테스(Bartolo Fuentes)³⁾가 SNS에 “이민자의 여정(Caminata del migrantes)”의 제목의 포스터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The Guardian, 2018).⁴⁾ 초기 이들의 규모는 120명 정도의 규모였지만, 같은 해 11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도착한 이들의 수는 6천 명 이상이었고, 멕시코 국경도시인 Tijuana에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했던 6,000명의 대기자들 중 1,000명 이상은 모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고, 또 다른 1,000여명은 멕시코에 체류하기로 결정 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19). 그러나 2019년 7월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오는 북 트라이앵글⁵⁾ 이민자들(캐러밴)의 미국 망명

1) 이들의 대부분은 온두라스인들과 일부의 엘살바도르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높은 살인율과 불안정한 치안으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The Washinton Post, 2018).

2) 약 10여년 전부터 해마다 멕시코 남부에서 중미 출신 이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건너면서 이들이 겪게 되는 납치, 강탈, 구타,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로 부활절 기간에 성직자 복장을 하고 십자기를 지고 시위를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8).

3) 온두라스의 전직 정치인이며, 사회운동가이다. 또한 Vida laboral(노동 인생)의 편집장이며, 라디오 Sin fronteras (국경 없는)의 진행자이다(출처: Wikipedia).

4) <그림5> 참조.

5) 중앙아메리카의 북 트라이앵글은 특히 경제 통합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3국을 지칭한다.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미국, 멕시코로의 이주 비율이 매우 높으며, 치안과 내전 등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자료 출처: Wikipedia). 이 지역은

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BBC News, 2019).

멕시코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2017년 미국 인구 집계에 따르면, 북 트라이앵글 출신의 이민자들은 중앙아메리카 이민자 중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4,450만명 이민자 중 8%인 약 350만명 정도이며, 이들 중 절반은 2000년 이전 입국하였다(MPI, 2019). 최근까지 이들의 행렬은 2018년 절정을 이루다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 행렬에 대한 열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6,000명의 이주 희망자들이 뜻을 모아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시도한 사례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들을 모두 사회 연결망으로 연결된 가족, 친구, 혹은 지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규모가 광범위하다. 비록 이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이전의 이주 형태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이미 가족·지인 유대(Kinship)의 연대(tie)를 통한 이주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지만, 최근 온라인상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타자 간의 온라인 연대를 맺고 이주를 실행하는 형태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2010년 이후 전 세계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휴대폰 안에서 전 세계의 정보 수집과 SNS를 통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은 이전의 면대면(Face to face), 혹은 가족 간의 유대 형성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결망으로 얽혀있지 않은 관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하는데, 정보의 교환과 실행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타자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 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주의 소셜 네트워크는 ‘이주가 가능한 정보’와 ‘금전적 지원’이 가장 뚜렷한 메커니즘이다(Blumenstock et al, 2019). 강력한 공유 네트워크는 이주의 과정에서 비공식적 보험의 역할을 제공하며, 이주의 동기를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Munshi & Rosenzweig, 2016; Morten, 2019; Blumenstock et al. 2019: 재인용). 이주 사회 연결망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결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차원이 아닌 강력한 연대(Strength Tie)적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다. ‘이주자 네트워크(Migrant network)’는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이 새로운 곳에 임의로 정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이주자가 이주에 성공하면 본국의 다른 가족과 친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연쇄 이주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실제로 이주에 있어서 이주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선이주자들의 네트워크가 가진 힘은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가 이미 자리를 잡은 국가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Transnational migration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 ‘자기 영속적인 이주 주기(a self-perpetuating migration cycle)’인 이주자 네트워크로 인해 이주는 과거보다 양적으로 늘어 간다(김경학, 2017:418). 이주의 소셜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주 동기와 이주 실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새로 이주를 한 사람들(New comer)은 새로 정주한 곳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의 사회 연결망은 세계적인 정보망과 인적자원의 교류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들이 귀환이주자들의 효과적인 주도성을 확보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목한다(홍인화, 2016). 이런 구조의 사회 연결망을 더욱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것은 휴대폰을 이용한 SNS이다. 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이주자 간의 연결망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주를 목적으로 연결망이 구축되는 현상을 ‘사회자본 개념(The Concept of Social Capital)’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상호성과 상호성의 규범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Hotchkiss & Rupasingha, 2018). 기존 사회 자본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단체와 모임에 속해 집단과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자

갱 폭력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다. 이곳의 살인율은 전쟁 지역과 비슷하며, 이들의 이주는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에 급증하였다. 1980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으로 이주한 중앙 아메리카 이민자 규모는 354,000명에서 3백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자료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eb Page, Mercy Corp Web Page).

https://en.wikipedia.org/wiki/Northern_Triangle_of_Central_America (최종 검색일: 2019년 12월 21일)

<https://www.cfr.org/background/central-americas-turbulent-northern-triangle> (최종 검색일: 2019년 9월 21일)

본이 풍부해진다고 주장한다.⁶⁾

캐러반의 이주는 SNS 메시지를 통한 대규모 이주의 첫 사례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이주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의 이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의 언어가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국가와 국적을 초월하여 집결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의 이주가 비록 목 적지인 미국으로의 입국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북 트라이앵글 국가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육로로 이주를 희망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주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캐러반의 이주 양상은 매우 영향력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에서 미국으로의 이주의 시대별 양상과, 디지털 시대의 SNS가 이들의 이주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조직화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의 불법 월경, 송 금경제 등을 주로 다루었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게 된 후부터 선(先)이주자와 후(後)이주자 들간의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이주 동기, 실행, 성공 여부, 정착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이 주 희망자들과 선(先)이주 정착자들과의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와 인적 교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는 규모가 더욱 거대해지고, SNS를 통한 타자 간의 소통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양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캐러반의 이주는 이런 형태의 이주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전의 이 주가 가족, 지인, 친구를 통한 인적 교류를 통한 이주가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스마트폰과 웹을 기반으로 한 SNS의 이주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주 패턴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캐러반 행렬이 10월 12일 산페드로 술라에서 대거 집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르톨로 푸엔테스가 SNS 를 통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추방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게시하면서 온두라스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 여정을 지속적으로 SNS에 업데이트하면서 인접국 엘살바도르인들까지 합류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타자들의 집단이 크게 형성되어 결국 미국 국경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비록 이들의 최종 종착 지인 미국까지 도착하는데 실패하였지만 ‘SNS를 통한 이주의 대규모화’라는 새로운 이주 형태의 출현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주 형태로서 SNS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이나 지인에게 의지 하지 않아도 이주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캐러반의 최근 이주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두 가지 방식에서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 이주 하는 북트라이앵글 출신들의 이주 패턴과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 ‘북 삼각지대 출신들의 미국 이주’, ‘이들의 미국으로의 이주 네트워크’의 키워드로 연구된 학술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자 들의 소통(Interaction)’,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주 결정과 정착’의 키워드로 작성된 학술 논문들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Del Carmen과 Sousa(2018)는 북 삼각지대 지역의 이주자들이 198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주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 인구의 10% 이상이 미국이나 멕시코에 거주하며, 이 수준의 이주율은 각 국가의 노동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이 더욱 이들 국가에 폐쇄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주를 희망하거나 실행하는 집단의 대부분은 노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이주이며, 이 는 이들 국가의 산업과 생산력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송출국의 저개발과 생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수용국에는 학력 수준이 낮고 저숙련의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이들을 위한 사회 보호망에 많은 지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젊은 층의 이주가 지속

6) Ibid.

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미국의 2000년, 2014년 인구 총조사(U.S Census)를 통해 평균 33.2세, 5년 미만의 학력 수준의 인구가 유입됨을 보여주었다.

Menjivar(2000)는 4년간 민족 지학적(Ethnography) 관찰과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참여관찰,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100명의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자들을 연구하였는데, 이주 전부터 연결된 선이주자들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 동기, 정착과정, 이후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하였다. 80-90년대 이들의 이주는 주로 가족, 친척, 친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를 계획하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대(Strength ties)로 연결된 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설명하였다.

Ryan과 D'Angelo(2018)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주에 대해 이주의 변화 양상을 다루었는데, 그들은 사회 연결망 분석 틀과 이론(Social Network Analysis tool & Concept)을 제시하였으며, 이 이론을 통해 개인 및 구조적 차원의 연결을 분석하였다. 이 이론 틀로 지역 및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였고, 최근 사회 연결망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구 지속의 어려움과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를 연구할 때 시간적 요소가 어떻게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이 이론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Blumenstock 외 연구자들(2019)은 '디지털 추적(Digital trace)'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공간을 초월한 소셜 네트워크가 이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SNS는 1:1의 소통 뿐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개인들의 소통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중요한 정보와 목적 달성을 위한 소통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혼합 연구(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증명하였다.

Wellman 외 연구자들(2003)은 웹(web)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별, 학력 수준, 지역, 소득,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웹을 이용한 소통과 정보 공유는 더욱 빨라지고 쉬워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 공유되는 사건이나 소식들은 균중을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개인 범주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관계가 방대해지거나 시공간을 초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셜 네트워크의 범주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III 북 트라이앵글 이주의 특성과 변화

1. 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배경

1980년대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내전으로 당시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경제 불안정 및 불안이 지속되었고, 3개국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10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미국으로 이주한 수는 3배가 되었다(O'Connor et al., 2019). 실제로 이 지역 출신자들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1980년대 이후 연평균 8.1%가 상승하였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전체 이민자의 인구 증가율 보다 매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약 20만 명 미만이 미국에 거주하였지만, 2015년에는 이 숫자가 280만 명으로 늘어났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장기 내전과 지진, 허리케인은 이민자들의 유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인 높은 빈곤율, 경제활동의 제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력 범죄율은 나라를 떠나게 하는 또 다른 동기가 되었다. 이 이민의 흐름이 커짐에 따라 내전, 자연재해, 빈곤, 범죄는 푸시요인(push factor)으로써, 또 미국의 노동 수요와 이주 정책의 변화, 가족간의 결합, 이주 네트워크의 발전 및 확대는 풀 요인(Full factor)으로 작용하였다(Del Carmen & Sous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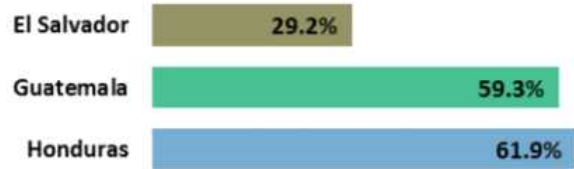
북 트라이앵글의 이주 관련 선행 연구들은 이들의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속되는 이유를 4가지로 지적하였

다. 극 빈곤층의 확대, 자연재해, 치안, 무능한 정부 등을 꼽았는데, 이 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실제로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2018년 10월 캐리벤 이주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하게 캐리벤에 합류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에 따르면 52%가 빈곤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18%가 치안과 불안, 2%가 가족의 재결합, 나머지 28%는 여러 요소(factor)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Meyer & Taft-Morales, 2019).

북 트라이앵글 국가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범위에 속해있다. 2018년 기준 이 3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GDP가 하위 범주에 속하고 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는 약 60%가 빈곤선 이하의 범주에 속한다. 과테말라 서부의 고산지대는 지난 1년간 해외 이주 발생률이 76%인데, 27%가 극빈 상태이다(CFR, 2019). World bank에 의해 집계된 <그림 2>에 따르면, 2018년 전 라틴아메리카 GDP 집계에서 가장 낮은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제적 빈곤은 이주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World Bank 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엘살바도르 인구의 약 47%, 과테말라 인구의 56%, 온두라스 인구의 52%가 25세 이하이며, 이들의 기대 노동 연한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본국에서의 희망 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은 이들의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주 후의 적응과 자립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Meyer & Taft-Morales, 2019). Inter-American Dialogue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 지역의 노동가능인구는 35만 3천명 이상 늘었지만 제공된 일자리는 3만 5천명 미만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다수의 신규 근로자들은 직무 보호나 혜택 없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머물러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⁷⁾. 즉, 노동 가능 기회가 인구 성장 대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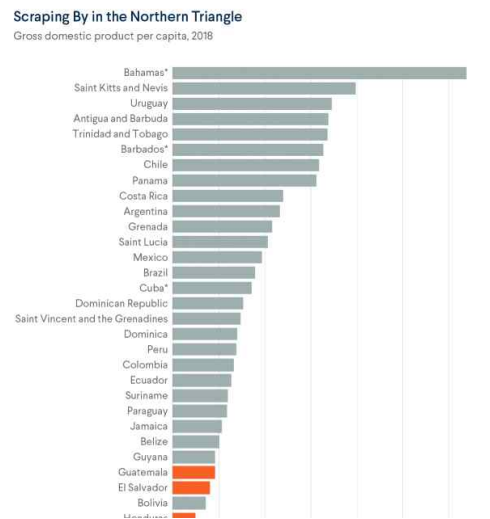
자연재해와 가뭄 등은 이들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1998년 전 중미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미치(Mitch)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추정된 사망자만 1만 명 이상이었고 지역 자산 및 인프라에 3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온두라스의 수도인 테구시갈파(Tegucigalpa)는 황폐화 되었으며, 과테말라는 1976년 지진보다 사망자 수는 훨씬 적었지만 물질 피해는 더 심각했다(The New York Times, 1999). 온두라스의 경우는 국토의 황폐화, 사회적 피해, 인프라 및 생산 시스템의 손실과 피해로 인해 전례 없는 재앙을 겪었다. 고속도로 연결망의 거의 1/3이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도시와 생산 구역이 격리되었다. 수천 명의 가정이 집을

<그림 1> 국가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 (단위:%)



*출처: Worldban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3, 2019에서 재인용

<그림 2> 2018년 전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GDP (단위: \$)



*자료출처: World bank, Central America's Turbulent Northern Triangle에서 재인용⁷⁾

7) <https://www.cfr.org/backgrounder/central-americas-turbulent-northern-triangle> (자료검색일: 2019.10.3.)

8) Ibid.

있고 노숙자가 되었으며, 그 들 중 상당수는 실업자였다. 게다가 미래의 생산 및 수출, 경제 성장, 고용 및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CLAC⁹⁾은 손실액을 약 38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이 수치는 온두라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손실로 기록되었다(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0). 과테말라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커피 병충해를 포함한 농작물의 파괴는 식량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주를 주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해외에 있는 가족들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Cheatham, 2019). 엘살바도르에서 2001년 1월 13일에 시작된 강력한 지진은 인구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2,500 여개 이상의 여진이 등록되어 추가 피해와 공포가 발생하였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상 사태위원회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754명이 사망하고 4,517명이 부상당했으며, 221, 642채의 집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이 실종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식수 시스템이 파괴되어 전염병에 취약해 졌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거의 없었으며 하였다(Reliefweb, 2001). 이러한 자연재해와 농작물 관련 피해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는 잦은 재해와 취약한 대응 능력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15개국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의 58%, 과테말라의 38%, 온두라스의 21%를 아우르는 가뭄과 불규칙한 강우량은 농작물 피해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Meyer & Taft-Morales, 2019). 이는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삶의 열악한 환경을 탈출하는 방법은 이주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캐리밴들의 실제 설문조사에서 58%가 빈곤으로 인해 이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엘살바도르인들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 한 시기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로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1975년과 비교하여 11배 이상이었다(Jones, 1989).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334,000명이 입국한 것으로 보고되었다(Gammage, 2007). 이들의 이주는 대부분 멕시코를 통한 육로로 진행되었으며 1982년 129,000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내전기간¹⁰⁾ 동안 인구의 25% 이상이 이주 또는 망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의 약 2%만 승인되었고, 대다수는 불법으로(Undocumented) 미국에 거주하였다. 86년 이민 개혁 통제법(IRCA)¹¹⁾의 합법화 조항은 146,000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¹²⁾ 이들이 결국 이주를 결심한 배경에는 내전기간 동안 약 7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85% 이상의 잔학 행위들이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준의 국가 폭력과 지속적인 테러는 1992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 되었다(Menjivar & Cervantes, 2018). 소작농들은 국내에서 실랑민이 되어 떠돌았고, 이들은 도시나 시골에서 극빈곤층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들은 국내에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한 채, 미국으로 이주를 시도하게 되었다(Jones, 1989). 또한, 지속된 내전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개인 신상 및 신변에 대한 위협, 무정부나 다름없는 힘 없는 정부의 무능함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상황이며, 변하지 않는 사회, 광범위한 부정부패, 극 빈곤층의 증가, 갭, 조직 등의 신변 위협 등이 이주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MPI, 2018). <그림 3>에 따르면, 2018년 북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엘살바도르가 가장 높은 비율인 10만 명당 51명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온두라스는 40명, 과테말라는 22.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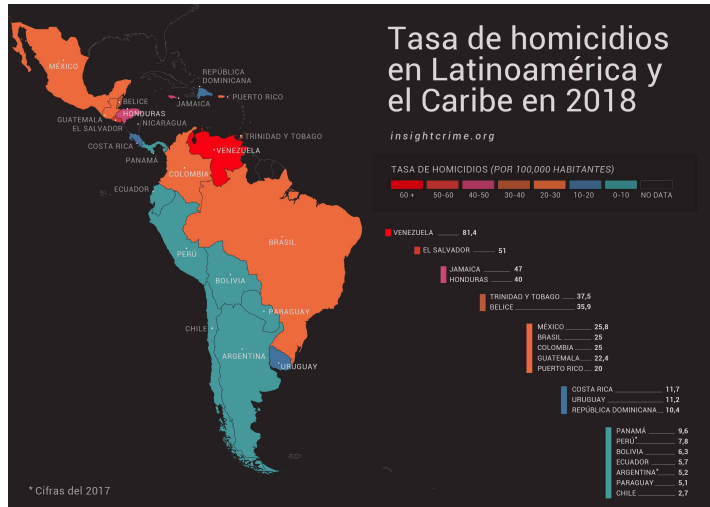
9)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 엘살바도르의 내전은 1979년부터 종전 협정을 맺은 1992년까지 지속 되었으며, 내전 당시 정부가 군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폭력을 확대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민들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내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전 말기인 1980년대 후반 인구의 75%가 빈곤층이었으며, 엘살바도르인들의 생활수준은 1983년 이래로 30%나 떨어졌다. 실업률은 5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인플레이션은 40%나 상승하였고, 고위 관리나 엘리트층은 세금 납부를 피했다. 미국의 경제 원조가 약 30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는 내전 전보다 1/3이나 감소하였다.

11)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 조항으로 미국 내에서 330만 명의 합법적이지 않은 이주자들은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으나, 이 조항으로 역내 이주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Zhao, 2016:33).

12) Ibid.

〈그림 3〉 중앙아메리카의 살인율 (단위:10만명 당)



*자료출처: Balance de InSight Crime sobre los homicidios en 2018, Insight Crime¹³⁾

엘살바도르의 2018년 살인율 수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2016년은 10만 명당 81.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갱단인 Mara Salvatrucha(MS13)와 Barrio 18과 연관되어 있다. 살인율의 감소 이유로는 이 두 갱단이 투쟁을 중단하였고, 정부의 개입이 일부 있었지만, 살인율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Insight Crime, 2019). 온두라스는 2018년 10만명당 4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42.8명에서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2011년 10만 명당 85.5건의 살인율을 기록한 후 2017년은 절반으로 줄었다. 엘살바도르와 구분되는 점은 마약 밀매업자와 갱단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수치가 낮아진 것이다.¹⁴⁾ 과테말라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10만 명당 22.4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10만 명당 26.1명으로 집계되었다.¹⁵⁾ 이처럼 북트라이앵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범죄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MPI, 2018). 개인 신변의 위협과 심리적인 불안감은 이미 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 시기의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주된 이주 동기로 설명하였다(Menjivar, 2001). Cheatham(2019)는 수십 년간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은 만성적이고 복잡한 범죄 생태계의 씨앗을 심었으며, Mara Salvatrucha(MS-13), Eighteenth Street Gang(M-18)과 같은 다국적 갱단과 과테말라의 쿠데타 지원, 엘살바도르의 정부군, Contreras로 알려진 온두라스의 우익 반란군과 냉전기의 미국의 개입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무기력한 정부와 부정부패는 이 지역에 만성적인 고질병과 같다. 과테말라는 2019년 6월 마이애미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인 마리오 에스트라다(Mario Estrada)가 체포되었는데, 그는 멕시코의 시날로아 범죄 조직(Sinaloa Crime Cartel)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을 받아 유력한 대통령 후보 라이벌인 전 법무장관 텔마 알다나(Thelma Aldana)를 포함해 두 명의 다른 대통령 후보를 청부 살인하였다. 에스트라다는 조직에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되면 경찰과 군대가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장하였다(Schneider & Matera, 2019). 온두라스 역시 공무원과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계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국가 간 직접적인 초국가적 조직 연계는 약하지만,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와 공무원 사이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만성적이다. 이러한 불의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으로 3명의 전직 대통령, 다른 고위 관리들은 수백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은 안토니오 사카(Antonio Saca)는 부패 혐의

13) Dalby & Carranza(2019.1.22.), Balance de InSight Crime sobre los homicidios en 2018, Insight Cr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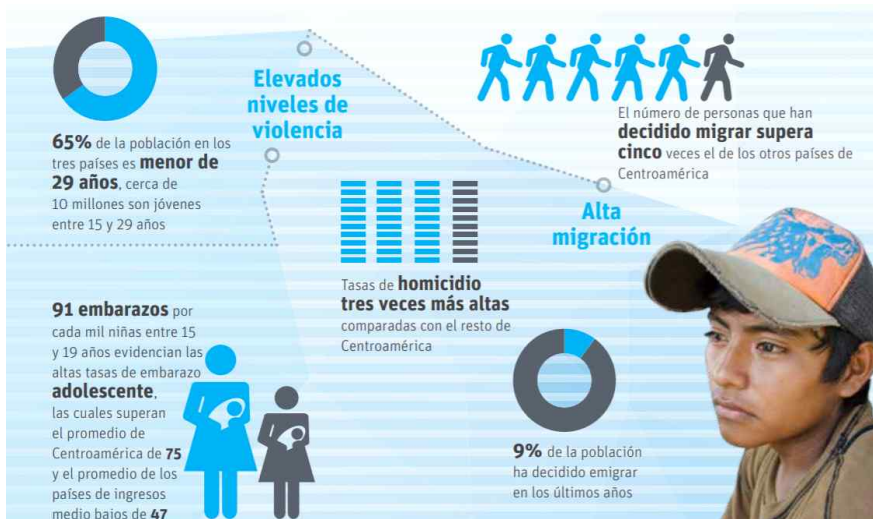
14) Ibid.

15) Ibid.

로 유죄를 선고 받고 10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산 2억 6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금은 GDP의 약 5%를 차지한다.¹⁶⁾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제시한 2018년 국가 부패 지수에서 과테말라는 180개국 중 144번째, 온두라스는 132번째, 엘살바도르는 105번째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공공 지출과 그에 대한 소홀한 감사는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미국으로의 이주를 막고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진행은 답보 상태이다(Marczak et al. 2017).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수사관은 북 트라이앵글의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국가들은 범죄 이익에 완전히 배제되었는가?”(Cawley, 2013). 이 질문을 통해 여전히 정부는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이처럼 극 빈곤층의 확대, 자연재해, 치안, 무능한 정부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려고 시도하는 가장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그림 4>는 북 트라이앵글 국가의 사회 지표를 보여주는데, 인구 6명당 1명이 이주를 결심하고 있으며, 살인율은 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3배가 높은 수치이며, 15세에서 29세

<그림 4> 북 트라이앵글의 사회 지표



*자료출처: Plan de la Alianza para la Prosperidad del Triángulo Norte

사이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와 19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 천명당 91명이 성폭력과 강간으로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북 트라이앵글 출신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변영을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Prosperity Plan) 협약을 체결하였다(García, 2016). 그러나 이들의 이주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캐러밴 이주의 등장

캐러밴의 이주는 온두라스 전직 정치인인 바르톨로 푸엔테스(Bartolo Fuentes)가 SNS에 올린 하나의 포스터로 촉발 되었다.¹⁷⁾ 포스터의 내용은 2018년 10월 12일 온두라스의 두번째 도시인 산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에서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추방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오전 8시에 집결하여 멕시코로 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포스터는 삼시간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출발 당시 150여 명으로 시작하여 11월 13일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도착했을 때 약 5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르톨로메 푸엔테스가 SNS에서 자신임을 드러내며 이주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게재한 것은 ‘자기 노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노출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그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노출의 내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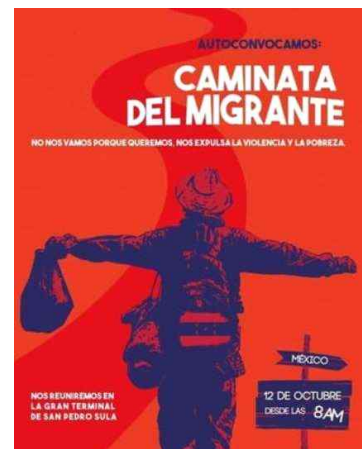
16) Ibid.

17) <그림 5> 참조.

다양해지고 노출의 깊이도 깊어지게 된다. 노출은 상대방의 호응을 봐가면서 그 수위조절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상대가 노출을 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가 거리감을 갖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출을 꺼리게 된다(Chaiken & Derlega, 1974; 한규석, 2019:재인용). 즉, 자신의 정체와 행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행위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는 타자에게 신뢰감과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함께 하는 이들에게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서 인식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유사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비슷한 환경은 타국의 사람일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현실을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국적과 상관없이 이들은 한마음으로 이주 실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림 4>의 지표에 따르면 인구 6명 당 1명은 이주를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역설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사이버 공간이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실제로 면대 면으로 교류하지 않아도 타인과의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존 연결망의 사람들보다 밀접하고 긴밀한 접촉을 함으로써 연결고리를 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러밴의 이주에서도 타자 간의 긴밀한 소통은 목적지인 미국 국경까지 한뜻 한마음으로 이주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SNS에 메시지를 게시한 다음날인 10월 13일 현지 언론 Univisión의 캐러밴 이주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다수의 움직임이 이주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같은 목적으로 향해가기 때문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550명으로 그 규모가 불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Univisión, 2018). 초기의 온두라스인들로 구성된 캐러밴은 2일 만인 14일 과테말라 국경까지 다다르게 되고 1,600명까지 그 규모가 불어났다(Vox, 2018). 언론들은 시시각각 이들의 이동을 보도하였고, 보도된 뉴스들과 이동을 하는 개인 SNS계정을 통해 공유된 일정을 통해, 그 메시지들이 리트윗되어 확산되었고,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무리에 합류하여 규모가 확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0월 20일 3,000명 정도로 추산된 이들은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서 멕시코 군대는 이들의 입국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군인들은 최루탄을 살포하였고, 경찰들은 스피커를 통해 “침입하지 마시오”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수치아테강(Río de Suchiate)을 건너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었다. (AP, 2018). 이들의 숫자는 점점 불어나서 10월 23일 약 7,200여명으로 불어났다.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들의 여정이 계속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를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급격히 줄였고, 특히, 북 트라이앵글 국가들의 삭감은 이전과 비교하여 40%나 줄었다(ABC News, 2018). 10월 27일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는 ‘Estás en Tu Casa’¹⁹⁾를 공표하였는데, 내용은 캐러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이며 임시 신분증 및 취업 허가과 의료 서비스 접근, 자녀들의 교육 기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 긴급한 공표는 사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었다(BBC News, 2018). 11월 7일 이들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입성하였고, 멕시코시티 당국은 스포츠 경기장을 임시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게 배

<그림 5> 바르톨로메 푸엔테스가 SNS에 게재한 멕시코로의 여정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자료 출처: The Financial News¹⁸⁾

18) 자료 출처: ‘중미 캐러밴은 누구인가 가난과 폭력을 피해 ‘죽음의 열차’를 탄 난민들’ 파이낸셜 뉴스, 2019.1.16.일자 기사.(최종검색일: 2019.12.02.) <https://www.msn.com/ko-kr/news/world/%EC%A4%91%EB%AF%B8-%EC%BA%90%EB%9F%AC%EB%B0%B4%EC%9D%80-%EB%88%84%EA%B5%AC%EC%9D%B8%EA%B0%80-%EA%B0%80%EB%82%9C%EA%B3%BC-%ED%8F%AD%EB%A0%A5%EC%9D%84-%ED%94%BC%ED%95%B4-%E2%80%98%98%EC%A3%BD%EC%9D%8C%EC%9D%98-%EC%97%B4%EC%B0%A8%EB%A5%BC-%ED%83%84-%EB%82%9C%EB%AF%BC%EB%93%A4/ar-BBSiQat>

19) ‘당신은 당신 집에 있습니다.’를 의미함.

려해주었고, 매트리스, 담요, 음식, 물을 제공하였다. 약 1달여간 도보로 진행된 여정에서 지친 이들에게 멕시코시 티 당국은 적절하게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준 것이다. 이 호의를 경험한 이들 중 일부는 멕시코에 머물면서 망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를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BBC News, 2018). 11월 15일 이미 도착한 750명과 이후에 도착한 1,500명 이상의 캐러밴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인 Tijuana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국경의 반대쪽에서는 6,000명의 미군 병력이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이들을 막기 위해 면도칼로 울타리를 세우는데 많은 예산을 소비하였다(Independent, 2018).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반 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캐러밴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경은 더욱 강력하게 이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가 증가할수록 미국 정부는 이민에 대해 더욱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이주는 점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그림 6〉 미국 국경까지의 캐러밴의 여정



*자료 출처: The heritage foundation (2019. 1.25)²⁰⁾

IV SNS와 캐러밴

1. 전통적 이주 네트워크

이주 네트워크는 이주의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켜 위험을 분산시키는 관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Massey, 1989; light et al., 1989:재인용). 이주의 동기, 시도, 정착에 네트워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네트워크는 주로 가족, 지인, 친구 등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이주를 실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인적 네트워크가 여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20) <https://www.heritage.org/immigration/report/managing-the-central-american-caravans-immediate-enforcement-corrections-and> (최종 검색일: 2019.12.02.)

이주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들의 지원은 매우 절대적이며 이주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이주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족연대(Kinship)와 연대(Tie)는 이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전부이다. 몇 달간 소요되는 긴 여정을 감당하기에 본국에서 축적된 자본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Schmidt와 Buechler(2017)는 북 트라이앵글 출신의 여성들의 이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들이 미국으로 도착하기까지 여러 국경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치안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친척·친구의 금전적 도움과 이주 과정의 정보지원을 받아 이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본적인 이주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즉, 금전적·인적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으며,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믿음과 신뢰를 통한 지원이 이주를 시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Menjivar(2000)는 이주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자들의 민족지학적 연구를 통해 ‘미국에 있는 가족’ 자체가 이들의 연결망이며, 이 연결망은 혈연을 바탕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결망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송금과 선물 등 생존에 필요한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행위자로 설명하였다. ‘미국에 있는 가족’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위자로서 이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주를 실행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로서 설명하였다. 즉, 실제로 가족이라는 혈연으로 묶여 있는 믿음과 신뢰가 이주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는 일반적인 이주의 패턴이다. 초국가적 이주에서 수용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지원은 절대적이며, 실질적인 이주를 가능케 한다. 이들은 이주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주 이후 정착에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다.

2. SNS의 등장

사회 연결망의 가치는 확고한 두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정보의 통로로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원천이다(Blumenstock et al., 2019). 이주 연결망을 이해하기 위해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상호 관계의 상위개념에 ‘구조’가 성립되며 그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Karsten(1983)은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방법론은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피드백,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결망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Yoram Ben-Porath는 ‘F-connection’의 교환 시스템을 이론으로 발전시켰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family), 친구(friend), 회사(firm)는 경제, 사회, 인류학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설명하였다(Coleman, 2009:재인용).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 사회 연결망의 가장 기본은 ‘F-connection’으로, 가족,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관계의 인간관계가 이주의 동기를 갖게 하고, 실행과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가족, 친구 등 지인이 이주 동기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가장 강력한 행위 동기자로 설명하였다. Menjivar(2000)는 미국 이주 엘살바도르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연구에서, 100명의 인터뷰 대상자들 모두는 미국에 가족, 친구가 있었으며, 이들이 이주를 실행할 수 있는 당기는(Pull)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Luthra와 연구자들(2014)은 가족과 친구들은 이주할 때 그들의 앞선 이주 경험을 통해 후(後)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많은 도움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현대의 사회는 인터넷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 이전의 소셜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Boase와 연구자들(2006)은 친구, 이웃, 친척, 직장 동료 등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에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고 하였다. 즉,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 자체가 ‘개인적 연결(Personal ties)’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망 자체가 개인의 인적 관계에 큰 변화를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Dekker와 Engbersen은 스마트폰은 소통과 정보 교환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 왔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타자와의 소통이 매우 쉬워졌으며, 휴대폰, 스카이프(Skype), 페이스북(Facebook)에 의한 소통은 시

공간을 초월한 소통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이라고 역설하였다(Dekker and Engbersen, 2012; Luthra, 2014; 재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는 여러 관점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캐러밴의 경우 후자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그림 8>을 참고하면, 엘살바도르인들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한 페이스북 이용율은 92%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리트윗이나 연결된 사람들이 올린 정보를 통해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8> 2017년 기준 엘살바도르인들의 페이스북 이용 실태



*자료 출처: Hootsuite(We are Social)²¹⁾

그러나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은 ‘내 손안의 인터넷’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SNS를 메시지를 통한 이주의 실행은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온두라스 인구의 9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Facebook과 WhatsApp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의 확산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이주자들은 지속적으로 SNS에 동영상상을 게시하며 여정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였고, 온두라스의 지역방송국인 HCH는 이들과 여정을 함께하면서 실시간 중계를 하였는데, 이 둘의 조합의 파급력은 매우 강력했다(LA Weekly, 2018). 이는 비단 캐러밴의 이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이주 패턴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혁명이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자의 증가와 사용 빈도의 상승은 이주자들이 실제로 이주를 실행하고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Dekker et al. 2018). 최근 이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이주와 이주민의 증가에 주목하였는데(Dekker et al. 2014; Dekker et al. 2018; 재인용),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주 정보는 진위여부를 떠나서 이주를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전의 이주의 형태는 수용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했다면 최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주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며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입국자수를 보게되면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3국 모두 약 1.5배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2010년을 기점으로 엘살바도르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과테말라는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멈추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SNS의 이용자 증가 또한 이주의 준비와 시도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근원(Source)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1) <https://www.slideshare.net/DataReportal/digital-2018-el-salvador-january-2018> (최종 검색일: 2019.12.13.)

〈표 1〉 북 트라이앵글 3국의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 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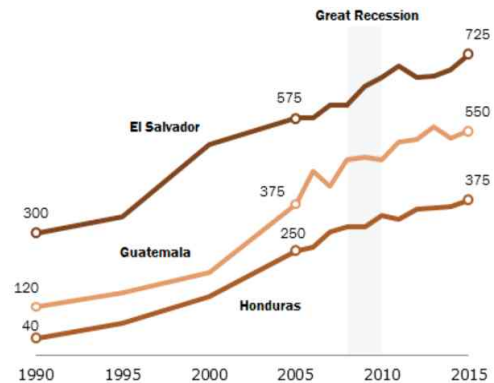
연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1990	120,000	40,000	300,000
2005	375,000	250,000	575,000
2015	550,000	375,000	725,000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²²⁾

〈그림 7〉 북 트라이앵글 3국의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 수 (단위: 천명)

U.S. unauthorized immigrant population from Northern
Triangle countries more than tripled since 1990

In thousands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

실제로 이들이 이주 실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페이스북과 Whatsapp의 온라인 단체 혹은 모임에 속해 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들의 조직적 행위가 미국으로 이주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엔진의 역할을 하였고(Kight, 2019), 삼시간에 휴대폰을 통해 메시지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집단 이주 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바르톨로 푸엔테스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Caminata del Migrante"를 알리는 메시지를 게시(Kari, 2018)는 삼시간에 퍼졌고, 이 행동에 참여한 이주 희망자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하였다(Lubbers et al., 2010; Bilecen & Sienkiewicz, 2015; Ryan & D'Angelo, 2018:재인용). 이러한 연결망으로 더 많은 캐리밴들이 모임 수 있었고, 조직이 더욱 확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2018년 두 차례의 미국으로의 캐리밴들의 이주는 이전의 이주 패턴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기존 북 트라이앵글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이주는 가족 간의 유대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이주 과정의 지원, 이주 이후의 정착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2018년 두 번째 캐리밴의 이주는 온두라스의 전직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이주의 여정에 관한 메시지를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메시지의 파급효과는 견잡을 수 없이 커져 최대 7천명 이상까지 그 규모가 불어났다. 이들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인적 유대감이 없이 휴대폰을 통해 SNS에 게시한 이들의 여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이 실시간 메시지들은 이주를 실행하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끌어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010년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 교환과 검색은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이주 패턴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주 실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캐리밴들의 이주 패턴과 이주 배경과 시도, 사회 연결망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SNS의 메시지와 정보를 통한 이주 형태는 비단 북 트라이앵글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시리아 난민 등 난민들

22)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1990년, 2005년, 2015년 자료로 Pew Research Center에서 인용하였음. 〈그림 7〉을 근거로 표로 작성하였음. <https://www.pewresearch.org/hispanic/2017/12/07/recent-trends-in-northern-triangle-immigration/> (최종검색일: 2019.12.21.)

의 이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주를 목적으로 이들이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 연결망은 결국 행동 실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SNS의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이들의 이주를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이들의 이주 실행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였다. 2018년 캐러밴의 이주는 이주의 패턴에 있어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주의 패턴이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SNS에 리트윗하여 정보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확산 된다는 것과 타자 간의 온라인 신뢰성에 이주를 실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주는 개인 단위의 이주가 대부분이었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공권력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러나 규모가 확대되고 집단화 되자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안보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였다. 즉, 대규모의 집단화된 이주는 공권력의 통제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이번 이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공권력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속수무책으로 이들에게 미국으로 가는 길을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주는 수용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야만 실행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이주를 희망하는 같은 동기를 갖는 사람들과 SNS를 통해 집단으로 이주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이주 패턴과 구분되는 것이며, 향후 타자끼리 연결된 대규모의 이주가 계속 시도 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홍인화(2016). “이스라엘과 독일의 귀환동포정책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 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Blumenstock, Joshua, Chi, Guanghua, and Tan, Xu(2019). “Migration and the Value of Social Networks”. *U.C. Berkeley Committee for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 Coleman S, Jame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95-120.
- Cohn, D’Vera, Passel, Jeffrey, and Gonzáles-Barrera, Ana(2017). “Rise in U.S. Immigrants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Outpaces Growth From Elsewhere”, Pew Research Center, December 2017.
- Del Carmen, Giselle and D. Sousa, Liliana(2018). “Human Capital Outflows Selection into Migration from the Northern Triangl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8334, World Bank, Poverty and Equity Global Practice Group.
- Dekker, Rianne, Engbersen, Godfried, Klaver, Jeaninem, and Vonk, Hanna(2018). “Smart Refugees: How Syrian Asylum Migrants Use Social Media Information in Migration Decision-Making”, *Social Media Society*, January-March 2018: 1-11.
- Flores-Yeffal Y. Nadia and Pren A. Karen(2018). “Predicting Unauthorized Salvadoran Migrants’ First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between 1965 and 2007”, *Journal o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6(2):131-144.
- García, Mercedes(March 3, 2016). “Alliance for Prosperity Plan in the Northern Triangle: Not Likely a Final Solution for the Central American Migration Crisis”, Research Associate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 Hotchkiss, Julie L. and Rupasingha, Anil(2018). “Individual Social Capital and Migration”, Working Paper, March 2018,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https://doi.org/10.29338/wp2018-3> (검색일자: 2019.12.21.)
- Jones C. Richard(1989). “Causes of Salvador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Geographical Review,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79(2): 183-194.
- Karsten, Siegfried G.(1983). “Dialectics, Functionalism, and Structuralism in Economic Though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 Sociology*. 42(2): 179-192.
- Luthra, Renee, Platt, Lucinda and Salamońska, Justyna(2014). “Migrants diversity, migration motivations and early integration: the case of Poles in Germany, the Netherlands, London and Dublin”, LSE ‘Europe in Question’ Discussion Paper Series, April 2014. LEQS Paper No. 74/2014.
- Meyer, Peter J. and Taft-Morales, Maureen(June 13, 2019). “Central American Migration: Root Causes and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Ryan, Louise and D'Angelo, Alessio (2018). “Changing times: Migrants’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challenges of longitudinal research”, *Social Networks* 53 :148–158.
- Schmidt, Leigh Anne and Buechler, Stephanie(2017). “I risk everything because I have already lost everything: Central American Female Migrants Speak Out on the Migrant Trail in Oaxaca, Mexico”, *Journal of Latin American Geography*, 16(1):139–164.
- Schneider, Mark L. and Matera, Michael A. (2019. 8), “Where Are the Northern Triangle Countries Headed? And What Is U.S. Polic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CSIS).
- SICREMI(Continuous Reporting System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Americas)(2018). El Salvador–Overview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El Salvador.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Wellman, Barry, Quan-Haase, Anabel, Boase, Jeffrey, Chen, Wenhong, Hampton, Keith, Días, Isabel, and Miyata, Kakuko(2003). “The Social Affordances of the Internet for Networked Individualis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8(3).

인터넷

- ABC News(2018.10.25.). “Donald Trump to cut Central American aid as 7,200-strong caravan continues march north”.
<https://www.abc.net.au/news/2018-10-23/trump-vows-to-cut-central-american-aid-as-migrants-march-on/10417830> (검색일자: 2019.12.02.)
- Acciones estratégicas del Plan de la Alianza para la Prosperidad del Triángulo Norte El Salvador, Guatemala y Honduras, “Triángulo Norte: Construyendo confianza, creando oportunidades, Plan de la Alianza para la Prosperidad del Triángulo Norte”
https://www.un.int/honduras/sites/www.un.int/files/Honduras/1-acciones_estrategicas_del_plan_de_la_alianza_para_la_prosperidad_del_triangulo_norte_folleto_07abril20151.pdf (검색일자:2019.12.13.)
- AP(2018.10.20.). “Caravan migrants break Guatemala border fence”.
<https://apnews.com/d52af53fc55b49cddb320df9a19ff626> (검색일자: 2019.10.2.).
- AXIOS(2019. 4. 20). “How social media fuels migrant caravans”
<https://www.axios.com/how-social-media-fuels-migrant-caravans-bab738dd-b8f0-49ce-b006-47e1f3620e67.html> (검색일자: 2019.11.30.)
- BBC News(2018.10.27.). “Migrant caravan: Mexico offers temporary work permits”.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5999610> (검색일자: 2019.12.18.)
- BBC News(2018.11.7.). “In pictures: Migrant caravan rests in Mexico City”.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6124651> (검색일자: 2018.12.18.)
- BBC News(2019.9.12.). “Trump immigration plans: Supreme Court allows asylum curbs”,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9669811> (검색일자: 2019.9.29.)
- CBS DFW(2019.4.19.). “Social Networks Are Key For Central American Migrants Forming Caravans”
<https://dfw.cbslocal.com/2019/04/19/social-media-central-american-migrants-caravans/> (검색일자: 2019.9.29.)
- Cheatham, Amelia(Oct 1, 2019). “Central America’s Turbulent Northern Triangl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central-americas-turbulent-northern-triangle>(검색일자: 2019.11.01.)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8> (검색일자: 2019.12.02.)
- Dalby, Chris & Carranza, Camilo(Jan 22, 2019). “Balance de InSight Crime sobre los homicidios en 2018”. Insight Crime.
<https://es.insightcrime.org/noticias/analisis/balance-de-insight-crime-sobre-los-homicidios-en-2018/>
 (검색일자: 2019.12.11.)
- El País(2018.4.5.). “Los rostros de la caravana que enfureció a Trump”.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8/04/05/mexico/1522889983_525505.html (검색일자: 2019.10.9.)
- Hallock, Jeffrey, Ruiz Soto G. Ariel, and Fix, Michael(May 30, 2018). “In Search of Safety, Growing Numbers of Women Flee Central America”, MPI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search-safety-growing-numbers-women-flee-central-america>
 (검색일자: 2019.12.15.)

- Independent(2018.11.16.). "Migrant caravan: More than 1,500 refugees and migrants arrive at US-Mexico border".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migrant-caravan-live-location-where-today-latest-update-tracker-us-border-mexico-wall-a8635841.html> (검색일자: 2019.12.18.)
- Insight Crime(2013.8.20.). "¿Son los países del Triángulo del Norte 'Narco-Estados'?".
<https://es.insightcrime.org/noticias/analisis/los-paises-del-triangulo-del-norte-narco-estados/> (검색일자: 2019.12.15.)
-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June 16, 2000). "Central America After Hurricane Mitch, The Challenge of Turning a Disaster into an opportunity", https://web.archive.org/web/20051219114814/http://www.iadb.org/regions/re2/consultative_group/background2.htm (검색일자: 2019.11.13.)
- Labrador, Rocio and Renwick, Danielle (June 26, 2018). "Central America's Violent Northern Triangl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er/central-americas-violent-northern-triangle> (검색일자: 2019.9.29.)
- LA Weekly(2018.12.24.). "Social media doomed the migrant caravan".
<https://www.laweekly.com/social-media-doomed-the-migrant-caravan/> (검색일자: 2019.11.30.)
- Los Angeles Times(2018.4.29.). "People 'associated with' Central American caravan have entered U.S. illegally, federal officials say",
<https://www.latimes.com/local/lanow/la-me-ln-sd-caravan-20180428-story.html> (검색일자: 2019.9.29.)
- Latta, Scott (May 1, 2019). "Quick facts: Central American migration". Mercy Corps.
<https://www.mercycorps.org/articles/quick-facts-central-american-migration#what-is-northern-triangle> (검색일자: 2019.9.29.)
- Marczak, Jason, Stein, Eduardo, Brizuela de Ávila, María Eugenia, Cosenza, Luis, and Marczak, Jason(2017). "CONSTRUYENDO UN MEJOR FUTURO Un plan de acción para el Triángulo Norte de Centroamérica", Atlantic Council ADRIENNE ARSHT LATIN AMERICA CENTER.
https://publications.atlanticcouncil.org/northern-triangle/assets/Informe_Task_Force.pdf (검색일자: 2019.12.13.)
- Menjíivar, Cecilia and Cervantes G. Andrea(August 29, 2018). "El Salvador: Civil War, Natural Disasters, and Gang Violence Drive 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MPI)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el-salvador-civil-war-natural-disasters-and-gang-violence-drive-migration> (검색일자: 2019.10.2.)
- O'connor, Allison et al.(Agust 15, 2019). "Central Amer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MPI)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central-american-immigrants-united-states?gclid=Cj0KCQjwrMHsBRCIARIsAFgSel2qLpuckXBOTD_1Hc0LwmvqL3i_lkYMdCpD-y4XNrCo4O7cuZEZ5fEaApkVEALw_wcB (검색일자: 2019.11.12.)
- Planchart, Reinaldo Figueredo and Buergenthal, Thomas(Jan 26, 2001). "From Madness to Hope: the 12-year war in El Salvador: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Truth for El Salvador", The Commission on the Truth for El Salvado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ttps://web.archive.org/web/20110108131124/http://www.usip.org/files/file/ElSalvador-Report.pdf> (검색일자: 2019.12.1.)
- Reliefweb(2001.2.1.). "El Salvador Earthquake: Emergency Update 02 Feb 2001"
<https://reliefweb.int/report/el-salvador/el-salvador-earthquake-emergency-update-02-feb-2001> (검색일자: 2019.12.13.)
- South China Morning Post(2018.4.4.). "Migrant caravan halts during annual 'Stations of the Cross' protest as Donald Trump tweets threats to Mexico".
<https://www.scmp.com/news/world/united-states-canada/article/2140170/migrant-caravan-halts-us-president-donald-trump> (검색일자: 2019.9.30.)
- The Guardians(2018.4.30.). "US stops caravan of Central American asylum seeker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pr/30/central-american-asylum-seekers-caravan-forced-to-a-halt> (검색일자: 2019.9.30.)
- The Guardian(2018.10.24.). "Where is the migrant caravan from- and what will happen to it at the border?",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oct/24/caravan-migrants-what-is-it-where-from-guatemala-honduras-immigrants-mexico> (검색일자: 2019.9.12.).

- The New York Times(1999.1.24.). "Storm spared tourism areas"
<https://www.nytimes.com/1999/01/24/travel/storm-spared-tourism-areas.html> (검색일자: 2019.10.2.)
- The New York Times(2018.4.29.). "Migration Caravan of Asylum Seekers Reaches U.S. Border"
<https://www.nytimes.com/2018/04/29/world/americas/mexico-caravan-trump.html> (검색일자: 2019.9.29.)
- The New York Times(2019.2.16.). "With Trump's Tough Deterrents, Many Asylum Seekers on the Border are Giving Up",
<https://www.nytimes.com/2019/02/16/us/border-migrants-asylum-mexico-aclu.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검색일자: 2019.9.29.)
- The Washington Post(2018.4.29.). "The Trump administration vs. the carava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immigration/the-trump-administration-vs-the-caravan-heres-what-you-need-to-know/2018/04/26/921636be-489e-11e8-827e-190efaf1f1ee_story.html (검색일자: 2019.9.29.)
- Univisión(2018.10.13.). "Parte una nueva caravana con cientos de migrantes hondureños hacia México y EEUU".
<https://www.univision.com/noticias/inmigracion/parte-una-nueva-caravana-con-cientos-de-migrantes-hondurenos-hacia-mexico-y-eeuu> (검색일자: 2019.12.1.)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April 9, 2014). "1. The Big Picture",
http://www.unodc.org/documents/gsh/pdfs/Chapter_1.pdf (검색일자: 2019.12.11.)
- Vox(2018.10.25.). "The migrant caravan, explained".
<https://www.vox.com/2018/10/24/18010340/caravan-trump-border-honduras-mexico> (검색일자: 2019.10.25.)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nk, The World Bank, (2019.12)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자: 2019. 12. 13)
- Quintana, Ana Rosa and Inserra, David(January 25, 2019). "Managing the Central American Caravans: Immediate Enforcement Corrections and Regional Engagement Strategy Required", BACKGROUND, No. 3372, The Heritage Foundation.

도서

- 김경학(2017). 『국내 고려인의 이주와 정착: 광주광역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이론과 실태』, 북코리아.
- Zhao, Xiaojian(2016).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fter 1945』,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American History.
- Menjívar, Cecilia(2001). 『Fragmented 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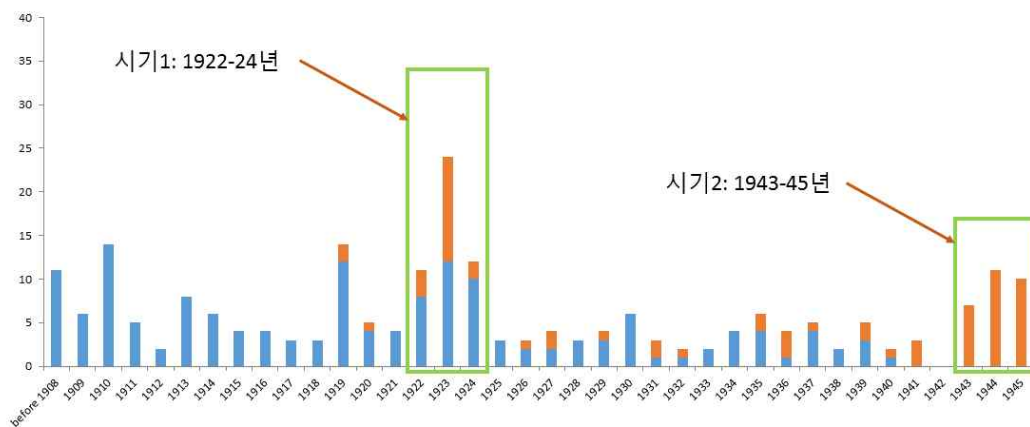
Wikipedia, www.wikipedia.org/

세션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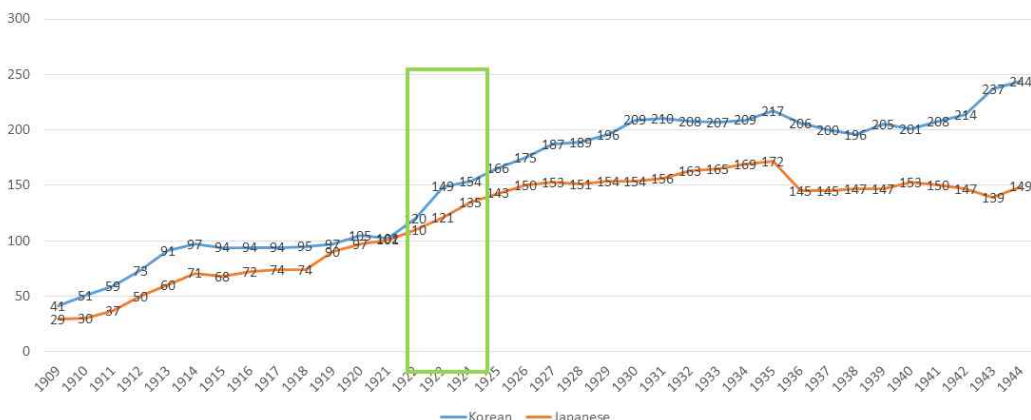
Studying Law Abroad, Practicing Law Home: The Spatial Mobility of Korean Lawyers in Early 1920s Japanese Empire as Structural Sequences and Historical Contingency

박천웅, 최희정 | 전북대학교

일본변호사 자격 취득한 조선인(1908-45)



일본 식민 지배기 전체 변호사 등록 추이



연구질문

- 1922-24년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돌아온 조선인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곧 이은 급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일본 식민 통치기 동안 일본으로 유학 혹은 일본에서 자격 시험에 합격한 뒤 돌아오려는 시도
- 그런데 왜 이 사건이 1920년대 초에만 반짝 일어나고 말았는가?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4

구조적, 인과적 설명

- 유학생 증가
 - 출신국과 도착국 사이의 격차, 특정한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열망
- 소수자 변호사
 - 사회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커리어 개발에 한계, 인종적(ethnic)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자본은 소규모의 종족 정착지에서만 활용 가능함
- 유학생+소수자 변호사들은 자신의 문화/사회자본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돌아올 수밖에 없음.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5

구조적, 인과적 설명의 한계

- 일본으로 간 조선인 유학생은 식민지 시기 내내 꾸준히 증가했음.
 - 1940년대 적게는 3만명, 많게는 15만명 정도로 추계됨.
- 반면, 조선 변호사의 대부분은 식민지 조선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
 - 일본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1924년 이후 급감한 후 1940년대에 늘어남.
- 즉, 일본으로의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일본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늘어나지 않는 현상
 - 1922-24년 사이의 독특한 현상이었음.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6

역사적, 우연적 설명

- 여러 사건(혹은 계열)들 간의 연쇄에 의해 원인과 결과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합되는 것이 가능
 - 인과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시기와 공간을 초월해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과성에 대한 부정
-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한 유학 규정의 변경+일본 제국 정부에 의한 변호사 자격 시험의 변경
 - 일본에서는 191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판검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이 폐지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로 통합, 신설되기에 이름(1924년부터 시행). 아울러 조선에서는 1921년부터 조선변호사시험이 시행됨.
- 1921-23년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7

연구질문

- 1921-23년 사이 식민지 조선에서 등록한 조선인 변호사의 급증과 곧 이은 급감이라는 현상을 제국-식민지 체제라는 구조 하에서 피지배민족 변호사가 겪게 되는 교육과 시험이라는 구조화된 이동의 궤적과 우연한 사건들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제국-식민지 사이의 교육과 (자격)시험의 격차, 제국 정부의 정책 변경이 초래한 2-3년의 기회 확장과 축소, 그 구조와 우연 속에서 피지배민족 엘리트들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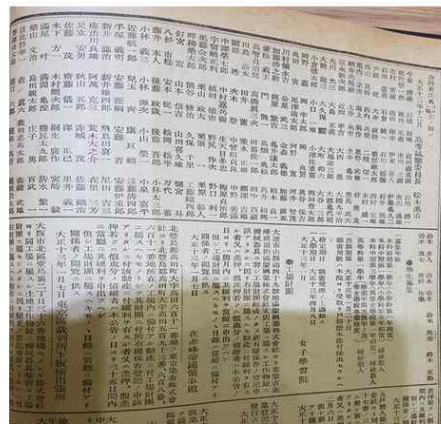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8

조선인 변호사들의 변호사 자격 확인

- 조선총독부
관보&일본제국관보&변호사관계서류
- 조선총독부 판검사 경력 여부 ←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아님
-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여부 ←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아님
- 일본제국대학교 법학부 졸업자 ←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아님
- 일본제국관보 상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숫자 확인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9

순번	이름	출신학교	자격종류 (연도)	등록일자
1	이승우(李升雨)	주오 대학	일본 변호사시험 1918	1919.3.12
2	김우영(金雨英)	고토 제국대학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1919.10.6
3	김지건(金志健)	주오 대학	판검사 등용시험 1919	1920.11.30
4	김병우(金秉愚)	미상	일본 변호사시험 1921	1922.2.27
5	임창수(林昌洙)	주오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1 2차	1922.6.30
6	김완섭(金完燮)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1차	1922.12.11
7	유억겸(俞億兼)	도쿄 제국대학	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1923.1.4
8	김용무(金用茂)	주오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1 1차	1923.1.17
9	한근조(韓根祖)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1차	1923.1.17
10	한창달(韓昌達)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1 2차	1923.2.3
11	이인(李仁)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3.5.10
12	손치온(孫致殷)	미상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3.7.26
13	김영수(金永洙)	미상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3.8.1
14	조주영(趙柱永)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1차	1923.8.1
15	정항기(鄭恒基)	미상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3.8.22
16	서한욱(徐漢旭)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3.9.12
17	홍중률(洪鍾律)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3.10.8
18	강거복(姜巨福)	주오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법률 52호)	1923.12.8
19	공진태(孔鎭泰)	메이지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3.12.22
20	박응무(朴應茂)	경성전문학교	일본 변호사시험 (법률 52호)	1924.3.24
21	윤종건(尹鍾建)	경성전문학교	일본 변호사시험 (법률 52호)	1924.4.11
22	김명진(金明鎭)	메이지 대학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4.6.25
23	권승렬(權承烈)	주오 대학 전문부	조선 변호사시험 1925	1926.7.5
24	심상봉(沈相翊)	경성법학전문학교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1926	1927.5.6
25	진직현(晉直鉉)	니혼 대학 전문부	일본 변호사시험 1922 2차	1927.5.21
26	박영위(朴榮衛)	메이지 대학 전문부	조선 변호사시험 1927	1927.12.5
27	노진설(盧鎭禔)	메이지 대학 전문부	조선 변호사시험 1927	1928.7.27
28	송영상(宋永祥)	주오 대학 전문부	조선 변호사시험 1928	1928.12.1
29	한석만(韓錫晩)	경성법학전문학교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1926	1929.9.30
30	김성호(金聲浩)	니혼 대학 전문부	조선 변호사시험 1929	1929.12.2
31	최두환(崔斗煥)	니혼 대학 전문부	조선 변호사시험 1930	1930.12.26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0

1919~1930년 사이 일본 소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총31명, 조선총독부 등록일자 순)

- 일본 소재 학교 졸업자
- 조선 소재 학교 졸업자
- 일본변호사시험
- 조선변호사시험
- 변호사시험 이외의 자격 시험

1924년6월 이후 1926년7월에야 일본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등록을 마침.

1926년 7월 이후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진직현 제외)

1925-26년 즈음부터 그리고 그 이후, 일본 유학파들은 조선변호사시험으로 물리게 됨.

1920년대 느슨해진 일본 유학

- 1900년대부터 일본 유학을 열망하는 조선인들이 많았지만,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유학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정책을 유지
 - 학자금 이외에도 지방 행정 단위에서의 신원보증서가 반드시 필요
- 3.1운동 이후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함.
- 191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립)대학의 전문부 과정이 이들 조선인 유학생들의 유학처로 각광받기 시작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1

조선인 변호사들의 귀환

- 1918년 이승우의 일본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1924년까지 23명의 조선인들이 일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함; 그 가운데 20인이 1920년대 조선으로 돌아와 변호사 개업
 - 김형두(1920년), 이종태 (1922년 2차), 김윤배 (1922년 2차)를 제외하면 모두 조선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기록
- 조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한 이들 20인 가운데 윤종건과 박응무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 소재 대학을 졸업
- 이들의 20인의 변호사들의 개업지는 대체로 자신들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 혹은 복심법원 소재지 이상의 대도시
 - 본적지: 사회적 연줄망 활용의 극대화, 대도시: 자유 경쟁
 - 관청은 경제적 수입과 함께 사회적 명성 획득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2

순번	이름	최초 등록지	본적	경성 개업	본적지 개업
1	이승우(李升雨)	경성	충북 진천	O	X
2	김우영(金雨英)	경성	경남 통령	O	X
3	김지건(金志健)	평양	평남 평원	X	O
4	김병우(金秉愚)	경성	경성	O	O
5	임창수(林昌洙)	공주	충남 연기	X	O
6	김만섭(金完奭)	대구	경북 안동	X	O
7	유억겸(俞億兼)	경성	경성	O	O
8	김용무(金用茂)	경성	전남 무안	O	X
9	한근조(韓根組)	평양	평남 강서	X	O
10	한창달(韓昌達)	함흥	함남 신흥	X	O
11	이인(李仁)	경성	경기	O	O
12	손치온(孫致殷)	대구	전남 강진	X	X
13	김영수(金永洙)	광주	전남 강진	X	O
14	조주영(趙柱永)	대구	경남 남해	X	X
15	정창기(鄭恒基)	대구	경북 영일	X	O
16	서한욱(徐漢旭)	대구	경북 달성	X	O
17	홍중률(洪鍾律)	대구	경남 하동	X	X
18	강거복(姜巨福)	해주	황해 연백	X	O
19	공진태(孔鎭泰)	경성	경기 개성	O	O
20	박응무(朴應茂)	평양	평북 의주	X	X
21	윤종건(尹鍾健)	경성	경기 진위	O	O
22	김명진(金明鎭)	경성	전남 해남	O	X
23	권승렬(權承烈)	경성	황해 연백	O	X
24	심상봉(沈相弼)	경성	전남 영광	O	X
25	진직현(晉直鉉)	경성	전북 임실	O	X
26	박영위(朴榮微)	신의주	평북 순주	X	O
27	노진설(盧鎭成)	평양	평남 용강	X	O
28	송영삼(宋永祥)	평양	평남 평양	X	O
29	한격만(韓格晩)	함흥	함남 정평	X	O
30	김성호(金聲浩)	광주	전남 강진	X	O
31	최두환(崔斗煥)	경성	경성	O	O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3

31명의 변호사 가운데 20명이 자신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

자신의 본적지가 아닌 경우 경성, 평양, 대구 3대 도시 (복심법원 소재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변호사 등록 신청

일본에서의 곤란

- 진직현(1922년 2차) 1923년부터 1927년 사이 도쿄에서 변호사 개업; 1927년 도쿄지방법원 검사정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낸 신원조사서에 따르면 수임 사건의 부족으로 변호사로서의 생활이 매우 곤란
- 1927년 진직현이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서류에 따르면 가족의 자산은 조선에서 약 6만엔 정도로 추산되는 거부(巨富)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4

1917-24년 일본 변호사 시험의 변화

- 1917년과 18년에는 연간 80명에 불과하던 것이 변호사시험 폐지를 앞둔 1921년에는 314명, 1922년에는 숫제 2회 실시하여 10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게 됨.
- 그러나 대정 52호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에게 1945년까지 지원 자격을 계속 부여, 그러나 합격자 수가 1924년 190여명으로 1/5로 줄어들음.
- 제국대학교 법학부 졸업생들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를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부여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5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내 교육과 자격 시험의 활성화

• 조선변호사시험

- 1922년 첫 4명의 합격자 배출 후 점차적으로 합격자 수를 늘여나가 1920년대 후반에는 연간 10여명 정도. 1945년까지 매해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배출함.
-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 유학 후 조선변호사시험 응시(권승렬, 박영휘, 노진설, 송영상, 김성호, 최두환 등)

•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법학전문학교

- 1931~1943년 사이 조선변호사시험 조선인 합격자의 태반은 경성법학전문학교, 반면 일본 유학과 출신의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줄어들.
- 변호사자격 취득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유학을 해야하는 이유가 상당히 감소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6

결론: 1920년대 초 조선인 유학과 변호사 집단 형성 과정에서 구조적, 우연적 요인들

- 제국-식민지 구조 속에서 조선인 변호사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본 및 조선에서 변호사자격시험의 변화와 조선총독부 유학 방침의 변화 등이 순간적으로 맞물리면서 1920년대 초에 등장할 수 있었던 집단.
- 유학과 변호사 집단의 등장
 - 허헌, 김병로, 김용무, 이인, 권승렬은 식민지 시기 항일 변호사 집단의 중추이면서도 해방 이후 남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변호사들로서 모두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음.
 - 김용무, 이인, 권승렬은 본 연구의 직접적 연구 대상 가운데 셋
 - 이들 세 명 외 유학과 조선인 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매우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첫 세대
 - 조선총독부 관료 경험을 '거의' 하지 않았기에 일종의 민족주의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

12/21/2019

2019년_이민학회후기학술대회

17

세션5 | 협력 구술생애사를 통해서 본 초국가적 한인의 경계 넘기

사회 / 정병호 | 한양대



발표 01 실천연구로서의 협력구술생애사: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병호 | 한양대

발표 02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구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과 민족경계의 연행에 대한
분석
조일동 | 신한대

발표 03 고려인 이주청소년의 초국가적 삶과 국가정체성 재구성
김기영 | 한양대

발표 04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를 통한 이해와 연대
최은영 | 한양대

토론 김현미 | 연세대, 이희영 | 대구대

세션 5-01

실천연구로서의 협력구술생애사: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병호¹⁾ | 한양대학교

1 | 한민족 이산과 초국가적 한인의 경계넘기

한민족 이산(離散, Korean Diaspora)의 역사는 국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조선왕조 말기에 살길을 찾아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 하와이와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의 애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식민지배 아래 한반도를 떠나 북간도, 서간도로 이주해 대륙을 떠돌며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들, 징병과 징용, 정신대로 사할린과 홋카이도, 큐슈의 탄광과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섬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투쟁하며 살아 온 사람들은 해방 무렵에는 당시 한민족 구성원의 약 1/5에 달하게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해방과 더불어 분단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의 국민이 되거나, 무국적자로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초국가적 한민족 역사를 열어 가게 되었다.

일제의 패망으로 시작된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와 새로운 국경에 막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거주하게 된 국가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 일본제국의 ‘신민(臣民)’으로서 전쟁터와 일터로 끌려갔다가 전쟁에 지자 다른 민족 출신이라고 하루아침에 ‘외국인’, ‘제3국인’, ‘난민’ 신분이 되어버린 ‘재일동포’, 소련영토가 된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억류된 ‘사할린 동포’,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의 사막으로 끌려갔다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독립한 신생국가들의 소수민족이 되거나 러시아 사회의 무국적자가 된 ‘고려인’, 중국의 국공내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소수민족으로서 중국국민이 된 ‘조선족’ 등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해방과 전쟁과정을 계기로 한반도 역사에 깊이 개입하게 된 미국으로도 유학과 국제결혼, 해외입양을 통해 이주가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 유럽, 남미 등지로까지 이민이 본격화 되었다.

한민족의 근대사는 대한민국 국사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국민국가의 영역에 걸쳐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전개되었다. 흔히 ‘한민족’은 단일민족신화로 인해 동질적인 혈통, 언어, 문화집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국민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근대사를 통해 다양한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각 사회에서 내면화한 각기 다른 국민적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민족 다문화 상황과 초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한민족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지난 1세기 동안의 식민과 분단, 전쟁과 냉전의 전시기에 걸쳐서 한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역사에 개입한 주변 국가에 편입되어 살아오던 사람들이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경계를 넘는 교류와 재이주를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약 반수는 주변 강대국의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최근에 귀환 이주한 한민족 구성원들이다. 외국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할린 귀환동포와 조선족 국적회복자, 재외동포 출신 귀화자, 북한이탈주민까지 합하면 이주민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민족 이주민들이고 앞으로 동아시아

1) 한양대학교 교수, 문화인류학.

지역과 남북한 사이의 탈냉전 상황이 본격화될수록 그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오늘날 이산과 이주는 송출국에서 거주국으로의 일방향적 이동이 아니라 1차 거주국에서 2차, 3차 거주국으로, 또는 다시 송출국으로 귀환하거나 상시 교류하는 복합적이고 다방향적인 이동행위이다. 한민족 이주민들은 다양한 국민국가의 소수자, 주변인으로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 전략적, 실천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초국가적 삶의 역사와 다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민족, 문화를 동일시하고 그것의 일치를 이상화해 온 단일 민족국가의 '단일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국민국가 중심의 편협한 '정통 국사' 개념은 극복하여야 한다.

2 |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1) 한민족다문화 현실과 과제

귀환이주한인과 재외한인들은 지금까지 중심(조국)과 주변(거주국)을 위계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적 관념에 의해 '주변인' 또는 '경계인'으로 여겨졌다. 한편 북한주민과 탈북 이주민들도 이념적 대립에 의해 '주적' 또는 '위험한 사람'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이 같은 차별의식과 경계심은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공존의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문제와 유사하면서도 더욱 심각한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한민족 귀환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법적으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도 남한사회의 주류집단인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서 타자화, 주변화 되어 '2등 시민'처럼 사회문화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차별 체감도는 한국내의 다문화 이주민 집단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사회의 원주민이 주류집단에 속한 것은 아니다. 분단과 냉전적 사상대립과 이념갈등으로 인한 연좌제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민권을 억압당하면서 한국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국민들도 존재한다. 주변화 된 남한주민들은 초국가적 이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다양한 연줄관계(혈연, 지연, 학연, 교회 연 등)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연결망을 만들고 유지해 왔다. 재일동포 중에는 제주에서 국가폭력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많고, 재미동포 중에는 북한 출신 실향민과 미군과의 국제결혼여성의 가족 이민자가 많다. 한국전쟁 후 최근까지 총 20만(재미동포 인구의 약 1/10)에 달하는 해외입양 고아들 중에는 성인이 되어 초국가적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인 재일동포나 재미동포 중에는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국적법 등으로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놓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 주변화 된 경험이 있는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류집단도 개인사나 가족사의 영역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초국가적인 교류와 이주를 통해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초국가적 한민족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의 개인적 '삶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한민족 이산과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초국가적 한민족의 문화다양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본국(중심)과 거주국(주변), '우리'와 '그들'이라는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이분법적 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이동과 지구적 연결망 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이해와 공감,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

사람과 사람간의 진정한 만남과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삶의 경험과 궤적을 서로 알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한 일을 생략하고 지역, 직업, 학력, 가족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상대방을 규정해 버리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상

대방 이해과정조차 흔히 생략되곤 한다.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강화되기 쉽다. 심지어는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친구나 동료 간에도 서로에 대한 억측과 기대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경계넘기’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계는 심화되었고, 그러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사람과 집단 간의 편견과 갈등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좋은 의도로 만든 피상적 만남이 오히려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지배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압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남은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다른 위치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경험이 되기 쉽다. 다른 문화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평등한 만남과 상호이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화상대주의적으로 감수성 있는 환경조성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호이해와 존중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협력생애사’ 방법으로 한민족 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공감을 위한 ‘삶 이야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삶이야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돌아가며 각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 다른 참가자들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 그의 ‘삶이야기’를 보완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치유의 인문학’ 등 여러 연구 및 실천 프로젝트로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이야기’를 총 15회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귀환이주 한인(중국 조선족, 사할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재일동포, 재미동포 등)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남한주민들 중 실향(월남 피난민 등)과 이념적 갈등을 경험한(민간인 학살 피해가족 등)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역사’를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식민과 탈식민, 냉전과 탈냉전 시대에 험난한 민족사와 격동의 동아시아 역사를 때로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한 국가나 체제에 속하면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이고 또 그 역사적 아픔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체제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온 사람들과 이념적 갈등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 온 남한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 법적 시민권과 문화적 시민권 문제를 협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냉전을 통해 적대적 관계 속에서 살아 온 남과 북의 분단국가 국민들 간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의 가능성을 여는 실험적 모색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구술생애사 수집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민족 구성원 6-8명이 한 곳에 모여 1박2일동안 함께 지내며 각각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은 통일된 독일에서 악셀 슈미트 괴텔리츠(Axel Schmidt-Gödelitz)가 1990년대 초부터 개인적 차원에서 ‘동서포럼(Ost-West Forum)’을 추진하여 동서독 출신의 독일인들이 만나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함께 정서적 화해의 경험을 하도록 시도한 것이었다. 이 포럼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2천명이상의 동서독 사람들이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나 역사기록대신에 개개인이 경험한 미시적 역사를 이야기를 통해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포럼은 독일인과 폴란드인, 독일인과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 독일인과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이주민들과의 만남으로 발전하여 역사적 갈등을 경험한 집단간의 대표적인 상호이해 프로그램이 되었다.

‘한민족 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북한체제의 핍박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 할머니와 국군에 의해 온 가족이 학살당했던 할아버지의 만남은 이념을 넘어 한민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었다. 또

한 국군으로 참전했던 할아버지와 군사분계선에서 마주했던 인민군 출신 할아버지가 한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화해의 건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애사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들이 서로의 ‘삶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어느 특정한 이념, 국적, 국가나 지역, 문화적 배경만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의 행위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삶이야기’ 프로그램은 참가자 개개인이 모두 공정하게 존중받는 특별한 의례적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삶이야기’ 모임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공정하게 1시간씩 자신의 삶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참가자들의 삶이야기를 존중하는 자세로 들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나눔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였다고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고 치유되는 느낌이었다는 참가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삶이야기’ 모임에서의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대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연구 차원의 개인별 생애구술사와는 다르게 다양한 문화배경의 청중과 대화하면서 전개되는 협력구술사를 통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역사적 사실’과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삶의 진실’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대립하고 갈등하기 쉬운 집단과 개인 간에 역동적 만남과 공감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민네트워크 만들기, 커뮤니티 만들기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나간 실천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삶이야기 모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재구성하면서 ‘인문도시 프로젝트’ 등으로 남북청소년과 다문화아동, 이주여성과 지역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대상과 주제로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한 만남과 이해의 자리를 만들었다. 한편, 사단법인 조각보에서는 여성평화운동 차원에서 ‘다시 만난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총 21회 시행했다.

이제 그동안 실천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한국 사회에 소개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더욱 직접적으로는 남북 간의 만남과 교류를 포함해서 초국가적인 한민족 이주민들의 평화로운 만남과 공존을 모색하는 사람들,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과 아동을 교육하는 교사와 연구자들, 소통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자치단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 결론

사할린 귀환이주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 재미동포, 재일동포, 중국조선족, 북한 이탈주민 등 지리적으로 다른 국민국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치이념, 경제체제, 문화환경 속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삶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한민족성(Korean ethnicity)’이라는 공통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된 것이며 모순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이 구체적으로 도출된다. ‘한민족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른바 ‘다문화적’ 이주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계는 심화되었고, 그러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사람과 집단 간의 편견과 갈등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초국가적 한민족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의 삶과 생활을 이야기하고 듣는 작업은 국가 권력의 공식적 역사를 넘어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 삶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화해를 통해 ‘초국가적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적 존재감을 경험하는 공감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눈 ‘삶의 역사’를 함께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한 젊은 세대들도 이제까지 한반도와 국경 안에 머물렀던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와 폭넓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국가적 한민족의 삶과 역사와 국민적 정체성을 넘어서

초국가적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계를 가로지른 초국가적 이동이 보편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민족, 국가, 국민, 시민, 주민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한민족 다문화 현실에 대한 사회적 성찰은 대단히 중요하다. 살아있는 ‘삶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경험한 인간적 정서적 공감과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삶이 주는 감동을 바탕으로 한민족 이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다양한 다른 이주자 집단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세기의 불행한 식민과 탈식민, 전쟁과 냉전, 이산과 귀환으로 굴절된 삶을 강요당해 온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 21세기의 과제인 남과 북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문화통합, 한민족 다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한민족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한익, 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창비.
- 박명규. 2011.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준규. 2002. “‘미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 58호(봄): 300-321.
-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해동. 2008. “특집: 21세기 역사학의 쟁점과 전망: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ory)의 가능성-한국 근대사를 중심으로 -,” 『역사학보』 200: 33-65.
- 임영상.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구술사,” 『역사문화연구』 19집: 1-22.
- 정병호. 2003.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9(2): 125-155.
-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병호, 송도영(편). 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현암사.
- 정진현. 2007. “탈분단, 다문화시대, 마이너리티 민족지: 새터민, ‘우리’를 낮설게 하다”,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조경희. 2011.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계 정치.” 『사회와역사』 91: 61-98.
- 한건수. 2006. “민족은 국가를 넘을 수 있는가.” 『황해문화 통권51호: 70-82.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Castles, Stephen and Alastair Davidson. 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New York: Routledge.
- Cohen, Robin. 1997. *Global Diaspora: An Introduc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Gmelch, George. 1980. “Retur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9: 135-159.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Rosaldo, Renato. 1999. “Cultural Citizenship, Inequality, and Multiculturalism” in Torres, Miron, and Inda eds. *Race, Identity, and Citizenship: a Reader*. Blackwell Publishing.
- Schiller, Nina Glick. 2004. “Transnationality.” In David Nugent and Joan Vincent eds., *A Companion to the Anthropology of Politics*, 448-467. Oxford: Blackwell Publishing.

세션 5-02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구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과 민족 경계의 연행에 대한 분석¹⁾

조일동²⁾ | 신한대학교

0 들어가며

한국의 공식적 역사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오랜 시간 부차적이거나 슬프고 아쉬운 존재로 취급되었다. 한국 사회 일반에게 해외 거주/귀환이주 한인은 언젠가 감싸 안아야 할 동포에서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 사이를 오가는 하나의 ‘타자’이자 ‘대상’일 뿐이었다. 이들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한 시선이 따로 또 같이 오가는 데에는 식민/탈식민, 냉전 이데올로기, 자본의 논리, 국민국가 만들기 등의 다양한 층위의 복합적 맥락이 작동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거주해 온 혹은 한국으로 귀환한 한인 역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주장해왔다.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 각지에서 살아온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각 집단이 처한 개별 맥락을 일별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등의 이름 아래 고정된 실체인양 기술하는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왔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서술방식이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지면의 한계, 현상 보고 이상으로 나아가기 힘든 선행연구의 부족 등이 겹쳐진 결과다. 이 글은 기존 연구가 지닌 이 같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실험적 연구에 대한 기록과 분석이다.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은 지난 6년간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지닌 1945년 이전에 출생한 다양한 배경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한 자리에 초대해 생애사를 나누는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를 열 여섯 번 진행했다.

6명에서 8명의 노인들은 이를 동안 구술자이자 질문자, 청취자로 서로가 들려주는 삶의 여정을 나눴다. 이 과정 속에서 민족과 국민 사이에 놓인 경계의 모호함과 (의외의) 견고함, 경계 뛰어넘기의 경험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되었다. 구술 중에 나타난 표현의 방식, 단어의 선택, 몸짓, 표정 등을 신중하게 살폈다. 일반적인 개인 생애사 구술에 비해 선택적인 구술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며 개별 생애사 구술과는 다른 차원의 역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시간 동안 6명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방식은 점차 변해갔는데, 이 글에서는 그 양상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이 제기하는 큰 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거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각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술하게 되는가, 그 구술은 (국민국가, 문화, 언어,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는 경험이 속에서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이해·맥락화 되는가, 지속되는 내용은 무엇이고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들의 삶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1) 이 글은 현재 작성 중인 논문의 일부입니다. 인용이나 전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조일동(heavyjoe@hanmail.net)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1 | 식민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

일제의 식민지배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이주와 삶의 양식 변화, 그로인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민족 구성원 대부분이 자문했던 내용일 것이다. 2019년 7월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은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식민/탈식민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갈등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에 가까울 것이다. 70대 이상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생애사를 함께 나누었던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 참가한 구술자 대다수가 자신의 삶이야기를 부모 혹은 조부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세대에게 식민의 경험이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자라고 살았던 삶의 터전이 대대로 살아오기보다 일제강점기였던 (조)부모 세대에 감행한 이주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앞 세대의 이주사다. 그 같은 이주에는 현재와 다른 국경선과 지리적 인식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맥락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사할린, 하얼빈, 만주 등이 모두 일제의 영토이거나 일제가 만든 식민지의 국경에 인접한 공간이었다.

김일정³⁾: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중국에서 근 70년을 지냈지만 태어난 자리는 한국이네요. 전라북도 순창군 적선면 지북리입니다. 내 그 당시, 내가 다섯 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우리 삼형제를 데리고... (기침) 북만주로 가세요. 지금 말하자면 할빈(하얼빈 - 필자 주), 어째 갔는가 하면 이때는 몰랐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아버지를 군대로 잡으라고 하는 바람에 아버지 ‘군대는 죽어도 안 간다. 가자, 썩은 좁 한 그릇을 먹어도 그래도 중국에 가면 먹는다’함서 이래가지고서 중국에 드가게 되었어요. (2012. 11. 23.)

김진경: 그니까 아버님이 집에 잘 안 계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이동하시고 살아오신 모양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점, 강점기... 아... 1940년에 우리 아버님과 일본을 거쳐 일본에서 조금 계시다가 사할린 갔습니다. 그 때 막 모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 년 후에 우리들 이제 가게 됐죠. 식구, 나머지 식구가 아버님 따라 사할린, 그래 갔을 때 유월 달이었습니다. 그 해. (2012. 11. 23.)

성진주: 사람들이 다 고향, 다 한 곳이지요? 그런데 저는 고향이 세 곳이에요.(웃음) 제가 난 고향은 일본이거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제 청춘시절, 가정시절 거의 반년 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태어난 고향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개 고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음에 저는 해방된 다음 해에 194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말로 요시다 신지치 어머니는 상하 시즈코. 제 이름은 상하 미즈코. 저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저 부친.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는 한국 사람 이거든요. 일제시대 그 우리 아버지는 처음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이야기 안하셔서 잘 모르지만은, 해외로 다니면서 일제 강점시기에 일본사람들하고 장사꾼이 된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심부름하시면서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셨다가 해방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오사카에서 만나셔서. (2013. 11. 9.)

최고선: 보니까 이것이 그 뭐랄까 재일조선인,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 나는 국적이 없습니다. 아까 ‘국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실은 조선사람이라고 하는데, 패스포트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이번에 올 때도 그 임시, 한 번만 쓸 수 있는 임시 여권을 내왔습니다. 그니까 이것 없이는 나는 바깥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의 그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은 사이뉴코쿠(再入國), 재입국 허가서죠. 그니까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도 되지만 너는 돌아와도 좋다, 보통 나가버리면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2019. 4. 26)

일제강점기에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던가 혹은 여전히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삶이야기를 시작한 것일까? 어린 시절이나마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이도 있지만, 해방 이후 태어나 부모와 다른 시대를 살아왔음에도 이들의 삶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태어나기 전이거나 직접 기억하기 힘든, 전해들은 이야기임에도 이들의 삶이야기 속에서 일제강점기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집단이 가진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한 결과가 발화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떠나본 적 없이 살아온 참가자의 삶이야기가 과연 일제강점기의 상처

3)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은 가명처리 되었다.

로부터 자유로운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장천수: 전... 1933년이요. 왜정 때 그... 을지로가 가요, 일본말로 고가네마찌 라고 했어요. 그걸 오정목, 그렇게. 지금 을지로 5가죠.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 방산 초등학교라 해서 방산 시장, 거기에 지금은 없죠. 거기 다니다가 이제 해방이. 음 해방 1년 전에 우리 집이 거기서 좋고, 옛날엔 이... 방앗간을 크게 해서 (중략) 해방 1년 전에 그 일본, 일본 사람들이 떡 방아 기계 있죠? 쇠, 쇠덩어리, 그거 압수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젠 말하자면 소가이 (疏開) 라 그러지, 일본말로. 그래서 피난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진으로 갔어요. (2013. 4. 26)

박정애: 집안이 조금 좁, 그 제주도 그 지방에서는 세력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큰 할아버지 큰 아들이 대동아 전쟁에 군인이 올 때 사형 당했어요.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2012. 10. 20)

식민지 시절이 아팠던, 즐거운 시간이었던 참가자 다수는 식민지라는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한 연유에는 이들의 이주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일제의 압력 속에서 생존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제동원이 이뤄지지 않은 시기임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친이 강제동원,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오류라기보다 당시 한반도를 떠났던 이들이 현실적으로 느꼈던 상황인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인해,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이름(조센징, 차오셴쭈, 코료, 코리안 등)으로 한민족이라는 표지를 씌웠다.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닫히기도 했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일군 가족과 여러 정황이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김호일: 네. 우리 아버지는 경상북도 태어났습니다. 1917년에. 1938년경에 그 강제 동원으로 사할린 나가서 탄광에서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사할린에서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17세 될 때까지 아버지가 러시아 국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을 받아 놓으면 한국으로 못 나간다 해서 내가 17살 될 때까지 러시아 국적을 안 받았습니다. 그 1959년에 내가 10학년, 그 중학교 졸업 할 때 되니까 아버지가 빨리 러시아 국적 받자. (2012. 10. 20)

일제의 패망 후, 이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개척했다. 러시아인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했고, 자녀들은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다. 한반도에 존재하던 시절보다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으로 복합적인 존재방식을 가진 집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혼종성에도 이들은 스스로를 한민족이라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자신들이 겪은 삶의 궤적을 긍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정체성의 정치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정체성 정치의 시작은 식민지의 경험과 깊게 연결된다. 각 한민족 디아스포라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식민지의 경험을 소환하고, 재구성하게 된다⁴⁾. 탈식민의 시작은 식민 경험의 망각이 아니라, 식민의 경험이 만든 현실을 정교하게 인식하면서부터다. 이들이 들려주는 일제강점기 이주의 역사를 둘러싼 내러티브는 그 인식의 개인적, 집단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2 일상을 가로지르는 동아시아의 냉전

권현익은 냉전이 글로벌하게 펼쳐졌으며 “세계 전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겪은 충돌이란 뜻은 아니”⁵⁾라고 지적한다.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로 냉전을 경험했다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의 경우 대부분 잔인한 내전과 폭력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4) 식민지 변방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테사 모리스-스즈키(임성모 역), 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 아이누와 식민주의』, 산체림. 216-219쪽을 참고하라.

5) 권현익(이한중 역), 2013, 『또 하나의 냉전 -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27쪽.

만든 협력구술사 속에서도 냉전은 한반도 거주민 뿐 아니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공간 대부분에 질게 드리워져 있다. 그것도 상징적, 수사적 전쟁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게 만든 절절하고 피맺힌 열전에 가깝다.

2013년 4월에 진행된 4차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 이야기’에는 6명의 참가자가 협력구술사를 진행했다. 4차 삶이야기 프로그램에는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부터 냉전이 만든 이념대립의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이가 나타났다.

박순이: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10월 항쟁... 유족회장 박순이입니다. 나이는 69세고예. 또... 지금 자영업,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소개가 극히 간단하게 했는데, 저는... 그... 이런 자리에 서기가 참 안 좋습니다. (울음) 빨갱이라고 파혼 당했고...(13초간 여운) 그리 20대부터 쪽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예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날 참가자에는 박순이 외에도 또 다른 10월 항쟁의 희생자 아들, 중국에서 귀환한 여성, 사할린 귀환 남성, 탈북여성,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남성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랐으나 이념의 다름과 연좌제로 인해 평생을 비국민에 가깝게 살아온 인물을 초청해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진 삶의 특수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살피고자 했던 자리였다. 물론 사회자는 가급적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리적 가치가 담긴 언설이나 공격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며 진행을 했다. 그러나 참가자의 삶이야기는 한반도의 이념 대립과 폭력의 역사를 가해와 피해의 경계를 기묘하게 타고 들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중국에서 태어나, 해방 후 아버지가 남한으로 떠난 뒤 조부모 손에서 성장한 뒤,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북한으로 이주했던 이원숙의 탈북 후 아버지 찾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원숙: 50년도 전쟁에 나가서, 그 중국에서 사람 많이들 죽이던 게, 그 버릇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 뭐 컴퓨터에 보면. 예, 내 하루 놀랐습니다. (중략) 이덕승(아버지, 가명 - 필자 주)이 가족을 찾아서에 만났는데, 그 이덕승이는 일찍이 사망됐지마는 이덕승이 처(남한에서 재가한 부인 - 필자 주)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 딸 너에 아들 하나라고. 그리고 여기 아들이 군대 나갔다 죽고 손자가 큰 손자가 있는데 큰 회사를 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데다 전할 하이까에 아버지 있는 데다 전화를 하니까에 그 딸이 나와서 그렇지마는 삼촌의 싸우(사위 - 필자 주)가 ‘무슨 상관이나고 모른다케라’ 이렇게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박순이: 아버님의 이름이 이덕...?

이원숙: 이덕승.

이현옥: 거기 독립단 있지요. 이덕승 독립단.

이원숙: 지금 가면 100세... 조금 넘을 겁니다.

이현옥: 성함은?

박순이: 이덕승이세요?

이원숙: 이덕승.

박순이: 덕승이 맞으세요?

이원숙: 이덕승. 덕. 승.

이현옥: 독립단은 못됐다고 하더라고. 어르신들 말도 그렇고. 독립군 말고 독립단. 두 패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독립군은 백성을 위한 거고, 독립단은...

(2013. 4. 12. 이원숙 삶이야기 중)

10월 항쟁 유족회 회장 활동을 하며 민간인학살 관련 진상을 밝히는 일에 열심인 박순이가 탈북한 이원숙의 삶 이야기를 시작하며 등장한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놀라며 여러 차례 확인하고자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조부 때 중국으로 건너가 평생을 중국에서 살다가 1996년 이후 한국을 찾은 이현옥이 어른들에게 들었던 백성을 위한 독립군과 상반되는 “독립단”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덕승은 1933년 만주국군 군의관으로 부임했던 인물로, 1936년부터 조선인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군 육군특무기관에서 조직한 단체 활동을 거쳐

1937년 만주국군 제1독립포병대대에 상위로 일한 인물이다. 그는 여순사건(1948. 10.) 당시 호남방면전투사령부로 개칭된 반군토벌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여순사건은 대구에서 벌어진 10월 항쟁과 함께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사건이기도 하다.

박순이는 이덕승과 같은 인물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유가족이다. 이원숙은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의 딸이 되, 실상 이덕승이 남한으로 귀국하며 중국에 남겨져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남은 일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순천 지역 한 마을의 이장을 하던 당숙이 1948년 5월 좌익청년들에 의해 살해 된 이후, 대한청년단에 가입해 우익테러 활동을 했던 마정호는 이후 한국전에 참전해 낙동강 전투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참가자는 젊은 시절 북한 개성 인근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한 박강명이었다. 그는 박강명에게 북한의 생활, 특히 이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마정호: 제가 질문을 하나 할랍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이북서, 회의를 이북사람들은 자주 하지요? 야간에도 회의. 몇 번씩이나 합니까? 일주일에?

박강명: 네. 회의란 게, 우선 조직이 뭔가 봐야지, 북에는 조직이 어떻게 된가 하매, 첫째는 당, 노동당. 두 번째는 사로청, 세 번째는 여맹, 네 번째는 농금맹, 네 개 조직입니다. 이 조직마다 주 한 번씩 생활 총화 그런 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정호: 아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을 해야겠으.

박강명: 아 그렇지. 생활 총화란 뭇인가? (하락)

그 사이로 일제 징병을 피해 1944년 만주로 이주 한 후 중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철강관련 일을 하던 이호준이 계속 이야기를 더한다.

마정호: 또 하나 의문 나는 거 있는데, 한 가족이 북에 살다가 일부만 탈북을 했으면 나머지 탈북한 가족이 있잖아요.

박강명: 있어요.

마정호: 그러든 와버린 사람, 현지 마을사람들이 고발을 하잖아요?

박강명: 마을 사람들이 중국에 간 줄 알지, 아직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칠십 넘었으니까 이 건 찾지도 않아요. 어디 간 줄 모른다. 다 지워버린단 말입니다. 중국에 왔다고.

마정호: 아~ 이려고 저러 중국이 좋기는 좋고만. (중략) 이북서 그러겠고만요? 여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면 중국에 여행 가부렀다고 그러든 되는구만?

사회자: 중국이 피난지다.

이호준: 북한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먹고 살라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뛰어넘는 시늉) 생각한다.

(2012. 11. 9. 박강명 삶이야기 중)

북한 측 최전방에서 포병 장교로 긴장된 삶을 살았던, 덕분에 고혈압을 얻었던 전직 인민군과 낙동강전투에서 주변에 동료들이 총탄에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슬하게 보았던 전직 국군이 한 자리에 만난 것이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던, 전쟁 후에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느꼈던 상대와 한 자리에 마주하는 것은 당혹스럽고 긴장되는 일이다. 그래서 질문은 상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산/반공주의자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허나 그 질문들은 어느새 한국의 술이 북한보다 너무 약하다, 북한은 안주 없이 담배에 술을 먹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안주가 좋다, 여기에 국군 출신은 술안주는 개고기라는 식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60여 년 만에 눈앞에서 만난 죽이고 싶었던 적은 평범한 노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과 너무 닮은 취향을 가진 존재다. 일상적인 삶은 이념과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일상과 이념 사이의 넓은 공백은 이들이 대화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군인만이 한국전쟁을 겪은 것이 아니다. 남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겪은 일도 아니다. 중국에 살고 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 중 일부를 항미원조전쟁(중국에서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에 참전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특별한 의도를 갖지 않고 중국, 한국, 북한, 사할린을 경험한 이들을 초청하고, 각자의 삶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나 그 안에는 서북청년단, 우익에게 아버지를 잃은 희생자, 사촌 오빠 부부를 항미원조전쟁에 보냈던 인물이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기도 했다. 나아가 조선어 인쇄 기술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소수민족 언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실직을 해야만 했던, 한민족의 언어를 맘껏 사용하고 살았던(그리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부러웠던 이도 있었다.

3 | 대립을 넘어선 이해의 가능성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박순이는 이승만 정부의 실세이자 여순사건 특별대 사령관이 삶이야기 참가자 이원숙의 아버지임을 확인했지만 협력구술사가 진행되던 현장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의 기회를 주었을 때도 “할 말은 많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리고 넘어갔다. 그러나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덕승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얼마나 놀라고 떨렸는지를 토로한 그녀가 박순이에게 결국 건넨 이야기는 항의도 분노도 아니었다. 미국에 아버지의 배다른 자식이 살고있음을 확인했지만 만남을 거부당했고, 일생을 아버지의 부재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이원숙에게 “그래도 아버지와 화해는 꼭 하시”라는 당부였다. 이념과 체제를 넘어 참가자 각자가 지닌 삶의 아픔에 공감한 결과다. 가해와 피해를 뛰어넘거나, 이념과 체제의 옳고 그름은 삶이야기 현장에서 가능한 성격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삶이야기에 대한 경청과 질문을 주고받는 협력구술사의 과정은 서로의 다름과 그 다름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열어준다. 함부로 화해와 치유를 말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서로의 삶의 굴곡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남북한의 군인 생활을 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이념을 억지로 이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서 술을 찾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도토리도 술을 담가 마셨던 공통점이 있었다. 삶이야기 행사가 모두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참을 술을 주고 받던 두 사람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너희 가족만 피난 가느냐며 항구에 묶인 나무배의 줄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남한으로 내려와 반공의 일선에서 살았던 실향민과 국군에 의해 온가족이 몰살당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이 만나 서로에게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은 추상적인 적에서 살아있는 사람, 서로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이해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동시에 이러한 이해 덕분에 점잖은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던 한국사회의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할 수 있었다.

천아르카지: 그러면 영주권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이원숙: 영주권이라는 게 없고, 고저 우리는 오자마자 국적 올리고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금천구에서예. 북쪽은 다 해쥘디다.

나희태: 오셨는데 환영하는 박수 한 번 쳐주십시더.

이현옥: 우리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국적이 있어야 되지만 북한 사람들은 오면 다 국적 올려줘요, 예.
(2013. 4. 13. 이원숙 삶이야기 중)

최고선: 그...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옛날에서 있었던, 중국에 조선족이죠. 그래서 소련에 사시는 조선 사람 처음 봤는데, 고려인 이라고 합니까?

남로제: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

윤제상: 그거는 우리 역사 박사들한테 물어봐야 되요. 왜서 고려인이라 하는가. 똑같은 조선시대, 1863년도에 넘어 갔거든요. 선조들이 러시아로.

사회자: 그때 넘어간 게 1863년.

윤제상: 네, 그게... 첫 그... 세 가구가 넘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등록된 게. 그런데 중국에 간 사람들은 조선족이라 하고, 러시아 간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하고, 응? 사할린 넘어간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하고.

사회자: 동포라고, 사할린 동포...

윤제상: 일본은 이제... 재일동포라 하고.

최고선: 재일동포, 예...

윤제상: 나는 그... 항상 보면 교포는 뭐고, 동포는 뭐고. 어떨 때는 교포도 부르고 재소동포라하지, 교포라 안 하고.

(2019. 4. 27. 남로제 삶이야기 중)

호칭을 붙이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전략이 뒤엉킨 결과다. 대화 속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을 규정해온 한국사회의 호칭과 대우에 의문을 표한다. 다양한 한민족의 삶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호칭 속에 담긴 한국사회가 가진 중앙과 변방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나아가 한민족사는 한반도 거주민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민족의 경험을 담아내는 새로운 틀거리가 필요함을 이들의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4 | 나오며

한반도 안팎 어디에 살았건 식민과 냉전의 흔적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1, 2세대의 삶 전반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들 사이의 다름을 만든 것 역시 식민과 냉전이고, 다름 사이에서 이해의 가능성을 찾아낸 것 역시 식민과 냉전의 대결 속에서 ‘살아남았던’ 삶의 과정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족과 국민은 실체이기보다 맥락적 상태이며, 그 상태는 매우 유동적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민족 사이에서 삶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서로에 대해 깨닫게 되는 동시에 다름의 간극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이 글에 등장한 이들은 모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원되는 동일성은 오히려 대화 속에서 계속 엇나간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 속에서도 생존해냈음을 이야기하며 이해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했다는 것이 동일한 ‘우리 민족’ 이야기로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복지 혜택을 이야기하며 ‘같은’ 국민을, 이데올로기의 다름 속에서 ‘같은’ 민족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삶이야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국민과 민족이 맥락적으로 ‘연행’되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협력적 방식의 삶이야기 구술은 민족과 국민을 끊임없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민족과 국민이라는 거대 담론의 허구성을 담지하고 있다.

세션 5-03

고려인 이주청소년의
초국가적 삶과 국가정체성 재구성

김기영¹⁾ | 한양대학교

I 서론

1)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다문화연구원.

1. 들어가며

Q

왜 고려인인가?

1

최근 한국으로 이주가 급증하는 고려인은 최근 3년 새 빠른 증가(외교부, 2019)를 보여 한국의 다문화 지형을 바꾸고 있음. 2019년 8월 기준 국내 거주 고려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의 인원은 82,930명이다. 이는 2015년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 기준 합산인원 2만3천683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숫자임

2

한국 사회의 이해와 요구, 고려인의 생존 전략적 선택이 맞물려 이주하는 이들은 집거촌을 형성해 노동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고려인은 한국계중국인에 비해 한국어에 능숙치 못해 상대적으로 3D 업종 종사자가 많으며, 한국으로 재이주한 재외동포 가운데 사회적 지위도 낮은편(김재기, 2014)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화할수는 없음

1. 들어가며

Q

왜 이주청소년인가?

1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다문화 담론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나 '다양성의 존중'의 일환으로 논의되지만, 이들이 가진 '차이'를 '또 하나의 보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의 대상으로 그려왔음

2

고려인 4세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분류되지만, 학령기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한 학생으로 외국인자녀이자 중도입국자녀로 분류됨.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

3

발열은 감기의 증후이지만 감기 그 자체가 아니듯, 이들의 한국어 미숙이 학습능력 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현상과 가상과 증후가 뒤섞여 이들에 대한 판단이 흐려짐. 교사들의 낮은 기대와 반복되는 좌절,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학업중단을 결심하기도 하지만(서울연구원,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심, 교사의 태도와 학습경험 등이 매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1. 들어가며

Q

왜 국가정체성인가?

- 1 고려인 이주청소년들은 러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나고 자라 러시아어를 익히고 학교생활을 하다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고려인으로 불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학생 혹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명명됨
- 2 고려인 4세는 고려인 1세대 디아스포라의 서사를 공유하며, 동포라고 불리지만, 2019년 이전까지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은 고려인 3세로 제한했음. 2019년 1월 2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음.
- 3 외국인, 동포, 고려인, 한국인 다양한 호칭속에 이주청소년들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가정체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Q

1. 고려인 이주청소년들은
이주에 대해 어떠한 감정구조를 갖는가?

2. 고려인 이주청소년은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화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2. 또다른 질문들

Q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비극, 이산, 강제이주
과정, 이동성, 혼종성...

2. 또다른 질문들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윤인진, 2012)

→ 디아스포라가 모국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그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며 관계를 다져나간다면,
**초국가주의는 모국 영토로의 이동이 가능하기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동성	
		저	고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	고		초국가주의 대표
	저	디아스포라	

<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구분(윤인진, 2017)

2. 또다른 질문들

고려인의 이주시기와 내용 구분

구분	년도	내용
1기	1860-1937	기근과 압제에 의해 평안도·함경도에서 연해주로 이주
2기	1937-1953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3기	1953-1991	스탈린 사망 이후 거주 이전 제한이 철폐되어 자유이주
4기	1991-현재	소련연방해체 이후 연해주 혹은 한국으로 자유이주

2. 또다른 질문들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만, 집에 가면 세계마트에 가서 본국의 식재료를 사다가 본국의 음식을 해먹음
- 유튜브로 본국의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며 SNS를 통해 본국의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함
- 그러나 국내거주 재중동포(조선족)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먼 거리
- 항공권 등 비용 부담으로 일상적 왕래는 상대적으로 덜함

2. 또다른 질문들

Q

정체성의 혼란?
끊임없는 재구성 과정

강요되는 정체성 '고려인'

관용의 담론 속에 포박

2. 또다른 질문들

스튜어트 홀 - 정체성

- 정체성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신에 관해 말하는 이야기로 구성됨
- 개인이 자신의 생애사를 서술하는 과정은 곧 자신의 생애경험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자, 현재 자신의 삶의 맥락속에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스튜어트홀, 정체성과 차이, pp344-346)

2. 또다른 질문들

레이먼드 윌리엄스 - 감정의 구조

마르크스주의와 문학(Marxism and Literature, 1977)

-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변화들에 초점
-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에 대한 감각
- 경험은 '과거'의 것으로 이미 되어진 것으로 본다면, 감정은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연속적인 흐름이며, 현재적인 것(a present kind, p.212)을 말함
- 그동안 감정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매도(p.207)
-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헤게모니 개념이 경직되고 고정되어있기에 새로운 세 대나, 계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감정구조'를 통해 확인가능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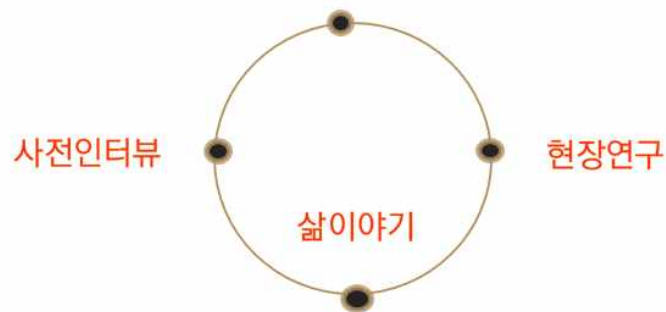
2. 또다른 질문들

웬디브라운 - 관용 :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 오늘날의 관용은 차이를 그저 묵인하면서, 이를 향한 적대행위를 줄이고 모든 차이를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배와 우월성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시도 (p.8)
- 각종 불평등과 갈등을 '그럴싸하게' 관리하는 관용은 다문화사회에서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됨
- 불평등, 배제, 갈등에 대해 관용에 호소하는 것은 관용을 통해 종속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 (p.32)
 - 예1) 고려인의 동포지위를 관용에 호소하는 것은 법적평등의 실현대신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종속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을 주변화시킴
 - 예2) 율리아의 꿈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고려인,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정체성, 관용

2 사전인터뷰 : 고려인 이주청소년 6명 2회차 인터뷰

3 삶이야기 진행 (2019년 12월 7일)

2. 연구참여자

사례	이름	성별	출생년도	학년	출신국	이전거주국	한국거주기간
1	울리아	여	2002 (18세)	중3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3년
2	이고르	남	2003 (17세)	중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3년
3	엘리자베따	여	2003 (17세)	-	러시아	우크라이나	2개월
4	타치아나	여	2004 (16세)	중3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3년
5	김나타샤	여	2005(15세)	중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4년
6	신잔나	여	2005 (15세)	중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2년

1. 연구방법

청소년 대상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변주

- 1 아이스브레이킹 : 전문가를 초빙해 몸놀기와 마음풀기
- 2 이야기 회상을 위한 준비작업 : 라이프사이클 그리기
- 3 시간 조정 : 15분 이야기, 5분 질의응답 총 20분
- 4 화자보호 : 인형마이크 가진사람만 이야기하고, 다 끝난후 질문하기
- 5 음식, 간식, 휴식

일자	일정	내용
12월 7일 토요일	10:30-11:45	MC진행 아이스브레이킹
	11:45-13:20	점심식사
	13:20-13:30	프로그램 소개
	13:30-13:50	첫 번째 이야기
	13:50-14:10	두 번째 이야기
	14:10-14:30	휴식
	14:30-14:50	세 번째 이야기
	14:50-15:10	네 번째 이야기
	15:10-15:30	휴식시간
	15:30-15:50	다섯 번째 이야기
	15:50-16:30	미래 그리기
	16:30-17:00	수료식



IV. 연구결과

1. 이주와 이산

이주결정 : 어느날 부모님이

- 연 : 처음 한국 가자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 김나타샤: 먼저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갔어요 우리 이모가 엄마한테 오라고 우리 가족은 이모 네명 있는데요, 두명은 한국에 있어서, 우리 엄마랑 오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 연: 기분은 어땠어요?
- 김나타샤: 관심있고 좋았어요. (김나타샤)
- 연: 부모님이 한국가자 했을 때 처음 느낌이 어땠어요?
- 신잔나: 좋았어요.
- 연: 그전에 한국에 대해 들어봤었어요?
- 신잔나: 네 할머니가 먼저 한국 가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신잔나)

먼저 이주한 일가친척이 자리잡은 뒤 순차적으로 이주

1. 이주와 이산

이주에 대한 감정 : 기분 좋았어요 vs 가기 싫었어요

연구자: 한국에 왔을때 공항에 내렸어요 여기 한국이야 기분이 어땠어요?

따티아나: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나라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에티켓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른 나라를 볼 수 있기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따티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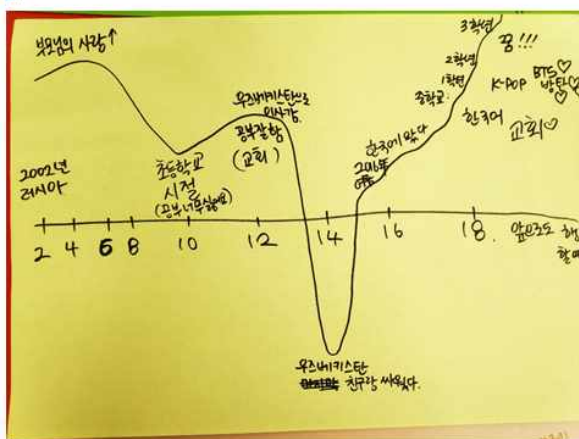
연구자: 한국에 처음 왔을때 기분이 어땠어요?

신잔나: 음..... 엄청 좋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잘 갔다와 말했어요.

울리아: 2016년 여름에 7월 22일에 한국에 왔고. 근데 사실은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음악학교 다녔고, 공부도 잘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한국에 가기 싫었어요.

1. 이주와 이산

이주보다 힘든 이산



연: 인생에서 제일 힘들게 친구랑 싸운거예요?

울리아: 네, 그 친구랑 싸워서 다른 친구들이랑 멀어졌어요 제 뒷담을 하고 그애 때문에 갑자기 다 멀어졌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1. 이주와 이산

이주보다 힘든 이산

저 11살에 부모님이 한국에 동생이랑 갔어요.
저 할머니랑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어요. 그리웠어요.
그리고 강아지 죽었어요. 스트레스..
12살 여름방학에 한국 갔어요. 매우 좋았습니다.

율리아: 저같은 경우 엄마가 한국 온지 1년 후
저희가 한국에 왔는데 그 시간이 어색해졌어요.
잔나: 엄마 만나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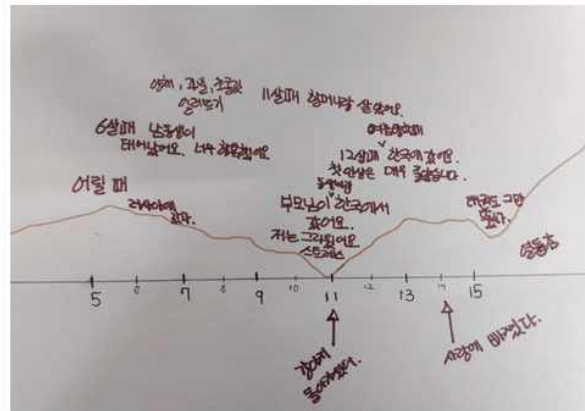
신잔나: 있어요. 말을 편하게 못해요. 엄마에게.

연구자: 시간 지나서 괜찮아졌어요?

율리아: 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엄마인데 눈을 못 맞추고 그냥 고개 이렇게(아래로 떨군다).
그게 음... 너무 이상했어요. 가장 편하게 엄마잖아요.

신잔나: (러시아어로 설명) 엄마가 한국 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그 티셔츠를 의자에 걸어두고 가셨어요. 한국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그 티셔츠 보고 이렇게(손으로 가져다코에 대는 손짓을 하며) 냄새 맡으며
있었어요. 엄마 기억했어요 (눈물)

(율리아도 눈물)



2. 초국가주의적 일상

모국 친구들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로

신잔나: 친구들이 잘 갔다와 방학때 말했어요. 지금은 페이스북하고 있어요. 아니면 인스타있어요.

연구자: 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그럼 전화통화도 해요?

신잔나: 네

따티아나: 친구들이랑 페메해요.

연구자: 페메? 그건 뭐?

신잔나: 페이스북메시지

김나타샤: 인스타그램, 텔레그램도 해요. 그래서 우리 바빠요(웃음)

율리아: 한국친구들이랑은 카톡하고 러시아친구들이랑은 텔레그램

연구자: 너희들끼리 한국어로도 카톡하니?

율리아: 네 재미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제 본국의 친구들과의 소통은 SNS로 원활하다.

2. 초국가주의적 일상

급식도 잘 먹고 집에선 러시아음식 먹고

연구자: 어떤 음식 좋아해요? 매운것도 잘 먹나? 김치도?

신잔나: 네. 매운건 안 좋아하지만 김치는 잘 먹어요

김나타샤: 저는 떡볶이 (좋아해요). 학교 김치 안좋아해요. 학교김치 맛없어요.

연구자: 급식나온거만 안좋아해? 집에선 김치 먹어요?

김나타샤: 네, 엄마가 한 김치는 잘먹어요.

율리아: 석호초 김치 괜찮았는데, 성안중 김치 맛없어요. 저는 닭 좋아해서 찜닭, 닭갈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초록색 풀. 향이 특이한..그 풀은 싫어해요

연구자: 뭐지? 미나리? 썩?

율리아: 미나리인거 같아요. 하여튼 그건 싫어해요.

파티아나: 저는 샤슬릭 좋아해요

연구자: 집에서 불 피워서 굽기 어렵지 않나?

파티아나: 엄마가 해줘요. 후라이팬에 구워줘요. 보르쉬도.

고려인 학생들은 음식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호불호가 분명했다

3. 국가민족정체성 인식

나의 나라는?

1. 엘리자베따
2. 아무거나요
3. 하나만 고르면 한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1. 미국
2. 러시아

한국인거
같아요



어디가 너의 나라니?(Где живёт страна?)에 대한 답은 각기 달랐다. 태어나서 자란 곳, 현재 살고 있는곳, 앞으로 살고 싶은 곳 등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답했다.

3. 국가민족정체성 인식

나의 고향(родина)과 나의 나라(страна),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연구자: 나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따티아나: 러시아!

연구자: 러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따티아나: 네~

연구자: 저, 알리나는? 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잔나: 우즈베키스탄.

연구자: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나는?

올리아: 근데 저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곳은 이제 나의 나라다, 근데 한국에 왔다 보니까 저는 어...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

연구자: 음, 그런거죠. 나제즈다는? 나의 나라는?

김나타샤: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장난이요. 저는 어... 러시아 같아요. 왜냐면은 언어랑 그, 좀, 사람. 문화? 왜 문화랑 그런거 같아서.

3. 국가민족정체성 인식

나의 고향(родина)과 나의 나라(страна),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이고르: 엘리자베타 있으면, (웃음). 아니면 아무거나요.

연구자: 아무거나요? 어~ 왜냐면 이것도 저것도 다 비슷해요?

이고르: 근데 다 아니요,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있잖아요 근데,

연구자: 잠깐만, 어,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를 비슷하게 생각해서 둘 중에 고민이 되는거 아니면 카자흐스탄, 러시아, 한국 중에 뭐가 제일 가깝게 느껴요?

이고르: 근데 다 세 나라에서도 좋은 것도 있는데 싫은 것도 있어요.

연구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요, 네.

이고르: 왜냐면 저 카자흐스탄에서 저 지금 음... 일 없고 근데 저, 저 어려운거요.

연구자: 응,

이고르: 러시아에서 어, 지금 지금 보다 사람이 좀, 너무 좀. 나빠졌어요. 나빠요.

연구자: 나빠졌어요. 살기가 나빠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한국은?

이고르: 어 근데요 한국은요 그 아... 맨날마다 일 할 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게 졌어요.

연구자: 어 한국은 일을 할 거는 많지만 일 하는 것이 어려워서, 네.

이고르: 네.

연구자: 그래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그냥 다 혹은 다 상관 없어요.

이고르: 네.

연구자: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면? Что живёт страна?

이고르: 한국 인 것 같아요.

3. 국가민족정체성 인식

살고싶은 나라는?



4. 고려인에 대한 인식

한국인 vs 고려인 vs 외국인

연구자: 고려인이란 단어를 들을 때 낯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건 없어요?

따티아나: 없어요

올리아: 근데,.. 저는 **외국인이라고 하는게 좀..... 더 편한거 같아요.** 중국인처럼. 고려인보다 고려인보다는 외국인으로. 그 한국인도 아니여서 한국인도 아니고, 우즈벡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려인.

연구자: 그게 좀더 멀게 느껴져요? 차라리 외국인이라고 하는게 나아요?

신잔나: 애들이 고려인이 누군지 몰라요

올리아: 외국인인줄 알아요. '나 고려인이야'. 이렇게 하면 '고려인이 누구니?' 물어봐서, 그냥 외국인.

고려인에 대한 한국친구들의 인식부족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느낀 아이들은 '차라리' 외국인이라고 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4. 고려인에 대한 인식

고려인 하면 떠오르는 두가지?

라면

비빔밥

드라마
염색머리

K-pop
한국어공부

인스타그램
안산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그런 사람

V 결론 및 제언

“저는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 잘 몰라요.” -김윤규와 최영희의 편지	고등학교 유리아는 4년 전 엄마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반 친구들은 제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김윤규와 최영희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지만 유리아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날은 좀더만 갑니다.	“엄마가 매일 걱정하세요. 제가 돌아가야 하니까요. 한국에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김윤규와 최영희 함께 살고 있는 엄마와도 생이별을 할 처지가 됐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과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구한말 조선 말기에서 대한 제국까지의 시기 연해주 주민들 귀족, 중하에 인민한 러시아 지역	그러던 1937년, 고려인 18만 명은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동쪽에 모여 사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스탈린이 강제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고려인들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외국인'을 향한 시선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는 고려인이 강제로 이주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방인', 한국에서는 '외국인'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아픈 유랑의 역사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장문의 사진은 조영민,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다문화’ 담론 10년 고려인 담론 10년 후

5. 나오며

A

고려인 이주청소년들은
한국인 고려인 외국인 등
경계인의 목소리가 중첩되어 있음

이주경험과 국가정체성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발화하고 있음

5. 나오며

1. '관용'의 이름으로 '고려인'을 대상화하는 것은 차이를 묵인하며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른 종속적 지위를 강제하여 '소수자'에 머물러 있게 함
2. 오늘날 초국가주의적 환경에서 다중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주 청소년에게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범주화하며 또다른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봐야 함
3. '존재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

세션 5-04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를 통한 이해와 연대

최은영¹⁾ | 한양대학교

1 | 서론

2019년 8월 ‘경계를 넘는 삶 이야기’에 참석해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이주 경험을 나눈 재일학자 현무암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가 한국(고국) 중심적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어린 시절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자랐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현무암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중심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것과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의 시각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연구소(2013)의 연구 또한 한국이 재외동포나 귀환동포를 그들 출신국의 정치경제적 위치에 따라 한국을 중심으로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한국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인지하면서도, 탈 한국중심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연구과정에서 한국중심의 불평등한 동포들간의 관계를 연구 참여자가 주체가 되어 인지하고 관계를 재조정하며, 참여자들 간에 젠더와 세대, 출신국의 경계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을 연결 짓고 연대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발표는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이 지니는 1)탈 한국중심의 연구 방법으로서의 의미와 2)한인 이주자들 간의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하는 실천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젠더와 가족에 초점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는 다양한 이주 배경 한인들이 모여 돌아가며 본인의 삶이야기(life story)를 구술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6명이 함께 생활하며 이루어진다. 이는 탈북자, 재외 동포, 귀환이주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주배경 한인들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실천 프로그램이다. Park(2016)은 이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의식하며 삶이야기를 구술하는 방식을 협력적 구술생애사(Collaborative life-history)라고 칭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30분 동안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그 후 추가적인 30분 동안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삶이야기를 보충한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말하기”인 삶이야기와 이해와 공감의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듣기”인 경청이 참가자 전원에게 요구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는 다양한 이주배경의 한인들이 모여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이 열연했던 무대가 세계의 중심이다. 삶을 나누는 화자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가 바뀌고 아까의 중심이었던 무대가 주변으로 밀려나온 한다. 같은 시대를 이야기 하지만 삶을 살아 낸 이들이 위치해 있던 장소와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렇기에 화자의 정치 경제적, 젠더적, 출신국 및 한국에서의 위치성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한자리에서 펼쳐져 서로 경합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이의 삶의 경험을 들으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서로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추어보기도 한다. 삶이야기가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구

1) 지리학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술자가 위치한 곳이 마냥 중심일 수도 없고, 주변일 수도 없다.

이러한 협력적 구술사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조일동 2015; 문현아 외 2016)는 녹취된 구술사 텍스트를 출신국가 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다보니, 개별 심층인터뷰나 개인 구술을 통한 탈북자 연구, 사할린 한인연구, 고려인 연구, 재일동포 연구 등과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현장성과 참가자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이주 한인의 이해와 연대를 목표로 하는 참여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한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는 협력적 구술이라는 공식적인 삶이야기 나눔 시간 외에 다양한 이주 배경의 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 하는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뒷풀이 시간 등이 있다. 또 이들은 숙소에서도 자기 전에 모여 교제를 한다. 이 연구는 그 현장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을 연구방법으로 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학적 현장을 만들어 낸 것(the production of ethnography spaces)이고, 연구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및 교류, 이야기 등을 참여자이자 연구자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한인들이 각자를 삶의 주인공으로 하여 자신이 경험한 이주와 초국가적 경험을 이야기 동안, 이들이 어떻게 젠더와 세대, 출신 국가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을 연결시키고 자신들의 위치성을 확인하며 성찰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가는가? 이번 발표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삶이야기 프로그램 중 젠더와 가족에 대한 구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 14차 삶이야기 프로그램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 | 2019년 5월 31일 ~ 6월 1일

〈참가자 명단〉

참가자	성별	출생지	출생년도	이주경험
김미숙	여	중국	1970	재중동포. 1995년 결혼이주로 한국 입국 후 정착. 다문화가정
이한수	남	일본	1968	재일교포 2세. 한국 국적. 유학생으로 한국 입국. 취업과 결혼 후 한국 거주
이숙자	여	사할린	1945	터키와 한국, 사할린을 오가며 장사. 북한 국적이었다가 러시아에서 결혼 하며 러시아 국적 취득. 사할린 영주 귀국 대상으로 2007년 한국 귀국.
김금영	여	북한	1953	북한이탈주민. 캐나다 난민 신청 후 거부 됨. 캐나다에서 미등록 노동자로 일하다 한국에 재정착.
김상호	남	한국	1968	연해주에 13년 거주. 한국에서 고려인 지원 활동
이상면	남	한국	1948	중국에 공장을 세워 사업. IMF 직전 사업 실패. 60세에 중국 유학 후 중국 대학에서 강의. 현재 한국 거주

2

연구방법으로서의 실천

- 젠더와 이주에 대한 실천적 연구 검토 - 대부분의 실천연구는 여성이주, 이주의 여성화에 초점 맞춰서 결혼이주여성, 돌봄 노동 여성의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연구는 연대의 파트너로 다양한 이주배경 여성들을 포함시키지만 이주과정 속에 차별을 겪고 경계넘기를 시도하는 남성들은 배제한다. ‘삶이야기’에서는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 등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연구자와 구술자 둘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화되며 공감되고 위로되기도 함. 또한 이러한 이주 가족의 고통이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한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로 삶을 살아낸 남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지 젠더적 차이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였는가?

- 중심과 주변을 맞바꾸어 돌아보기: 위치성(Positionality)와 재귀성(reflexibility) - 연구자와 구술자 일대일의 관계속에서 만들어지는 위치성과 재귀성이 아니라 이야기 모임에 참여한 다수의 구술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위치성과 재귀성. 그것이 가지는 실천적 함의. 또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협력적 지식 생산 (collaborative knowledge production).
- 윤리

3 재중동포 결혼이주 여성 김미숙 씨와 국제결혼 자녀인 재일동포 이한수 씨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의 첫째 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재중동포 김미숙 씨는 방을 같이 쓰게 된 저자에게 결혼을 했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기 전에, 짐을 싸서 집 한구석에 놔두고 왔다고 한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짐을 쌌다가 다시 푸르기를 한국으로 시집 온 후 지난 25년 여 동안, 수 십 차례를 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울 경제적 능력이 안 되서 문을 박차고 씩씩하게 걸어 나오지는 못했다고 한다. 취업 교육도 받고 열심히 일도 했지만, 나고 자란 나라가 아니어서인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뛰쳐나오고 싶은 집에 눌러 앉아 있는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느꼈더니, 우울증도 오고 몸도 아파 지난해에는 수술도 받았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건강관련 일을 시작했다. 김미숙 씨는 그 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었고,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 와서 당차고 멋진 ‘싱글’ 언니들도 만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해 주는 재일동포 동생도 만났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가면, 짐을 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한다.

1) 코리안 디아스포라 내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국제결혼 가정의 불화

김미숙 씨에게 자신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재일동포 2세 이한수 씨이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후 1960년대 중반 일본으로 파견근무를 왔던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재일동포였다. 이한수 씨는 어린 시절하면 매일 치고 받고 싸우던 부모님이 제일 먼저 기억난다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이한수 씨가 고2가 되던 해에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다니던 일본 직장에서 쫓겨난 후, 변변한 일이 없었다. 일본사람들 뿐 아니라 재일동포에게도 한국에서 온 이주자는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인데다가,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직장도 없고 늘 술을 마셨으니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조차 심한 팔시를 받았다. 한국에서 엘리트였던 아버지는 일본에서의 소외와 무시를 처와 자식에게 폭력으로 풀었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증오했다.

이한수 씨네 가족은 한국에 정착을 하려 한국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한수씨가 어렸던 1970년대, 한수 씨네 가족은 일본을 떠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 전 상공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던 한수 씨의 어머니는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된 대한민국에서 적응해 살 자신이 없다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셨다. 한수 씨네 가족은 공항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으로 이주해 온 저개발국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탈구된 위치를 김한수 씨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에서 보내면서, 본인의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은 탈각되고 식민지였던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주변화 되는 경험을 하였다. 본인의 일본에서의 위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며 삶의 전략을 세워 가족을 돌보았더라면 이한수 씨의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다른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대신 그는 일본에 동화되어 지내며, 일본을 떠나 한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거부했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했다. 아버지의 일그러진 정체성은 이한수 씨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한수 씨는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 일본 커뮤니티 안에서 자라며,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

저는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한국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재일교포는 한국 되게 못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이 일본사람들 보다 강해요.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이름(이한수)으로 살았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이름으로 사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저는 초.중.고를 일본 공립학교에서 보냈고 제가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니까 가정에서 해 준 것은 이 이름 석자가 유일했던 거죠. ... 재일동포 민족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체성 교육을 지원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본의 민족학교, 한국학교,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90%의 아이들이 (민족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학교에 다닙니다. 한글 이름 석자만 가지고 일본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칼, 무기를 안 들고 맨주먹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민족학교를 다니며 민족어로 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조선학교 학생들과 달리, 이한수 씨는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다. 한국인 아버지를 두어 한국 국적에 한글이름이었던 이한수 씨는 이름 때문에 일본 공립학교에서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었고, 이는 차별적 경험의 일상화로 돌아왔다. 한국을 “되게 못사는 나라”로 부끄럽게 여겼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하지 못했으며, 한국을 폭력적인 아버지의 나라로 인식했던 이한수 씨에게 한국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던 것은 고통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정체성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붙잡아 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혼란에 함몰되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를 한 것은 이한수 씨에게 상처로 남았다. 이한수 씨는 한국에서 재일동포로 “문전박대 당하고 외부자로 취급 받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생겼다고 한다. 또 문화적 차이로 자신이 아버지의 행동을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문화충돌을 경험한 단적인 예로 아버지의 훈육을 들었다.

이한수: (아버지가) 비겁하게 물건을 갖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 한국에 와서 알았죠. ‘매질을 한다.’ ‘매로 때린다’라는 게 한국에서는 기본인데, 일본에서는 비겁한 짓이거든요. 물건을 들고 때린다는 것은. 근데 한국은 반대잖아요? 주먹으로 때리는 게 최악의 굴욕이잖아요? .. 그런데 저는 자식을 주먹으로도 못 때릴 정도로 비겁하면 때리질 말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한국 출생의 이상면씨는 한국문화에서는 주먹으로 때리면 손이 피부에 닿으니까 감정이 묻어나,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훈육이라고 설명했다. 어릴 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고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던 이한수 씨는 부모자식 간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의 골이 깊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한수 씨가 30분동안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한수 씨에게 질문을 한 이는 재중동포 김미숙 씨였다.

김미숙: 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정불화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나요?

이한수: 어우 도움이 됐어요. 저는 크게 도움 받았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면 ... 어머니하고도 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김미숙 씨의 이 질문은 이한수 씨의 삶을 더 이해하고 싶어 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에 던진 질문이기도 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김미숙 씨는 이한수 씨의 대답에 이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자살 충동까지 겪으며 힘들게 성장한 미숙 씨의 첫째 아들을 생각하니, 미숙 씨는 이제 그만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미숙 씨네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남편이 3억의 돈을 잃고 집이 망하자 집 안에서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큰소리가 오고가는 중에, 남편은 “여자 주제에 남편을 무시 한다”거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한다”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내리 놀렸다.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기에, 김미숙 씨는 이런 남자라도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싸우는 가정이어도 해체된 가정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에 병을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가족은 무조건 소중하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현재의 가족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가족 유지 이데올로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해체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다 (정희진, 2016: 32). 하지만 누구를 위한 가족인가를 새롭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 질문을 성숙씨는 “경계를 넘는 삶이야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이의 삶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이한수 씨의 아버지가 “같은 민족임에도 일본인보다 더 한국인을 차별하는” 재일동포 처가 식구들에게 차별과 모욕을 경험했던 것처럼, 재중동포인 김미숙 씨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이 못사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한족 여성들의 여권은 높은 반면 중국에서도 조선족 사회는 가부장적이다. 중국내 “한족남자들은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아내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을 다 해다 받치는데”, 조선족 남자들은 그러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은 매너가 좋아 다들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보니 여기는 시어머니까지 나서 아들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닥하지 못하게 감시를 하며, 중국에서 온 조선족 며느리를 부려 먹는다. 결혼 생활의 해수가 늘면서 김미숙 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타협과 설득,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양갈진 목소리가 상처가 되어 김성숙의 육체를 병들게 했다고 한다.

김미숙 씨는 중국동포들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들어오던 초창기인 1995년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되고 아직 결혼이주 여성도 많지 않을 때였기에, 김미숙 씨에게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모험이었다.

한국에 오면 그때만 해도 뭐 좀 안 좋으면 이혼한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하고, 알 길이 없잖아요. 소개하는 사람 말만 (믿고) 온거니까. 그래서 모험한다 (했어요). 그때는 주민등록증이 금방 나왔으니까. 가서 이 사람 아니다 하면, 사기 친 거면 정말 아니다 하면. 민증(주민등록증) 나오면 이혼하고 일본 가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 근데 한국 와서 정말 사실은 황금빛 꿈을 찾지는 (않았지만). 뭐. 와서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가씨로 왔으니 아무래도 잘 살고 싶었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좀 더 잘 사는 넓은 세상에 나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김미숙 씨에게 국제결혼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국제결혼은 여성이 이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경제부국으로 이주해 갈 수 있는 길이었기에, 김미숙 씨는 이주를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주선한 관광형 맞선으로 지금의 남편을 중국에서 두 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족들에게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고려빵즈’라며 놀림을 받았고,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으로 시집 와 보니, 여기서는 중국 조선족이라고 시댁식구와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이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온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보니, 1995년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중국은 딱 한번 가봤다. 국제 이주라는 경계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을 못사는 중국인 출신의 결혼이주자로 규정하는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김미숙씨가 못미더워 그녀의 자녀교육에까지 간섭 했다.

잘 살고 싶었는데 시댁 쪽에서부터 차별이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첫 번째로 시어머니한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중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처음에 왔을 때 중국어 유창했거든요. 한국말 잘 못했어요. ... 중국어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남편도. 두 사람이 다 막더라고요. 막다 보니까 아이들 지금 중국어 한마디도 못해요.

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할 줄 아는 언어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만큼 생활에 유용할 거여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를 모르는 시어머니는 못사는 엄마 나라 언어라서 그런지, 이도 막았다. 지금의 중국 위상이라면 시어머니나 남편도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 1990년대는 중국이 그저 못사는 나라로 여겨졌고, 아이들이 중국어를 해서 엄마가 중국 사람인 걸 들키는 걸 시댁식구들은 수치로 생각했다고 한다.

“피 흘리는 경계지대”에서 벌이는 주체로서의 저항과 좌절,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

김미숙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한국인 남편보다 실은 교육 수준이 높다. 중국에서 교사가 꿈이었지만 김미숙 씨가 대학을 가던 해에는 키가 155센티미터 이상의 사람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어 자격 미달로 시험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 자란 키를 늘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김미숙 씨는 교사를 포기하고 공업전문대학에 진학했다. 한국에 나오기 전까지 안정된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 잊고 있던 교사의 꿈을 다시 꾸어 보게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다. 김미숙 씨는 한국에서 이중 언어 다문화 강사로 활동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그거 주더라고요. 00교대에서 이중 언어 다문화 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우, 순간 ‘이제 정말 하고 싶다’.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게 강사이던 교사이던 학교에서 일하면 웬지 모르게 빛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 등록하고 7개월인가 매일 8시간씩 공부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다문화 강사는 2009년부터 이중언어 강사라는 이름으로 양성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고학력 결혼이주 여성들이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방과 후 외국어 교육 지도 및 다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창출과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김성숙 씨는 국가 경계를 넘으면서 잃었던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중언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런데 김미숙 씨가 꿈을 찾아 신나게 다닐 때 남편은 찬물을 끼얹었다. 국가 정책이 바뀌면 금방 없어질 직업이니 들어서지도 말라고 하며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니네 미끼야 미끼. 다니지 마”라고 했다. 교육을 받는 7개월 동안은 월급도 없으니, 남편은 “돈 한 푼이 급한데 쓸데없는 곳에 가서 시간을 쓴다”고 매일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잔소리를 했다.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미숙 씨 뜻대로 밀고 나가서, 7개월간의 교육도 마치고 이중언어 다문화강사로 학교에 배정도 받았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 한다. 김미숙 씨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주체로 서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떼떽한 국민이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한지 2년도 안되어 너무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1년씩 계약했던 자리가, 어느 순간 하루 4시간 계약으로 줄더니 그마저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길게는 4년 6개월에서 짧게는 1년 6개월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강사로 활동한 이들에게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2월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고 공지 하였다 (김유리, 2015).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은 2015년 겨울,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다. 김미숙 씨는 “교육청 앞에 텐트도 치고 눈발 날리는 날에 진짜 노숙도 해 가면서 투쟁 같은 투쟁도 해보고” 8일간 단식도 했다. 김미숙 씨를 포함한 다문화강사들이 목숨을 걸고 시위를 했던 것은 결혼이주 여성으로, 또 노동 현장에서의 주변부 하위 주체로 한국에서 느꼈던 억압과 차별,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생존투쟁이었다. 투쟁 중 지병이 재발하여 사망한 동료도 있었다. 소송 및 투쟁 기간이 길어지자 생계를 위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나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재계약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

정말 느낀 게 한국에서도 이 모든 프로그램도 정책적으로 정말 이용한다는 거. 필요할 때는 다문화, 다문화 하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 없이 목 자르더라고요. 정말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서서히 그냥.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웬지 앞에 막 희망차게 이야기 해 줬는데, 나중에 정책적으로 필요 없어지니까 서서히 그냥 죽이는 거예요. ... 한국에서 정말 정책을 일관적으로 좀 정말 해줬으면.... 특히 외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 게 좀 악의, 악덕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좀 막 소화가 안 되고,

국가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김미숙 씨는 속병이 났다. 무엇보다 남편이 “자신이 한 말이 맞아 떨어졌다”며, 김성숙 씨를 바보 취급하고 이제는 성숙 씨가 무엇을 하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속상했다.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은 외국에서 자란 성숙씨보다 남편이 잘 아니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르라고 한다.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25년을 살았는데도, 또 같은 민족인데도 미숙 씨는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서 이방인이라고 말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동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 중국인 그 호칭들 중 어느 걸로 늘 자신을 타자화 시키고 주변화시키는 다층적인 억압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젠더와 출신 국가, 계층이 뒤섞인 교차적 억압체제 속에서, 미숙씨는 국가 권력과 가부장적 지배에 저항했다.

국가 권력에 저항 주체로 나선 김미숙 씨를 인정하고 그 고통에 귀 기울이기에 함께 연대하여 싸워주기 보다, 남편은 김미숙 씨를 이 기회에 더 종속시키려 했다. 한국인 남성이 폭력과 억박지름, 무시 등으로 외국 출신 아내를 순응시키려는 모습은 한국 가족 및 국가가 옹호하는 강력한 부권 중심의 우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김현미, 2014: 55). 한국인 남성이 외국 출신 아내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것에 대한민국의 가부장적 다문화정책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결혼 이주로 입국한 여성의 정체성을 아내, 어머니처럼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규정하고, 가정 내에서 돌봄과 양육의 성 역할만을 강조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서는 것을 방해한다. 오히려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 역할 규범은 ‘아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여성에게 가정을 지켜낼 것을 강요하며 폭력으로 가정을 떠난 여성에게 가족해체의 책임을 지운다 (정희진, 2016: 33).

결혼이주여성들 중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을 감내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아, 조심스럽지만 전략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남편과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여,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송금까지 하며 생존의 위기에 초국적으로 대응한다(김현미, 2014). 이들은 “가정”을 문화적 접경지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양쪽 문화를 중재하고 재배열하며 한국에서 통할만한 생존전략을 습득하여 자신의 위치를 협상해 가는 문화번역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김현미, 2010). 그러나 노력하여도 호혜적인 관계 성립이 불가하고 문화번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다층적인 억압의 장소인 “피흘리는 경계지대”(Anzaldúa, 1999)에서 고통 받아 주저앉은 이주 여성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매체 및 연구에서 부부간의 호혜성과 가정을 만들어가는 결혼이주 여성의 전략과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내 폭력을 당하면서도 대안의 공간을 꿈꿀 수 없어 가정에 갇혀 있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수형성만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안잘두라(Anzaldúa)는 그의 시집 경계지대(Borderlands)에서 “경계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계 없이 살아야하고 교차로가 되어야”(1999, 217)한다고 썼다. 정현주(2015: 294)는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들이 교차로로서 역할하는 수행(또는 번역)에만 초점 맞추는 것을 불편해 했다. 즉, 경계지대에서 고통 받는 여성주체가 직면한 억압과 모순의 실체를 충분히 파헤치고 교차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조건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정현주, 2015: 294).

미숙 씨는 이중언어 강사로 일을 하는 것에 좌절한 후, 우여곡절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얼마 전부터 건강 보조 식품 판매와 관련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남편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 한다. 아내를 걱정 해시기보다 아내가 직업을 잡아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본인에게서도 독립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에서였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이 아내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은 그래야 아내가 “판생각 안하고 붙어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현미, 2014: 57). 이 땅에서 멋지게 자신의 일을 하며 곳곳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자녀들도 도와주고 싶은 데, 거둬지는 저항에도 여러 겹의 억압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김미숙 씨는 움츠려든다고 했다. 몸도 자꾸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 모임에 참가해서 두 멋진 싱글언니의 삶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났다고 했다.

4

두 싱글 언니의 초국가적 노동과 가족부양: 탈북여성 김금영 씨와 사할린 영구귀국자 이숙자 씨

북한 출신의 60대 김금영 씨와 사할린 출신의 70대 이숙자 씨는 둘 다 젊은 나이에 배우자와 사별. 냉전은 북한 출신 김금영 씨에게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에 재정착하는 것 뿐 아니라 캐나다로 망명신청 할 기회를 제공. 탈냉전은 러시아 국적의 이숙자 씨에게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 이숙자 씨는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할린 사람이라는 신분은 식민과 탈냉전의 역사에서 숙자 씨에게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의 기회를 제공.

김금영 - 트랙터(트락토) 운전수. 운전 뿐만 아니라 차를 뜯어서 고치는 거까지 직접 했다.

자식들 때문에 지대혁명. 캐나다에 가서 망명신청. 거부 당했지만 미등록 상태로 요리사로 일했다. 그 돈으로 큰 아들을 한국에 있는 대학원까지 공부시켰다. 붓물이 터지듯 끊임없이 울며 이야기.

이숙자 - 영주귀국 사업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 고향마을 거주. 아이들이 7세, 9세이던 자신의 나이 35세에 혼자가 되었다.

1990년대 러시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이 러시아를 휩쓸었다. 국유재산을 싼값에 사들여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된 ‘올리가키(과두재벌)’들이 등장했다 (신동아 2008. 1. 25 “점입가경, 러시아-서구 끝 모를 갈등).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이 혼란기를 기회로 삼아 부를 축적했던 고려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명이 이숙자 씨이다. 이숙자는 친척의 돈을 빌려 중국으로 보따리 장사를 다녔다. 그러다 한국으로도 왔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개방되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 우리나라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서는 소위 ‘체르토끼’라 불리는 보따리 장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구소련이 개방되는 시점에 상점들의 진열장에는 물건이 없어 돈은 있어도 상품을 살 수 없었다. 이에, 대외 개방이 이뤄지고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자유롭게 외국을 넘나들며 물건을 해다 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는 정식 수입 유통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품들이 많고 해외와 러시아 국내 시장 간의 가격차이가 커서 가능했다(안택원, 1994).

이숙자씨는 해외에 가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눈이 있었다. 특히, 패션 쪽에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목돈이 마련되자 터키나 중동 등으로 다니며 비싼 의류를 갖다 팔았다. 국가가 집을 처분할 때 싼값에 집을 구입하여 수리 한 후, 상점도 냈다. 입소문이 나니 비싼 모피들도 잘 팔렸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했다. 딸의 남편이 바람 나 이혼하자, 집을 사서 미용실을 차려주며 살게 해줬다. 자식들이 다 자리잡고 살 수 있게 열심히 일해 “밀어줬다”.

재혼도 했다.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혼을 하는 건 망신이라 생각해서 참고 10년을 살다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니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가자들은 일제히 동의를 하며 웃었다.

다음에 재혼도 했습니다. ...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인들이 한번 여자들 시집가면 또 두 번 시집가고 세 번 가면은 망신이고 부모 망신이고. 암만 잘 못 하고 나쁘게 해도 그냥 살아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비즈니스하고 나도 비즈니스 하니까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고 그다음에는 생각하는 게 달라서 못 살겠더라고. 못 살겠다 하면서도 (이혼) 할라 하니까는 또 사람들한테 망신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못한 거야. 그다음에는 딱 이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하니까 왜 이때까지 10년 이렇게 참고 살았을까 싶더라고.

5 언니들의 파자마 파티와 시지프스의 신화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 옆방에 머무는 사할린 할머니 이숙자 씨가 초인종을 눌렀다. 얼굴에 땀을 붙이고 분홍색 예쁜 레이스 잠옷을 입은 이숙자 씨는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당신 방으로 건너오라고 했다. 건너가 보니 김금영씨는 이불 여러 채를 덮고 한기를 느끼며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 했다. 붓물이 터지듯 쉬지 않고 울며 이야기 하는데, 감정이 폭발하여 탈진 상태가 되었다. 한참이 지나 김금영 씨, 이숙자씨, 김미숙 씨와 내가 둘러 앉아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 했다.

김금영: 한국에 와서 지인들이 소개해 시집갈까 해서 한국 남자들을 만나봤다. 한국 남자들무식하다. 이야기가 안 통한다. “한국 남자들은 자기 의견을 나서서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나보다. 멋이 없다. 이제 60인데 아직도 한국에 온 큰 아이가 자리를 잡지 못해 내가 일해 도와줘야 한다. 작은 아들은 사업 잘 한다. 내가 아직 건강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는데 기 펴고 살게 해 줘야 한다.

이숙자: 아직도 연애하자고 같이 살자고 하는 남자들이 있다. 내가 이 나이에 남자 만나 밥해주고 수발들게 생겼나? 다 싫다. 그러다 나도 이제 곧 80인데 내 몸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남편 휠체어 끌고 있어야겠냐? 남편 없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일을 한다. 그래야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장성한 자식도 부모 도움이 필요할 때 밀어줄 수 있다.

모두들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도 돈을 벌어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기는 녹록치 않다. 제일 젊은 김미숙 씨조차 이제 50이 되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젊었을 때 다문화강사를 한다고 버린 시간이 가장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했다. 김미숙 씨가 우연찮은 기회에 시작하게 된 일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이다. 남편은 이 일이 다단계 판매라고 싫어한다. 이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집안 망신이라며 칼까지 휘둘렀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며,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회사에서 원하는 운동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 몸이 건강해져서 이 식품을 다른 사람에게도 빨리 권하고 싶다.

김금영 씨는 식당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 70대 사할린 할머니인 이숙자 씨가 하는 일은 화장품 방문 판매다. 이 또한 다단계 판매이다. 한국에 온 결혼이주 여성이나 귀환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장밋빛 꿈을 주는 곳들 중에 다단계 회사가 많다. 김미숙 씨 남편처럼 이 일을 말리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희망이 생겼다면 화색이 도는 김미숙 씨에게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삶이야기의 원칙은 평가하지 말고 들어주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원칙 때문만은 아니었고, 이미 충분히 남편에게 다단계의 부정적인 부분은 듣고 있던 터라 더는 해줄 말이 없었다. 늦은 밤까지 모여 이야기 하는 비공식적 이야기 모임에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까?

그 고민에 대한 실마리는 다음날 이야기 모임에 함께 참여한 이상면 씨의 삶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상면 씨는 명문대는 졸업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무역을 하던 비즈니스맨이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IMF 직전 사업이 어려워져 접었다. 이상면 씨는 삶이 곤두박질 쳤어도 그 속상함을 안으로 삭였지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지 않고, 몇 년 간 텔레비전만 보았다. 소파에 하루종일 앉아 있어 한쪽 어깨가 처진 남편에게 유학을 권했던 이상면씨의 아내. 이상면 씨는 나이 60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 가장 행복한 일이 공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 훈계나 강요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길들을 권해보는 것. 기다리는 것. 시지프스는 돌을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도달했을 때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리는 형벌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돌이 굴러 떨어질 줄 알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돌을 굴린다는 80대 노신사의 이야기에 참가자들은 박수를 쳤다.

세션6 | 사회적 연대와 공존

사회 / 이철우 | 연세대



발표 01 '새로운' 한국인들의 등장:
몽골 출신 귀화자들의 귀화 이유와 개명 방법 고찰
윤승주 | 연세대

발표 02 난민 없는 난민 제도:
한국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제도의 작동방식
김가영 | 연세대

발표 03 베일논쟁의 정치화와 이슬람여성의 탈정치화
준불 베틀 | 연세대

발표 04 Who am I?:
An Analysis of the Joseonjok People's Sense of Identity
who Live in South Korea
순 지아웨이 | 서강대

토론 이충훈 | 전북대, 김철호 | 전북대

세션 6-01

‘새로운’ 한국인들의 등장: 몽골 출신 귀화자들의 귀화 이유와 개명 방법 고찰

윤승주¹⁾ | 연세대학교

초록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한국인이 되어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와 국적을 취득한 후에 본명을 개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개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주말에 몽골어를 가르치고 있는 두 개의 기관에서, 학생들의 어머니 18명과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1년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그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모임에 대한 참여 관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5세에서 만14세 학령기 자녀를 둔 몽골 출신 결혼·일반이주여성들이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이주자들보다 훨씬 쉬웠으며, 일반이주자들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행정상 불편하고, 자신들에 대한 낯선 시선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서류상 한국인과 같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본명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하는데 개명방법은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성과 몽골 닉네임, 둘째, 한국성과 번역된 본인 몽골 이름, 셋째, 아버지 이름 앞글자를 성으로 하고 자신이 원하는 한국이름, 넷째, 제주도의 몽골 성 ‘부’를 사용하고 한국식 이름, 다섯째, 한국식 성과 한국식 이름 등 다섯가지 방법으로 이름을 개명한다.

주제어: 몽골, 결혼이주여성, 시민권, 귀화, 귀화자, 국적취득, 개명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이제 순수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일민족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국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향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단일민족 개념이 깨어진지 오래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주로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을 떠나는 한국여성들로 구성되었다(Sung-Nam Cho, 2013:90). 그러나 1998년부터 통일교를 통한 일본, 필리핀 여성들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늘어났고, 이어서 일부 지자체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해 중국계 한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많아지기 시작 했으며, 2000년부터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국가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였다.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1,861,084명의 외국인 주민(Foreign resident)이 한국

1)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과정.

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51,774,649명의 3.6%는 외국인 주민(Foreign resident)임을 보여준다. 국민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외국인 주민 중개별 연구 참여자 총 11명 중 8명은 결혼이민자이고, 3명은 일반이민자이다. 10명은 30대이며, 1명은 40이다. 1명은 별거 중으로 남편과 아이와는 따로 살고 있고, 나머지 참여자 10명은 모두 남편과 함께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 개별 연구 참여자 11명의 학력을 보면 1명은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은 석사 학위 소지자, 5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1명은 2년제 대학교 졸업,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4명의 남편들은 모두 대학원을 졸업했고, 대학교를 졸업한 5명의 남편 2명은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명은 대학교를 중퇴했으며, 나머지 4명의 남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 3명은 한 명씩 학령기 자녀가 있고, 6명은 학령기 자녀 한 명, 유치원생 한 명 등 2명씩 있었다. 1명은학령기의 쌍둥이 자녀를 둔 여성이고 1명은 자녀가 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들이라는 고학력자이고, 둘째 연애결혼을 했고, 셋째 모두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고, 넷째, 모두 이주여성들이고, 다섯 째, 모두 몽골 출신 여성이다.

호주에서는 유학생들이 학비 및 숙박비를 벌기 위해 노동을 하면서 노동 이주자로 변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Raghuram, Parvati. 2013:141) 한국에서는 유학생들이 결혼 이주로 이주유형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자 중에 4명은 한국에서나 몽골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이고, 5명은 직장 다니면서 배우자를 만났으며, 1명은 고등학교 동창과, 한명은 오빠 친구와 결혼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귀화자 3명, 영주권자 3명, F 6 결혼비자로 2명, 유학생 비자로 2명, 동반 비자로 체류 하는 사람 1명이다. 현재까지 개별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개별 면담 현황 및 인적사항

연번	구분	본인		배우자		한국 거주 기간	자녀 연령	면담 횟수	인터뷰 날짜	인터뷰 장소	거주지	결혼 경로	국적등부
		연령	학력	연령	학력								
1	A	36세	대졸	42세	고졸	16년	6세, 10세	1	2017.4.29(토) 150분	롯데리아	서울	직장에서 의 만남	귀화자
2	B	32세	대졸	46세	고졸	8년	6세, 8세	2	2017.4.30(일) 150분	파리바게트	서울	직장에서 의 만남	F - 5
3	C	32세	대졸	47세	대졸	8년	12세 쌍둥이	3	2017.5.14(일) 100분	파리바게트	서울	대학생 때 만남	F - 5
4	D	38세	전문 대졸	47세	고졸	9년	10세	4	2017.5.20(토) 100분	롯데리아	서울 별거	직장에서 의 만남	귀화자
5	E	38세	석사 졸	38세	석사 졸	13년	10세	5	2017.5.27(토) 150분	롯데리아	서울	대학원동 기와의 만남	귀화자
								6	2017.6.17(토) 100분	00다문 화센터			
6	F	43세	고졸	42세	고졸	10년	10세	7	2017.5.28(일) 150분	파리바게트	인천	직장에서 의 만남	F - 6
7	G	38세	박사 졸	42세	석사 졸	8년	5세, 12세	8	2017.6.4(일) 150분	파리바게트	서울	대학교 때 만남	F - 3
8	H	34세	대졸	41세	고졸	9년	4세, 8세	9	2017.6.11(일) 150분	파리바게트	서울	유학생 때 만남	F - 6
9	Q	38세	석사 재학	38세	석사졸	12년	6세, 10 세, 14세	1	2018.3.25(일) 150분	파리바게트	인천	고등학교 동창	F - 2
10	R	38세	대학	50세	대졸	14년	5세, 11세	1	2018.4.14(토) 150분	커피숍	부평	몽골 관광지	F - 5
11	O	37세	석사 재학	37세	석사졸	11년	7세, 11세	3	2018.4.22(일) 150분	커피숍	인천	오빠친구	F - 2

※ 연구 참여자 G씨, O씨, Q씨만 일반 이민자이고,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결혼이민자이다.

I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자유주의적 신우파인 마셜(T. H. 마셜)은 시민권 이론을 시장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들의 집합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정의하고(마셜, 1998:6), 시민권을 공민적, 정치적, 사회적인 권리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18세기에 나타났던 공민적 요소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사상, 신앙, 재산 소유, 계약할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19세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구성원 또는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성인 남성만 정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에는 사회적 요소가 나타났으며 경제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력, 사회적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교육체제와 사회서비스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마셜, 1998:31). 시민권은 프랑스혁명과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유래 되었다(마이클 새머스, 2013:328).

Weber는 주로 현대 국가의 관료주의와 정치 지도력에 관심을 가졌으며, Durkheim은 시민권을 교육학 및 도덕 교육과 연결 시켰고, 이는 현대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었다(Christian Joppke, 2010:9).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민권의 평등은 자본주의 계급 사회의 실질적 불평등을 가리기 위해서만 작용했다(Christian Joppke, 2010:9). 마르크스와 마셜은 시민권이 봉건제에서 근본적인 출발했다는 데 동의했다(Christian Joppke, 2010:11) 봉건 사회에서는 귀족, 평민, 자유민, 농노 등의 계급이 있어서 균등한 권리와 의무는 없었다. 이 때는 시민 평등의 원리는 없었다. 그러나 중세 일부도시에서는 특정한 권리와 의무들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 시민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 구성원들의 법적 평등을 말한다(SeungSook Moon, 2013:9).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성장으로부터 발전 됐다(마셜, 1998:56). 자본주의의 성장과 동시에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국가로의 자유 이동이 증가하면서 이주자들이 도착한 국가에서 그곳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서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시민권은 국가에 소속이 되어 영주할 것인가, 국가 구성원이 아닌 다른 타자로 분리되어 제한 된 기간 동안만 거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을 융합(Fusion)과 분리(separation)라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이고(마셜, 1998:55), 시민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시민권에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로운 협회, 투표, 자기 혐의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Seokho Kim 외, 2013:183). 어떤 국가에서 체류하고 일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조건과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이 될 수 있다(마셜, 1998:213). 시민이 될 것인지와 아닌지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 국가 발전과 성장,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 연구에서의 시민권은 법률적 상태로서의, 권리로서의,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권으로 나눌 수 있다(마이클 새머스, 2013:325). 현대사회에서 국적 취득은 출생, 혈통, 결혼의 상태에 따라 거주에 의한 시민권으로 나타난다(마이클 새머스, 2013:330).

2. 선행연구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은 2년간의 결혼 기간 유지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 간이 귀화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체류와 다양한 권리를 보장 받게된다. 이주여성들에게 국적 취득에 필수인 언어, 재산 소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우선적 조건이다. 귀화는 시민권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시민권은 국가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귀화와 시민권

획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생산됐다.

한국에서 국민 국가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채택되고 발전했는지를 탐구하는 연구(SeungSook Moon, 2013:10), 우수인재 노동력의 이주 패턴과 시민권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Markus Pohlmann, 2013:62), 시민권과 정치적 행동패턴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Seokho Kim외, 2013:181),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실제 상황을 묘사한 연구(Sung-Nam Cho, 2013:90), 결혼이민자들의 '국민됨'과 '문화권'이 어떻게 충돌하고 협상하는지를 분석한 연구(김현미, 2015), 2009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사회문화적응과 삶의 질을 통해 귀화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연구(지현정, 201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 요인들이 국적취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재홍외, 2011),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요인과 한국 국적 불취득에 관한 장점과 단점을 탐색한 연구(박미숙외, 2015), 법 제도, 귀화 절차를 나열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한 연구(박진근, 2013), 무국적자의 인권,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과 복수 국적 문제 등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최경옥, 2014),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자격과 국적취득 등 이민법안 개선 관련 연구(김상태, 2015) 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문화적 동화'가 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한국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귀화를 선택한다(김현미, 2015:94). 이는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와 연관 되어 있고 이주 여성들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귀화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귀화를 통해 국민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신분만 바꾸었을 뿐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종교, 관습, 생활 양식 전체가 변하지 않는다(김현미, 2015:94). 귀화자들은 법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한국인이 되었을 뿐 인종, 젠더, 종족 등으로 인한 문화적 차별을 겪게 되는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김현미, 2015:94).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며, 국적 취득 신청 시에도 필요한 안 될 과목 중 하나다. 그러나 지현정(2012)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기대하는 만큼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지현정, 2012:46)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1,2,3,4단계, 한국 사회 이해 5단계까지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어가 국적 취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지현정(2012)은 국적 취득 시, 외국인 신분일 때는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장되며, 국적 취득에 필수인 언어와 문화적 적응도가 높아져, 주류사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소수자로서 한국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극복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문제점과 국적 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언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면,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태도 또한 지적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1)의 이주여성백서에 보고된 쉼터의 상담 사례에는 '국적취득을 해주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 증, 여권 갈취'라는 내용이 주로 나온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 배우자들이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어떤 요인들이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지를 탐색하는 실증적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주여성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외국인 신분으로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지현정, 2012:48)는 연구와, 국적을 취득하면 사회보장은 물론 취업이 가능하여 모국의 부모형제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재홍외 2011:233)는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대한 해석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주여성들은 국적 취득 전에도 충분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남편 이름으로 부모형제를 초청할 수 있다. 혹은 출신국가 별 차이가 있지만,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부모 형제 초청과 관련하여 남편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이주여성들은 한국 국적취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박미숙외, 2015:139)는 연구의 경우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적취득을

하지 않으면 국내체류가 쉽지 않고, 사회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박진근, 2013:

514)는 내용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내용이지 모든 결혼이주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III 한국의 귀화 조건과 제도

사회복지 국가를 설립하고 있는 한국은 의료 서비스, 국민 연금, 실업, 보상 등의 사회적 권리를 한국 국민(Sang-Hui Nam, 2013:177)과 외국인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다한다. 이민자들이 시민이 되는 복잡한 과정은 영토와 민족성을 시민권 자격의 경쟁 규범으로 삼는 것이다(Subrata Mitra, 2013:214).

경제적 자본, 한국어 능력, 한국역사 사회 인식 등은 국적 취득 시 결정적인 변수들이다.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다. 법무부의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비자 연장과 비자 종류 변경, 외국인등록증 발급,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 서류 제출 및 면접시험 등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모든 체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은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주자라고 부리지만 한국에서는 이주자를 결혼이주자에게만 해당 된 내용으로 해석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결혼이민자만 이민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데도 이민청은 아직 없다. 대신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60년 만에 명칭을 바꾸어서 한국에는 출입국·외국인청²⁾이 생겼다.

1. 일반 귀화

일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이민법이 제한적이다.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5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하고, 거주, 도덕적 행동(경찰, 세금, 고용 및 이웃을 통해 평가), 재정적 독립 및 이전 국적의 포기 등이 필요조건이다(Loring, Ariel Fradene, 2013:9). 시민권은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마셜, 1998:146). 영국 시민권 시험은 이민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좋은 시민(good citizens (Jonghoe Yang, 2013:119))'과 '불충분한 다른 사람들(undeserving Others)'로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Pierre Monforte외, 2019: 39). 국민 국가가 사용하는 포용 메커니즘으로서 시민권은 "누가 포함되어 있고, 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Markus Pohlmann, 2013:61)를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3D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수인재들에게는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허가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귀화의 조건은 한국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하며, 귀화신청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그리고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이 있어야 하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 한국어능력,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와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한다(Hi Korea <https://www.hikorea.go.kr> 2018.5.11.)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 중에는 귀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6천만원에 해당 되는 재산 소유와 연봉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2)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법무부, <http://www.moj.go.kr> 2018.5.9.)

2. 간이 귀화

미국 이민 귀화법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의 요구 사항은 영어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Loring, Ariel Fradene, 2013:2). 한국에서는 이민자들을 사회통합에 포함 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 문화, 역사, 법 제도 이해, 재정적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인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필기시험이 면제 된다. 2018. 3. 1.부터 법무부에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게 됐다.³⁾한국에서 2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결혼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 이후에 간이 귀화로 국적취득 신청을 한다.

간이 귀화 신청 서류는 많고 복잡하다. 우선 귀화신청서와 컬러사진 1매,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1명 이상의 추천서 HWP 파일(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⁴⁾),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등 재정관련 서류⁵⁾, 귀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⁶⁾, 가족관계 통보서, 수수료(30만원)이며 귀화 신청자의 본국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더라도 바로 국적취득 허가증이 나오지 않다. 국적 취득 허가증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린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3. 특별 귀화

전문가 등 우수인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주 패턴을 초국적 시민의 양성(Markus Pohlmann, 2013:59)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지위가 높은 일자리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고의 두뇌(best brains)”를 고용하기 위해서 국가와 회사 간에 “재능전쟁(war of talents)”이 벌어지고 있고, 시민권은 최고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Markus Pohlmann, 2013:61).

특별귀화는 국적 회복자의 자, 특별 공로자, 우수 인재들에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둘째,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셋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넷째,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다섯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셋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거주 요건 없이 법무장관의 인정 즉시 영주자격이 부여되고 있다(김상태, 2015: 7).

3)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신청 안내 <http://www.socinet.go.kr>. 2018. 3. 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http://www.moj.go.kr> (2018.5.11)

4)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의 장 등)

5)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4. 한국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한국의 시민권 (Citizenship)과 시민(Citizen)의 번역과 사용법이 모호하다(SeungSook Moon, 2013:10). 한국에서는 국민(national or state's people) 또는 주민(resident)을 사용할 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인 주민(resident)을 (SeungSook Moon, 2013:10) '지역주민'이나 '외국인주민'이라고 지칭할 때 사용하고, 국민은 한국인이라는 뜻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에 귀화자와 한국 국적 자녀들을 포함하는 통계에서는 귀화자는 국민이 아니고, 주민인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861,084명이다. 이는 인구 51,422,507명의 약 3.6%이다. 이들 중 외국인 근로자는 495,792명(27%), 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330,188명=결혼이민자 160,653명+귀화자 169,535명(18%),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국적 동포는 276,750명(15%), 외국인 주민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212,302명(11%), 유학생은 117,127명(6%), 사업투자자, 연구자, 외국어 강사 등 기타 체류자는 428,925명(23%)이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은 <표 3>와 같다.

<표 3>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합계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귀화자	유학생	사업 투자 등 기타
1,861,084 (100%)	495,792 (27%)	276,750 (15%)	220,950 (12%)	160,653 (8%)	169,535 (9%)	117,127 (6%)	428,925 (23%)

<2017.11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동거인을 포함하지 않는 전국 다문화가족은 852,492명이다. 이 중에 한국인 배우자가 301,354명,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는 160,653명, 귀화자는 169,535명, 외국인주민 자녀 220,950명이다.

귀화자의 34,762명(20.5%)은 남성이고, 134,773명(79.5%)은 여성이다. 외국국적 결혼이민자의 30,745명(19%)는 남성이고, 129,908명(81%)는 여성이다. 외국인주민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귀화자나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의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 등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명)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852,492	301,354	160,653		169,535		220,95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귀화 및 외국국적	국내출생
		129,908	30,745	134,773	34,762	8,804	212,146

<2017.11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한국국적 취득자 169,535명이 원래 어느 국가 출신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중에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 출신은 베트남인(39,500명)이고, 다음은 한국계 중국인(34,116명), 중국인(32,036명), 일본인(11,278명), 필리핀인(10,512명), 미국인(6,535명), 캄보디아인(4,253명), 태국인(3,056명), 캐나다인(2,474명) 몽골인(2,141명) 순이다. 이렇게 숫

자로 확인 할 수 있는 국가는 26개이며 나머지 국가 출신은 기타 국가에 속한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현황을 <표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5〉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연 번	국가	합계	남성	여성	연 번	국가	합계	남성	여성
	결혼 이민자	160,653	29,293	131,360		기타	2,162		
1	베트남	39,500	1,729	37,771	15	네팔	911	153	758
2	한국계 중국	34,116	10,833	23,283	16	파키스탄	848	735	113
3	중국	32,036	4,681	27,355	17	영국	825	725	100
4	일본	11,278	949	10,329	18	인도네시아	587	64	523
5	필리핀	10,512	350	10,162	19	아프리카 국가	554	409	145
6	미국	6,535	4,187	2,348	20	중남미 국가	453	173	280
7	캄보디아	4,253	121	4,132	21	키르기스스탄	436	19	417
8	태국	3,056	77	2,979	22	라오스	350	0	350
9	캐나다	2,474	1,609	865	23	방글라데시	327	272	55
10	몽골	2,141	119	2,022	24	스리랑카	282	237	45
11	우즈베키스탄	2,038	103	1,935	25	카자흐스탄	255	15	240
12	대만	2,022	784	1,238	26	한국계 러시아	191	13	178
13	오세아니아	1,223	799	424	27	말레이시아	128	21	127
14	러시아	1,034	81	953	28	미얀마	126	35	110

〈2017.11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IV | 결혼이주여성들의 사례: 귀화 신청 이유와 개명 방법

1. 귀화 전 고민: 위장결혼으로 의심의 대상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국적이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았다, 친정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 국적 취득에 부정적이었다 (박미숙 외, 2015)라는 연구도 있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들은 반대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의심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 안전한 삶을 찾기 위해서, 본인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것 때문에, 외국 이름이 자녀 학교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국적취득을 선택했다고 한다.

법무부에서는 한국인 남편을 보증인으로 하여 이주여성들을 통치하도록 한다. 체류 자격 관련되는 비자 연장 신청이나 국적, 영주권 신청 시에는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동반해야한다. 이 제도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직도 남편이라는 보증인 없이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는 국적을 취득해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살 수 있잖아 했더니 남편이 국적 받으라고, 연장하러 같이 가기 귀찮다고 해서 신청해서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K, 귀화자-결혼이민자)

E씨의 경우 국적을 신청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두 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장 결혼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남편이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이주자라는 이방인들은 위장결혼이라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내가 F5영주권 받으려고 서류 준비하고 담당 직원에게 줬는데 소식이 없어요. 서류 신청서는 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 졌대요. 그래서 신청서가 있으니까 내가 준건 확실한데 출입국 직원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주라고 했는데 남편이 보증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바빠서 일이 많다고 자꾸 깜빡해요. 당신 남편이 아직도 안 줬다고 계속 전화가 와요.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일 꼭 보내달라고 오늘 전화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또 잊어버렸다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출입국 직원이 당신들이 같이 사는 것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남편도 화가 났어요. 같이 안사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전화로 그 직원하고 싸웠어요. 준비해서 준 서류를 없어서 다시 귀찮게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겨우 F5 영주권을 받았어요. 본인들의 잘못이지.

(E, 귀화자-결혼이민자)

E씨의 사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본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이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제출한 서류를 쉽게 보는 무책임하고, 외국인을 무시하는 갑, 을 관계 태도와 결혼이민자라는 이방인이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안전적 삶을 위해 귀화를 선택

결혼이주민들은 귀화를 통해 영구적인 체류권 보장뿐만 아니라 부모를 자유롭게 초청할 수 있고, 이제까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한되었던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화를 정착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김현미, 2015:101). 신분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국적취득이다(이재홍외 2011:250).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남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비자 연장을 받아야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비자연장 받으러 더 이상 출입국 사무소로 남편과 함께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이나 귀화를 선호한다. F-6 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없는 경우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외국인 보호자가 한국인 아이를 보호하기는 행정적 절차나 규칙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영주권이라도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힘들어져요. (I, 결혼이민자)

3. 국적 취득 고민-모국적을 포기

이주여성의 한국 국적취득 시 애로요인으로는 법·제도적 규정, 한국가정의 사회 문화적 속박, 경제적 문제, 모국 귀소 등을 언급할 수 있다(이재홍외, 2011).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우수인력의 귀화 요건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귀화 허가가 나온 1년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했어야 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 포기 때문에 귀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옛날에 귀화하려고 서류를 준비했는데 몽골 국적을 포기해야 해서 안 했어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이중국적을 인정 안하니까 몽골 국적을 포기하는 게 아쉽고, 애국심 때문에 아까워요. 역사, 고고학을 전공해서 몽골 국적을 포기하기 너무 아쉬웠어요. (B, 영주권자-결혼이민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신청할 경우 국적 취득까지 걸리는 긴 소요시간과 서류 제출, 면접시험 등 복잡한 절차, 6천만원이라는 큰 비용 때문에 국적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4. 자녀 학교생활에 걸림돌이 될 우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커 갈수록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박미숙외, 2015).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화된 이름으로 개명하기를 원한다. 이는 아직도 다문화라는 부정적 인식과 우리와는 다른 외국인이라는 낯선 시선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 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반반이냐고?” 하면서 놀림을 당할까봐서 걱정되기도 했어요. 부모님 이름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 이름은 아리옹바트 처이절 라고 하면 뭐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외국 엄마라고 놀려서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긴 했었죠. 그래서 국적을 포기해서 한국국적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B, 영주권자-결혼이민자)

귀화는 선주민과 동등하고,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법적 동화라 할 수 있다(김현미, 2015:110). A씨의 경우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귀화를 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그러나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엄마가 외국인이라며”라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모르고 물어봤다는 학교 선생님께서도 같은 말을 듣게 되어 엄마도 아이도 둘 다 속상했다고 한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일반 아이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속상해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는 교직원의 다문화 인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 취급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행전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 A씨의 사례에서 교직원의 잘못 된 행동과 말투로 인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

원래는 한국국적을 받아서 생각을 했어요. 영주권보다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도 한국 사람들과 같은 이름이 있어야 하니까 왕따 되지 않을까봐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이름이 다 바꾼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인식이 없잖아요. 우리 딸을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방과 후에 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엄마가 몽골인이면서”라고 말했대. 그래서 딸내미가 “어쩌라고 라고 말하고 싸웠는데 순간 너무 속상했어.” 라고 딸이 말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유나에게 우리 엄마는 한국인. 몽골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엄마가 순수 몽골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를 차별하고 무시하려고 한다고 해요. 무시해도 내가 너희들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너는 몽골어를 아는데 이 애들이 몰라. 몽골 가보지도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해요. “너는 레벨이 달라 하이 클래스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무시당할 거야. 나도 순간 속상해서 울었어. 저녁에 나도 우리딸보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역사 수업에서 “유나 너 몽골에 대해 잘 알지? 네 엄마가 몽골인이잖아” 라고 말했대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한국사회가 아직 글로벌 사회가 아니잖아요. 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면서 이런 걸 왜 생각 못했냐고 했더니 잘 몰랐다고 하더라. (A, 귀화자-결혼이민자)

시민권은 귀화 정책과 시민권 시험, 새로운 시민을 위한 맹세, 이민 서비스 사무소, 시민권 준비수업, 시민권의 의미 등이 서로 안맞을 수 있다(Loring, Ariel Fradene, 2013:3). 한국에서는 시민권인 귀화는 법적으로 한국국민이 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통계에는 귀화자와 한국국적 자녀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때 귀화의 법적 의미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시켜 준다. A씨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A씨는 한국국적을 가진

7)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통계에는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다문화가족 자녀) 포함되어 있다.

법적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에 속하는 상황처럼 여전히 귀화자는 외국이주민이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태어난 한국인임을 강조하고, 딸의 장점을 알려주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애쓴다. 일반 한국 아이들보다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몽골인하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문화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E씨의 이야기도 엄마의 외국 이름으로 인해 딸이 놀림을 당하게 된 사례를 보여준다

가족 소개에 엄마 이름이 외국인이니깐 길게 썼더니 아이들이 막 웃었대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내가 몽골 이름으로 한국에서 산다고 고집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외국 엄마 이름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난리 났대요. 학생들이. (E, 귀화자-결혼이민자)

한국사회에서는 학회에서만 다문화사회가 됐다고 언급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인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다양한 종교, 문화 계층을 가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귀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5. 행정상 이주자의 본명 사용은 불편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이유로 국적 취득을 반대하시는 친정 부모님, 국적 취득 절차가 까다로운 한국 국적 제도,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없는 한국 국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모국,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모국(박미숙외, 2015:144~147) 등이 있다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지만 국적 취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오는 압력, push 요소들이 있었다. 이는 외국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기는 긴 이름 때문에 행정상 어렵고, 행정 직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살 수 없는 생활조건 등을 말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자녀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서류 발급을 동사무소 외에 다른 곳에서 발급받기 어렵다. 2018년에 주민등록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처럼 결혼이민자 이름이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도록 개정⁸⁾이 됐지만 그 전에는 직원에게 말을 해야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 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지만, 가끔 내 이름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병원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구청에 갔는데 동사무소가 떨어져 서류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깐 기계 있으니까 뽑아달라고 하더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말을 해야 등본 밑에 이름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계로 뽑을 수 없고, 남편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지문인식을 찍어야한다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엄마라고 증명할 수 없더라. 작년에 그랬어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E씨 사례에서 자동발급 기계에서 외국인신분인 결혼이민자가 서류를 뽑을 수 없고, 민원 24 등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행정 직원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 담당자 행정 직원들에게는 외국인의 낯선 이름은 작성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외국인의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받아 적는 것은 한국인 이름을 쓰는 것 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이름을 못 알아들어서

8) 데일리안.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가능. <http://www.dailian.co.kr>. (2018.6.15.).

다시 말해주고, 스펠링을 하나하나 말해주는 데도 직원들이 틀리게 작성하고, 이름 때문에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을 경험한 것을 연구 참여자 B씨, L씨, G씨, E씨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이름을 한국인들이 잘못 작성하고, 잘못 발음을 해서 외국인 이름으로 살기에 아직까지 불편한 상황이다.

내 이름 공식적으로 쓰게 되면 여러 번 물어보고 한 번에 못 써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깐 힘들어요. 덩더그마 라고 하면 외국의 낯선 이름을 들은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래고, 아주 못 본길 본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식식거리면서 웃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간혀져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어디가도 이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뭐 해도 오래 걸리고, 오타 나오고, 그러타고 개명 할 순 없잖아요. 발음을 제대로 안하고,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이름과 카드에 있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고 나와요. 카드 수요자 이름과 당신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하는데도 .. '네버 페이'에서.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는데 내 이름이 뭐냐고 하면 스펠링을 하나하나 19자를 알려주고, 또 잘못 적고, 너무 길어서.. 어, 귀찮아요. 그러면 바로 잘못 적고, 다시 물어보고, (G, 일반 이주여성)

국가마다 성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처음 듣는 외국인 성과 이름을 받아들이기에 접수받는 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이 외국인 성과 이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발음도 독특한 외국 이름을 보고 웃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바상' 그래서 밤바르하그와 바상 뭐냐고, 하면 바상은 성예요 하면 긴 것은 이름이고, 이걸 성이예요? 라고 네 하면 놀라요. (L, 귀화-결혼이민자)

한국의 성씨는 한 글자지만 몽골 성씨는 한자어가 아니라서 두 글자에서 열두 글자까지 긴 성도 있다.

지금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은 외국인이에요. 내 이름으로 해서 안 되는 것 지금 익숙해졌어요. 10년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나 혼자 할 수 없었어요. 여권에 있는 이름, 보험에 있는 이름이 다 괜찮았어요. 몽흐후 산자후 한국은 6개글자 안들어가요. 뭐라고 뭐라고 하고 못 알아들어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한국인들이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본래 한국인임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주자들은 한국 국적 취득하면 본래의 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국식 성씨를 갖는다는 비판적 글 쓴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몽골인들의 경우 긴 성씨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면 본래의 긴 성씨를 행정적으로도 입력이 안돼서 사용할 수 없다.

7. 본래 이름의 한국에 없는 발음

한국에서 이주자들을 귀화 시키고, 귀화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문화적 동화'가 아니라 주변인으로 받는 사회적 차별을 인식(김현미, 2015: 93)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주자들은 잘 느끼고 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이름의 발음이 달라진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본인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 이름을 불러주는 한국인은 왜 본인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개명을 하면 무조건 한국식으로 동화되어서 한국인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몽골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본인 이름을 부를 때 발음을 깨끗하게 못 부르니까 기분 나빠해.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쑤다’라는 이름을 번역해서 ‘진주’라고 바꿔줬어요. 아이가 진주로 부르는 걸 좋아해 그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몽골인임을 숨기고 싶지 않은데 다른 아이들이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못하니까 싫은 거야.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이름 아니에요? 왜? 왜? 라고 물어보더라고, 아아들이 몽골 발음을 할 수 없어서 아이가 기분 나빠해요. 라고 했어요. 그것 이름 가지고 놀림당할 이유가 되고 있어요. “나를 한국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선생님” 라고 저한테 부탁해요. 심각하지 않지만 본인 이름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그냥 튀지 않고 그냥 비슷하게 있고 싶어 해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쑤다’는 원래 몽골어로 *Suvdaa*이다. ‘V’ 발음을 ‘비’로 쓰고 본래의 이름을 한글로 옮기면서 원래의 몽골 이름보다 다르게 된 것을 위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몽골인이 듣기는 완전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G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었다. 이름 잘못 쓴 적이 아주 많아요. ‘덩더그마’ 라는 이름이 어려워요. 어떨 때 ‘동도그마’가 되요. 사람들이 듣는 대로 마음대로 적어요. 이름 때문에 덩더그마를 선택해야하나 동도그마를 선택해야하나 발음이 어려워요. 은행에 *Purevsuren Dondorma* 외국인등록증을 주고 만들었는데, 보험은 덩더그마 라고 알려줬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동도그마 하게 됐는데.. 그렇게 불리기 싫어요. 그래서 ‘어’로 써달라고 처음부터 말했어요. (G, 일반 이주여성)

8. 내가 없는 삶-이주자는 유령인

한국에는 200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의 행정 서비스이나 인터넷 사용은 아직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들이 많다. 이주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외국인 이름으로 서류 작성이나, 인터넷 서비스 등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인식하고 한국인 남편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작성한다. 내가 작성하면서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서류 작성하고 인증받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없는 유령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 셈이다.

남편 것을 다 사용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공증해요. 인증 받으면 전에는 잘 안됐어요. 내가 몇 년인지 생각 안나. 아이도. 외국인 내국인도 없었어요. 많이 불편했었지. 한글 텔레그수령 라고 적어요. 외국인 등록증은 영어 이름으로 해요. 민원 24 안 돼요. 홈쇼핑하면 G마켓 남편 이름으로 해요. 전에 안 됐으니까 남편 인증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공인인증서는 남편하고, 사이트 핸드폰 인증, i p 오류가 많아요. (C,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생활서비스, 휴대폰, 인증, 학교 가정통신문 등 모든 곳에서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황에는 외국인이름으로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쉽게 등록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한국인 남편의 이름을 본인 이름 대신 사용한다.

본인인증을 하려면 외국인이 안 돼요. 뛰어 쓰기도 안 되고,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인과 똑같이 입력할 수 없어요. 조금 복잡해요. 본인인증이 안 되서 짜증나요. 나는 남편 이름으로 다하니까. 남편이 뭐든지 나한테 하라고 해요. 세탁소에 옷 맡길 때도 남편 이름을 말해요. 우리 아들 다 알고 있어. 남편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도 남편 이름으로. 인증은 하게 되면 바로 내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서류 작업을 내가하면서 나는 없어요. 전기요금, 생활 모든 것을 내가 해. 내 걸로 하는 게 귀찮아, 잘 안되고, 그래서 남편 걸로 했더니 훨씬 쉬워,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이가 놀림을 당할까봐서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 등 서류에 아빠 이름을 쓰고 내가 사인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살다보니까 나가 없어. 내가 남편 뒤에 숨어 살아. (E, 귀화자-결혼이민자)

나는 남편 뒤에 숨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뭐든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B, 결혼이민자)

전에 잘 안돼서 뭐든지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지금은 전화기를 내 이름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N, 결혼이민자)

인터넷 사용, 세탁소에 옷 맡기기, 수도요금, 전기 요금 내기, 휴대전화 가입 등 모든 것을 한국인 남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E씨, B씨, N씨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외국 본명으로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편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할 정도로 한국의 행정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9. 다르게 작성된 외국 이름의 불편함

중국 출신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의 성을 다르게 작성해서 서류상 문제가 되었다는 경우가 있었다.⁹⁾ 그러나 몽골인의 경우는 길고 발음이 독특한 몽골 이름을 행정 직원들의 잘못이나 본인 잘못으로 글자하나 바뀌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서류를 발급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 다르게 작성한 이름 때문에, 입력이 안되는 긴 이름 때문에,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한 문제, 본인의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사례 등을 알 수 있었다. N씨의 이름을 온다라, 운다라, 문다라 라고 3가지로 다르게 작성해서 필요한 상황에 기관에서 이름이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본인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서투른 한글 작성과 외국인 이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국 성 밖에 모르는 행정직원의 실수로 등록 된 이름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내 이름을 3가지로 썼어요. 제일 먼저 보건소에 내 이름을 Undraa 라고 썼는데 내가 한글로 온다라 라고 써야하는데 운다라 라고 쓴 것 같아요. 신청서에 쓴 걸 컴퓨터에 입력할 때 한국 사람들이 내 글씨를 ‘운’라는 성이 없으니까 ‘문다라’ 라고 쓴 적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문’이 성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성을 아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운’라는 성이 없으니까 ‘문’ 인가보다 한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 철분제 받으러 갔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취직하려고 건강검진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N, 영주권자-결혼이민자)

N씨의 경우 기관마다 이름을 다르게 작성해서 교육청 등록 된 명단에는 ‘온다라’로, 근로 계약서에는 ‘운다라’, 외국인등록증에는 영어로 ‘Dolgorhand Undaraa’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기관마다 세 가지로 다르게 작성한 상황이 생기고, 인터넷으로 찾아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2,3개의 이름으로 된 외국인들의 이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다 다르게 사용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이름이 뭐냐고? 제 외국인등록증에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는 온다라로, 계약서에는 운다라로 되어 있어요. 명단에는 온다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죠? 했더니, 그러면 영어 이름으로 등록할게 했더니 긴 이름이 입력이 안되서 Dolgorhand Undaraa라고 다른 기관은 되는데 건강관리공단에는 또 안 되더라. Dolgorhand라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교육청에서도 인식이 안 돼요. 출입국 사무소에는 아예 몽골 성과 부의 이름 제 이름이 또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요. Dagaakhan Undara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Dolgorhand은 없어요. Dagaakhan Undaraa라고 있어요. 등본에는 Dolgorhand Undaraa라고 있어요. Dagaakhan 또 Dolgorhand도 길어요. (N,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이뿐만 아니라 N씨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황이어서 성이라고 대답했다. 몽골은 고대의 성이 있고,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은 아버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쓰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서 서로 이해불가인 상황에서 성이 고대의 성으로 작성 된 것이다. 국가마다 성씨를 사용하는 방식과 성씨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모르고 사용한 것이다. 부부가 되기 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 성과 이름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이로 인해 이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다르게 잘못 작성된 성과 이름이 생긴 경우가 있었다.

9) 한국인-모 외국인- 부. 블로그. <http://cafe.naver.com>).

한국에 오기 전에 남편이 서류 준비할 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D a g a a K h a n- 뭐냐고 해서 나는 ‘성’이라고 말했고, D o l g o r h a n d- 뭐냐고 해서 이름이라고 했더니, 성이 뭐냐고 하니가 내가 D a g a a K h a n 라고 몽골의 고대의 성을 얘기했지, 그래서 출입국에서 준 외국인등록증은 D a g a a K h a n U n d a r a a 가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는 성인 D o l g o r h a n d 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고, 두 세 번 비자 연장하러 갈 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사람 초청하려고 하면 안돼서, 출입국에 가서 다시 바꿨어요.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D a g a a K h a n U n d a r a a 라고 나와요. (N,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몽골은 주민등록증에 고대의 성과 아버지 이름인 성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공식적인 서류에는 아버지 성과 본인 이름을 성명으로 사용한다. N씨의 경우 성명이 세 가지로 다르게 잘못 작성 되어 있어서 두개의 성을 혼동하고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 되는 잘못 된 케이스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에서도 외국인의 이름을 제대로 받아 적지 않고 다르게 작성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녔을 때 내 이름을 잘못 쓰고 통가를 통가로 쓰고, ‘오’로 쓴건 ‘우’로 바꿨어요.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로 기재, 보험은 다르게 사람들이 센터에서 잘못 쓰고,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고, 부르는 대로 쓰고 그래요. (D, 귀화자-결혼이민자)

기관 직원들이 한국식 발음으로 마음대로 적어서 이름이 다르게 작성되고, 다르게 불리지는 상황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다르게 작성한 발음으로 인해 본래의 이름에서 벗어나 다른 이름이 되어 버리는 것을 외국인들은 원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의 이름을 모든 서류에 한국어로 작성하면서 최초에 작성한 외국인등록증에만 영어로 기재하는 것이 혼란스러움의 원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등록증에 영어 이름, 보험에는 한글 이름이 있어요. (L, 결혼이민자)

성씨와 이름을 합치면 10자에서 20자까지 적어야하는 긴 외국 이름과 성 때문에 컴퓨터에 다 작성 못하고 이름과 성이 잘려진 경우로 서류에 이름 대신 성만 있는 상황이 또 생긴다. N씨의 경우 ‘텔거르한드’가 성이고 ‘온다라’는 이름이다. 몽골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로 작성하면 한국어와 몽골어에는 ‘오=Y’, ‘우=Y’가 다 똑같이 있어서 편안하게 혼동 없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 이름을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로 쓰고 그것을 한글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양쪽국가의 영어 표시방법이 달라서 다른 발음이 되어 버린다. 한국은 ‘오’를 O로, ‘우’는 U로 표시해는데 몽골은 ‘오’와 ‘우’ 모두 U로 표시하고 ‘어’를 ‘O’로 표시한다.

건강검진 했을 때 한글 이름도 안 되고, 건강관리협회는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영어로 쓰겠다고 하는데 영어로 쓴다고, 그냥 온다라. 다른 데는 다 이름이 텔거르한드로 가요. 이름이 잘려지면 텔거르한드이고 잘려지지 않으면 텔거르한드 온다라 이렇게 가요. sk 은 잘 안 잘리더라 시스템을 바꿔야 돼. Undaraa 몽골 ‘오’가 몽골식 영어로 U가 되고, 한국식으로 할 때 U를 뭘로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N, 영주권-결혼이민자)

10. 다르게 작성해서 입력이 안 되는 이름의 불편함

몽골 긴 이름을 입력하는 행정방법이 다르다. 외국인등록증에 성과 이름이 모두 작성이 안돼서 이름을 ‘-’를 추가해서 이름이 잘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성과 이름을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쓸 경우에 대문자로 써야할지 소문자로 써야할지 다르다. 몽골은 영어로 써도 성과 이름의 앞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쓴다. 그러나 한국은 영어로 쓸 때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다.

몽골 이름으로 있으면 가입하기 힘들어요.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걸 하려면 힘들어요. 지금은 다

물어봐요. 이름을 다 써야하는지, 영어로 쓰는지, 한글로 쓰는지 대문자로 쓰는지, 소문자로 쓰는지가 헷갈려요. 몽골어로는 사람 이름이니까 먼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써야하는데 한국은 다 대문자로 써야 돼. 중간에 띄어 쓰고, 어떤 건 붙여서 써야 되고. (N,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때 이름 때문에 안 되면 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해요. 어, 귀찮아요. 잘 안돼.. 그래서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해결해요. 온라인 송금이나 계산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그걸로 계산하려고 하면 카드의 사용자 이름이 은행계좌에 있는 이름하고 다르다고 안 돼요.

인터넷 뱅킹이 안 돼요. 입력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데도 잘 안 된다고 나와요. 이름하고 인증은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카드하고 이름이 다르다고 나와요. 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도 힘들고 신용 카드도 어려워요. 은행에 가야해요. 불편해요. 내가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확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인터넷 뱅킹이 안 돼요. 지금까지 시스템이 안되는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찾는 것들 예를 들면 도서관, 등록할 때 항상 힘들어해요.

(G, 일반 이주여성)

은행통장, 공인인증서 한글로 텔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외국인등록증에 있는 성명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길게 영어 이름을 쓰고, 어떤 기관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면 영어를 읽을 줄 모르고 한글로 적어달라고 해요. 혼인관계증명서 이름은 테네게르사이항 텔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인증 받는데 이름을 여러 가지로 써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Tenegersaihan Delgersuren하면 잘못 썼다고, 텔게르수렝하면 잘못 썼다고 나오고 내 이름을 되게 다르게 여러 가지로 써요. 외국인등록증에 Tenegersaihan Delgersuren영어로 있어요. 다른 곳에는 한글로 텔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한글로 테네게르사이항 텔게르수렝 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다르게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고, 항상 이렇게 이름 쓰는데 오타나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불편해요. 공인인증서를 외국인등록증으로 받으면 외국인등록증에 영어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 받았어요. (C, 영주권-결혼이민자)

민원 24라고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공인인증서는 영어 이름으로 있어요. 한국 이름만 입력할 수 있어요. 한국이름을 하게 되면 내 공인인증서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안돼요. 서류를 뽑을 수 없어요.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이름으로 차이절 공인인증서도 Ariunbat Choijol 공인인증서와 한국이름으로 입력 하라고 해요. 인증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영어 인식이 안돼서 한국어로만 인식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민원24, 아니면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한국어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로 '아리웅바트 차이절' 라고 쓰면 내 영어로 된 국민인증서를 인식을 못해서 민원24에서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없어요.

(B, 영주권-결혼이주여성)

이렇게 영어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소문자로 쓰는 지 대문자로 쓰는지, 모두 대문자로 쓰는지 알아야하고, 인터넷 송금, 온라인 쇼핑, 신용카드 발급, 서류 발급, 공인인증서 사용 등이 어려워 다양한 행정 상황에서 이름 입력이 안 되는 것을 N씨, G씨, C씨, B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1. 본래 성명과 다르게 성씨 없고 이름만 사용

긴 이름 때문에 이름만 사용하다가 국적 취득 씨 주민등록에는 성씨가 없는 이름만 기재 된 경우도 있었다. L씨의 사례에서 성과 이름이 잘못 기재 된 상황에서 담당 직원들이나, L씨도 한국의 행정 상황과 절차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국적 허가 받았지만 성 없이 이름만 기재 되어 있었다. 이름을 바꾸자고, 조금 짧으니까 했더니 출입국에서 아니야 이걸로 나와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밤바르하그와라고 성 없이 이름으로만 받았어요. 출입국에서 써준 게 등기로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쓰게 하겠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고 밤바르하그와 을 쓴다고 말했어요. 받고 나서 개명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성' 없이 있어요. (L, 결혼이민자)

조금 전에 외국인등록증 바뀌게 되니까 귀화허가증이 나왔다는 서류가 왔어요. 거기에 당신의 성이 없다고, 다시 여권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출입국에 서류를 다시 보냈어요. (L, 귀화자-결혼이민자)

12.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사용

연구 참여자 K씨의 원래 이름은 '게렐트절멍'이다. 그러나 그녀도 서류상 성은 빠지고, 이름만 성과 이름으로 나누는 상태로 6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거주했다고 한다.

이름을 바꾸게 되면 내 이름의 '게렐트'를 성으로 하고 '절멍'을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내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었어요. 여권도 성이 게렐트, 이름이 절멍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한국 성과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제가 제 이름을 나누는 성과 이름으로 6년 동안 살았어요. (K, 귀화자-결혼이민자)

13. 잘못 사용한 성 때문에 벌금을

고대의 성씨와 현대의 성씨가 바뀐 N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적 착오로 발생한 잘못된 이름 때문에 12만원의 벌금을 내고 몽골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한국어를 모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왜 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손해만 본 것이다.

내가 한번 몽골 갈 때 벌금을 냈어요. 비행기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직원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제가 온지 2년 됐으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었요. 뭔가가 안되서 기다리게 하는 거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돈 내라고 해서 12만원을 냈어요. 몽골에 조금 오래 있다가 와서 아이들 둘 있는데 왜 12만원을 냈는지 알아보고 다닐 수 없고, 내가 12만원 땀에 출입국사무소로 가도 왔다 갔다 비용이 12만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기에 성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N, 영주권-결혼이민자)

한국의 행정시스템 자체가 다양한 외국 이름을 입력할 수 없다. 외국인들은 출신국가의 원래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하지만, 컴퓨터 행정시스템은 8자리 이상을 입력할 수 없음으로 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김현미, 2015:100).

제 성명을 영어로 쓰면 Tenegersaihan.Delgersuren이다. 그러나 입력이 안돼서 Teneger saihan까지만 쓰고 잘려져요. (C,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은행 통장은 다 성만 있어요. 은행 통장에는 영어로 다 성만 있어요. 내 이름의 앞 글자만 있고,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통장을 보내게 되면 성만 있어서 다른 이름 같아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은행통장에 성과 내 이름 첫 글자만 있어요. (N,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이름 잘린 경우가 많아요. 성이 길어서 내 이름이 없는가 아니면 내 이름의 반은 없을 때도 있어요.

(K, 결혼이민자)

이름 길면 불편해. 귀화하는 사람들이 몽골 이름 그대로 하려면 이름이 갈라지고 힘들대요. 한국국적을 받아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 포함하면 7글자 뒤후다그와 산자라고. 학교 다닐 때 한국인들이 외국 이름 길게 못 읽어요. 이름 부르다가 말 못하고 버벅거리면 나를 부르려고 하는구나 하고 바로 손들고 그랬어요. (E, 귀화자-결혼이민자)

14. 개명은 신중히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면 일본인으로 완벽하게 동화되는 것처럼(Tai,Eika, 2004) 한국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개명

해야 법적이거나 서류상 한국인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차별과 다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개명하고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귀화 외국인은 한국화 된 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래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이름 및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자치구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곧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징은 곧 한국식 이름을 갖는 것이다.

개명을 권장하는 사회적 환경은 이주자들이 차별과 무권력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김현미, 2015:100). 따라서 몽골 이주여성들은 본인의 이름을 번역해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거나, 본인의 바램에 맞는 한국식 이름을 받거나, 한국 성에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짧은 nickname을 사용 하고 있다.

사람은 이름을 따라 사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한국 이름을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받아야 돼. 한자의 뜻이 다 다르니까 (B,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긴 이름 있는 게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법원에 이름 내라고 남편이 8개 이름을 찾아줬어요. 뜻이 뭔지 한자로도 찾고, 연예인 이름도 있고, 아니야 이 이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김아인, 박지원... 김태희 .. 등등 그래서 나 이런 이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사주를 보고 책으로 이름 지어주는 사람한테 받으라고 말해줬어요. 갔더니 이름을 통역하라고 하더라구요. 통역 했더니 책에 이름을 써줬어. 부지윤. 아버지 이름 BAATAR 그러면 영웅이 되요. 한자를 찾으니까 제주도에 부 성은 몽골인들의 성씨라면서. 해줬어요.

(A, 귀화자-결혼이민자)

이름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출입국으로 물어보니까. 이 서류가 나오면 이름을 받고, 나중에 다시 개명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름이 밤바르하그와 라고 받은 거야. 지금은 밤바라고 하면 장밤바, 이밤바 하면 성이 안 맞아서 김밤바, 그래서 뭘로 할까? 그냥 듣기 좋고, 읽고, 쓰기 쉬운,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L, 귀화자-결혼이민자)

몽골인들은 보통 이름이 길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부를 때는 짧게 닉네임을 사용한다. 그래서 몽골이주여성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 몽골 닉네임으로 바꾸기도 한다.

15. 몽골여성들의 개명 방법

한국인들은 미국시민권을 받더라도 한국 성씨를 유지해서 이름 앞에 쓰고 한국인임을 간직하고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본인의 원래의 이름과 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개명하고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은 한국식 개명을 통해 한국인다움으로 연출한다(김현미, 2015:102) 라고 했지만 몽골 여성들의 경우는 달랐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은 Kim, Lee, Park 등 한국식 성씨를 사용하지만 몽골인들은 몽골 성씨를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하기는 5글자에서 12글자가 될 정도로 너무 길어서 불가능하다. 행정상 성을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몽골 이주여성들이 한국식 이름으로 본명을 개명하는 방법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성과 몽골 닉네임, 둘째, 한국성과 번역된 본인 몽골 이름, 셋째, 아버지 이름을 앞글자로 성을 하고 원하는 한국이름, 넷째, 제주도의 몽골 성 ‘부’를 사용하고 한국식 이름, 다섯째, 한국식 성과 한국식 이름 등 다섯가지 방법으로 이름을 개명한다.

예를 들면 한국성과 몽골 닉네임은 이자야, 윤나라, 김사라, 어유나, 이미셀 등이다. 자야(운명), 나라(태양), 사라(달)는 유나(어유나-보석이름), 이미셀(미셀-스마일) 등 몽골 이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한국성과 몽골 이름 번역은 김진주(쑤다), 이빛나(게렐) 등 이름이고, 아버지 성 앞 글자와 한국이름으로 된 개명도 있다. 몽골인들은 보통

공식적인 이름에는 아버지 이름을 성으로 사용하고, 짧게 쓸 때는 아버지 이름의 앞 글자와 본인이름을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에 한국 이름으로 개명할 때도 아버지 이름 앞에 있는 한 글자나 두 글자에 원하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유민정(IO→유), 혜유미(X→혜), 서나영(C o→서), 우은영(Y→우), 채은주(ㄱ→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성씨 중에 제주도의 몽골 성인 '부'가 있다. 제주도의 부 성씨를 사용해서 부은지, 부딘아 등 이름으로 개명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은 본인의 몽골 성명과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식 성명으로 개명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문소현, 한수미, 김옥희, 윤은경, 우아김, 김수진, 김봄, 김나운 등이다.

V | 맺는 말

본 연구는 한국 땅을 선택하여 이주자로 살고 있는 이주자나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결혼이주자로 살고 있는 여성들의 귀화와 시민권, 개명에 대한 것이고, 일반·간이·특별귀화 조건과 제도, 결혼이주여성 현황 등을 살펴봤다. 한국에서 '시민권'인 '귀화'는 한국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만 한국국민이 된 것이지 실제로는 '외국인주민'이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통계'에는 귀화자와 한국국적 자녀들이 포함되는 것은 귀화의 의미와 현실 사이에 불일치를 확인시켜준다. 이주자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에 속하는 상황은 여전히 귀화자를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주민으로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169,535명의 귀화자와 외국국적인 160,653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거의 결혼이주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은 어떤 이유로 국적 취득을 선택했는지, 국적 취득하기 전과 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

는지, 국적 취득한 후에 본명을 개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개명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한국식 개명을 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주말에 몽골어를 가르치고 있는 두 개 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어머니 18명에게 집단 면담을 2명에서 7명으로 10회와 개별 면담은 11명에게 하여, 1년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관찰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5세에서 만14세 학령기 자녀를 둔 몽골 출신 고학력 결혼·일반이주여성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들이라는 고학력자이고, 둘째 연애결혼을 했고, 셋째 모두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고, 넷째, 모두 이주여성들이고, 다섯 째, 모두 몽골 출신 여성들이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 연구 참여자들의 국적 취득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母)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완화되어서 본인국적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고,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국적 취득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10글자에서 20글자까지 긴 이름과 성 때문에 행정상 입력이 불편하고, 낯선 시선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서류상 한국인과 같아지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결혼 비자로 거주하게 되면 남편이 보증하고 서류 제출 등에 동반 해줘야하는 제도, 위장 결혼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남편이 사망하거나 잘못되면 안정적으로 체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다른 불편한 상황들을 보면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걸림돌이가 될 수 있고,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이나 인터넷 송금 등이 안 되고, 성명을 기관마다 한글과 영어 표기로 다르게 작성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수 없는 사례 등 인터넷을 사용하기는 외국인 이름 사용이 불편하다.

행정직원들의 외국인의 이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성 없이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 성과 이름을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어 이름을 한글로 옮기면서 몽골이름과 발음상 다르게 되는 경우와, 영어와 한글 이름으로 된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한글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불편한 외국 이름 사용으로 인해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 이름으로 모든 서류 작성을 해서 이주자는 유명인물로 살아가기 불편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주여성들은 귀화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 성과 이름으로 인해 서류에 성을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사용하는 사례, 본인의 원래의 성을 없애고,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는 탓에 6년 동안 이름을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서 다른 몽골 이름으로 살아온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긴 이름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이주자들은 귀화를 해서 본인의 긴 이름과 성을 한국식으로 바꿔야 행정상 불편사항이 사라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서류제출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귀화를 신청한 후에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본명을 독특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개명하고 있다. 첫째, 한국 성과 몽골 닉네임, 둘째, 한국성과 번역된 본인 몽골 이름, 셋째, 아버지 이름 앞글자로 성을 하고 원하는 한국이름, 넷째, 제주도의 몽골 성 '부'를 사용하고 한국식 이름, 다섯째, 한국식 성과 한국식 이름 등 다섯가지 방법으로 이름을 개명한다.

본 국적 취득과 시민권 관련 연구에서는 외국 이름과 성으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여러 사례들을 밝혔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모든 서류가 한글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이름도 외국인등록증에 한글로 작성해야하는 것을 제안한다.

외국인의 이름이 외국인등록증에만 영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서류에는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직원들이 한글로 마음대로 작성해서 이름이 여러 개가 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외국인들이 유명인으로 살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 작성 인터넷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외국 출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교직원들에게 다문화이해 인식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을 제안한다. 교직원들의 인식이 학생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외국 출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아도 생각 없이 무의식으로 하는 말투와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태. 2015.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영주자격과 국적취득 등 이민법안 개선 관련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2(1):1-22.
- 김현미. 2015. "귀화 이주민과 문화적 권리." 연구논문·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48(1):89~118.
- 로라 네이더. 1972. "인류학자여 이제는 위를 보자." 한국문화인류학회 역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일조각.
- 마셜. T . H . 1998. 「시민권」,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 마이클 새머스. 2013. 「이주」. 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푸른길.
- 바바라 밀러(Barbara D. Miller). 2014. 「글로벌시대의 문화인류학」. 홍석준·박준규·박충환·이창호 옮김. 시그마프레스.
- 박미숙·김영순·이진영. 2015.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불취득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9(2):138-159.
- 박진근. 2013. "다문화구성원에 있어 국적취득의 법적 개선방향." 한양법학. 24(3, 43):495-517.
- 이재홍·박영주·김원진. 2011.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애로요인 분석: 나주시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231~258
- 지현정. 201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경옥. 2014. “국제이주와 국적취득·박탈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20(2):151-177.
- 코린 글레신. 2017. 「질적연구자 되기」. 안혜준 역. 아카데미프레스.
- Christian Joppke. 2010. Citizenship and Immigration. Immigration Society. Polity Pr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UN Migration Agency. 2018. World Migration Report.
- Jong-Hee Lee.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Workers and Citizenship in Korea and Germany. Pp.71-87 .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Jonghoe Yang. 2013. The Perception of Citizenship in Korea: Its Social and Political Variations. pp.117-143.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Loring, Ariel Fradene. 2013. Language and U.S. citizenship: Meanings, ideologies, and polic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inguistics Markus Pohlmann. 2013. The Migration of Elites in a Borderless World: Citizenship as an Incentive for Professionals and Managers? Pp.59-86.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Subrata Mitra. 2013. The Idea of Citizenship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Significance of India for the Korean case. Pp.211-226.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Sang-Hui Nam. 2013. Ethnic Chinese in South Korea: Interplay Between Ethnicity, Nationality, and Citizenship. Pp.163-180.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Seokho Kim, Jonghoe Yang. 2013. Patterns of Citizenship and Political Action in Korea,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 Analysis of the 2004 ISSP Data. Pp. 181-208.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Sung-Nam Cho. 2013. Resent Statu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Pp.89-114.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SeungSook Moon. 2013. The Idea and Practices of Citizenship in South Korea. pp.9-38. In Citizenship and Migr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dited by Markus Pohlmann, Jonghoe Yang, Jong-Hee, Lee. Springer Press.
- Tai. Eika. 2004. "Korean Japanese." Critical Asian Studies, 36(3): 355-382 Pierre Monforte·Leah Bassel·Kamran Khan. 2019. "Deserving citizenship? Exploring migrants' experiences of the 'citizenship test' process in the United Kingdo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019 Volume 70 Issue 1, pp.24-43
- Raghuram, Parvati. 2013. "Theorizing the Spaces of Student Migration."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138-154.
- 데일리안.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가능. <http://www.dailian.co.kr/news/view/661935/?sc=naver> (2018.6.15)
-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신청 안내
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nnLt.jsp?q_global_menu_id=S_SIP_SUB13. (2018.5.11.)
- Hi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2018.5.11.)
- 법무부 보도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230&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 법무부 보도자료. 2018. 3. 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170&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2018.5.11)
- 꽃씨의 치명적 블로그. 한국인 모-외국인 부 다문화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한다.
<http://blog.naver.com/vivamayday/221017111316> (2018.5.25.)
-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https://www.mois.go.kr/srch.jsp>(2019.1.20.)

세션 6-02

난민 없는 난민 제도: 한국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제도의 작동방식

김가영¹⁾ |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8명의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6명의 활동가 및 변호사, 2명의 전현직 판사 등 난민인정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와의 인터뷰 및 국내의 한 난민지원단체 법률조력팀에서의 약 1년 간의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의 난민인정절차 및 심사제도의 작동방식을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참여의 정의론(parity of participation)’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난민협약의 이행 법률로서 제정된 국내 난민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한국의 난민 제도는 국제법 및 국제 난민 레짐과의 연관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난민인정절차가 국가 기관의 행정 구조, 사법 체계,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난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 증거 및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난민 협약에 명시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행정 및 사법 기관의 관행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과정으로서 합리적인 진술 신빙성 평가가 ‘관행적 인격 신뢰성 평가’로 대체되었다. 또한 2) 난민 신청이 대부분 허위라는 심사주체의 선입견이 강한 상태에서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심사 적체와 졸속 심사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케이스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심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진짜 난민이 없다”는 선입견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이는 또 다시 졸속 심사를 통한 불인정 결정에 기여함으로써 부정적 심사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3) 통역, 정보고지, 안내 등의 행정 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수의 난민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 및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서류, 신청,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대리의 형태로 조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난민신청자의 행위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난민신청절차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한 난민들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절차 및 심사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그들이 인정(recognition)을 통해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분배(redistribution) 받을 동등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동시에 ‘(진짜)난민은 없다’는 인식의 ‘틀(frame)’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에 대한 관습적인 ‘대표(이미지)(representation)’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진짜/가짜’ 난민 담론은 협약상의 난민 요건을 넘어 난민에게 한국 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인격을 기대함으로써 난민 상태 또는 일시적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난민성(refugeehood)’을 본질적인 ‘(난민)정체성’으로 치환하고, 난민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짜난민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차별과 부당함을 정당화한다.

1)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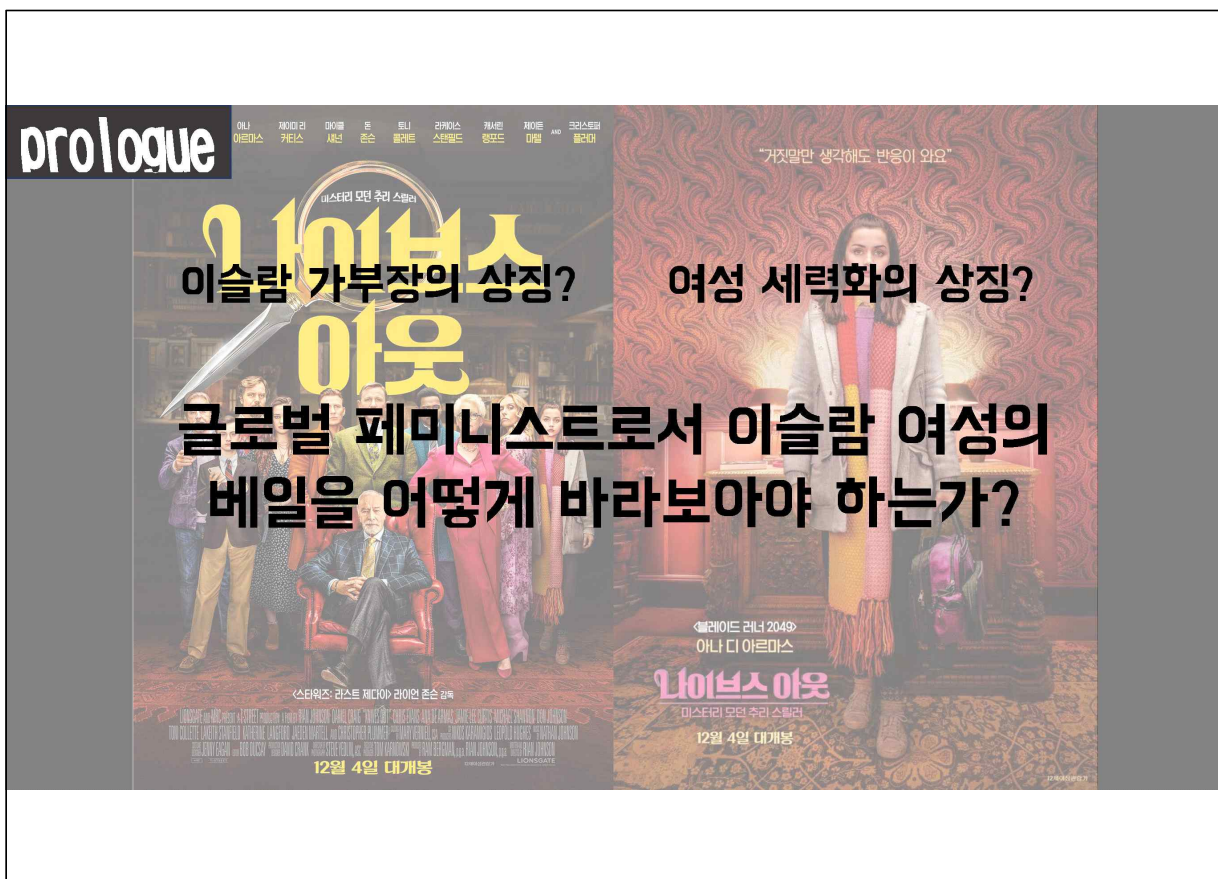
세션 6-03

베일논쟁의 정치화와 이슬람 여성의 탈정치화

준불 베를1) | 연세대학교



1)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1. 베일논쟁의 정치화와 이슬람 여성의 탈정치화

베일논쟁의 정치화와 이슬람 여성의 탈정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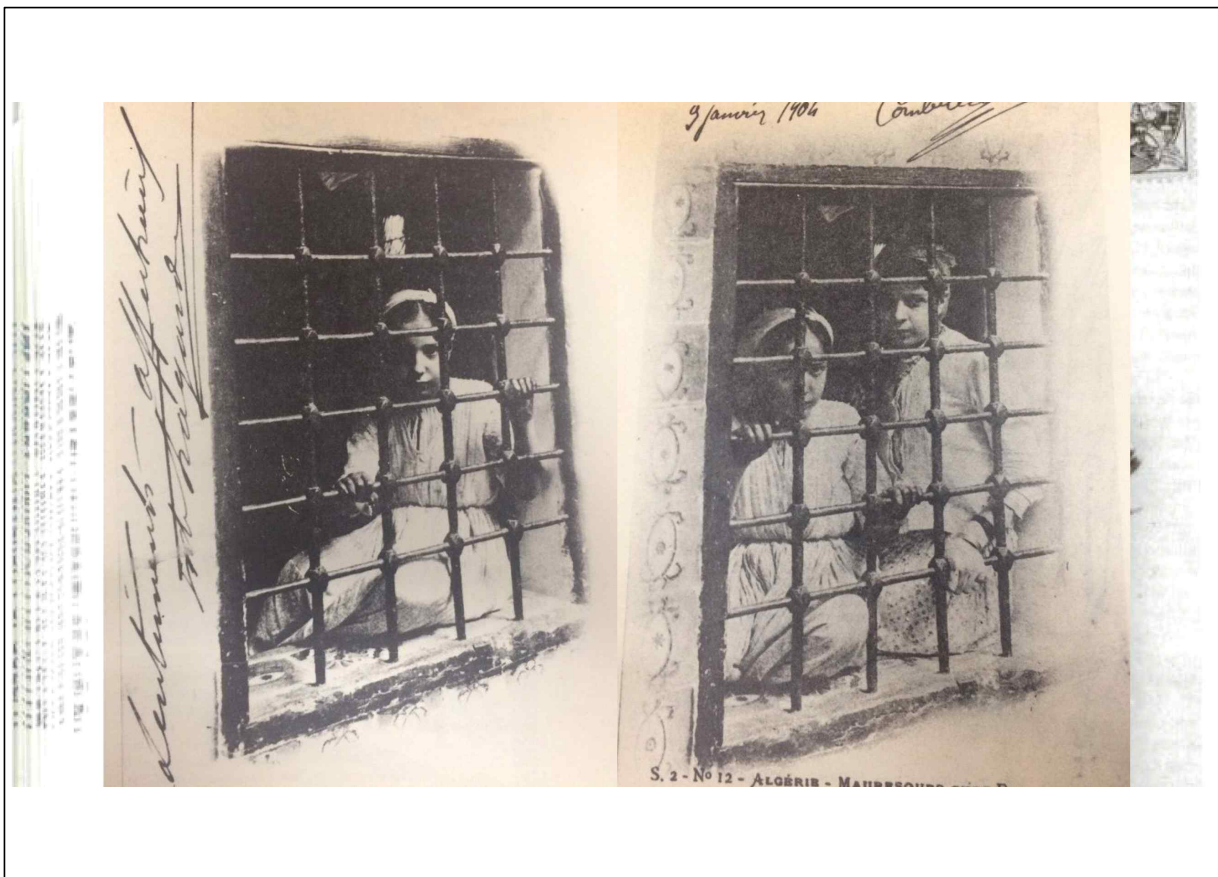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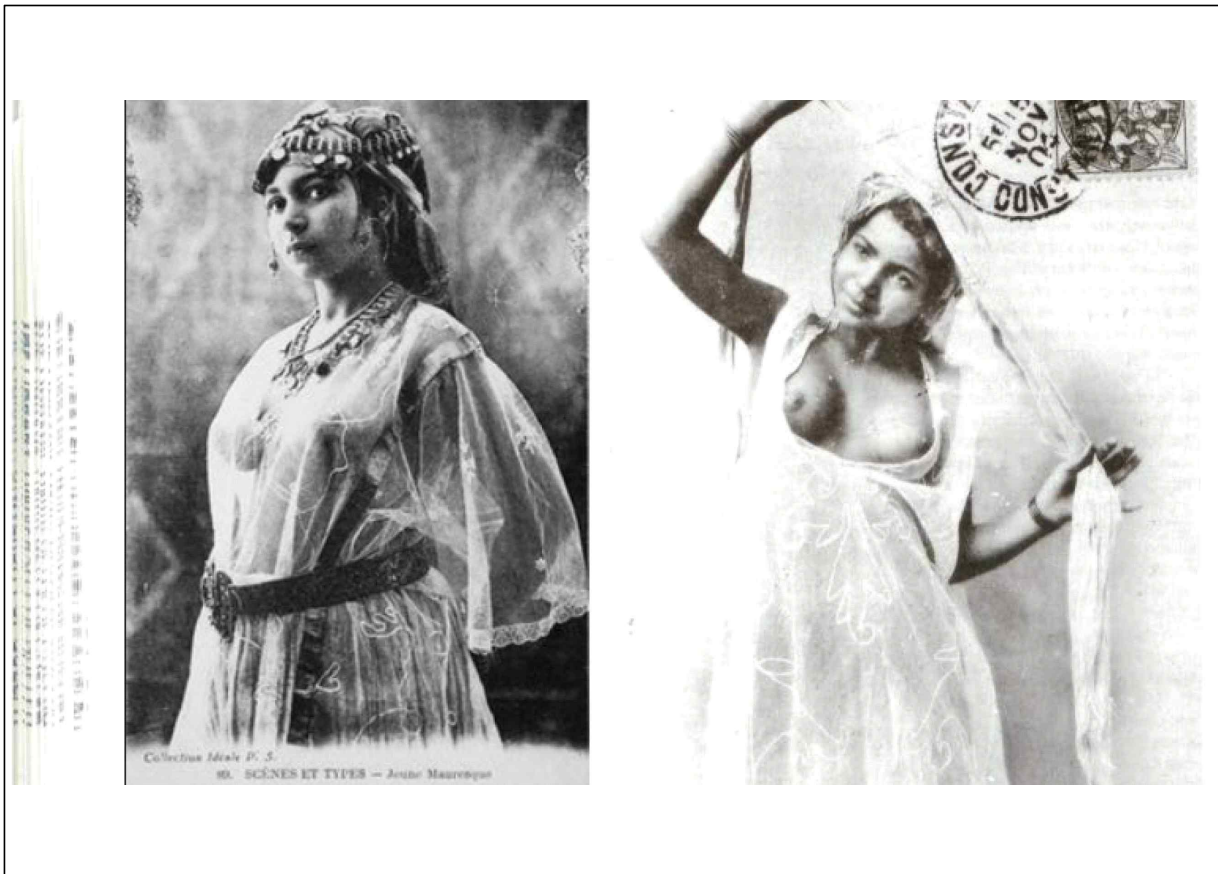
- 이슬람여성의 '베일': 다양한 근대적 기획들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는 서사로 활용
- 담론의 '장'으로서의 베일논쟁 :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베일의 서사 활용
- '베일논쟁'이라는 담론의 허구성
- 베일논쟁이 활용되는 메커니즘 파악
- 이슬람 여성이 정치적 영역에서 삭제되는 방식 추적

2. 식민주의-탈식민주의 : 정복과 저항의 베일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정복과 저항의 베일

식민주의

- 베일: ‘보이지 않음’
: 재현을 방해하는 장애물 &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구
 - 이슬람 여성: 섹슈얼한 판타지의 대상 & 구원을 기다리는 피억압인
- “베일전쟁”
- 베일을 벗기는 행위 = 정복(의 재현)
 - * 이슬람 여성 = 식민지 정복 전쟁에서의 ‘전리품’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정복과 저항의 베일

식민주의

- 베일: '보이지 않음'
: 재현을 방해하는 장애물 &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구
 - 이슬람 여성: 섹슈얼한 판타지의 대상 & 구원을 기다리는 피억압인
- “베일전쟁”
- 베일을 벗기는 행위 = 정복(의 재현)
 - * 이슬람 여성 = 식민지 정복 전쟁에서의 '전리품'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정복과 저항의 베일

탈식민주의

- 베일 : '보이지 않음'
 - 식민지 남성의 시각을 식민주의 남성의 시선 안에서 비판
: 식민주의 남성의 욕망과 판타지 / 담혹감
 - 보이지 않지만 '보는' 식민지 여성의 시선에 가담지 못함
- “베일전쟁”
- 베일을 벗(기)지 않는 행위 = 저항(의 재현/상징)
 - * 이슬람 여성: 식민지 정복 전쟁에서의 식민지 남성의 저항을 위한 '도구' / 소유물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정복과 저항의 베일

알제리인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면 이는 곧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자기 아내를 매음시키고 그녀를 공개하고, 저항 방식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파농, 1986: 32).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을 보는 이 여인은 식민자들을 당황하게 한다(파농, 1986: 36).



3. 세속주의/라이시테 : 배제의 합법화

세속주의/리야스테 :배제의 한변화

터키 세속주의 근대화

- 군부를 중심으로 한 세속주의 근대화
- 터키 신여성 :근대화의 상징 (↔ 정치적 주체)
- => 상징조작전략
- 공적영역의 '규범화' & 공적영역으로 '진입할 자유' 부여
: 배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통치성
- 계급 양분화 :세속주의 부르주아 엘리트 VS 이슬람적 대중





세속주의/리야이테 :배제의 압변외

이르티자(irtica/이슬람반동주의)로의 낙인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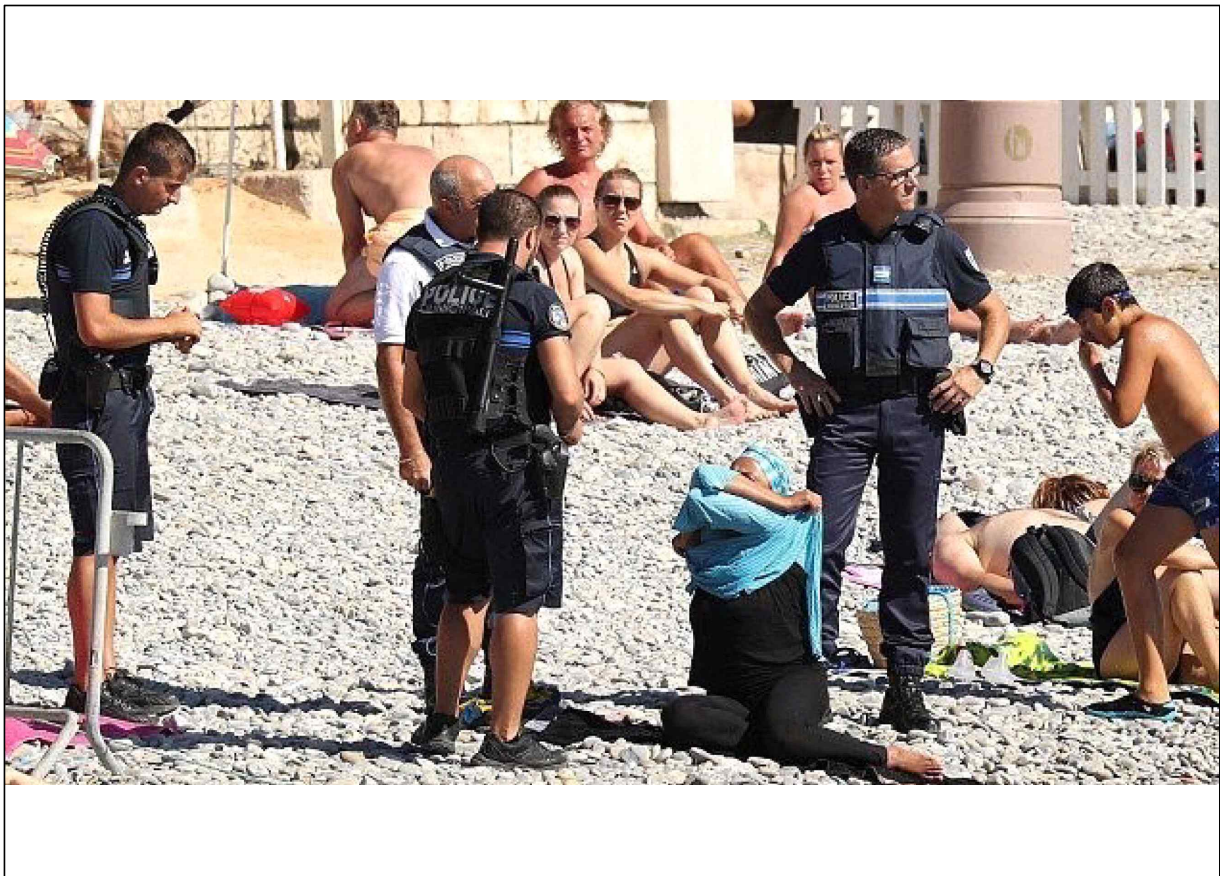
- 8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
- 97년 포스트모던쿠데타
:공적영역에서의 hijab 착용 금지 (정치적 배제의 여성 가중화)
- 대학교육을 포기 OR 비가시화전략



세속주의/라이시테 :배제의 인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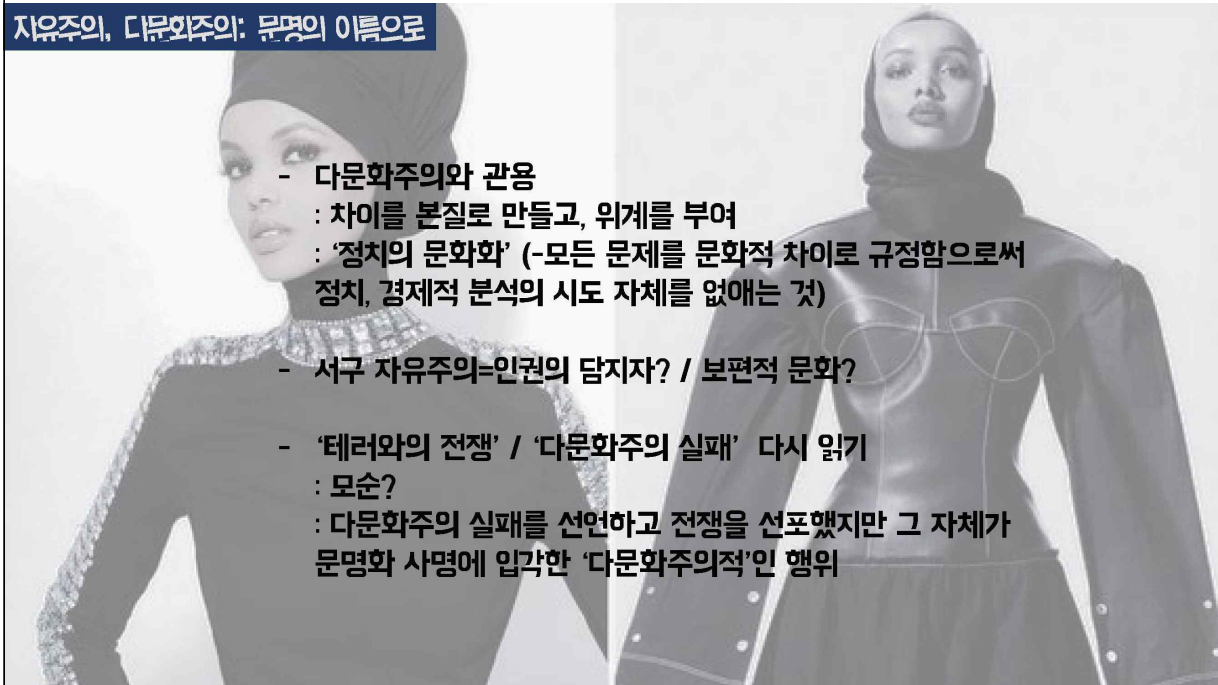
프랑스 라이시테

- 프랑스의 정체성? 타자화 전략?
- 1989년 히잡사건과 '라이시테'의 부상
- 통치가 용이한 예비 무슬림 여성을 타겟으로 한 '히잡금지법'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문명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무명의 이름으로

이슬람 여성과 베일이 그려지는 방식

A. 보이지 않으면서 보는 위험분자

: 범죄자/테러리스트의 위장술 / 잭스트로우 사건

B. 이슬람의 '억압성'과 '폭력성'의 피해자

: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당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에서, (중략) 전통과 근대화 사이에 사로잡힌 '제 3세계 여성'의 전위된 형상화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가야트리 스피박, 2010)

=>이중적 방식으로 주체성/목소리 삭제

결론을 대신하여)

5. '상징으로서의 몸'에서 탈피하기

사진출처: 서발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표지 사진

'상징으로서의 몸'에서 탈피하기

- '베일'이라는 가시성 : 상징으로 '적합한 몸'을 구성
- 목소리가 삭제된 '상징'
: 다툼의 장소로서의 '여성의 몸' / 주체 없는 '살덩이'
- 그들은 '이미 항상' 말하기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그 말없음에 우리가 공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피박, 2010)
- 상징으로서의 몸에서 '주체'로서의 몸으로
=>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분석의 시도



감사합니다.

세션 6-04

Who am I?: An Analysis of the Joseonjok People's Sense of Identity who Live in South Korea

순 지아웨이 | 서강대학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dentity of young Joseonjok migrants in South Korea. It mainly analyses the changes of their perspectives on the sense of identity before and after moving from China to South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government policies on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and China and on the experiences of young Joseonjok migrants. By analyzing the interviews of two young Joseonjok migrants, it seeks to understand how their identity is constructed and why they experience identity confusion.

Keyword: Joseonjok, South Korea, China, Identity

I Introduction

1.1 Background

The introduction is discussed in two parts. Firstly, I stated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number of Joseonjok who live in South Korea is getting more and more. That means the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are also getting more frequent and flexible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elf-belonging as an immigrant. In the second part, I will illustrate briefly to make a conclusion about the bonds that Joseonjok immigrated to South Korea.

As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exchanges increas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nu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have entered the South Korean society increasingly. As Seo (2013, 9) states, no matter what the immigration or the multi-cultural policy is like, it is impossible to think about today's South Korean society without the Chinese migrants.

The chart below shows more and more Joseonjok have entered South Korea with time went by from 1999 to 2008, and Joseonjok ethnic group accounted for over half of the total in 2008.

〈 Table 1. Changes in Joseonjok ratio among foreigners in Seoul〉

	The number of foreigners	The Number of Joseonjok (Chinese nationality)	Ratio(Joseonjok/foreigners)
1999	57,189	12,283	21.5
2000	61,920	17,432	38.2
2001	67,908	21,259	31.3
2002	73,228	22,535	30.8
2003	102,882	52,572	51.1
2004	114,685	64,762	56.5
2005	129,660	77,881	60.1
2006	175,036	119,300	68.2
2007	229,072	169,414	74.0
2008	255,207	192,618	75.5

Source: (Hong 2013, 162)
From the table, the proportion of Joseonjok in the Chinese who has Chinese nationality varies slightly. During 2005~2009, it is 67%, 71%, 74%, 75%, which can be said to be an average of 70%

Through these table diagrams, we can conclude that the Joseonjok accounts for the majority from Chinese people in Korea. This shows that we cannot ignore the impact of Joseonjok on Korean society, nor can we ignore the development of Joseonjok in South Korea. "Joseonjok ethnic group" cannot be simply defined as "Chinese-Koreans" or a member of the Korean peninsula. The Joseonjok ethnic group should be considered a bridge betwee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new era of East Asia. (Choi 2014, 123)

Also, the Joseonjok and Korea have roughly the same language, culture, custom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Joseonjok ethnic group can adapt to South Korean life more. Choi points out that those who live as Joseonjok ethnic group can no longer simply be defined as "Chinese-Koreans". (2014, 97) Seo(2013, 10) agreed the opinion that as the Joseonjok ethnic group return and live in Korea as the new subjects of life, their existence and value need to be placed more on the table, not just in the present but in the future, as a true citizen and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it should be established as a valuable resource to usher in an era of unified Korea and contribute to peace in East Asia in the long term.

On the one hand, for South Korea, Korea can learn the culture from China. As well, the other reason is the Joseonjok ethnic group is willing to improve their living standards and value by working or studying in South Korea. Thus, we cannot ignore the influence of the Joseonjok people on Korea's politics and social life. According to Seo(2013, 10), although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society is not friendly for a long time, the number of Joseonjok has been increasing. And now they have become a member of the largest compatriot group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n society today.

Before discussing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n society, the background that we should grasp is as follow.

China is a multi-ethnic country, there are 56 ethnic groups in China. The Joseonjok is one of them which origin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 descendant of the Korean. (Piao 2008, 37) For China, Joseonjok is an important part which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untr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Joseonjok community through a long and complicated process. During the 1990s, it is also a special time for South Korea when South Korea experienc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unavoidably social problems occurred like labor shortag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 on. For that, South Korea has not only encourage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labor but also encourage international marriage. (Park , KimCheol and Jiang , Zherong 2017, 19)

In some ways, the Joseonjok ethnic group got a chance to enter into Korea where they regarded there as a “root” for themselves, where they gradually developed their nostalgia and expectation for the 'home country', of course now there are much more Joseonjok come to Korea for studying and developing themselves. According to Dai and Peng(2014, 138),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due to the Hallyu culture, Korean influence in Chinese young people has gradually increased, and studying in Korea has gradually become a popular option in China.

1.2 Significant & Research Question and Objective

There are many existed literature materials abou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identity in the past. The literature on Joseonjok ethnic group is often investigated and discussed from three aspects: (1) Cultural policy in China and South Korea (2) Immigration policy (3) The identity of Joseonjok ethnic group.

However, the constructivist view holds that ethnic identity is malleable and dynamic rather than innate and unchanging. Choi(2014, 97) also approves that in his paper, he said in the case of ethnic groups, if they are subjected to external intrusion or a period of historical transition, they will have a new perception or recognition of their identity through meeting or grinding with other groups when they are exposed to a new environment due to movement. As well, it is the same theory applies to policy. The difference is that even though I investigate the same object with the existed literature materials, but I will study and analyze from a new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young of Joseonjok ethnic group. I am planning to prove that there will be some change on the Joseonjok ethnic group's young about their identity with the time goes by.

Therefore, this research asks a question: what are the perspectives of Joseonjok towards their senses of identity by living in South Korea society? In other words, if Joseonjok lives in South Korea, how they will think of their belongings? They may have some confusion on the view about ‘Who I am?’. Will they change some ideas on their senses of identity? In a word, the identity problem is the core issue of this research.

I did an interview in my study about how the Joseonjok ethnic group's young think of their identity. Here is one of my interviewees' self-confusion in order to understand for us more intuitively.

“...To be honest,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was confused. I think I am a Chinese, but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aid the same language with me, even the last name is the same with me, there are a lot of "Kim" suddenly occurred in my life. I feel we are so similar, and my Korean friends

have told me all the time that you are not a Chinese, you are a Korean... it was very confusing me at that time..." (Holt, Oct.30 2019)

Moreover, a lot of problems occurred among the Joseonjok people as well, the main problem is they are involved in a big confusion which is 'Who I am'. In my interview, I presented a problem for Holt (2019) about how he feels like his belonging as a Joseonjok. For that, he expressed his argument that he was confused when he first came to Korea since he met so much the same culture and language between Koreans and himself.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I plan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Joseonjok people's life before and after coming to Korea to understand their complicated sense of identity. Secondly,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review materials, I focus on analyzing individual cases which are 20 generations of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Korea. The idea maybe will be changed by the influences on time and other variables,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I inten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young Joseonjok people's senses of identity.

As my mentioned before, because considering that the Joseonjok ethnic people have recently entered Korean society with completely new goals and position, I have an opinion what is will to approve that with time goes by, there will have some changes among the young Joseonjok ethnic group's identity.

II | Literature Review

This section discusses two topics: (1)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2)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3) The construction of belonging in the Joseonjok ethnic group.

Although the Joseonjok ethnic group and South Korea are shared the same cultural roots and background since the previous time, they gradually realize that they grow up in different political systems through a different country. (Choi 2014, 118) At first, I will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and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In this part, I will introduce the importance for Joseonjok ethnic group to China and Chinese policy for Joseonjok. Then, for Joseonjok in South Korea,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olicy to Joseonjok and the discriminate on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After that, I will investigate on some existed literature reviews on the belonging in the Joseonjok ethnic group.

2.1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The literature on Joseonjok ethnic group is often investigated and discussed from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policy of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and the second is the cross-border movement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to South Korea. Therefore, my literature reviews also focus on these two parts to make an analysis and summary.

The Joseonjok meaning is being discussed as follows. Nan states (2019, 194) that Joseonjok ethnic

group is a branch of the Korean Diaspora, which has immig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been formed in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fter a long history course. The Yanbian reg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for the Joseonjok ethnic group, where it is a settlement for them in history so far.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China has succeeded in maintaining the homogeneity and establishing themselves as the superior of the 56 ethnic groups in China while celebrating the common national character and state of mind amid long-term production activities and revolutionary struggle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Joseonjok has indelible credit for Chinese anti-imperialist, anti-feudal, and anti-fascist wars. (Yao 2017, 88) Among all the ethnic groups in China, Joseonjok can be said which is the most involved in the war and the largest sacrifice. From Lee(2017, 173)'s opinion, he emphasizes that Joseonjok is not only the descendants of Goguryeo but also the descendants of the Korean nation and the anti-Japanese fighters. After the victory of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Joseonjok became the masters of the Northeast district, especially the Yanbian region through the policy of land reform. With this historical process,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he Koreans were established as members of the Chinese multi-ethnic. (Zheng 2018, 46)

Geographically, the area where Joseonjok lives is also very important. Yao(2017, 88) points out that locating in the most easterly part of northeast China's Jilin province, the Yanbian Prefecture occupies one-quarter of the province's total area, bordering Russia in the east and facing North Korea across the Tumen River in the south.

For these reasons, Joseonjok enjoys huge benefits in China compared with other ethnic groups. The most worth arguing is that they have the right to implementing the policy of the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This is a basic policy for Ethnic minorities which is under the unified leadership of the state, all areas where people merge and live in compact communities can implement the regional autonomy, establish organs of self-government, in order to the ethnic people become masters of the country and manage the internal affairs of their autonomous areas. Also, it has also acknowledged the strengths of ethnic group's identity, with their commitment to education differentiating them from other ethnic minorities. (Kim and Chung 2016/2017, 148)

Here are an interviewee's words to describe the Joseonjok autonomous region in the Yanbian, China. He points out that in Yanbian region, the Joseonjok government can establish and implement a set of policies by themselves.

"Although I didn't grow up in the Yanbian region, my mother is the Yanbian person. She read in Joseonjok ethnic group's schools where are especially for Joseonjok kids since she was a child. Besides, the education policy and a set of local policies are decided by the Joseonjok autonomous region government. My mother's Chinese is like now we lear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o learn. My mother said that she could not speak Chinese fluently until she graduated from college." (Holt, Oct.30 2019)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 and the pursuit of "root" among Joseojok ethnic group, after the 1990s, there was a situation occurred which called the cross-border movement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Park and Jang(2017, 20) describe the Joseonjok ethnic group who has made every

effort to reach South Korea for a dream—for dignity, prosperity,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hich has the same culture and the same language with them in “root”. However, in the Korean living environment and experience, the Joseonjok ethnic group has experienced more than “national identity” but “ethnic difference”.

Generally, the first motivation is argued as follows.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1998 Seoul Olympic Games and the improvement of China and South Korea relations, the South Korea government provided Joseonjok ethnic group with the opportunity to visit relatives in South Korea. At first, it was purely a family visit, but they soon discovered that South Korea’s income and development level were much higher than those of China at the time, so they thought of staying in Korea to make money. (Park, Guangxing 2010, 42) We can attribute the reason for the national transnational movement to economic reasons. Of course,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also speeds up the entry of Joseonjok ethnic group into South Korea. Park and Jiang(2017, 19) add that South Korea is facing a social problem of labor shortage just at this time. In 1993,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introduce many foreign laborers. Seo(2013, 13) suggests this position has chang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overtime, like the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through the training system,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visiting employment system are aspects of the labor market which the object is for Joseonjok ethnic group. Also, with the advantage of language, the Joseonjok ethnic group entered the Korean society for the first time as laborers. In this context, language is a view not only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also as a medium of power. (Bourdieu 1991). However, this also reaffirms the self-belonging of the Joseonjok’s people.

The other reason that Joseonjok ethnic group comes into South Korean society can simply be generalized as a “challenge” for a new life style but similar culture. From Hallyu is popular all over the world in the 2000s, more and more young people come to South Korea for studying or working, including young Joseonjok. According to Holt (2019), he emphasizes that coming South Korea is not for searching “root” or making money as a labor, but it is a challenge to live in another interesting way.

“First of all, compared with Koreans, I am bilingual, and now that China is developing so well, to be honest, I don't think it is so important to be Korean. I came to Korea to learn a new culture, and to gain insights because I like K-pop and Korean culture.” (Holt, Oct.23 2019)

Jang(2003) also points out that the young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was now proud of identifying themselves as Korean Chinese living in Korea (재한중국동포). Their identities were characterized by understanding both cultures and having the potential to work and contribute for a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2.2 the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The literature connected Joseonjok ethnic group which can mainly discuss in two parts about the policy to Joseonjok in South Korea and the discriminate on Joseonjok ethnic group in South Korea.

In some ways, it is a reading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s life to analyze.

Seo(2013, 12) indic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1993-1997), which advocated globalization, officially started the foreign migrant polic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globalization. He also adds that the Kim Dae-juong government (1998-2002) enacted the law on entry and exit and legal status of foreign migrants, including the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who can enter and leave South Korea freely and gives them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power after living in South Korea for a perio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t that time, there was a gap in the number of labors. After tha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2003-2007), in order to avoid diplomatic friction with China, developed a system that allowed the Joseonjok ethnic group to visit their homeland legally and find jobs. (Seo 2013, 13) He adds, the ministry of justice allowed Chinese Korean migrants to change their visas to foreign compatriots (f-4) residence status after obtaining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in 2011.

However, we should notice that this policy is still different from the policy of immigrations in Japan or the US. The original compatriot visit policy reflects a posit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garded Joseonjok as foreigners more than compatriots. Seo(2013, 13)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arget became an economic one. It means government policies are not so much to guarantee the regulations in "foreign compatriots' law" but prefer to guarantee the foreign manpower supply system. One of my interviewees presented the similar experience that the image of Joseonjok ethnic in South Korean views.

Here is one of my interviewees who has the similar experience which can prove the opinion as above.

"For example, once I heard that Joseonjok people earn Korean money and spend it back in China from a Korean. If it occurred to American, I think the Koreans would not say that. Well, I heard that Americans earn more per hour when they work in a coffee shop more than ours." (Holt, Oct.23 2019)

Sinc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1992, a number of Joseonjok have moved to South Korea in pursuit of "the Korean Dream".(Kim 2018, 60) After the Korean and Joseonjok contacting at first, they both appeared to be cordial and friendly, be full of expectations with each other. However, the relationship began to fray with a set of reasons. (Zheng 2018, 48) which results in discrimination which Joseonjok has to face.

The main purpose of the Korean people to go to South Korea is economic activities. Park(2010, 44) informed that the main industries that Joseonjok ethnic group engaged in are labor industries, basically with high labor intensity, poor environment and a long time that the local people do not want to engage in. Also, there is another reason why the Joseonjok against discriminate is that they choose to stay illegally to continue to generate income.(Park , KimCheol and Jiang , Zherong 2017, 19) Besides, because of the effect of media, the image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was worse than before. "Joseonjok" is not a term for national identity, but an expression of distaste and alienation from potential criminal groups(Shin and Han 2016, 238) Therefore, Joseonjok against discrimination at work and live in unhappiness. Holt (2019) states that he thinks the media is exaggerating about

everything just because it connected to Joseonjok as follows.

“I wish there were less negative news about Joseonjok ethnic group. After watching the news, I always feel that everything is blamed on us.” (Holt, Oct.23 2019)

Shen(2016, 52) indic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but the Korean ethnic group in China has been "deliberately" deteriorating the phenomenon. Also, if we set our sights on South Korean movies, there is a similar tendency. Kang, Woo, and Sun (2018, 52) also argue that South Korean society already has a very negative view of the Joseonjok ethnic minority. They took an example that is the film "young police"(청년경찰) which treating Joseonjok as criminals and belittling them. It released on Aug 9, 2017, depicts the Korean town of daelim-dong(대림동), where most Joseonjok lives in South Korea as a den of crime. In Kim and Chung(2016/2017, 66)’s paper, there is a poll about negative perception towards Korean to Joseonjok. According to the recent poll, 94 percent of South Korean respondents showed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Chinese Ethnic Koreans in South Korea. 82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media was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d their negative perception toward Chinese Ethnic Koreans.

〈Table 2. Factors Influencing South Koreans’ Perception toward Chinese Ethnic Koreans〉

(unit: % (respondents))

Factors	Rate (245)
education of history and culture	3(8)
media	82(200)
Chinese ethnic Korean friends and neighbors	4(10)
Korean friends and neighbors	9(21)
other	2(6)

Sources: Peace Asia, <http://peace7050.cafe24.com>, 4 November 2015.

It is obvious that the ethnic group is branded as a problem, in another way to say, Joseonjok is regarding a potential group that always has something with criminal behavior in South Korean society. Shin and Han(2016, 256) explained the reasons which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internal reason is the confusion of Korean identity in China, while the external conflict stems from the aversion and resistance to Joseonjok from Korean society. In this regard, the South Korean society needs to respond to the ethnic Korean issue with prudence given that the ethnic Koreans face special circumstances. (Kim and Chung 2016/2017, 163)

2.3 The construction of belonging in Joseonjok ethnic group

Since the reasons as I mentioned, the Joseonjok ethnic group against discrimination at work and unhappiness in life, Joseonjok experienced a period that their identities were reconstructed by themselves.

In South Korea, the Korean nationality is neither "compatriots" nor "foreigners ", but" under the

attention of South Korean society, the existence of double alienation. (Shin and Han 2016, 257) According to Holt (2019), we can find out that it is common for a Joseonjok does not admit his identity in South Korea.

“My cousin, who is in Yonsei university. She just says she is Chinese and never says she is Joseonjok, because when many people heard she is Joseonjok, they will discriminate her or think she is from countryside, she thinks it can avoid a lot of troubles, actually even if other people ask her why Korean is so good, she also only explains that because of her hard work.” (Holt, Oct.30 2019)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Joseonjok ethnic group's belonging, they always must keep a balance on two aspects. Kim and Chung(2016/2017, 149) state that the aspects must be balanced. The first is their identification as one of China's ethnic minorities and the other is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Korean nation. Although the Joseonjok ethnic group who have been staying in South Korea for a long time. They have a clear self-identity of "my country is Chinese" and "my nationality is Korean" in their heart so that they do not want to be ignored because of Korean prejudice. (Shin and Han 2016, 236)

Liu(2009, 79) suggests that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identity of an ethnic group is not fixed and constructed in a continuous process; it is contingent upon its context. The constructivist view holds that ethnic identity is malleable and dynamic rather than innate and unchanging. Choi(2014, 97) also approves that in his paper, he said in the case of ethnic groups, if they are subjected to external intrusion or a period of historical transition, they will have a new perception or recognition of their identity through meeting or grinding with other groups when they are exposed to a new environment due to movement.

Regarding these arguments, one of my interviewees mentioned his experience as follow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aid the same language as me, even the last name is the same with me, there are a lot of "Kim" suddenly occurred in my life. I feel we are so similar, even my Korean friends talked to me that you belong to Korea, I was confused to myself that who I am?” (Holt, Oct.23 2019)

“When I received roadside interviews, I say I am Joseonjok, I am a foreigner. South Korean people will subconsciously say “그럼 우리 나라 사람이잖아요. (It means “So you are Korean) ” However, at that time, actually I want to tell them I am Chinese.” (Holt, Oct.30 2019)

After living or staying in a foreign country such as South Korea, Joseonjok experience multiple confusions through self-correction after experiencing the chaos of self-identification. (Choi 2014, 97) Holt(2019) explains the reason that after rethinking his identity for a long time, he indicates that when he was together with Chinese friends, there are more topics which they can talk and make a resonate, but because of the different culture and environment of growing up, he is not comfortable with Korean friends. As ethnic identity results both from the choices of individuals and the ascriptions of others, ethnic boundaries and meaning are also constructed from within and without, propped up by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Kim and Chung 2016/2017, 147) If the Korean government is really having a plan to achieve the goal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e core

is the Chinese compatriots, also be called Joseonjok. The mutual understanding of foreigners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first begin with a mutual understanding of compatriots who are blood-friendly and whose cultural similarity is relatively strong.

3 | Research Method

3.1 Method

This research adopts a qualitative method to make an understanding of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idea of their sense of identity. With the qualitative interviews, the research also focuses on the 20s' ideas about their sense of identity. While the other researches are mainly focused on the middle-ages working people, like Park(2010)'s "Countries, ethnicities, and ethnic identities of Joseonjok ethnic groups in Korea", Li(2012)'s "Research on national identity : Focus on Joseonjok ethnic group's identity" and so on. This paper focus on the Joseonjok who enters South Korea as labors, however, I am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Joseonjok ethnic group's youth arguments. because this can fill the gaps of knowledge between the psychological chang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put a new perspective on this topic.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semi-structured ways. In preparatio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should identify only the main questions and framework, and the interviewer should be able to refine the questions as follows, while exploring the meaning and emerging areas of interest. Be eager to hear from the interviewee when the subject and topic area have been identified in advance. However, interviewers should also take care to improve the questions to clarify or extend the answers. (Arksey and Knight 1999) Although the interviewers have some control over the interview structure, interviewees also can be given a greater expression of their opinions. Also, Hakim(1987) added the argument that under this premise the same as above, although the interviewer is enough to direct the conversation to the topic he is interested in, the in-depth interview will provide enough freedom for the interviewee to grasp the interview himself.

At the early stage of the interview, the semi-structural way was used to understand the concerns and attitudes of the respondents, the interviewer was gradually conducted to further question because it is helpful for getting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problem and is flexible to get the useful data from the respondents. In order to get real and reliable materials, the interview was applied to a face-to-face way. To this method, Nigel Mathers, Nick Fox, and Amanda Hun(2002, 3) points out face-to-face or personal interviews are very labor-intensive but can be the best way of collecting high-quality data. Face-to-face interviews are preferable when the subject matter is very sensitive, if the questions are very complex or if the interview is likely to be lengthy. As well, the interviewer is conducive to the respondents' detailed and true expression of their views. Respondents are also more likely to be valued, their security is much stronger, and interview content is easier to penetrate.

I chose two individuals for this interview. First, in this research, I am planning to obtain a

different perspective of the sense of identity from the 20s who live in South Korea. I contacted the interviewees from the internet and made an interview in the café. Almost,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in 90 minutes, which I recorded in the form of recording. Matthew T.(2017, 3) states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handbooks often remind interviewers of their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rapport with interviewees. For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I try to obtain intimacy with an interviewee since he is shy and cannot easily express himself. Therefore, we meet sometimes and conducted the interview.

As for the number of interviewees, I have some words to explain why I chose two interviewees rather than more. For in-depth interviews, I think the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Compared with interviewing 10 people for 15 minutes, I think it is more meaningful and valuable to interview two people for 75 minutes each.

Though there is a limitation in my paper, it is maybe not rigorous academically and has some mistakes in grammar or expressions.

3.2 Data

This interview was taken under the 2 participants from the Joseonjok people. The interviewees are a 20-year-old man and 26-year-old women. They have joined the interview session with some prepared questions for 60-80minutes. In the interview, they also expressed the points which they wanted to say freely. Since they are Joseonjok who are used to communicate in Korean, in order to they can express themselves comfortably,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Korean. Table 3 shows the demographic details of the interviewees being discussed in other parts of this research.

〈Table 3. Demographic details of the interviewees〉

NAME	AGE	GENDER	OCCUPATION
Holt	20	Male	student
Moon	26	Female	Free-lancer

Since this research requires personal identity to compare interviewees’ opinions and arguments, the identity of interviewees will be publicized in the form of pseudonym. The whole process of the interview and the analyzation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the next session of this research.

4

Findings

4.1 Before moving to Korea: Our nation [‘우리 민족’]

4.1.1 The proud of your identity as a me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after moving to South Korea

I asked this problem because I want to investigate the idea of them who were born as a me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And it can provide some convenience for me to do a set of later study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ir identity's change.

Both two interviewees answered this question positively, one of them pointed out that being born in a Joseonjok family, there is a definite advantage because it is meaning you are bilingual as you were born. Lee and Lee(Lee and Lee 2015, 37) state that the importance of language depends on their identity and future plan, and language is their resource to compete in the host society and a tool for 'self-enhancement'. The other interviewee thought she is satisfied with the policy of the Chinese Minority policy.

“... As a Joseonjok, I can speak a language more than others from an early age. Sometimes my classmates will treat me as a foreigner. I don't know why, but that time, my heart is a little pleased with myself...” (Holt, Oct.30 2019)

“... Actually, more than be proud, the first time I feel that I am special as a minority was, I can add 3 points to the senior high school entrance examination, as well I will be given priority to the same conditions when I take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lthough I didn't use it, I think this policy is not bad for ethnic minorities...” (Moon, Oct.23 2019)

Before investigating this direction, we should have background knowledge about the policy of ethnic minorities. China is a multi-ethnic country composed of 56 ethnic groups including the Joseonjok ethnic group. The proportion of ethnic minorities is only 8.49% but living accounts for about 64% of the total land area. Therefore, minority policies have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nationality security strategy. For the Chinese government, the separation or independent action of a certain nationality is seen as a deadly thing that may hinder the unity and stability of the country. (Seo 2013, 12)

In order to stabilize national securit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especially in the 21st century, China's open policy toward ethnic minorities is undergoing positive changes. (Li 2012, 98) So,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oday's Joseonjok youths no longer regard South Korea as their "hometown" because China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olicies that are enough to satisfy young people's needs for growing up. However, South Korea is still a "hope" for Joseonjok youth, in other ways, in their consciousness, they always feel that there is something connected to Koreans and them.

4.1.2 The identity as a member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National identity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with polit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Piao(2008, 37) points out that the word "identity" originally belonged to the philosophical category and was gradually applied in psychology. The Joseonjok ethnic group and Koreans belong to the same roots and have the same history and culture, and language. It is a fact that they are connected by blood and it points out that the Joseonjok is a typical transnational population.

“... But when my friend, maybe I am too sensitive, my mother's nationality is Korean, so when the Chinese say that the Koreans are not good, I will feel very uncomfortable...” (Holt, Oct.30 2019)

“... personally, I really don't like to say this topic, there are always some negative examples, and as a middleman, when I hear these words, I really don't know how to respond...” (Moon, Oct.23 2019)

For this question, both two interviewees points out the same opinion that is “I am a middleman.” They are displeased about both situation that China and South Korea have complain to each other. Piao(Piao 2008, 42) also emphasize that in daily lif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people often emphasize or highlight a certain kind of identity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From these words, we can conclude that identity is no single, but multiple for Joseonjok ethnic group.

4.1.3. The satisfaction with life before you moving to South Korea

I asked this question for understanding how the Joseonjok youths like their life in China, or why they choose to move to South Korea. Like several years ago, Joseonjok ethnic group migrated to South Korea basically from economic motivations. But nowadays, there are so many Chinese people migrate to South Korea, including many Joseonjok people. They came to South Korea for studying or working not for making money rather than doing dirty, dangerous, difficult work. For this ques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reasons for the young of Joseonjok emigration to South Korea today are very different from the old days. They are mainly in a "challenge" mindset, trying to adapt to a new culture.

“... In fact, I should be quite satisfied with my life in China.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is also that I want to challenge and adapt to a new cultural environment called 'root' that my parents told me. Also, I am still very young, not because I am not satisfied with China and escape to Korea...” (Holt, Oct.30 2019)

“...I am familiar with South Korea because my grandparents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lived in Korea for a long time. My grandfather was born in Korea and lived in China for a variety of reasons when he was young, so I have been to Korea many times since I was a child. Also, now my parents are working in Korea, I feel that this is a way to change a style of life and it is a new start for me to challenge a new culture...” (Moon, Oct.23 2019)

Here is an interesting word that the word 'escape' in the first paragraph, it means in the past, the Joseonjok people may come to Korea to make a living because of poor living conditions. However, the goal of Joseonjok youths coming to Korea is more inclined to challenge themselves and to seek a kind of "self-awareness" than to make a living. Jang(2016, 204) argues that today's Joseonjok ethnic group, especially the young, who are less obsessed with their identity than they used to be. In other ways, we can still see that South Korea's attraction for the Joseonjok has been transformed from an economic aspect to a cultural aspect.

4.1.4. The family's habits in daily life before moving to South Korea

In theory, the Joseonjok and South Korea belong to the same ethnic group. Although they have been separated for a long time, there are differences in thinking consciousness and behavioral

habits.(Chen 2017, 35) I asked this question to prove whether it is fact or not. Here, both two interviewees expressed the same words that their daily life is a mixture of Korean style and Chinese style.

“... In fact, it is the same as that eaten in Korea, like Kimchi, Doenjang jjigae, seaweed soup for birthday...and so on. We must sacrifice the ancestors on some festive occasions. Simply to say, our cuisine is both Chinese food and Korean food...” (Holt, Oct.30 2019)

“... It's a combination with two cultures...” (Moon, Oct.23 2019)

They still have the same lifestyle and cultural ties. As a cross-border ethnic group, although the Koreans live in different countries and have different values and political position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the common history and culture root still determin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Strong sense of identity to South Korea.(Piao 2008, 39)

4.2 After moving to Korea: Our nation ['우리 나라']

4.2.1 The identity as a me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after moving to South Korea

The question is be used to compare with the content that we mentioned about identity before moving to South Korea. Here, two of them argued that there is actually some self-identity confusion when they moving to South Korea at first. However, they admitted rather than Koreans, they are more similar as a Chinese since the difference and cultural background.

“...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often didn't know "who I am" for a lot of reasons. But as time goes by, compared to Koreans, I feel that I am more comfortable with Chinese people, and I have more topics with Chinese people. There is no common topic with Koreans. But if there is an opportunity, I am willing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After all, it is convenient, but I don't tend to turn myself into a Korean and get citizenship...” (Holt, Oct.30 2019)

“... Although there are Korean traditions in the family, we eat kimchi, and we will sacrifice during the festive occasions. But after coming to Korea, I found there are still many different places with each other. We can adapt to Korean's culture and lifestyle in a short time. However, the way of thinking and the cultural background that we accepted by Chinese culture is so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get a real Korean life for us...” (Moon, Oct.23 2019)

After suffering the problem of “who I am”, the interviewees took a long time to receive, understand, organize their ideas. The process of recognizing identity is dynamic and multi-layered. The similarity of language and culture makes Joseonjok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South Korea. But after time and various experiences, the discomfort and friction in real life make them suffer an "identity question". What cannot be denied is tha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sense of identity with South Korea will not disappear due to the continuous blood and cultural connections.

4.2.2 The unfair treatment you realized as one of the Joseonjok in Korea

As I mentioned as below, because kind of reasons, Joseonjok ethnic group always against discrimination. Due to cultural differences, there ar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Joseonjok ethnic group and Koreans.(2016, 33) Based on this problem, She argued that Korean culture and language symbols make Joseonjok people feel kind and familiar, but different social systems and national culture from China make them feel the distance and strangeness of South Korea. More and more Koreans in China have recognized the differenc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lso, the interviewees stated that although the exchanges between the Joseonjok and South Korea are gradually strengthening, mutual distrust still exists everywhere.

“... For example, my sister, when she is studying in South Korea university, she doesn't say that she is a Joseonjok. She just said that she is Chinese. Because when Korean people hear that she is Korean, there may occur some situations that she does not want to be faced. So to avoid trouble, even if someone asks her why Korean is so good, she only said that it is because of studying hard...” (Holt, Oct.30 2019)

“...To be honest, personally I have not encountered any unfair treatment. But I think this kind of unfair treatment exists. I think it's not so much the unfair treatment of the Joseonjok people as the unfair treatment of the Chinese people abroad. May be in school, in work even in daily life. All I can do is do myself and keep kind and honest...” (Moon, Oct.23 2019)

They admitted the discrimination they have met against Koreans from many fields. For exampl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image is solidified in the eyes of Koreans, and Koreans feel that the Joseonjok are merely acting as “cheap laborers” in Korea. Even if they are well educated, they also will be treated with prejudice. Also, the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abroad has also long been an open question to solve.

4.2.3. The proud of the identity as a Joseonjok after moving to South Korea

To give readers a more intuitive feeling, I choose the same question but different period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proud of a member of Joseonjok ethnic group. From interviewee's perspectives, we can find that they are not obsessed with their identity because they are sure that they are foreigners for South Korea. Besides, the development of China intensifies the young's national pride to China.

“...I am neither proud nor disgusted by the fact that I am one of Joseonjok. In my mind, I am just a foreigner coming to South Korea to study...”. (Moon, Oct.23 2019)

“...I am proud of it. First, compared with Koreans, I can speak Chinese, and now China is developing so well. To be honest, I don't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thing to be Korean. I had a feeling that I was from a big country, and maybe my dad had an impact on me.” (Holt, Oct.30 2019)

Before understanding the question, we should know some background abou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life about 10-20 years ago. Like we discussed in the background, “the Korean dream” hasten

the speed which the Joseonjok entered in South Korean society several years ago. Li(2012, 101) points out that the "Korean dream" has not only failed to make the Joseonjok ethnic group's people feel closer to the South Korea, but also made them realize their differences, even conflicts with the South Koreans, which also deepened their sense of belonging to China. That is the reason why Halt's father gave this impact on him. While they were hesitant to reveal their identity for fear of discrimination in Korea but over the years they have come to be proud of their heritage and cultural identity.(Jang 2016, 204)

4.2.4 The changes are necessary to do on political, economic, legal and social field

To understand how the Joseonjok youths thought about the life that they are living, it is necessary to treat this problem on their perspectives. Moon argued that the Joseonjok ethnic group should change themselves in order to gain a social recognition. As well, Halt states an idea that Joseonjok celebrities utilize celebrity charm to benefit the South Korean society, which intend to change Koreans' mind.

“...It is better to change ourselves than to change society. Why do I say that? Because it is true that Joseonjok ethnic group has some problems. This can be fully reflected in Korean movies, such as "황해 (Yellow sea)" and "범죄도시(crime city)". In fact, I can feel the dissatisfaction of Korean people to us in movies, and I cannot deny that there are similar reasons leading to the opinions among Korean people. But this situation has been greatly reduced now, so rather than let Korean society change, it is better to change from ourselves, to break down the prejudice against the Joseonjok ethnic group's people in Korean people's minds in order to achieve to raise one's social status...” (Moon, Oct.23 2019)

“...As a Joseonjok, in fact, I think the best way is if there are more Joseonjok celebrities who have some positive impact on South Korea, this celebrity effect will change the minds of many South Koreans...” (Holt, Oct.30 2019)

Besides, in the image of the Joseonjok ethnic group, the media play a great role. Shen(2016, 52) emphasiz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ways paid great attention to the Chinese Koreans, but there is a phenomenon of "intentional" deteriorating the Chinese Koreans. She adds that South Korean media exaggerated reports of crimes and distorted truth about the Koreans in China and it is common to inculcate negative sentiments that the Joseonjok ethnic group have a high crime rate and rude character.

5 Conclusion

So far,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ization, all the countries are increasingly connected with the Korean peninsula. It, that also means the Joseonjok ethnic will also be more globalize in recent years. The Joseonjok is not only an ethnic minority in China, but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nation in the world, yet, they could never fully belong in one culture or the other. It

is up to the Korean society to look at Joseonjok ethnic group as "global Koreans" who are valuable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closely related to China diplomatically, and to support their specificity in keeping with historical trends, rather than leaving them to remain in the position of neighbors in both countries, locked up in a uniform framework of "Chinese ethnic Koreans" or "Chinese Koreans in Korea."

Therefore, regarding the Joseonjok in a global perspective and make a sense that the Joseonjok ethnic identity was characterized by having understanding of both cultures and having potential to work and contribute for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Of course, we can also notice that young of Joseonjok ethnic group in Korea are not as obsessed with thinking about their identity as they used to be. For the young, moving to South Korea maybe can be said as "a challenge to life", rather than "finding root". Although, because ethnic identity is malleable and dynamic, we should continue to take more attention on this study for a long process.

Total words excluded bibliographies: 8014

Bibliographies

- Arksey , Hilary, and Peter Knight. 1999 Interviewing for Social Scientists. In *London: Sage Publications*.
- Bourdieu, pierre.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UK: Polity Press.
- Chen, Ji. 2017. "Cultural orientation and occupation type: Differentiation of Transnational Ethnic Identity on Joseonjok Ethnic Group (文化取向与职业类型 : 在韩中国朝鲜族跨国族群认同的分化) ." *韩国高等教育财团 (KFAS)* :40-46.
- Choi, Woo Gil. 2014. "Reinterpreting Korean identity: Three levels of consciousness theory." *Overseas Korean Studies* 34:95-131.
- Erbiao, Dai , , and Peng , Xue. 2014. "Overseas Chinese in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二十一世纪的韩国华侨华人)." *Overseas Chinese Research Report*:134-148.
- Hakim, Catherine 1987. Research Design :Strategies and Choices in the Design of Social Research. London: Allen & Unwin.
- Hong, In Hwa. 2013.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과제: 조선족 고려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8:157-188.
- Jang, An li. 2016. Cultural identity, social capital and immigrant enclave: Meaning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Chinese (Joseonjok) Diaspora in Korea. *한국문헌연구*.
- Jang, Kong Ja. 2003. "A Study on Chinese Government's Minority Policy and Identity Rediscovering of Korean Chinese." *Journal of Social Science* 20 (1):269-300.
- Kang, Ji-Hye, Woo-Kwon Chang, and Bong-Kyu Sun. 2018. "A Study on Formation and Recognition of Ethnic Organization Activities of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65-94.
- Kim, Yeikyung, and Jongpil Chung. 2016/2017. "Construction of Belonging: The Development and Role of Identity in the Chinese Ethnic Korean Community." *中華研究* 4:143-171.
- Kim, You Gene. 2018. "The Identity of Joseonjok (Korean-Chinese) Migrants in Japan: The influence of Multilingualism and TRansnationalism on Self-Identification." *Journal of the Graduate of Asia-Pacific Studies* 36:57-71.

- Lee, JeonEun. 2017. "The struggle to return to Korean compatriots and the structure of Korean social discrimination for Joseonjok." *Resea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 Culture*: 165-180.
- Lee, Jinah, and Kwangho Lee. 2015. "Multilingual Experiences, Media Consumption, and Transnational Identity in a Double Diasporic Context: The Case of Korean-Chinese in Japan." *Keio Communication Review* 35:27-39.
- Li, Meihua. 2012. "Research on national identity :Focus on Joseonjok's identity.." *Journal of Dalian Nationalities University* 14:97-102.
- LIU, YISHI 2009. "Constructing Ethnic Identity: Making and Remaking Korean-Chinese Rural Houses in Yanbian, 1881-2008." *Traditional Dwellings and Settlements Review* 21: 67-82.
- Mathers, Nigel, Nick Fox, and Amanda Hunn. 2002. Trent Focu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Primary Health Care : Using Interviews in a Research Project In *Institute of General Practice Northern General Hospital Sheffield*.
- Nan, Ming-Zhe. 2019. "Formation, Change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ommunity in Yanbian." *The humanities of coexistence* 1:193-230.
- Park ,Guangxing. 2010. "Countries, ethnicities, and ethnic identities of Joseonjok enthnic groups in Korea." *Journal of Yunnan Nationalities University* 27:41-47.
- Park ,KimCheol, and Jiang , Zherong. 2017. "Diversity of Joseonjok's Korean identity: cross - border mobility and migration." *Guangxi Ethnic Studies* 3:18-25.
- Piao, Tingji. 2008. "On the Multiple Identities of Transnational Ethnic Groups :Focus on Joseonjok's Identity Studies." *Dongjiang Journal* 25:37-43.
- Prio, Matthew T. 2017. "Accomplishing "rapport"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Empathic moments in interaction." *ASU Library Authenticated*. 1-25.
- Seo, Jong Kyong. 2013. "The Return of Joseonjok ethnic group from China and their Tasks in Korean Society: Beyond Joseonjok in China and Joseonjok in South Korea." *Resea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 Culture* 12:7-34.
- Shen, Lanxue. 2016. "Influence of Chinese—korean on the 10cal society in Korea." Master Politics of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Politics, Yanbian University (Y3060412).
- Shin, Jung Ah, and Hee Jung Han. 2016.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기 : 동포모니터링단 〈강 강숲래〉 활동 및 단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5:235-282.
- Yao, Miaoyan. 2017. "Discuss on Joseonjok's history,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Journal of Jilin Engineering Normal University* 33:88-90.
- Zheng, Xinzhe. 2018. "An analysis of the cross-border movement and impacts of Joseonjok " *Journal of North Minzu University* 1:44-49.

Appendix 1. Semi-structured interview schedule]

the sense of identity among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South Korea
: Based on the Joseonjok people’s thoughts after they live in Korea

Interview schedule for In-depth Interview [To be asked the changes of mind after being
live in Korea]

Informed Consent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interview. This interview is a part of my research project titled “the sense of identity among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South Korea : Based on the Joseonjok people’s thoughts after they live in Korea”. This research is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Dr.Chulhyo Kim,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mind among the Joseonjok people who live in Korea for a long time. The interview will be conducted in a structured way based on “global Korean’s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is interview will be used strictly for my academic purpose including my thesis, academic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Since this study employs the biographical narrative method, the identity of interviewees will be inevitably publicized. Participation in this interview is completely voluntary and you can choose not to answer any question or withdraw yourself from this interview at any time. After all the sessions of interviews, you will be requested to review the transcript of your interviews. If you wish any part of the transcript should remain confidential, the part will be erased and unused for any purpose.

May I begin with the interview now?

SECTION A: BIO DATA

- A.1. Name
A.2. Age
A.3. Gender
A.4. Ethnicity (or nationality)
A.5. Current affiliation(s) and position(s)

Affiliation 1
Position 1

Affiliation 2
Position 2

A.6. Contact information(s)
(Phone)
(Email)

SECTION B: EXPERIENCES BEFORE LIVING IN KOREA

B.1.-B.10. Questions on personal experiences as a Joseonjok before moving to Korea

- B.1. Where did you live in China before you moved to Korea?
- B.2. What was your identity before moving to Korea?
- B.3. In China, as one of the Joseonjok, how do you get along with other ethnic groups?
Is there any preferential treatment for being a Joseonjok? If you do, please list the things.
- B.4. When are you proud of your identity as a Joseonjok?
- B.5. When did the idea of moving to Korea being come out? What were the main reasons?
- B.6.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moving to Korea? Please list them.
- B.7. What were the main goals of moving to Korea? And did you achieve them or did not?
- B.8. How did you get the rights to live in Korea? Is it legal or not?
- B.9. Before moving to Korea, if you have your ideal lifestyle in your imagination?
- B.10. How long did it take to move to Korea?

SECTION C: EXPERIENCES AFTER LIVING IN KOREA

C.1.-C.10. Questions on personal experiences as a Joseonjok after moving to Korea

- C.11. Where do you live in Korea?
- C.12. What was your identity after moving to Korea?
- C.13. As one of the Joseonjok in Korea, did you get any unfair treatment in Korea?
- C.14. Are you still proud of your identity as a Joseonjok? Why or why not?
- C.15. Did your life change from what you expected after moving to Korea, etc.?
- C.16. What is the biggest obstacle to your adaption to Korean society? Why do you think so?
- C.17. How did you get adapt to Korean society during that period?
How did you communicate or interact with the public in society during this period?
- C.18. In your opinion, what were the challenges which you have to face in Korea?
- C.19. Do you want to obtain Korean nationality or do you want to strive for it for your children?
- C.20. Were there any political, economic, legal and social conditions you think is necessary to be changed or existed for Joseonjok in Korean?

Thank you for your time.

If you have any question, comment or sugges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share with me.

세션7 | 다문화사회 진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 / 김정석 | 동국대



발표 0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둘러싼 미디어 코퍼스 분석: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담화분석을 위한 제언
이태헌, 김정석 | 동국대

발표 02 중고령층의 지역사회참여 잠재프로파일 분석: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참여 분석으로의 응용성
문경주 | 한국해양대, 장수지 | 경성대, 신유리 | 동국대

발표 03 지역사회 건강리터러시(Health literacy) 개발과
다문화가정 적용가능성 탐구
천희란 | 중원대

발표 04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
지역사회의 빈곤성 효과
기명 | 고려대

토론 문경주 | 한국해양대, 천희란 | 중원대,
홍송이 | 동국대, 김일호 | 동국대

세션 7-0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둘러싼 미디어 코퍼스 분석 :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담화분석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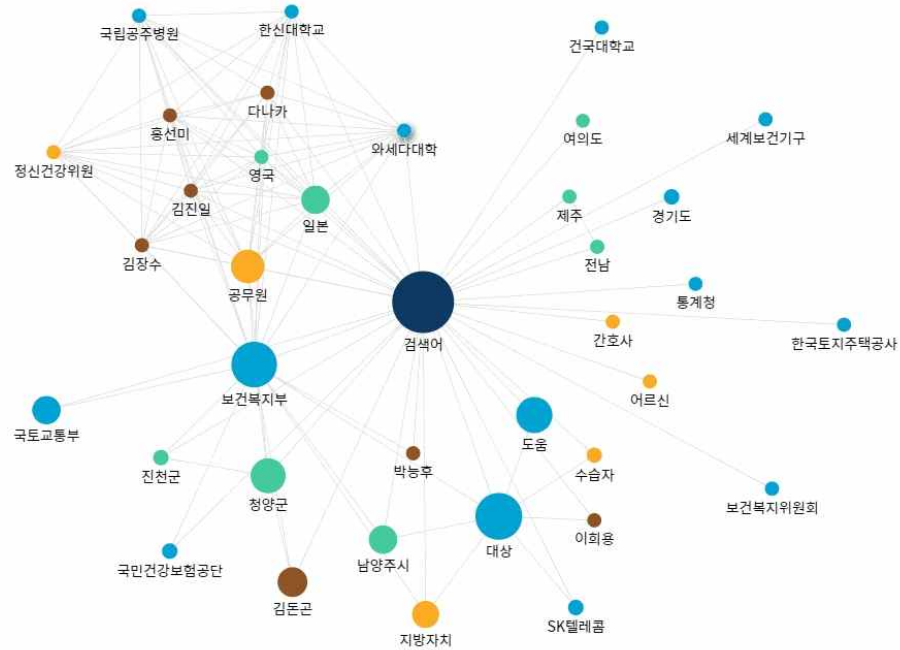
이태현, 김정석 | 동국대학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함으로써 국정전반에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실행하는 선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도사업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공적토론이 요구된다. 한편, 공공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은 정부의 정책브리핑 및 설명자료 제공, 공청회, 설명회 등과 함께 미디어를 통한 담론형성이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뉴미디어(SNS, 인터넷 방송 등)의 활성화로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다수의 인식전달 과정을 거시적인 토론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뉴)미디어의 코퍼스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뉴)미디어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토론 양상과 인식전달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선도사업에 관하여 시민들이 주로 다루고 고민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이상과 같은 접근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의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연구방법론상의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자료는 신문기사와 뉴미디어의 텍스트로 구성된다. 신문기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등을 검색어로 2019년 11월 20일 현재 573건을 수집하였으며,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추가 수집할 예정이다. 한편, 뉴미디어에서는 넷 마이너와 구글웹크롤러를 통해 텍스트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573건의 신문기사에 대해 시범적으로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의 기초분석에 기반하여, 코퍼스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워드투벡터(Word2Vec)를 활용하여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여 주된 쟁점을 도출할 것이다.

신문기사의 핵심단어(TF) 네트워크 분석 결과(기수집된 573건 기사)



신문기사의 연관단어 토픽 모델링 결과



세션 7-02

중고령층의 지역사회참여 잠재프로파일 분석 :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참여 분석으로의 응용성

문경주 | 한국해양대학교, 장수지 | 경성대학교, 신유리 | 동국대학교

한국사회는 2017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26년에는 65세 고령자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초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당면한 문제는 고령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령자들이 현 거주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령자들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 기회를 가지지 못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사회의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게 된다. 그들은 이전 노인세대와 다르게 교육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 관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곧 본격화될 이들의 사회로부터 은퇴를 지역사회에 차원에서 본다면 새로운 인적자원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그들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4세 이상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6차 고령화연구패널을 분석자료로 하고, 54세 이상 7,49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서 남성집단(3,189명)과 여성집단(4,301명)으로 구분하고 남성과 여성 집단별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을 통해 사회참여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참여 유형화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사회참여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다. 남성과 여성 집단 별로 사회참여 유형화가 이루어지면 다항로지분분석을 통해 사회참여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중고령자 사회참여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는 종교 참여, 계모임 참여, 여가 레저 스포츠 참여, 동창회·향우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 시민단체·이익단체 참여 6개영역이다. 사회참여 유형화가 이루어지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별로 사회참여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수준, 거주 지역,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질병수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할 것이다.

잠재계층	항목	값
3class	Likelihood ratio X2	86.583(p=0.00)0
	AIC	26981.15
	BIC	27112.66
4class	Likelihood ratio X2	48.092(p=0.208)
	AIC	26948.66
	BIC	27100.93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참여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4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사회참여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분분석을 통해 각 사회참여 유형별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세션 7-03

지역사회 건강리터러시(Health literacy) 개발과 다문화가정 적용가능성 탐구

천희란 | 중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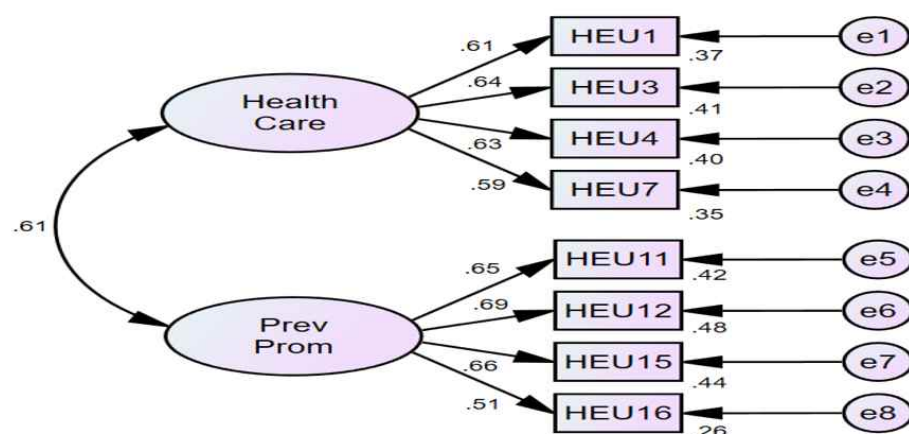
건강리터러시는 건강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적절한 건강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개인적,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다. 또한 “개인이 의료관련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IOM, 2004).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리터러시가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며 각 국가별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국가연합에서는 국가의 보건 정책에서 인구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건강 리터러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 리터러시 개념은 환자 입장에서 병원 의료이용과 건강정보 활용능력을 ‘의학용어/계산/이해력’을 통해 평가하던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인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유럽연합의 글로벌 HL연구팀(Sorensen et al., 2012)은 공중보건학적 접근으로 활용될 새로운 건강 리터러시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건강을 ‘의료이용/건강관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세 가지 범위로, 활용 전략은 접근(access/obtain), 이해(understand), 판단(process/appraise), 활용(apply/use) 등 4가지로 나누어, 총 12 가지 영역에서 건강 리터러시 측정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포괄적 건강 리터러시 도구(HLS-EU-47)는 우리나라에서 두 연구(김성은 등, 2019; 김준호 등, 2019)에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성인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수행되었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정 인구집단에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정보가 제한적인 고령자의 경우는 측정 방식 뿐 아니라 47개나 되는 문항을 모두 포함하기도 어렵다.

고령자, 외국인, 저학력 인구집단은 특히 건강 리터러시의 취약계층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를 직접 면접한 자료(60-79세 서울 거주자 305명)를 분석하여, 16항목으로 구성된 짧은 건강 리터러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고령자를 위한 한국형 건강 리터러시 도구(HLS-EU-8)’를 제시한다. 이 도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의 건강관리와 건강 역량을 위한 건강 리터러시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Table 1. HLS-EU-16 Questionnaires

Health Care	Find	HC-FHI-2	Q1	Q1.2	find information on treatments of illnesses that concern you?
		HC-FHI-4	Q2	Q1.4	find out where to get <u>professional help</u> when you are ill?
	Under stand	HC-UHI-1	Q3	Q1.5	understand what your doctor says to you?
		HC-UHI-4	Q4	Q1.8	understand your doctor's or pharmacist's instruction on how to take a prescribed medicine?
	Judge	HC-JHI-3	Q5	Q1.11	judge when you may need to get a second opinion from another doctor?
	Apply	HC-AHI-1	Q6	Q1.13	use information the doctor gives you to make decisions about your illness?
		HC-AHI-4	Q7	Q1.16	follow instructions from your doctor or pharmacist?
Disease Prevention	Find	DP-FHI-2	Q8	Q1.18	find information on how to manage mental health problems like stress or depression?
	Under stand	DP-UHI-1	Q9	Q1.21	understand health warnings about behaviour such as smoking, low physical activity and drinking too much?
		DP-UHI-3	Q10	Q1.23	understand why you need health screenings?
	Judge	DP-JHI-5	Q11	Q1.28	judge if the information on health risks in the media is reliable?
	Apply	DP-AHI-3	Q12	Q1.31	decide how you can protect yourself from illness based on information in the media?
Health Promotion	Find	HP-FHI-2	Q13	Q1.33	find out about activities that are good for your mental well-being?
	Under stand	HP-UHI-1	Q14	Q1.37	understand advice on health from family members or friends?
		HP-UHI-3	Q15	Q1.39	understand information in the media on how to get healthier?



χ^2	df	p	GFI	CFI	TLI	RMSEA
40.847	19	0.003	0.969	0.957	0.937	0.062

Figur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세션 7-04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 지역사회의 빈곤성 효과

기명 I 고려대학교

I 연구 배경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사회적 유대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 사회 공동체의 특성 중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유대감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내재된 자원을 말하며 (Poortinga, 2005), 자살 뿐만 아니라 사망률과 정신보건 등과 같이 여러 건강결과에 영향을 준다 (Condon, 2012). 특히 사회적 자본은 가난한 집단의 건강에 보호효과를 갖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ellor & Milyo, 2005; Perry et al., 2008; Story, 2013). 하지만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다양한 개념을 포함(사회적 지지, 사회 내재적 관계, 신뢰, 호혜성,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단일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State social capital index (Smith & Kawachi, 2014), Summative social capital score (McKenzie et al., 2002), Social fragmented index (Condon, 1996), Social embeddedness scale (Kaslow et al., 2005) 등과 같이 복합지표를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신뢰 및 사회적 지지)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Kelly et al., 2009; Kleiman & Liu, 2013). 이는 사회적 자본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어 포괄적인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Condon, 2012). 더불어 사회적 자본과 정신보건의 연관성은 사회적 자본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Ferlander et al., 2016) 본 연구는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이 자살생각에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자본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다.

2 연구 방법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을 세 지역에서 평가하였다. 두 지역은 정부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지역이며(빈곤지역A와B), 나머지 한 지역은 일반아파트 거주지역으로 각 지역마다 300명씩 조사를 수행하였다. 임대아파트는 SH의 협조를 받아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임대아파트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의 비교를 위해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아파트 선정은 임대아파트는 동대문구와 중랑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아파트는 빈곤지역A 임대아파트 근처 일반아파트로 선택하였다. 세 지역 각각 300명씩 총 908명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보정변수를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자살생각과 사회적 자본의 각 영역(신뢰, 호혜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 가교형 사회적 자본 및 회복탄력성-Suppl 1참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3 | 결과

빈곤지역은 비빈곤지역에 비해서 자살생각률이 높고, 사회적 자본은 낮은 수준이었다 (Table 1). 사회적 자본이 자살생각을 억제하는 역할은 빈곤지역에서만 나타났는데, 특히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났다(신뢰와 호혜성) (오즈비 = 0.24, 95% 신뢰구간: 0.08-0.69 - 빈곤지역A의 신뢰와 자살생각의 연관성). 사회적 참여는 빈곤지역B에서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모형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은 빈곤지역과 비빈곤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비빈곤지역은 모형3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낮은소득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은 빈곤지역에서만 있었으며 비빈곤지역은 우울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의 강도가 컸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빈곤지역B에서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존재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는 자살생각의 위험이 훨씬 높았다 (신뢰-소득 시너지효과 = 0.65, 95% 신뢰구간: 0.49-0.83; 회복탄력성-소득 시너지효과 = 0.64, 95% 신뢰구간: 0.48-0.85; 사회적 참여-소득 시너지효과 = 0.58, 95% 신뢰구간: 0.47-0.72) (테이터 제시하지 않음).

4 | 토론

사회적 자본과 자살과의 연관성은 빈곤지역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이는 빈곤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자본에 더욱 의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박탈이 있는 지역 (Verhaeghe & Tampubolon, 2012), 소수 집단 (Baron-Epel et al., 2008),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지위 집단 (Fitzpatrick et al., 2007; Sun et al., 2009)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빈곤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이 불충분한 물질적 자원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Uphoff et al., 2013), 사회적 관계에서는 더 응집력이 커지고,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un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몇몇 영역은 보호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신뢰와 호혜성은 뚜렷한 보호효과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을 인지적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호혜성과 같이 주관적인 인지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구조적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참여와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Murayama et al., 2012; Forsman et al., 201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지적 사회적 자본이 자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사회적 자본보다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연관 정도는 비빈곤지역보다 빈곤지역에서 보호 효과가 높았고, 특히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이 과정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 Baron-Epel O, Weinstein R, Haviv-Mesika A, Garty-Sandalon N, Green MS. Individual-level analysis of social capital and health: a comparison of Arab and Jewish Israelis. *Soc Sci Med.* 2008;66(4):900-10. doi:10.1016/j.socscimed.2007.10.025
- Congdon P. Latent variable model for suicide risk in relation to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statu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012;47(8):1205-19. doi:10.1007/s00127-011-0429-x

- Congdon P. Suicide and Parasuicide in London: A Small-area Study. *Urban Stud.* 1996;33(1):137-58. doi:10.1080/00420989650012194
- Ferlander S, Stickley A, Kislitsyna O, Jukkala T, Carlson P, Makinen IH. Social capital – a mixed blessing for women? A cross-sectional study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relations and self-rated depression in Moscow. *BMC Psychol.* 2016;4(1):37. doi:10.1186/s40359-016-0144-1
- Fitzpatrick KM, Irwin J, Lagory M, Ritchey F. Just thinking about it: social capital and suicide ideation among homeless persons. *J Health Psychol.* 2007;12(5):750-60. doi:10.1177/1359105307080604
- Forsman AK, Nyqvist F, Wahlbeck K. Cognitiv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older adults: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Scand J Public Health.* 2011;39(7):757-65. doi:10.1177/1403494811418281
- Kaslow NJ, Sherry A, Bethea K, Wyckoff S, Compton MT, Bender Grall M, et al. 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in low income African American men and women. *Suicide Life Threat Behav.* 2005;35(4):400-12. doi:10.1521/suli.2005.35.4.400
- Kelly BD, Davoren M, Mhaolain AN, Breen EG, Casey P. Social capital and suicide in 11 European countries: an ecological analysi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009;44(11):971-7. doi:10.1007/s00127-009-0018-4
- Kleiman EM, Liu RT.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in suicide: findings from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J Affect Disord.* 2013;150(2):540-5.
- McKenzie K, Whitley R, Weich S.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Br J Psychiatry.* 2002;181:280-3.
- Mellor JM, Milyo J. State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health status. *J Health Polit Policy Law.* 2005;30(6):1101-30. doi:10.1215/03616878-30-6-1101
- Murayama H, Wakui T, Arami R, Sugawara I, Yoshie S. Contextual effect of different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on health in a suburban city of the greater Tokyo area: a multilevel analysis. *Soc Sci Med.* 2012;75(12):2472-80. doi:10.1016/j.socscimed.2012.09.027
- Perry M, Williams RL, Wallerstein N, Waitzkin H. Social capital and health care experiences among low-income individuals. *Am J Public Health.* 2008;98(2):330-6. doi:10.2105/AJPH.2006.086306
- Poortinga W. Social relations or social capital? Individual and community health effects of bonding social capital. *Soc Sci Med.* 2006;63(1):255-70. doi:10.1016/j.socscimed.2005.11.039
- Smith ND, Kawachi I. State-level social capital and suicide mortality in the 50 U.S. states. *Soc Sci Med.* 2014;120:269-77. doi:10.1016/j.socscimed.2014.09.007
- Story WT.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a future research agenda. *Glob Public Health.* 2013;8(9):983-99.
- Sun X, Rehnberg C, Meng Q. How are individual-level social capital and poverty associated with health equity? A study from two Chinese cities. *Int J Equity Health.* 2009;8:2. doi:10.1186/1475-9276-8-2
- Uphoff EP, Pickett KE, Cabieses B, Small N, Wright J.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a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psychosocial pathway of health inequalities. *Int J Equity Health.* 2013;12:54. doi:10.1186/1475-9276-12-54
- Verhaeghe PP, Tampubolon G. Individual social capital, neighbourhood depriv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England. *Soc Sci Med.* 2012;75(2):349-57. doi:10.1016/j.socscimed.2012.02.05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ross three communities

	Total	Poor community A	Poor community B	Non-poor community
N (%)	908	301	306	301
Gender				
Male	288(31.7)	96(31.9)	91(29.7)	101(33.6)
Female	620(68.3)	205(68.1)	215(70.3)	200(66.4)
Age				
60 – 69	398(43.8)	109(36.2)	116(37.9)	173(57.5)
≥70	510(56.2)	192(63.8)	190(62.1)	128(42.5)
Marital status				
With spouse	641(70.6)	204(67.8)	201(65.7)	236(78.4)
Without spouse	267(29.4)	97(32.2)	105(34.3)	65(21.6)
Household income ^a				
Low	460(50.7)	211(70.1)	232(75.8)	17(5.7)
High	448(49.3)	90(29.9)	74(24.2)	284(94.3)
Self-rated health				
Good	260(28.6)	63(20.9)	72(23.5)	125(23.5)
Bad	648(71.4)	238(79.1)	234(76.5)	176(58.5)
Depression				
Yes	199(21.9)	84(27.9)	82(26.8)	33(11.0)
No	709(78.1)	217(72.1)	224(73.2)	268(89.0)
Resilience				
Low	410(45.1)	136(45.2)	153(50.0)	121(40.2)
High	498(54.9)	165(54.8)	153(50.0)	180(59.8)
Social network				
Low	472(52.0)	179(59.5)	210(68.6)	83(27.6)
High	436(48.0)	122(40.5)	96(31.4)	218(72.4)
Trust				
Low	671(73.9)	198(65.8)	232(75.8)	241(80.1)
High	237(26.1)	103(34.2)	74(24.2)	60(19.9)
Reciprocity				
Low	452(49.8)	173(57.5)	210(68.6)	69(22.9)
High	456(50.2)	128(42.5)	96(31.4)	232(77.1)
Social participation				
Low	110(12.1)	27(9.0)	46(15.0)	37(12.3)
High	798(87.9)	274(91.0)	260(85.0)	264(87.7)
Bridging social capital				
Low	281(30.9)	73(24.2)	85(27.8)	123(40.9)
High	627(69.1)	228(75.8)	221(72.2)	178(59.1)
Suicide ideation				
Yes	92(10.1)	36(12.0)	37(12.1)	19(6.3)
No	816(89.9)	265(88.0)	269(87.9)	282(93.7)

^aDichotomized based on median household equivalized income (1,125,000 Korean Won)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